

2016 동국대 DMZ평화센터 ·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광복 70년 · 분단 70년: 경계에서 새로운 평화를 모색하다

분단과 갈등의 '위험한 평화': DMZ 남북군사충돌과 '경계의 평화'

- 일 정: 2016년 6월 10일(금) ~ 11일(토)
- 장 소: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지하1층 다목적세미나홀
- 주 최: 동국대학교 · 신한대학교 · 경기도
- 주 관: 동국대 DMZ평화센터 ·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 후 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초대의 말씀

자연법칙에 따라 계절은 바뀌고 있지만, 한반도는 분단 70년이라는 시간에 아랑곳없이 냉전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핵실험이 진행되고, 제재가 뒤따르고, 저주의 언어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냉전의 위험과 갈등이 내면화되고, 그 갈등이 또 다른 위험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을 즈음해 남북한 경계의 열점지역인 경기도에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와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광복 70년·분단 70년: 경계에서 새로운 평화를 모색하다”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경기도 접경지는 냉전의 최전선이지만 미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디자인할 수 있는 핵심공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분쟁지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비무장demilitarized이며, 정치적으로 정전ceasefire 상태인 DMZ에서 새로운 평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북아일랜드, 키프로스, 다퇴이다오(셴카쿠) 등 국제적 분쟁사례와 DMZ 분쟁사례는 현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위험한 평화’로 규정하고 DMZ가 ‘새로운 평화’지대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회의가 이론과 현실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완규

김용현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장

2016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분단과 갈등의 '위험한 평화': DMZ 남북군사충돌과 '경계의 평화'

일정 및 순서	내 용	
	12:50~13:00 등록	
	13:00~13:30 개회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장 환영사-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축 사-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격려사-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6.10	경계와 평화 • 사회: 최완규_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Session 1 13:3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1. 최위정(금강대)_경계, 영토성 그리고 지구화의 유기적 함의 2. 진필수(서울대)_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 주변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 3. 윤철기(서울교대)_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과 한반도를 위한 시사점 4. 조상현(군사연구소)_키프로스 분쟁: 변수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1. 송영훈(강원대) 2. 장용석(서울대) 3. 남영호(신한대) 4. 서보혁(서울대)
		DMZ의 위험한 평화 • 사회: 고유환_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Session 2 15:0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1. 김일한(동국대)_중무장지대의 비무장 민간인 들: 경기도 민통선마을 2. 박형준(동국대)_중무장지대가 된 완충지대1 (동아일보): DMZ군사충돌사례 3. 이창희·김용현(동국대)_중무장지대가 된 완충지대2(동아&로동신문): DMZ군사충돌사례 4. 최용환(경기연구원)_경기도접경지의 평화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1. 윤보영(동국대) 2. 권양주(국방연구원) 3. 김계동(연세대) 4. 강정원(신한대) 	
	Coffee Break 16:30~17:00	
	[Round Table] 한반도 신냉전과 DMZ: 새로운 평화는 가능한가 • 사회: 박순성_동국대 • 발표 및 토론자 전체	
	Session 3 17:00~18:00	
6.11	회의평가 및 현안논의 10:00~12:00	경기도와 DMZ, 현실과 과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Session I.

경계와 평화

최위정 금강대

경계, 영토성 그리고 지구화의 유기적 함의

진필수 서울대

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 주변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

윤철기 서울교대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과 한반도를 위한 시사점

조상현 군사연구소

키프로스 분쟁: 변수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경계, 영토성 그리고 지구화의 유기적 함의¹⁾

최위정
금강대학교

I. 서론

- **연구의 배경 1, 경계의 범 학문적 지위** I. Kant적 관점에서 관망할 때, 본고의 핵심 주제인 ‘경계’는 사유(思惟)되는 선험(先驗)적 예지계(睿智界, noumenon)와 인식(認識)되는 경험(經驗, 後驗)적 현상계(現象界, phenomenon) 사이의 지점에 존재한다. 즉, 경계라는 인식 장치는 예지계의 본질인 물자체(物自體, thing in itself)를 현상계의 사물인 물(物, thing)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과학(science), 특히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좇아, 경험적 현상계를 선험적 예지계로부터 분리하여 강조한다면, 경계는 인식되는 경험적 현상계의 제일원인(第一原因, 根本原因, prima causa)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즉, 모든 사회과학의 인식 대상은 경계라는 장치를 경유하여 비로소 존재하게 되며, 우리의 인식 체계 내에서 상정되는 모든 관계는 경계로부터 도출된다. 모든 주체와 주체, 주체와 객체, 객체와 객체는 경계로부터 존립하는 것이다.
- **연구의 배경 2, 경계의 국제정치적 지위** 이와 같은 논리는 전통적으로 국가 간 정치 내지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또는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에도 적용되는바, 국가적 경계, 즉 국경에 의하여 비로소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국가는 존립 가능하게 되고, 이로부터 국가 간 관계는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무정부성(anarchy)을 그 본원적 토대로 삼고 있는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기저(基底)에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이미 주어진 인식의 틀 내지 고정된 상수로 간주된 채 배제되어 왔고,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이에 후행하는 양상으로서의 ‘배타적 주권을 보유한 국가 간 관계’로 설정되어 왔다. 이에, 경계 자체가 변화한다면 혹은 변화해 왔다면, 경계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상정해 온 학문 체계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경계 자체에 관한 규명은 국제정치학에 있어서 본원적 연구의 지위를 차지한다 하겠다.

1) 본고는 주로 서구에서 경계 연구의 본격화 양상이 전개된 1990년대의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화를 모색한 학술지, Regional Studies 특별판[Regional Studies 33 (1999), Issue 7]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바, 여기에는 총 8개의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경계, 경계 지역, 영토성에 관하여 본질적 규명을 시도한 J. Anderson과 L. O'dowd의 논리를 차용하였음.

- **연구의 목적 1, 경계의 관념적 변화 규명** 본고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본질을 변화로 설정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경계의 본질로서의 변화는 지리상 위치의 변화라는 물질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포함된 의미들과 그 의미를 관통하는 함의, 즉 관념적 의미들 역시 시간과 공간에 따라 완전히 상이한 양상으로 변천(變遷)한다. 이에, 경계와 경계 지역에는 상호 경합적이고 모순적인 물질적, 상징적 의미들이 내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계에 내재된 특수성의 진의(眞義)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협소적, 협의적으로 지역화된 연구를 넘어, 보다 광역적, 광의적으로 맥락화(脈絡化)된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중심성과 구별되는 주변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방식에 기할 때, 경계는 정상적인 경제적 정의(正義)의 관점에 배치되는 차익 경제 활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경계의 중요성은 결국 '시공을 관통하여 변천을 거듭해 온 정치적, 사회적 삶의 보편적 조직 원리'인 '영토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경계와 경계 지역은 사회과학의 특별한 연구 대상으로 부상한다.
- **연구의 목적 2, 경계의 실제적 변화 규명** 이와 같은 경계의 변화는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화', 그리고 이 지구화와 분리 불가능한 현상으로 간주되는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지대 등과 같은 초국가적 지역의 성장이 목도(目睹)되는 현 시대에 두드러진다. 대다수의 연구 문헌들은 자본, 상품, 정보, 인간이 국경을 횡단하는 유동성의 증가를 고려하여, 기 획정된 영토적 단위로서의 국가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즉, 출입국에 대한 통제와 폭력수단의 합법적 독점이라는 근대 국민 국가의 핵심적 주장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한,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community)로서의 사회적 경계는 그에 기하여 수립되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인위적 결사체(association)로서의 국가적 경계, 즉 영토적 경계와 절연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렇다면 국가적 경계와 경계 지역의 변화, 즉 경계의 재논의, 재생산, 통치(統治, government) 내지 협치(協治, governance)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진행되는가? 본고는 사회과학의 특별한 연구 대상으로 등장한 경계와 경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경계에 내포된 변화의 맥락을 확인할 것이다.

II. 경계

1. 경계의 개념

- **경계의 어의 1, 언어권과 용어** 사회과학에서 경계(境界, 영어로는 border, boundary, frontier 등)라는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상이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사회 집단들의 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언어 문화권에 내재한다. 그러나 경계라는 용어에 내포된 의미는 지구상에 다양하게 분포하는 문화권과 이를 아우르는 시간과 공간의 변천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왔다. 즉, 우리가 경계라고 번역하는 용어는 각 언어 문화권 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개별 어휘들에는 상이한 의미와 함의들이 내포된다.²⁾ 특히, 학술적으로 우리가 주로 접해야 하는 영어권의 용어들인 frontier, boundary, border 등은 중복적, 호환적(互換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념상의 구별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 활용하는 경계라는 한자어는 영어의 용례에서 border와 동일시됨을 우선 밝힌다.

- **경계의 어의 2, 영어권의 용어** 일반적으로 frontier는 세 가지의 용어 중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boundary는 명확한 획정선이라는 가장 선명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boundary가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사회 집단들을 구분하는 용어로 활용될 경우, 즉 사회적 경계(social boundary)라는 개념어는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전형적인 논쟁적 어휘로 간주되기도 한다. frontier는 영국과 미국의 용례로 구별되는바, 우선 영국에서는 보다 오래된 어휘인 march와 유사한 의미로서 복수의 사법권이 경합하는 지역이나 지방과 연관되어 활용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른바 개척시대의 미국변경(邊境)(American frontier)이라는 용례에서 확인 되듯이, 비어 있는 영토, 즉 정착을 위한 이주 지역과 연관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근대 국민국가들은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다. 본고의 용어로서의 경계는 border인바, 비록 경계 지역(border region)이라는 용어에는 frontier의 의미가 수반되지만, 지리적 명확성을 척도로 할 때, border는 frontier와 boundary 사이 지점에 위치한다. 우리는 border를 근대 국민 국가와 지구적 국가 체계의 산물인 정치적 분할 혹은 이로부터의 사회적 구성으로 간주한다.

- **border의 의미 1, 국가적 경계의 발원** 본고는 특히 외부적 국가 경계로서 규정되는 border에 초점을 둔다. 국제정치학에서는 1618년에서 1648년 간 진행된 30년 전쟁을 border에 근거한 국가적 형태의 발원적 사건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를 마감한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을 근대 국민 국가의 외적 경계인 border의 발생 기점으로 보는 웨스트팔리아 기점설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왔다. 웨스트팔리아조약은 스페인제국의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신성로마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개별 국가단위들의 자율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국민 국가의 외적 형태를 창출한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경계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 획정의 문제를 둘러싼 다른 많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1414년의 콘스탄츠공의회, 1454년 이탈리아 반도의 로디조약, 16세기 초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성립기,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 1713년의 유틀레흐트조약, 산업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의 이중혁명이 발생한 18세기 후반, 1815년 비엔나회의 등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주장에도 풍부한 근거가 확인된다.³⁾

2) 가령, 독일어권에서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grenze), 프랑스어권에는 네 가지의 용어가 있으며(frontière, front, limite, marche) 스페인어권(frontera, marca, limite)과 영어권에서는 세 가지(frontier, boundary, border)의 상이한 형태의 어휘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J. Anderson and L. O'dowd, "Borders, border regions and territoriality: contradictory meanings, changing significance," *Regional Studies*, 33 (1999), pp. 593~604 참조.

3) 이에 관해서는 전재성,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중첩, 복합의 거시이행," 『국제정치논총』, 49(2) (2009), pp. 7~31 참조.

● **border의 의미 2, 외적, 내적 국가 경계** 상기한 바와 같이, 17세기 이후 명확하게 설정된 국가적 경계는 확장되는 지구적 국가 체계 내에서 중대한 요소가 되어 왔다. 즉, 경계는 상이한 관할권을 분리하는 법적 한계선과 관련되고, 이 법적 한계선의 양 방면에 근거하여 유동적인 폭을 지니는 변경 지역(邊境領域, frontier area)과 연관되며, 상이한 사회 권력 및 국가 권력 사이의 전이 지대(轉移地帶, zone of transition)와 관계된다.⁴⁾ 국가의 외적 경계는 또한 특정 국가의 지방행정체제에 내재하는 행정구역을 분리하기 위한 내적 경계들과 관련된 프레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외적, 내적 경계는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등으로 구별되는 여타의 사회 집단들과 상호 작용함과 동시에 그 상호 작용에 기하여 획정된다. 그러나 국경과 다양한 여타 경계들 간 조화의 부재는 국경 분쟁과 갈등의 영속적인 원천으로 남게 된다.

● **border의 의미 2, 경계와 경계 지역** 변경 지역, 혹은 전이 지대로서의 경계의 의미는 경계 지역이라는 용어로 수렴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의 다양성이 내포된다. 그것은 현상적 의미에서 국가의 외부적 경계에 인접한 지역이거나, 외부적 경계의 양 방면에 걸쳐 있는 지역이며, 또한 물리적, 사회적 의미에서 중앙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경계에 인접한 관할지역이다. 따라서 프랑스 바스크 지방과 이에 인접한 스페인 바스크 지방은 양자가 공히 경계 지역임과 동시에, 공동으로 인종적, 민족적 횡경 지역(橫境 地方, cross-border region)을 구성한다. 그러나 프랑스 바스크는 아키텐주(Aquitaine)라는 행정적 실체의 일부이고, 아키텐주 또한 경계 지역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아키텐주의 경계면이 국가적 경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스크인들은 횡경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을 감수해야만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⁵⁾

● **border의 의미 3, 경계와 횡경 지역** 특히, 유럽에서는 횡경 지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그에 대한 부응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시작되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출범과 경제 통합으로 귀결되었다.⁶⁾ 그와 같은 횡경 지역은 유럽연합의 투자를 통한 이익 확보 및 경계에 대한 통제의 폐지를 위한 제한적이고도 일시적인 협력의 실체이다.⁷⁾ 이 횡경 지역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나 유럽의 동

4) 이 전이 지역은 전 근대 국가 및 그 국가들의 변경 사회(frontier societies)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이에 관해서는 R. Bartlett and A. Mackay, *Medieval Frontier Societies* (Clarendon Press, Oxford, 1989) 참조.

5) 이에 관해서는 F. Letamendia, M. Uranga and G. Etxebarria, "Astride two states: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Basque Country," in L. O'dowd and T. Wilson (Eds), *Borders, Nations and States* (Avebury, Aldershot, 1996) 참조.

6) 이에 관해서는 J. Anderson and J. Goodman, "Regions,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modernist reaction or postmodern adap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4) (1995), pp. 600~631 참조.

7) 이에 관해서는 M. Perkmann, "Building governance institutions across European borders,"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57~667; A. Church and P. Reid, "Cross-border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political space across the English Channel,"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43~645; S. Krätke, "Regional integration or fragmentation? The German-Polish border region in a new Europe,"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31~641 참조.

서 냉전의 경계처럼, 양자의 비대칭적인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체계가 병존할 경우, 이에 대한 관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구성된 것이다.⁸⁾ 이와 같은 횡경 지역에는 국가적 경계 간의 조화 또는 해당 지역을 분할한 경계 자체의 당위성이라는 표면적 이유의 배후에 독자적인 문화적 통일성이 담지 되어 있다. 이 횡경 지역의 문화적 통일성은 경계 양 방면의 임금, 가격, 제도적 규범의 차이, 혹은 기회에 투자하면서, 합법적, 비합법적 이용을 목적으로 경계를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통의 관념인 것이다.

- **border의 의미 4, 경계와 경계 변화** 경계 변화(border change)라는 용어 역시 상이한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가장 명확하게는, 그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재생된 혹은 지리적으로 재배치된 국가적 경계와 관련된다. 보다 관념적으로는, 그것은 원래의 장소에 현존하는 경계의 상징적 의미와 물질적 기능의 변화와 연관된다. 새로운 경계의 창출이라는 전자의 관점에 기할 때, 경계 변화는 소련의 붕괴와 새로운 독립 국가들의 출범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양상으로 포착되었고, 독일의 재통일은 웅장한 규모의 경계 재배치였던 셈이다.⁹⁾ 아일랜드, 바스크 지방, 코르시카, 퀘벡, 키프로스, 유고슬라비아, 카슈미르 등지에서의 민족 분쟁은 국가적 경계가 미확정된 지리적 범주에 대한 지속적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은 경계 변화를 정치적, 학술적 의제로 상정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동시에,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로부터 기인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형태들은 확정된 경계의 기능과 상징적 의미에 변화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의 경계 변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경의 위치 변경에 대한 즉각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지대(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와 같은 초국가적 실체들 혹은 지역주의나 인종주의에 근거한 하부 국가적 실체들과 같은 현상에 의해 국경의 가치는 절하될 것이다.

2. 경계의 성격

- **border의 본성 1, 물질성과 상징성** 상기한 바와 같은 경계의 개념 정의를 넘어, 경계는 물질성과 상징성을 지닌다.¹⁰⁾ 경계는 매우 명백한 물리적 실존성을 내포하는데, 베를린 장

8) 이에 관해서는 A. Paasi, "Boundaries as social practice and discourse: the Finnish-Russian border,"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69~680; S. Krätke, "Regional integration or fragmentation? The German-Polish border region in a new Europe,"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31~641 참조.

9) 이에 관해서는 T. Forsberg, "Beyond sovereignty, within territoriality: mapping the space of late-modern (geo)politics," *Cooperation and Conflict*, 31(4) (1996), pp. 355~386 참조.

10) 이에 관해서는 A. Paasi, "Boundaries as social practice and discourse: the Finnish-Russian border,"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69~680; J. Anderson and J. Goodman, "Regions,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modernist reaction or postmodern adapt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4) (1995), pp. 600~631 참조.

벽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경계는 역사의 물질적 구현체로서 비록 시각적으로 확연하지는 않지만, 보다 광역적인 상징성의 전형적인 담지자(擔持者)이다.¹¹⁾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계는 외부 세력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봉인(封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공동체 혹은 사회의 한계선을 표기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경계 지역과 경계 사회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와 사회 혹은 국가와 국민은 필연적으로 동일하거나 중첩적이라는 오도된 가정들을 제시한다. 국가적 경계를 특정 하는 제도(製圖) 작업은 복잡한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투쟁에 대한 조정, 중재 및 단순화의 재현이다.¹²⁾ 그러므로, 그 제도는 경제, 정치, 문화적 양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구적일 수도 있는 그들 사이의 특징적 관계를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 **border의 본성 2, 경계에 내재된 모순** 그러나 경계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비판적인 검토는 단순화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경계의 구현과 제시에 도전한다. 경계는 본질적으로 모순적이고, 문제적이며, 다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경계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 대한 통로이자 장벽이고, 보호이자 구속이며, 기회의 영역이자 위기의 영역, 접촉의 영역이자 갈등의 영역, 협력의 영역이자 경쟁의 영역, 유동적인 정체성의 영역이자 차이에 대한 호전적 주장의 영역인 것이다. 이와 같은 명백한 이분법적 논리는 시간과 공간의 변천에 따라 교체된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가 동시에 동일한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 적대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당해 공동체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반드시 양자택일의 당위성이 아닌, 양자병립의 존재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만 한다.

● **border의 본성 3, 통제와 허용의 모순** 경계는 고도로 가변적인 투과성과 다공성(多孔性)을 지닌 여과장치이고, 경계 지역은 침투와 전이, 혹은 중심부(center)의 억제(擬制)된 순수성의 유지를 위한 분리와 방어의 주변부(periphery)이다. 그러나 비록 경계가 중앙 정부로부터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더라도, 취약한 경계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취약한 경계란 주로 베를린 장벽으로 상징화되는 배타적 영토 주권이 주장되고 옹호되는 곳이다. 이른바 주권을 보유한 국민 국가와 긴밀하게 연계됨과 동시에 야누스적 양면성을 지닌 민족주의처럼, 경계는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조망한다. 즉, 경계는 통합과 분리, 포용과 배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경계는 자신의 의지에 대항하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강압하고, 거세(去勢)하며, 제한하고, 포용하며, 배제한다. 그러나 경계는 또한 자비를 제공하고, 권능을 부여하며, 국민의 안전보장, 국가의 정체성, 대의 민주주의 제도 등을 제공한다. 감옥이자 은신처로서의 경계는 억압을 촉진하거나 도피를 제공한다.

● **border의 본성 4, 국민과 인민의 모순** 문화적 통제성과 정치적 통제성에 근거하는 국민

11) J. Rupnik, "Europe's new frontiers: remapping Europe," *Dacdalus* 123(3) (1994), pp. 91~114.

12) 이에 관해서는 J. Anderson and L. O'dowd, "Contested borders: globalization and ethno-national conflict in Ireland,"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81~696 참조.

국가의 이상은 경계에서 확인됨과 동시에 와해된다.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분열적 측면은 그것의 통합적 측면보다 두드러진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경계가 초래하는 민족, 문화, 혹은 인종적 경계와의 불일치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경계는 모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 모순들은 키프로스, 카슈미르, 아일랜드 등지에서 발생하는 민족적 영토 갈등의 상황에서 명확화 되나, 후속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란 장벽을 강화하는 것, 즉 세계로부터의 차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모순에 대한 해법은 일반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경계가 지닌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경계 갈등은 전형적으로 민족 혹은 민주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완결성이 결여된 개념으로 인식되고 이로부터 또 다른 모순의 개입 여지가 파생된다.

● **border의 본성 5, 결과와 과정의 모순** 국가적 경계는 대의제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운용을 위하여 선거구민과 유권자를 규정한다. 그러나 대중기반의 대의제가 출현하고 확립된 곳에서조차 이와 같은 경계에 의한 민주주의의 생산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기원의 역설(the paradox of origins)’과 ‘망각의 정치(the politics of forgetting)’로 개념화된 독특한 사례이다. 즉 민주주의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비민주적이고, 그 사실은 민주주의의 정당화를 위하여 망각될 필요가 있다.¹³⁾ 이와 같은 역설은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존재하고 작동해야만 하는 민주정체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 제도들은 표면화되어 등장할 때까지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논리는 영토적 경계의 설정과 제도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 논리는 내부 세력에 의한 새로운 영토의 개척인가, 아니면 외부 권력에 의한 경계의 확정인가의 문제와 무관하게, 현존하는 영토적 실체에 대한 인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민족 갈등, 정치 혁명, 혹은 원주민에 대한 대량학살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비민주주의적, 폭력적 기원의 유산(遺産)은 그 정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영토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축소되거나 은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원과 관련된 당대의 문제는 공식적으로 망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 **border의 본성 6, 망각과 기원의 모순** 엄밀한 의미에서 경계에 대한 논쟁의 초점은 살아있는 쟁점이자 결코 ‘망각’될 수 없는 바로 그 ‘기원’으로 수렴된다. 가령 아일랜드에서 현존하는 경계의 영토적 정당성은 일방의 부인과 타방의 인정으로 구분된다. 양방은 공히 ‘민주주의’에 호소한다.¹⁴⁾ 그러나 여기에는 난제의 형식 속에서 역설이 다시 출현한다. 낡은 경계는 비민주주의적인 기원을 가지는 반면, 새로운 경계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적 절차들에 의해 기원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한 영토적 토대가 바로 해당 쟁점이기 때문이다. 경계 갈등은 근본적으로 누가 시민인가, 즉 선거권자임과 동시에 최초의 장소(영토)에서 선거를 조직하는 자는 누구인가를 둘러싼 갈등의 문제인 것이다. 이 난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국가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쟁의 영합게임(zero-sum game)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다 복합적인 초국가적 협치의 형태를 통한 민주화를 요구한다.

13) 이에 관해서는 W. E. Connolly, “Democracy and territoriality,” *Millenium*, Winter (1991), pp. 463~483 참조.

14) 이에 관해서는 J. Anderson and L. O’Dowd, “Contested borders: globalization and ethno-national conflict in Ireland,”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81~696 참조.

3. 경계의 실상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동향** 상기한 바와 같이 경계와 경계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이, 불평등, 비대칭의 다차원적 양상을 연출한다. 경계와 경계 지역의 특성은 상이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포착된다. 경계와 경계 지역은 자본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는 고도의 개방성을 지니는 반면, 노동과 같은 또 다른 대상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폐쇄성을 가진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계 지역의 형태 역시 상이하다. 어떤 지역의 인구는 고도로 조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텅 비어 있다. 또한 어떤 지역은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사회적으로 주변성이 강한 반면, 다른 지역은 그들의 지리적 주변성을 정치적,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경계 지역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지역 자체의 내부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타 지역과의 관계 연구 및 비교 연구의 방법이 요구된다.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연구** 경계 및 경계 지역 연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경계 지역이 속한 자국의 여타 지역들(여타 경계 지역들을 포함), ② 국가의 중심 제도들, ③ 인접 국가의 직면한 지역들, ④ 인접 국가의 여타 지역들, ⑤ 경계 지역의 중심 제도들, ⑥ 국가 간 직접적 관계 및 초국가적 협치의 양상들. 또한 이와 같은 접근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이 고려될 수 있다: ① 경제적 권력, ② 정치적 권력, ③ 국가적 충성도, ④ 문화적 정체성. 따라서 경계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중심-주변’적 역학 관계, 그리고 해당 국가의 다수를 구성하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민족, 인종, 종교, 언어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계 지역 인구의 양적, 질적 분포 양상은 환경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있어서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분포 양상은 해당 경계 지역이 인접 경계 지역과 횡경계적으로 공유하는 관계 속에서 포착될 필요가 있다.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실상 1, 정치적 측면 1** 경계는 일반적으로 전쟁, 정복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폭력과 위협의 과정을 동반하여 억압적으로 설정된다.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축적과 이에 기한 국가의 건설은 전형적으로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를 향하여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주체가 아닌 그 대상 객체로서의 주변부적 경계 지역이 형성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 사회 세력의 역사적 역할¹⁵⁾, 특히 그들이 형성한 횡경계적 네트워크의 특징과 범위 및 인접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역 엘리트의 역할을 인정하고 조명하는 것은 중요하다.¹⁶⁾ 경계 지역의 엘리트와 인민은 경계 지역 외적 요인들 및 보다 광역적인 지정학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15) 이에 관해서는 P. Shalins, *Boundaries: The Making of France and Spain in the Pyrene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96) 참조.

16) 이에 관해서는 M. Baud and W. Van Schendel, "Towards a comparative history of borderlands," *Journal of World History*, 8(2) (1997), pp. 212~242 참조.

횡경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부상조했다.¹⁷⁾ 현대 인류학 연구는 경계 지역에 대한 국제적, 지정학적 영향력들에 관한 구체적, 미시적 연구를 통하여 경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생산되는 규모를 규명하고 있다.¹⁸⁾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실상 2, 정치적 측면 2** 경계 지역들은 특히 경제적 양상과 발전 수준에서 상호 간 강한 유사성을 지니거나, 아니면 강한 상이성을 가진다. 경제적 평등성과 불평등성, 정치적 호환성과 비호환성의 측면에서, 횡경계적 차이, 상호 보완성, 비대칭성의 정도는 결국 경계와 관련된 개방성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이한 유형의 횡경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결정한다. 특히, 경계와 경계 지역의 정치경제는 불평등적, 비대칭적 관계를 노정한다. 국가와의 연관성 하에서, 경계의 정치적, 군사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에 우선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경계는 경제 활성화 지역을 분열시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세, 언어적, 문화적 차이, 공식 계약의 불능, 경계 횡단에서의 공식 경로의 정체(停滯), 그리고 실재적, 잠재적 정국 불안, 군사적 갈등 등은 모두 경계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주변부화하면서, 횡경 교역과 생산을 억제한다.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실상 3, 경제적 측면 1** 상기한 바와 달리, 안정적인 경계 지역은 경계 통제 및 경계 정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상품보관업, 관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월경 투자 등과 같이 경계에 초점을 둔 교역행위로부터 이익을 얻기도 한다.¹⁹⁾ 그러나 경계의 존재이유로서의 경제활동과 경계가 방해하고 억제하는 경제활동에는 중요한 구별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 국가적 경계의 양 방면에 근거를 둔 상이한 규제 레짐들의 공존은 밀수, 비공식적 환율, 불법 이민 등을 야기하는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의 형태를 생성시킨다.²⁰⁾ 후기 소련의 차익 경제 및 경계 의존 활동은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차익 거래, 혹은 가격, 금리, 환율, 그리고 주가 등의 차이를 활용한 결과적 양상으로 평가된다.²¹⁾ 이것은 주로 상품 생산의 영역이 아닌 유통의 영역, 즉 단기간의 불안정한 비공식적, 비합법적 한계를 지닌 차익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횡경적 경제 관계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차익 경제는 국경의 양 방면에 근거한 다양한 시장 실패 혹은 상품 다양성의 결핍과 같은 시장 기능 장애를 포함하는 비대칭성에 의존한다. 한편, 그러한 경계 의존 경제는 저변에 보수성을

17) 이에 관해서는 J. W. Scott,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ntexts for cross-border regionalism"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05~617; S. Krätke, "Regional integration or fragmentation? The German-Polish border region in a new Europe,"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31~641; A. Paasi, "Boundaries as social practice and discourse: the Finnish-Russian border,"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69~680; J. Anderson and L. O'dowd, "Contested borders: globalization and ethno-national conflict in Ireland,"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81~696 참조.

18) 이에 관해서는 T. M. Wilson and H. Donnan (Eds), *Border Identities: Nation and State at International Fronti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8) 참조.

19) N. Hansen, *The Border Economy: Regional Development in the Southwest*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Texas, 1981), pp. 23~25.

20) M. Baud and W. Van Schendel, "Towards a comparative history of borderlands," *Journal of World History*, 8(2) (1997), pp. 230~231.

21) 이에 관해서는 E. Altvater, "Theoretical deliberations in time and space in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Regional Studies* 32 (1998), pp. 591~605 참조.

은닉한 가운데, 단기간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세계경제와 국가경제 사이의 전환에 대한 대처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유연성을 지닌다. 경계 의존 경제는 경계 양방에 근거한 차이의 병존, 비대칭적 정치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시장을 자양분으로 삼아, 국가적 경계에 대한 잠식이나 대체가 아닌 지속에 봉사한다.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실상 4, 경제적 측면 2** 상기한 바와 같이 비록 차익 거래가 기회주의적 경제 이득을 창출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보다 저변에 위치한 역동적인 횡경적 생산 네트워크, 클러스터 개발, 지역 학습 등의 출현을 억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²²⁾ 물론 특정 지역에서 차익 거래의 결과로서,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킬라도라 체계(maquiladora system)의 사례와 같은 횡경적 복합 생산 단지들이 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경계는 막대한 임금 격차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그리고 매우 저렴하고 통제 가능한 멕시코 노동력의 공급을 통제하는 것에서 효용성을 갖는다.

Ⅲ. 경계와 영토성

- **영토성의 개념, 국가의 대(對) 공간 전략** 영토성(territoriality)이란 국가가 특정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당해 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대(對) 공간 전략이다. 그것은 사물의 분류와 배치를 위하여 지역을 활용하는 강제의 양상으로 포착되고, 확정된 지역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접근을 규제함으로써 작동한다.²³⁾ 영토성은 통제의 대상이 되는 쟁점들을 단순화시키고, 지상의 상징적 표식(標式)들에 대한 용이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것은 영토적 경계의 특정한 통제의 양상을 획정하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공간을 분류하기 위한, 나아가 사회적 경계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원, 사물, 정보, 상징, 인간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지리적 공간의 적극적 활용과 관련된다.
- **영토성의 의의 1, 경계의 토대로서의 영토성** 그러므로, 영토성은 필수적으로 경계를 생산하고, 경계에 집중한다. 영토성은 근대적 주권(sovereignty)을 보유한 영토적 국민 국가 내에서 구현되고, 국가적 경계 내에서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배타적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 체계에 그 토대를 제공한다. 즉, 일반적으로 영토성은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에 내재하는 통치권을 핵심 개념으로 포착하는 정치학에 관련되는 것이나, 본고에서 우리는 국가 간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에 내재하는 무정부성을 핵심 개념으로 포착하는 국제정

22) 이에 관해서는 S. Krätke, "Regional integration or fragmentation? The German-Polish border region in a new Europe,"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31~641 참조.

23) R. Sack,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6), pp. 21~34.

치학 내지 국제관계학에서의 영토성의 양상에 주목한다. 사실, 영토성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학문적으로 이보다 광역적인 함의들을 가진다. 예를 들면, T. Forsberg는 영토성을 실존적, 작동적, 생태적, 생물적, 심리적, 정치적 형태 등 6가지로 구분한다.²⁴⁾

● **영토성의 의의 2, 분열의 주체로서의 영토성** 영토성은 특히 경계와 관련될 경우, 사회적 과정에 개입하여 독단적 분열과 파괴를 자행한다. 영토성은 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권력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비인격화 하며, 사회적 실재를 과도하게 단순화함으로써 왜곡시킨다. 폭력과 비폭력, 선의와 악의의 구별을 막론하고, 영토성은 적대성을 야기하는 확연한 경향성을 지님으로써, 본질적으로 갈등적 양상을 내포하게 된다.²⁵⁾ 경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체적으로, 갈등의 근원이 되는 ‘타자(the others)’를 강조하는 특성의 관행과 담론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유지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될 필요성을 취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영토는 고정되고, 한정된 물질적 총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영토성은 경제적 갈등의 특징적 양상인 영합게임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게 된다.²⁶⁾ 따라서 영토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제를 위한 여타의 비영토적 양상들이 필요하게 되고, 특성의 경우 이와 같은 비영토적 양상들은 사실상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서 선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호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들은 내부적 감시망을 동원한 국가 이주 통제, 즉 월경(越境) 통제라는 부분적 보완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지구화(globalization) 현상과 함께 점증 추세에 있는 것이다.

● **영토성의 의의 3, 통제의 주체로서의 영토성** 그러나 공간과 횡경계적 관계를 조직화하는 능력은 현 지구체계 내에서 여전히 국가적 권력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가 이주 통제에 의해 그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 비해 자본과 투자를 통제하는 자들은 결정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지정학적 권력, 정치적 이념, 민족, 인종, 언어, 종교, 성별 등의 표식들과 더불어 기술력 및 여타의 자원들에 대한 접근 권한은 모두 횡경계적 능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된 세계에서 빈자와 백인이 아닌 자들이 국가적 경계를 횡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실, 유럽연합 내에서 보다 강화된 이주 및 정치적 망명 정책들에 대한 합의의 증가는 발칸 지역의 경계를 따라 집중되는 난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권력과 통제의 발휘 수단인 영토적 경계의 항구적 중요성을 증명한다.²⁷⁾ 따라서 경계와 경계 지역에 관한 연구들은 필수적으로 국가적 영토성의

24) 이에 관해서는 T. Forsberg, "Beyond sovereignty, within territoriality: mapping the space of late-modern (geo) politics," *Cooperation and Politics*, 31(4) (1996), pp. 355~386 참조.

25) 이에 관해서는 A. Paasi, "Boundaries as social practice and discourse: the Finnish-Russian border,"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69~680; J. Anderson and L. O'dowd, "Contested borders: globalization and ethno-national conflict in Ireland," *Regional Studies*, 33 (1999), pp. 681~696 참조.

26) 이에 관해서는 J. Anderson and I. Shuttleworth, "Sectarian demography, territoriality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Northern Ireland," *Political Geography*, 17(2) (1998), pp. 187~208 참조.

27) 이에 관해서는 T. Bunyan (Ed), *Statewatching the New Europe* (Statewatch/Unison, London, 1993); R. Miles and D. Thranhardt (Eds), *Migration and European*

제한 및 국가 및 여타의 권력자들의 영토적 전략에 대한 상대적 약자들의 저항과 모면 능력에 관하여 탐구하게 된다.

- **영토성의 의의 4, 모순의 주체로서의 영토성** 그러나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적 경계는 모호성과 모순성을 지닌다. 권력, 통제 그리고 배제 등을 의미하는 것과 반대로, 국가적 경계는 동시에 권한의 이양과 포용을 상징한다. 많은 경우, 국가적 영토성은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등과 같은 여타의 사회적 표식들에 비하여 보다 포용적인 민주주의적 시민권의 토대를 제공한다. 국가적 경계의 제도(製圖)는 내부적 균질화(均質化)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토 기반의 동력은 한계를 가지며, 특히 경계 지역에서 기존의 사회 문화적 다양성, 적대적 영토성 혹은 영토성의 제한과 보완물의 필요성 또는 횡경계적 사회 조직이라는 대안적 형태들 등에 근거한 대항적 동력과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획정된 경계는 국가에 의해 독점되지 않은 보다 개방된 경계, 그리고 횡경계적 관계에 입각한 다문화적, 다차원적 정체성의 발전 조건들을 창출할 수 있다.
- **영토성의 의의 5, 변화의 주체로서의 영토성** 경계와 관련하여 상기한 바와 같은 다양한 문제성을 지닌 영토성의 본질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국가적 경계는 현재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역사적 변화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모순되는 방식으로, 현행의 지구화는 경계의 포용적 측면과 배제적 측면을 동시에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즉, 영토성은 경계의 토대, 분열의 주체, 통제의 주체, 모순의 주체를 넘어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IV. 경계, 영토성, 그리고 지구화

1. 경계, 영토성, 지구화

- **지구화의 개념, 내적 경합의 논쟁적 개념** 비록 영토성과 지구화는 의미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현 지구화는 영토성에 비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아 내적 경합이 진행되는 개념이다. 지구화는 그 자체에 압도적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결코 응집력을 갖춘 거대서사(巨大敍事, master narrative)를 구성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가적 경계는 현 지구화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현실이다. 그 대신, 지구화라는 용어는 A. Amin에 의하여 ‘전 지구적 범위에 걸쳐 진행되는 연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의 양적 증가’이자 ‘국가와 사회 간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 수준의 질적 증강’²⁸⁾으로 묘사됨으로써, 논쟁적인 과정들의 결합을 망라한다.

Intergration (Frances Printer, London, 1995) 참조.

- **지구화의 논의 양상, 경계, 영토성, 지구화** 지구화의 새롭고도 가속(加速)적인 양상들에 관하여 진행되는 급증하는 논쟁들은 국가와 경계의 미래, 그리고 지구 체계 내에서 국민 국가의 중심 역할 상실 여부에 대한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²⁹⁾ 지구화보다는 영토적 경계를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연구는 최소한 연관된 두 가지의 주제에 입각하여 진행된다. 한편으로는, 경계의 완고한 저항적 특징들과 지구화를 포함한 광역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적 양상들에 대한 주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 지구화 연구의 중심 주제인, 모든 국가의 경제 및 정치 영역과 문화 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토적 조화의 결여(缺如)에 대한 주제이다. 그러나 지구화 테제에 있어서 소수의 극단적인 변종들은 오히려, 과거의 특정 시점에 존재했던 것으로 가정되는 경제 및 정치와 문화 간 영토적 조화의 수준을 과장함으로써, 최근의 지구화 경향의 참신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도 한다.

2. 지구화에 관한 경성적 견해

- **지구화 논의의 두 가지 견지 1, 경성적, 연성적 견해** 큰 틀에서 국가적 경계와 영토성에 부여하는 의의를 척도로 삼을 때, 지구화에 대한 설명은 경성(硬性)적 견해와 연성(軟性)적 견해로 양분될 수 있다. 각각의 견지(見地)에는 상이한 설명들이 존재하고, 그 설명들 간에는 일정 정도의 중첩성이 내재하며, 그것들은 또한 경제적, 정치적 혹은 문화적 강조점, 그리고 그들의 상호 접속이 개념화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분과 학문 별 상이성에 기한 교차 국면이 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적 견해에 내재하는 설명들은 공히 1970년대를 극적인 분수령으로 삼아 최근의 지구화 양상에 내재한 참신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모두 경계와 영토성에 내포된 함의의 현실적 쇠퇴라는 관점에서, 경계 연구에 대한 진지한 도전을 제기한다.
- **경성적 견해 1, 총체적 종말론** 구체적으로, 그들은 경계 없는(borderless) 지구 경제의 발전³⁰⁾, 새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기술의 위세(威勢)³¹⁾, 그리고 초국적 문화와 협치(協治, governance)적 네트워크, 부상하는 지구적 관념의 징후³²⁾ 등을 강조한다. 경성적 견해의 보다 극단적인 변종들은 영토성과 경계에 기한 국가 중심적 세계의 종말과 국민 국가의 종말³³⁾, 이념의 종말³⁴⁾, 그리고 심지어는 지리의 종말³⁵⁾을 고(告)한다. A. Amin³⁶⁾이나 A.

28) 이에 관해서는 A. Amin, "Placing globaliza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14(2) (1997), pp. 123~137 참조.

29) 이에 관해서는 J. Anderson, "The exaggerated death of the nation state," in J. Anderson, C. Brook, and A. Cochrane (Eds), *A Global World?: Re-ordering Political Spac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8), pp. 65~112 참조.

30) 이에 관해서는 K. Ohmae, *The Borderless World* (Collins, London, 1990) 참조.

31) 이에 관해서는 M.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Oxford, 1997) 참조.

32) 이에 관해서는 R.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London, 1992); A. Giddens, *The Runaway World* (BBC, London, 1999) 참조.

Giddens³⁷⁾와 같은 보다 신중한 주창자들은 이와 같은 이른바, 종말론(終末論)에 대하여 다소간 회의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화가 물리적 거리(距離)와 상이한 지역성, 나아가 지역과 국가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규모를 강조한다. 특히, 지구화에 의하여 지역과 국가가 해체되거나 혹은 더 이상 경계 내부적 활동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모를 강조한다. 초국적 기업, 초국적 사회 운동 조직, 초국적 공동체 등과 같은 여타의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국가적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의 중심적 역할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경성적 견해 2, 지구화된 인지적 세계** 지구화 테제에 대한 경성적 견해는 주로 경제와 기술을 으뜸으로, 문화를 버금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의 중심적 표상(表象)은 가상의 경제, 공동체,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영토적 경계를 초월하는 협치 체계의 출현을 촉진하는 인터넷이다. 따라서 A. Hoogvelt³⁸⁾는 물리적 인간이 거주하는 ‘영토화된 실재적 세계’와 인간이 지리적 위치, 그들이 공유하는 영토, 혹은 그들을 분리하는 공간과 무관하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개발하는 ‘지구화된 인지적 세계’를 구별한다. 이 지구화된 인지적 세계는 실재하는 영토 기반 경제를 연결하는 ‘장소로서의 지구적 시장’과 구별되는, ‘질서로서의 지구적 시장’의 출현을 지지한다. 그것은 또한 M. Castell이 명명한 바와 같이, 금융 자유화와 정보 통신 기술 혁명의 융합에 의하여 가동되는 전 지구적 금융 유동성을 위한 ‘메타 네트워크(meta-network)³⁹⁾의 출현을 촉진한다. A. Hoogvelt⁴⁰⁾가 관찰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그가 금융 거래의 90%는 생산과 교역과는 무관하다는 P. Drucker의 주장을 인용하여 표현한 바대로, 자본은 떠도는 자본으로부터 생성된다.

● **경성적 견해 3, 자본주의적 소비지상주의의 확장**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에서는 국가보다는 오히려, 지구적 생산과 판매 그리고 금융 전략을 선도하고 있는 비교적 영토적 경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초국적 기업들이 핵심 행위자로 간주된다. 지구화에 대한 경성적 견해는 자체적인 문화적 양상 하에서, 맥도널드, 코카콜라,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 등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소비지상주의(consumerism)의 확장을 강조한다.⁴¹⁾ 이들은 주로 근대

33) 이에 관해서는 K. Ohmae, *The Borderless World* (Collins, London, 1990) ; K. Ohmae, *The End of the Nation State* (Free Press, London, 1990) 참조.

34) 이에 관해서는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Free Press, New York, 1991) 참조.

35) 이에 관해서는 R. O'brien, *Global Financial Regulation: The End of Geography*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1992) 참조.

36) 이에 관해서는 A. Amin, "Placing globaliza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14(2) (1997), pp. 123~137 참조.

37) 이에 관해서는 A. Giddens, *The Runaway World* (BBC, London, 1999) 참조.

38) A. Hoogvelt, "Globalisation, exclusion and the politics of resistance," *AntePodium*, 2 (1997), pp. 1~15.

39) M. Castells, *The Rise of Network Society* (Blackwell, Oxford, 1996), p. 472.

40) A. Hoogvelt, "Globalisation, exclusion and the politics of resistance," *AntePodium*, 2 (1997), pp. 1~15.

41) 이에 관해서는 M.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sation and*

화, 기술적 진보, 불개입적 국가,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복미적 가치의 지구화에 동조한다. 이와 같은 복미적 가치들은 공히, F. Fukuyama에 의해 ‘역사의 종말’로서 요약되고, 냉전의 결과인 사회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종국적 승리로서 찬미된다. 그 승리의 종국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마르크스주의적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지구적 가치와 관행의 담지자(擔持者)로서의 초국가적 자본가 계급의 출현을 강조한다.⁴²⁾ 즉,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자본은 잉여가치의 획득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운동의 의식적 담당자가 바로 자본가이다.

이 [자본]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der bewußte Träger)로서 화폐 소유자는 자본가로 된다. 그의 몸, 또는 정확히 말해 그의 주머니는 화폐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이러한 유통의 객관적 내용, 즉 가치의 증식은 그의 주관적 목적이 되고, 추상적 부를 점점 더 많이 취득하는 것이 그의 행동의 유일한 추진 동기로 되는 한, 그는 자본가로 즉 의지와 의식이 부여된 인격화된 자본으로 기능한다.⁴³⁾

자본은 가치를 증식시켜 잉여가치를 획득하려고 운동하는데, 이러한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를 ‘자본가(資本家, Kapitalist)’라고 한다. 자본가는 자본을 유통 과정에 투하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자본가의 최고 목표는 끊임없는 이윤 추구이다. 수전노와 자본가는 무한한 치부의 충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수전노가 화폐를 유통 과정에서 끌어내어 치부를 하는데 비해, 자본가는 화폐를 끊임없이 유통에 투입하여 치부를 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는 차이점을 보인다.⁴⁴⁾

3. 지구화에 관한 연성적 견해

- **연성적 견해 1, 국제화로서의 지구화** 지구화 테제에 대한 연성적 견해는 이른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를 지구화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⁴⁵⁾ 그들은 시장과 부상하는 초국적 협치의 양상을 찬미하는 전 지구적 각축장에서 국가는 여전히 중심적 행위자의 지

Modernity (Sage, London, 1990) 참조.

42) 이에 관해서는 L. Sklair, *Sociology of the Global System* (Harvester Press, Brighton, 1991); H. Holman and K. Van der Pijl, “The capitalist class in the European Union” in G. A. Kourvetaris and A. Moschonas (Eds), *The Impact of European Integration* (Praeger, Westport, CN, 1996), pp. 55~74 참조.

43)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1(상): 정치경제학비판 (제2개정판)』 (서울: 비봉출판사, 2001), p. 197.

44) 손철성,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마르크스 <자본론>』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p. 144.

45) 이에 관해서는 P. Hirst and G. Thompson, *Globalization in Question* (Polity Press, Cambridge, 1995); M. Mann, “Has globalization ended the rise and rise of the nation-stat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3) (1997), pp. 472~496; L. Weiss, *The Mith of the Powerless State* (Polity Press, Oxford, 1998) 참조.

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의 지구적 경제 통합이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양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현행하는 지구화의 참신성에 의문을 표한다.⁴⁶⁾ 개별 분과 학문의 신제도주의자들은 정치적 구조에 기하여 시장의 추상성에 도전한다. 그리고 국가적 구조 틀을 토대로 삼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규모를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지역주의에 의하여 그 주장의 강도는 고조된다.⁴⁷⁾ 여기에서, 영토적 경계는 혁신적인 국가체계, 혹은 국가와 대규모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들이 주입된 특정 자본주의의 구분기호(區分記號, delimiter)로서 출현한다. 명백하게도, 이와 같은 접근은 경계를 지구적 생산과 시장에 대한 규제 장치로서 인지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 투자 및 투기의 장(場)이라는 가상의 지구적 시장은 영토 간 경제와 횡경계적 연결의 장이라는 실재하는 세계에 비하여 주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 **연성적 견해 2, 국가적 영토성의 적응** 지구화에 대한 연성적 견해는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새로운 대규모 지역 경계의 발달 사례인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지대 및 보다 이완된 결사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메르코수르 [Mercado Común del Sur(Southern Common Market)] 등에서 국가적 영토성의 적응성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지역 블록의 출현은 실재하는 영토 기반 경제로서의 경제 통합이 상대적으로 북미, 서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등으로 특화되는 지리적 공간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⁴⁸⁾ 아마도, 이와 같은 실재하는 영토 기반 경제들은 진정한 지구화를 향한 경로에서 징검다리가 아닌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A. Hoogvelt⁴⁹⁾는 심지어 세계 자본주의의 지리적 범주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의 지구적 경제로서의 역할이 위축되면서 실제로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갖는 장점이 무엇 이든지 간에, 비록 경제적 조건에 국한된 바이기는 하나, 그것들은 새롭고도 배타적인 영토적 경계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국가, 대규모 지역의 경계들은 광역적인 지구적 영향력들을 중재하고, 타협하며, 심지어는 저지하는 방법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 **연성적 견해 3, 경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1** 국가적 경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경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양상들 및 그 양상들이 상호 연계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규명한다. 따라서 경계 기반의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양상들이 상호 연계됨과 동시에 독자성은 유지되는 다차원적 지구화라는 구도(構圖) 하에서 구축(構築)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국가 간 체계의 구조에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권을 부여해 왔다. 작동하고 있는 현 지구적 경제에서 국가적 경계의 중요성이 하락하는 규모, 혹은 국가적 경계가 새로운 거대 지역주의의 경계에 의해 대체되는 규모가 중요한 논제로서 부상하는 경우

46) 이에 관해서는 P. Hirst and G. Thompson, *Globalization in Question* (Polity Press, Cambridge, 1995) 참조.

47) 이에 관해서는 R. Boyer and D. Drache (Eds), *States against Markets: The Limits of Globalization* (Routledge, London, 1996) 참조.

48) P. Hirst and G. Thompson, *Globalization in Question* (Polity Press, Cambridge, 1995), p. 68.

49) A. Hoogvelt, "Globalisation, exclusion and the politics of resistance," *AntePodium*, 2 (1997), pp. 1~15.

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국가 간 체계의 지구화는 경제적 발전 단계에 있어서 여전히 간과될 수 없으며, 정복, 식민주의적 팽창, 지리적 대결, 그리고 전쟁 등과 강한 연관 관계를 지닌다.

- **경성적 견해 4, 경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2** 만약 지구화 및 지구화와 국가적 경계 간 상호작용에 관한 논쟁들이 보다 광역적이고 다차원적인 지구화의 궤적 내에서 지속과 단절을 반복하는 역사적 시대 구분(historical periodization)과 괴리된다면, 스스로 그 적실성과 적확성을 상실할 것이다. 지구화에 대한 경성적 견해는 역사적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연성적 견해는 역사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현 지구적 변화의 참신성을 간과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구별되어 진행되는 지구화에 대한 분석은 각각 상이한 시대 구분을 산출한다. 그러나 국가적 경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상이한 역사 내에서 상이한 비중으로 전개되더라도, 이 요소들 간 관련성을 인지하는 데 강점을 지녀야 할 것이다.

V. 결론

- **서론** 서론에서는 제시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기하여 본론은 크게 일련의 상호 연관된 세 가지의 주제, 즉 ㉠ 경계(제2장), ㉡ 경계와 영토성(제3장), ㉢ 경계, 영토성 그리고 지구화(제4장)로 구성하였다.
- **본론 1, 제2장 경계** 우선, ‘제2장 경계’에서는 ㉠ 경계의 개념, ㉡ 경계의 성격, ㉢ 경계의 실상으로 구분하여 경계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 경계의 개념은 ㉠ 경계의 어의와 ㉡ border의 의미로 구별하여 규명되었다. ㉠ 경계의 어의에서는 본고에서 활용하는 경계라는 한자어가 영어의 용례에서 border와 동일시됨을 밝히고자 학술적으로 우리가 주로 접해야 하는 영어권의 용어들인 frontier, boundary, border 등을 구별하였다. ㉡ border의 의미에서는 border의 발원으로서의 16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의 의미를 규명하였고, border에 내포된 외부적, 내부적 양면성을 설명하였으며, border의 인접 개념들인 경계 지역(border region), 횡경 지역(cross-border region), 경계 변화(border change) 등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둘째, ㉡ 경계의 성격은 Border의 본성을 구분하여 규명하였는바, border의 본질적 특성을 물질성과 상징성의 이중성으로 규정한 후, 이와 같은 border의 이중성에 내재된 모순성의 양상을 ㉠ 통제와 허용의 모순, ㉢ 국민과 인민의 모순, ㉣ 결과와 과정의 모순, ㉤ 망각과 기원의 모순 등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 경계의 실상은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동향,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연구,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실상으로 구분하여 규명되었다. ㉠ 경계 및 경계 지역의 동향에서는 경계와 경계 지역에서 연출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의 다차원적 양상을 제시하였다. ㉡ 경계

및 경제 지역의 연구에서는 경계와 경제 지역 연구의 여섯 가지 대상과 네 가지 차원을 구별하였다. ㉔ 경계 및 경제 지역의 실상에서는 경계와 경제 지역의 상호 대립적인 정치적, 경제적 실상을 논하였다.

- **본론 2, 제3장 경계와 영토성** 다음으로, '제3장 경계와 영토성'에서는 ㉕ 영토성의 개념, ㉖ 영토성의 의미로 구분하여 경계와 영토성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㉕ 영토성의 개념은 '국가가 특정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당해 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대(對) 공간 전략'으로서 규명되었다. 둘째, ㉖ 영토성의 의미는 ㉗ 경계의 토대로서의 영토성, ㉘ 분열의 주체로서의 영토성, ㉙ 통제의 주체로서의 영토성, ㉚ 모순의 주체로서의 영토성, ㉛ 변화의 주체로서의 영토성으로 구분하여 규명되었다. ㉗ 경계의 토대로서의 영토성에서는 영토성은 근대적 주권을 보유한 영토적 국민 국가 내에서 구현되고, 국가적 경계 내에서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배타적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 체계에 그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필수적으로 경계를 생산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㉘ 분열의 주체로서의 영토성에서는 영토성은 특히 경계와 관련될 경우, 사회적 과정에 개입하여 독단적 분열과 파괴를 자행함을 규명하였다. ㉙ 통제의 주체로서의 영토성에서는 특히, 월경 통제에 의해 그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 비해 자본과 투자를 통제하는 자들은 결정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강조하였다. ㉚ 모순의 주체로서의 영토성에서는 '제2장 경계'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국가적 경계와 영토성은 모호성과 모순성을 내포함을 제시하였다. ㉛ 변화의 주체로서의 영토성에서는 이상과 같이 다양한 문제성을 지닌 영토성의 본질이 봉착하게 되는 지점은 다름 아닌 '변화'인바, 그 변화의 유무와 규모가 관건이 됨을 논하였다.

- **본론 3, 제4장 경계, 영토성 그리고 지구화** 마지막으로, '제4장 경계, 영토성 그리고 지구화'에서는 ㉜ 경계, 영토성, 지구화, ㉝ 지구화에 대한 경성적 견해, ㉞ 지구화에 대한 연성적 견해로 구분하여 경계, 영토성, 지구화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㉜ 경계, 영토성, 지구화는 ㉟ 지구화의 개념, ㊱ 지구화의 논의 양상으로 구분하여 규명되었다. ㉟ 지구화의 개념에서는 지구화는 그 자체에 압도적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결코 응집력을 갖춘 거대서사(master narrative)를 구성하지는 못하는 논쟁적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㊱ 지구화의 논의 양상에서는 지구화에 대한 설명은 경성(硬性)적 견해와 연성(軟性)적 견해로 양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㉝ 지구화에 대한 경성적 견해는 ㊲ 총체적 종말론으로서의 지구화, ㊳ 지구화된 인지적 세계로서의 지구화, ㊴ 자본주의적 소비지상주의의 확장으로서의 지구화로 구분하여 규명되었다. ㊲ 총체적 종말론으로서의 지구화에서는 경성적 견해의 극단적인 논의들은 영토성과 경계에 기한 국가 중심적 세계의 종말과 국민 국가의 종말, 이념의 종말, 그리고 심지어는 지리의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㊳ 지구화된 인지적 세계로서의 지구화에서는 물리적 인간이 거주하는 '영토화된 실재적 세계'와 인간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개발하는 '지구화된 인지적 세계'를 구별하였다. ㊴ 자본주의적 소비지상주의의 확장으로서의 지구화에서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영토적 경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초국적 기업들이 핵심 행위자로 간주되면서 자본주의적 소비지상주

의가 확장됨을 설명하였다. ㉔ 지구화에 대한 연성적 견해는 ㉑ 국제화로서의 지구화, ㉒ 국가적 영토성의 적응으로서의 지구화, ㉓ 경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구별하여 규명되었다. ㉑ 국제화로서의 지구화에서는 지구화 테제에 대한 연성적 견해는 이른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를 지구화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함을 강조하였다. ㉒ 국가적 영토성의 적응으로서의 지구화에서는 지구화에 대한 연성적 견해는 대규모 지역 블록의 출현을 들어 지구화에 대한 국가적 영토성의 적응을 강조함을 설명하였다. ㉓ 경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양상들로 세분화되어 있는 사례 중심의 경계 연구가 그 독자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시공간적으로 상호 융합될 것을 주문하였다.

참고문헌

- 손철성,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마르크스 <자본론>』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 전재성,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중첩, 복합의 거시이행,” 『국제정치논총』, 49(2) (2009).
-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I (상): 정치경제학비판 (제2개정판)』 (서울: 비봉출판사, 2001).

-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Regional Studies*, 33, Issue 7 (Routledge, London, 1999).
- A. Amin, “Placing globaliza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14(2) (1997).
- A. Giddens, *The Runaway World* (BBC, London, 1999).
- A. Hoogvelt, “Globalisation, exclusion and the politics of resistance,” *AntePodium*, 2 (1997).
- E. Altvater, “Theoretical deliberations in time and space in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Regional. Studies* 32 (1998).
-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Free Press, New York, 1991).
- G. A. Kourvetaris and A. Moschonas (Eds), *The Impact of European Integration* (Praeger, Westport, CN, 1996).
- J. Anderson and I. Shuttleworth, “Sectarian demography, territoriality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Northern Ireland,” *Political Geography*, 17(2) (1998).
- J. Anderson and J. Goodman, “Regions,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modernist reaction or postmodern adap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4) (1995).
- J. Anderson, C. Brook, and A. Cochrane (Eds), *A Global World?: Re-ordering Political Spac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8).
- J. Rupnik, “Europe’s new frontiers: remapping Europe,” *Dacdalus* 123(3) (1994).
- K. Ohmae, *The Borderless World* (Collins, London, 1990).
- K. Ohmae, *The End of the Nation State* (Free Press, London, 1990).
- L. O’Dowd and T. Wilson (Eds), *Borders, Nations and States* (Avebury, Aldershot, 1996).
- L. Sklair, *Sociology of the Global System* (Harvester Press, Brighton, 1991).
- L. Weiss,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 (Polity Press, Oxford, 1998).
- M. Baud and W. Van Schendel, “Towards a comparative history of borderlands,”

- Journal of World History*, 8(2) (1997).
- M.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Oxford, 1997).
- M. Castells, *The Rise of Network Society* (Blackwell, Oxford, 1996).
- M.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sation and Modernity* (Sage, London, 1990).
- M. Mann, "Has globalization ended the rise and rise of the nation-stat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4(3) (1997).
- N. Hansen, *The Border Economy: Regional Development in the Southwest*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Texas, 1981).
- P. Hirst and G. Thompson, *Globalization in Question* (Polity Press, Cambridge, 1995).
- P. Shalins, *Boundaries: The Making of France and Spain in the Pyrene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96).
- R. Bartlett and A. Mackay, *Medieval Frontier Societies* (Clarendon Press, Oxford, 1989).
- R. Boyer and D. Drache (Eds), *States against Markets: The Limits of Globalization* (Routledge, London, 1996).
- R. Miles and D. Thranhardt (Eds), *Migration and European Intergration* (Frances Printer, London, 1995).
- R. O'brien, *Global Financial Regulation: The End of Geography*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1992).
- R.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London, 1992).
- R. Sack,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6).
- T. Bunyan (Ed), *Statewatching the New Europe* (Statewatch/Unison, London, 1993).
- T. Forsberg, "Beyond sovereignty, within territoriality: mapping the sapce of late-modern (geo) politics," *Cooperation and Politics*, 31(4) (1996).
- T. M. Wilson and H. Donnan (Eds), *Border Identities: Nation and State at International Fronti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8).
- W. E. Connolly, "Democracy and territoriality," *Millenium, Winter*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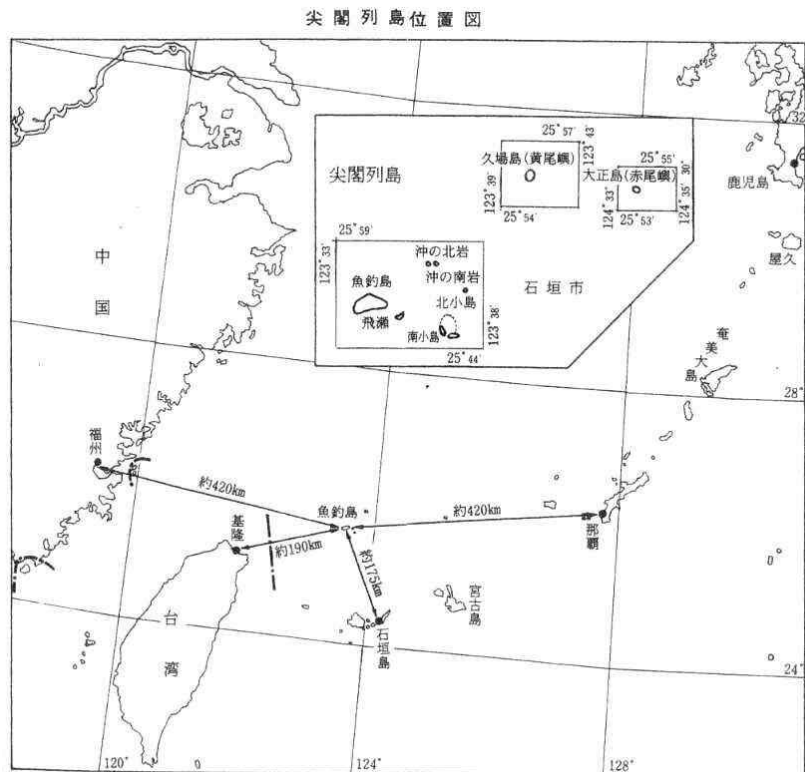
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 주변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¹⁾

진필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 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

센카쿠제도는 현재 무인도이며, 5개의 섬과 3개의 큰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센카쿠제도는 <지도 1>에서 보듯이 중국 본토, 대만, 일본 오키나와현의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与那国島)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중국어로는 다오위다오(釣魚島, diaoyudao)라고 흔히 불리며, 한국에서는 조어도(釣魚島)제도라는 명칭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시가키섬 주민들이 사용하는 명칭에 따라 이 섬들을 센카쿠제도라고 부르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중국어 명칭인 다오위다오를 사용하기로 한다²⁾.



<지도 1> 센카쿠제도의 지정학적 위치(출처: 일본국토지리원)

필요할 경우 중국어 명칭인 다오위다오를 사용하기로 한다²⁾. 센카쿠제도를 구성하는 5개 섬을 일본어로는 우오츠리시마(魚釣島), 쿠바지마(久場島), 타이쇼지마(大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라고 한다.

1) 본 발표문은 진필수, 「센카쿠(다오위타이)제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애국심과 지역활성화의 논리 -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 『비교민속학』제47집, pp.261-310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본 발표문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원문을 찾아서 확인한 후 인용해 주시기 바라며, 원문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용을 금합니다.
2) 일본의 과거 문헌에는 센카쿠열도(尖閣列島)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다오위타이(釣魚台, diaoyutai) 이외에, 다오위다오(釣魚島, diaoyudao), 다오위타이천다오(釣魚台群島, diaoyutaiqundao), 다오위타이리에다오(釣魚台列島, diaoyutailiedao) 등의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

II. 요나구니섬과 이시가키섬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와 국민들의 내셔널리즘적 대응 속에서 간과되어온 것은 국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인식의 문제이다. 센카쿠제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요나구니섬(与那国島)과 이시가키섬(石垣島)은 각각 160km와 17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대만과의 거리는 약 190km, 중국 및 오키나와 본섬과의 거리는 약 420km이다. 센카쿠제도 남쪽 이시가키섬에서 요나구니섬(대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섬) 사이에 동서로 펼쳐진 섬들을 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라고 한다. 야에야마제도는 일본 오키나와현 내에 야에야마군(八重山郡)이라는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야에야마제도는 과거 류큐왕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근현대에 들어서도 오키나와의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아 왔다.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는 일본의 각종 제도에 통합되어 왔다. 야에야마제도는 지리적으로 일본 본토보다 중국 본토에 더 근접해 있지만, 중국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야에야마제도 주민들의 생활세계에서 중요성을 가져왔던 것은 대만이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야에야마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대만과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활발한 문물 교류를 전개하였다³⁾.

국경의 설정으로 인해 지금은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쇠퇴했지만, 센카쿠제도와 그 해역을 생활권으로 공유해온 것은 대만과 야에야마제도의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센카쿠제도 근해에서 중국 어민들의 조업이 급증하여 영해침범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대만 어민들의 조업은 오래 전부터 관행화되어 있던 것이다. 센카쿠제도 해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느슨했던 시기에는 대만과 야에야마제도의 어민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또는 바다 위의 국경을 인식하지 않은 채 조업했던 사실이 이야기되고 있다⁴⁾.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분쟁은 영해침범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시키고, 바다 위에 국경선을 긋고 장벽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필자는 2011년 1월 요나구니섬과 이시가키섬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요나구니섬에서는 자위대기지를 유치하려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거리의 현수막을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 도로 주변 곳곳에는 “요나구니로의 자위대 유치는 우리들의 소원입니다”라든지 “자위대기지 유치 결사반대”와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히가와(比川)라는 마을의 도로 주변에는 서로 상반된 주장의 현수막이 불과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함께 걸려 있었다(<사진 1>, <사진 2> 참조).

3) 安溪遊地, 「八重山から見える世界: 台湾との人的交流についての口頭伝承」, 『동아시아의 국경 문제와 주민들의 삶』(유구·오키나와학회, 2011); 松田良孝, 『八重山の台湾人』(南山舎, 2004).

4) 緑間栄, 『尖閣列島』(ひるぎ社, 1984), pp.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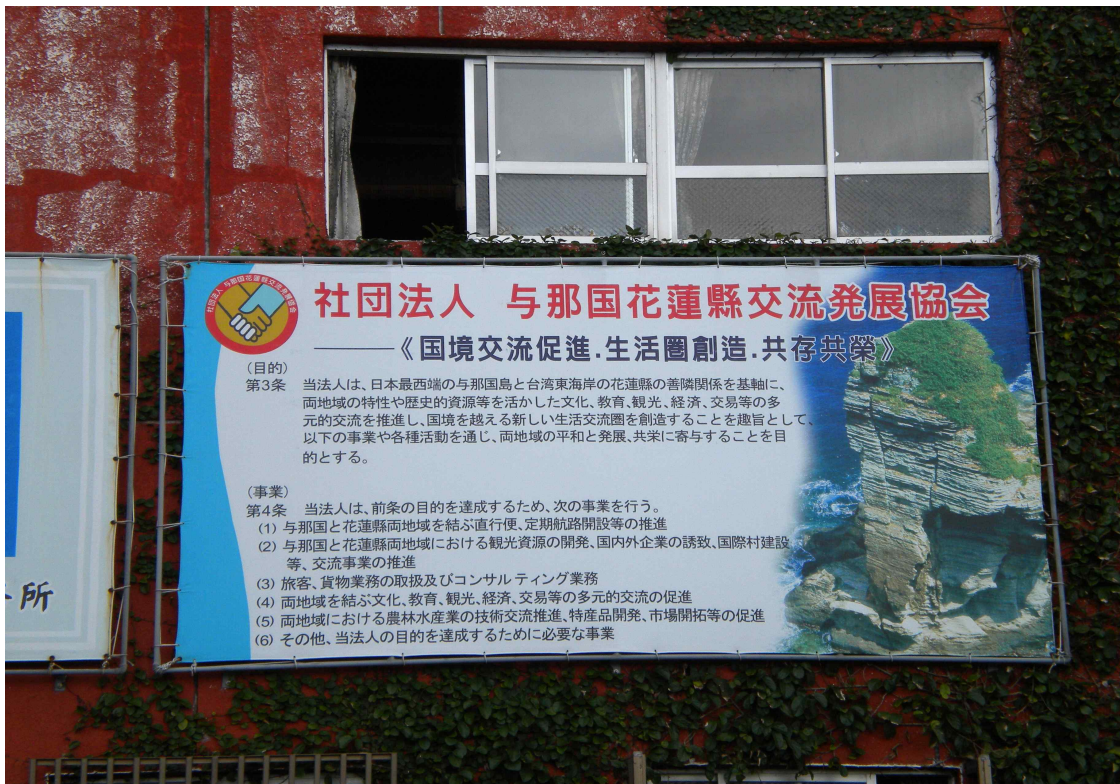
<사진 1> 자위대 기지 유치과 주민들의 현수막



<사진 2> 자위대기지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

요나구니섬의 자위대 유치는 2008년 9월 요나구니방위협회(与那国防衛協会)라는 단체가 인구격감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514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자위대 유치안을 요나구니정(町, 정은 기초지자체 단위) 의회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요나구니 정장은 남서제도(南西諸島) 방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위대를 배치하려는 일본정부와 적극적인 교섭을 벌이고 있다. 반대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요나구니개혁협회(与那国改革協会)는 찬성파를 상회하는 수의 주민서명을 확보하였으며, “유사시 적의 공격목표가 된다”, “섬 주민들이 분열된다”, “경제효과의 공평한 분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치결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⁵⁾.

요나구니섬 중심가를 약간 벗어난 곳에는 요나구니화련현 교류발전협회(与那国花蓮縣交流發展協會)의 사무실이 있다(<사진 3>, <사진 4> 참조). 1982년 요나구니정과 대만 화련현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2012년으로 30주년을 맞이하였다. 호카마 슈키치(外間守吉) 요나구니 정장은 그동안 화련현과 교류가 부진했던 이유를 1,600명으로 인구가 격감한 요나구니섬과 11-12만 명의 인구를 가진 화련현의 인구 규모 차이에서 찾고 있다. 2009년경 요나구니쵸는 약 5천만 엔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련현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⁶⁾.



<사진 3> 요나구니화련현 교류발전협회의 사업홍보 간판

5) 八重山毎日新聞, 2011년 7월 16일자, <http://www.y-mainichi.co.jp/news/18718/> 참조.

6) 八重山毎日新聞, 2012년 1월 1일자, <http://www.y-mainichi.co.jp/news/19065/> 참조.



<사진 4> 요나구니화련현 교류발전협회의 사무실 건물

요나구니섬 중심가가 있는 소나이(祖内) 마을 해변에는 요나구니 민속자료관(与那国民俗資料館)이 있다. 자료관의 이케마 나에(池間苗) 씨는 필자에게 1시간 넘게 자료관의 전시물과 요나구니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1919년생인 이케마 씨는 대만과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1930-40년대가 요나구니섬의 전성기였다고 술회했다. 이 시기에는 섬의 인구가 5천 명에 육박했으며, 대만을 왕래하는 사람들로 항구와 시가지가 북적거릴 정도였다고 한다. 미군정 시기였던 1950-60년대까지 섬 주민들의 불법적인 대만 왕래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었으며, 자료관에는 과거 대만에서 유입된 생활용품이 다수 보관되어 있었다. 이케마 씨는 1940년대 민속자료관 주변의 풍경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번영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지금도 내방객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사진 5> 1940년대 요나구니섬의 사진 풍경

이시가키섬은 야에야마제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섬이며, 행정구역인 이시가키시(石垣市)는 이시가키섬과 인근 무인도, 그리고 센카쿠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시가키시의 2010년말 현재 인구는 48,723명이고, 1972년 일본복귀 연도에 34,679명이었던 인구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시가키섬은 아열대 기후의 리조트 관광지로 일본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2010년 관광객수는 721,812명으로 추산되었다⁷⁾. 2009년도 이시가키시 시민의 1인당소득은 2,016,000엔으로⁸⁾, 오키나와현 평균 2,045,000엔을 약간 밑돌고 있으며 일본전국 평균 2,791,000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농업 작물에서는 사탕수수의 중요성이 크고, 축산업에서는 ‘이시가키소(石垣牛)’가 브랜드화 되어 일본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어업종사자는 321명이며, 2009년 어획량은 850톤이었는데 수산물의 종류는 카츠오, 마구로 등의 어류, 조개류, 해초류, 문어류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이시가키섬 어항에서의 수산물 판매고는 723,375,000엔(1,247톤)으로 1999년 2,148,687,000엔(1,791톤)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어류의 판매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이시가키섬 4개 어항에 등록된 어선의 수는 434척(총 1,008톤)이며, 이 중 3톤 이하의 어선이 342척이다. 어업 형태 및 기술에서는 연안어업과 낚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⁹⁾.

센카쿠분쟁은 이시가키섬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시가키섬 주민들의 대응 전략은 요나구니섬 주민들의 그것과 유사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시가키섬은 센카쿠제도를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지역 내부의 정치 역학이 더 복잡하다. 그리고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외부세계에 대한 네트워크도 더 넓고 직접적이다.

7) 石垣市企画部企画政策課(編),「統計いしがき:平成22年版」,7쪽,89쪽.

8) 沖縄県統計課,「平成21年度沖縄市町村民所得」.

9) 石垣市企画部企画政策課(編),「統計いしがき:平成22年版」,17쪽,31쪽,35-38쪽.

Ⅲ. 국경의 섬에서 나타나는 영토분쟁과 내셔널리즘

2010년 9월 7일, 동중국해 센카쿠제도(尖閣諸島) 근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트롤 어선이 두 차례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선원들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선장 및 선원들을 구속하여 일본 국내법에 의한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중국정부는 복수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선장 및 선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을 요구하였다. 일본정부와 관할 재판소(나하 지방재판소)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굴복하여 선원과 선박을 귀환시켰으며, 9월 24일 선장을 석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외교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11월 4일에는 일본의 인터넷상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영상이 유출되어 양국 국민들의 적대감이 극도에 달하기도 했다¹⁰⁾.

이 사건에서 필자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가 간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일종의 애국심이 급격히 고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애국심은 자국의 영토주권과 국익의 침해를 우려하는 마음으로서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애국심의 정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토분쟁으로 고양되는 애국심은 국익과 개인의 이익을 연결시키는 사고이긴 하지만,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내부적 협력과 결속을 추구하는 종류의 국민의식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통해 자국에 대한 소속감을 확인하는 종류의 국민의식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종류의 애국심은 영토분쟁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교적 합의나 교류 및 협력보다는 군사적 조치를 통해 영토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센카쿠 분쟁 이후 동중국해에서 중일 양국의 군사활동 확대와 군비증강 움직임이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¹¹⁾. 영토분쟁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당해 분쟁 지역의 군사화를 유발하거나 국가의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는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사실 외부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 결속의 동기를 찾는 애국심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는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어 왔으며,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상대방의 영토를 수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체가 여전히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10년 3월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국경에서의 군사적 분쟁과 주변국에 대한 적대감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이 심화되어온 악순환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예이다¹²⁾. 또한 독도 분쟁을 통해

10) 이 사건의 세부적 실상, 중일 양국정부의 외교적 외도와 문제점, 양국 국민들의 반일·반중 감정의 분출 양상에 대해서는 일본의 시사잡지 『世界』, 2010년 12월호, pp99-154를 참조할 만하다.

11) G. McCormack, "Small Islands - Big Problem: Senkaku-Diaoyu and the Weight of History and Geography in China-Japan Relations"(*The Asia-Pacific Journal*, vol. 9, Issue 1 No 1, January 3, 2011).

12) T. Beal, "Korean Brinkmanship, American Provocation, and the Road to War: the manufacturing of a crisis"(*The Asia-Pacific Journal*, vol. 8, Issue 51 No 1, December 20, 2010); J. McGlynn, "Politics in Command: Th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쌓아 왔으며,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군사적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사적 대치나 주변국에 대한 관계성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사방이 막혀 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필요성과 과거의 아시아 문명 중심지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지만, 포괄적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다. 또한 남쪽의 해양으로 이어진 오키나와, 동남아시아, 태평양제도에 관해 한국인들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인들에게 유일한 우방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미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영토분쟁, 대결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고양, 군사화(militarization)라는 악순환의 틀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센카쿠분쟁의 경우에는 센카쿠제도 인근 섬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영토분쟁이 벌어질 때 당해 국경의 섬 주민들의 상황과 입장은 무엇인가? 국경의 섬 주민들은 영토분쟁으로 인해 고양되는 국가 및 국민들의 내셔널리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그동안 국경이나 경계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집단, 부족, 소수민족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국가의 내셔널리즘과 동떨어져 있거나 그것에 의해 피해를 입는 독자적인 생활세계의 모습들을 보고해 왔다¹³⁾. 근대국가의 영토 및 영해 개념은 그 경계가 그어지기 이전부터 국경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지역적 교류의 네트워크와 그 속에서 영위되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내셔널리즘이나 어떤 종류의 애국심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현대 사회에서 영토 분쟁과 내셔널리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¹⁴⁾은 지나친 데가 있다. 국경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국경을 설정하고 영토를 관리하려는 국가의 힘을 과소평가하거나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되는 국경지역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영토분쟁의 소지가 있는 국경 지역에 대해 각국의 정부가 자국의 역사 및 문화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다¹⁵⁾.

문제는 국경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지역사와 지역문화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자국에 대한 애국심과 주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관계성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 본고의 주요한 논의 내용이다. 국경지역 주민들의 상황과 인식에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Risk of a New Korean War"(The Asia-Pacific Journal, 24-1-10, June 14, 2010).

13) 예를 들어,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부족들에게는 영토(territory)나 소유권(property)의 개념 자체가 근대국가의 그것들과 달랐다. 국경의 설정과 국가체제로의 통합은 이들에게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E. Leacock and R.B. Lee(eds.), *Politics and History in Band Societies*(Cambridge Univ. Press, 1982).

14) 岩下明裕, 「国境の民はナショナリズムを信じない」, 『동아시아의 국경 문제와 주민들의 삶』(유구·오키나와학회, 2011).

15) 小熊英二, 『<日本人>の境界』(新躍社, 1998); テッサモーリス鈴木(大川正彦訳), 『辺境から眺める: アイヌが経験する近代』(みずず書房, 2000).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고구려역사 인식도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논의는 영토분쟁에 대한 내셔널리즘적 접근 방식의 굴레를 벗겨내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본고는 센카쿠제도 인근 요나구니섬(与那国島)과 이시가키섬(石垣島)의 사례를 통해 영토분쟁이 국경의 섬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시가키시 의회 의사록을 입수하여 센카쿠제도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필자는 2010년 7월 18일과 2011년 1월 22-23일, 2회에 걸쳐 이시가키섬을 방문하여 센카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사록은 이시가키시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하였다.

IV. 과거 영토분쟁의 경위 및 논리

센카쿠제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에 관한 문제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다중적 해석을 함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 분쟁이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대만도 1971년 이후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¹⁶⁾. 또한 1879년까지 독자적 왕국을 이루고 있던 오키나와 지역은 현재 일본에 속해 있지만, 센카쿠 문제에 대해 독특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키나와 지역은 중국과 대만에 대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오랜 피차별 경험, 오키나와전의 참혹한 피해,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일본의 국가권력과 내셔널리즘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서 있다. 1945-72년까지 오키나와 지역은 미군정이 통치를 했으며, 센카쿠제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도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위원회(ECAFE)의 동중국해 해저자원 조사에 의해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이 확인된 이후부터이다. 일본, 대만, 중국, 미국, 한국 등의 국가들이 센카쿠제도 해역 및 동중국해의 해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던 가운데, 1971년 2월 대만정부 당국은 다오위타오 영유권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대만의 주장은 세 가지로 그 요점이 정리된 바 있다¹⁷⁾.

첫째, 다오위타이에 대한 대만의 영토주권은 역사, 지리, 이용 관행, 국제법상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명백한 것이다. 둘째, 다오위타이는 지리적 위치, 지질구조, 역사적 연계, 대만주민들의 계속적 사용의 사실로 미루어볼 때 대만 대륙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만 영토이다. 셋째,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포츠담 선언에 따라, 리우치우(琉球: 일본어 발음으로는 류큐이며, 일본에서는 오키나와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군도의 최종적 지위는 주요동맹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리우치우군도의 일본 반환은 수용할 수 없다¹⁸⁾.

16) 許介麟, 「台湾の立場から釣魚台-尖閣諸島の問題を見る」, 『동아시아의 국경 문제와 주민들의 삶』 (유구·오키나와학회, 2011), pp.23-45.

17) 浦野起央, 『尖閣諸島、琉球、中国』(三和書籍, 2005), pp.28-34.

18) 류큐(리우치우)군도, 즉 오키나와(沖縄)는 1972년 5월 15일 일본으로 복귀하였으며, 1971년 당시

다오위다오 영유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1971년 12월 유엔 해양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표명되었다. 중국정부 역시 리우치우의 일본반환에 반대하였으며, 당시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다오위다오는 중국이 처음으로 발견하여 중국의 판도 내에 편입하였다. 둘째, 다오위다오가 무인도였다고 해서 무주지(無主地)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선점(先占)의 원칙에 의해 점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셋째, 류큐 책봉사의 기록으로부터 다오위다오와 중국의 역사적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 넷째, 1556년 명나라 조정은 다오위다오를 중국 복건성 해상방위구역(海防區域)으로 편입시킨 적이 있다. 다섯째, 1893년 서태후(西太后)는 이 지역을 성선회(盛宣懷)에게 하사한 적이 있다. 여섯째, 다오위다오는 지질구조상 대만의 부속도서이다. 일곱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과 그 부속도서가 일본에 할양되었기 때문에, 다오위다오군도 역시 대만과 그 부속도서의 범위로서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센카쿠제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1972년 3월 국회에서 외무성 견해를 통해 처음으로 표명되었다. 일본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²⁰⁾. 첫째, 센카쿠제도는 선점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일본 영토, 즉 남서제도(南西諸島)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둘째,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센카쿠제도는 남서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다. 셋째, 1972년 이 지역은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해 일본의 시정권 하에 복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몇 가지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1879년 메이지 정부는 류큐번(琉球藩)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하였다. 1885년 이후 메이지 정부는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센카쿠제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나라의 지배력이 센카쿠제도에까지 이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메이지 정부는 1895년 1월 14일 각의결정으로 센카쿠제도를 오키나와현 관할 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센카쿠제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된 직후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八重山郡)의 일부가 되었으며, 국유지가 되었다. 1884년부터 센카쿠제도의 개척과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시도하던 코가 타츠시로(古賀辰四郎)는 1896년 9월 메이지 정부로부터 우오츠리시마, 쿠바지마, 미나미코지마, 기타코지마의 4개 섬에 대해 30년 동안 무상임차를 허가받았다. 코가 씨는 우오츠리시마에 마을을 건설하고 이주 노동자를 모집하여 카츠오 어업과 새털 및 광석 채취 사업을 전개하였다. 1932년 4개 섬은 코가 씨의 아들인 젠지(善次) 씨에게 불하되어 사유지가 되었으며²¹⁾, 1940년 전쟁 격화로 거주자들은 4개 섬에서 모두 철수하였다²²⁾.

미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의 오키나와 반환교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대만정부가 류큐군도의 일본반환을 문제시했던 이유는 센카쿠제도가 미군정에 의해 류큐군도의 일부로 간주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류큐군도(오키나와 지역) 주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 왔던 점과 미군정이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의사가 없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못했던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즉 류큐군도가 일본의 영토로 귀속될 경우 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되고 있던 것이었다.

19) 浦野起央, 앞의 책, pp.23-6.

20) 浦野起央, 앞의 책, pp.13-7.

21) 2012년 4월 16일, 당시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씨가 4개 섬에 대한 매수방침을 발표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4개 섬은 코가 젠지 씨의 사망 후 부인에 의해 소유되다가 지인

대만, 중국, 일본의 학자들은 대체로 자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지하면서 그에 대한 방증에 힘써 왔지만, 일본의 역사학자로서 센카쿠제도가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던 이 노우에 키요시(井上清)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²³⁾. 그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센카쿠제도는 명나라 시대부터 중국 영토로 알려져 있었으며, 청대의 기록이 중국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1785년 일본의 선각자가 센카쿠제도를 중국 영토로 명기한 사실조차 있기 때문에²⁴⁾ 1890년대 메이지 정부의 무주지 선점이라는 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류큐의 독점을 확정하고, 센카쿠제도를 훔쳤으며, 대만을 공공연히 강탈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센카쿠제도 영유권 주장과 선점의 법리는 제국주의의 발로이며,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이노우에의 견해는 일본 및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인식에서 중요한 논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청일전쟁 직후 일본제국주의가 발흥하던 상황에서 1895년 1월 메이지 정부의 무주지 선점 선언이 중국과 대만에 대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음미될 필요가 있다. 그는 1872년 류큐처분을 통해 일본이 류큐를 강제로 병합한 사실의 불법성과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노우에는 센카쿠제도가 오키나와에 근접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오키나와(류큐)를 병합함으로써 센카쿠제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논리도 반박하였다. 그는 과거 류큐왕국의 판도 내에서 센카쿠제도가 거의 인지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과 센카쿠제도(尖閣諸島)의 명칭도 1900년 오키나와현의 한 교사에 의해 붙여진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1945-72년 오키나와를 통치하던 미군정에 의해 센카쿠제도는 암묵적으로 오키나와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이노우에는 이러한 미국의 인식이 일본정부에 승계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오키나와 지배의 부활, 센카쿠제도 재약탈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노우에의 연구 성과와 견해는 대만과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에 폭넓게 반영되었으며, 일본 내에서는 소수입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대한 오키나와쪽의 공식입장은 1970년 8월 당시 류큐 정부 입법원의 결의 형태로 처음 표명되었다. 이 결의 내용은 1972년 3월 일본외무성이 발표한 공식입장(상기한 내용 참조)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일본정부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으며, 당시 류큐정부를 통제하고 있던 미군정에 의해서도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오키나와쪽의 공식입장은 거의 표명된 적이 없었다. 오키나와현 의회가 2010년 9월 28일 중국 어선충돌사건에 대한 항의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을 지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에게 매각되었다고 한다. 센카쿠제도의 소유자는 오랫동안 일본정부나 도쿄도의 매수 제의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도쿄도의 센카쿠제도 구입 계획에 대해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정부는 2012년 9월 소유자와 교섭하여 우오츠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키타코지마(北小島) 세 섬을 20억 5천만엔에 매수하였다.

22) 浦野起央, 앞의 책, pp.136-7; 国吉まこも, 「沖縄近代漁業史から見た尖閣諸島」(沖縄大学地域研究所, 2011.6.18).

23) 井上清, 『尖閣諸島: 釣魚諸島の史的解明』(第三書館, 1996).

24) 井上清, 앞의 책, pp.42-9.

필자는 이번 연구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진행하면서 오키나와의 학계와 언론에서는 그동안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의 주요한 정치적 담론은 후텐마기지 반환문제로 집약되는 미군기지 반환문제²⁶⁾, 오키나와전의 경험에 기초한 반전평화주의의 계승, 일본 내 오키나와인의 피차별 문제와 정치경제적 자율성 확보 등에 집중되어 왔다. 센카쿠제도 영유권에 관한 논의는 영토 방어를 위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서²⁷⁾ 오키나와의 반기지·반전평화주의 담론과 조화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72년 이후 일본국가로의 재통합 과정에 있는 오키나와인들이 정치경제적 자율성 확보나 과격한 경우에는 자치 및 독립을 주장해 왔다는 사실은 오키나와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완전한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센카쿠제도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미국은 1945-72년 오키나와 통치 기간 중 센카쿠제도의 쿠바지마와 타이쇼지마에 사격훈련장을 설치하여 1979년까지 미군 훈련 및 연습에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키나와에 대한 영구적 주권 획득을 의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²⁸⁾, 센카쿠제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관심도 미약했다. 미국은 중국, 일본, 대만 사이의 센카쿠제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불개입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72년 센카쿠제도를 통치구역으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실과 1972년 이후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적용을 통해 센카쿠제도를 미국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²⁹⁾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어 왔다.

1960년대 후반 동중국해와 센카쿠제도 근해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은 주변 국가 및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중국, 대만, 일본의 소위 애국단체 및 인사들, 그리고 각종 선박에 의한 센카쿠 해역 침범 사건과 상륙사건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 일본의 정부들 간에는 적절한 타협과 묵인으로 센카쿠 영유권 문제가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지 않다. 중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센카쿠제도 영유

25) 오키나와현 의회가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을 인용하여 중국정부에 대한 항의결의안은 채택한 것은 2008년 12월 중국 해양조사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항의결의안이 처음이라는 지적이 있다. <http://senkakujapan.jugem.jp/?eid=77> 참조.

26) 진필수, 「하토야마 내각에 있어 후텐마기지의 반환문제와 미일안보체제의 재인식 -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 『사회와 역사』 제92집(한국사회사학회, 2011).

27) G. McCormack, 앞의 논문.

28) 점령 초기부터 미군정은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의 잠재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宮里政玄, 『日米關係と沖縄: 1945-72』(岩波書店, 2000), pp41-70; 임성모, 「잠재주권과 재일의 딜레마 - 점령 초기 오키나와의 지위와 정체성」, 『한일민족문제연구』제10권(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29)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정부로부터 센카쿠제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2010년 9월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힐러리 클린턴(H. Clinton) 미국 외무성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종래 방침을 확인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그러나 향후 미일관계와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방침이 계속해서 유지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30) 1970-2005년까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浦野起央, 앞의 책, pp.164-222 참조.

권에 대한 명백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외교관계에서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를 공식화시켜 논의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2년 7월 중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주은래(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는 중일국교정상화의 대의를 실현해야 하는 마당에 센카쿠제도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일본 측도 이 의사를 수용했다. 1978년 10월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등소평(鄧小平) 당시 중국 부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문제에 대한 질문에 유명한 답변을 남겼다³¹⁾.

“센카쿠제도를 우리는 다편다오(釣魚島)라고 부르며, 이름부터 일본과는 다르다.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한 쌍방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국교정상화 때에 쌍방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번 평화우호조약 교섭에서도 쌍방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인들의 지혜로는 이 방법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중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외교 교섭에서는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잠시 선반 위에 올려놓아도 된다. 10년 동안 선반 위에 올려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다. 우리 세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풍부한 지혜를 가질 것이다. 그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센카쿠문제가 중일정부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해양조사선이나 군함이 센카쿠 및 오키나와 해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³²⁾,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의 영해침범에 대한 감시와 단속 활동도 강화되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과 대만의 어선 및 민간 선박의 영해 침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게 되었으며, 때로는 과도한 단속으로 중국과 대만의 어민으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³³⁾.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한 2010년 9월 중국어선 충돌사건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강화된 단속 활동과 이에 대한 중국 어민의 불만이 정면충돌한 것이었으며, 그 파장은 일본정부와 중국정부, 일본국민과 중국국민의 정면충돌로 파급되어 갔던 것이다.

V. 중국어선 충돌사건과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애국심

2010년 9월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둘러싼 중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대립이 중국어선 선장 및 선원들의 석방으로 종결되자, 이시가키시 의회는 2010년 9월 정례회(9월 28일)에서 세 가지의 의견서 및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첫째, 일본정부를 수신자로 하여 <센카쿠제도에 있어서의 중

31) 村田忠禧, 『尖閣諸島・釣魚島問題をどう見るか』(日本僑報社, 2004), pp.12-5.

32) 浦野起央, 앞의 책, pp.178-88.

33) 許介麟, 앞의 논문, pp.23-4.

국어선 영해침범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를 수신자로 하여 <센카쿠제도에 있어서의 중국어선 영해침범에 관한 항의결의>를 채택하였다. 셋째, 일본정부를 수신자로 하여 <중국어선충돌사건의 선장 석방에 대한 항의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의견서 및 결의안은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2010년 9월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나카야마 요시타카(中山義隆) 이시가키시장도 의회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공동 대응을 전개하였다. 나카야마 시장의 견해는 2010년 9월 정례회(10월 13일)에서 NH의원의 일반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카야마 시장은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사실에 대해, “중국어선의 영해침범과 불법조업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퇴거명령을 무시하면서 도주하다가 순시선에 충돌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일본정부가 공무집행방해 용의로 중국선장을 체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로서 국내법에 의한 체포는 당연한 것”이며, 나하지방재판소가 처분보류로 중국선장을 석방한 사실에 대해서는 “중국선장 석방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되어 중국 및 대만 어선들의 영해침범과 불법조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시가키시 의회는 이후 의견서 및 항의결의안을 일본정부와 중국정부에 발송하였다. 특히 2010년 10월 4-5일에는 시장 및 의원단이 도쿄를 방문하여 의견서 및 항의결의문을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본정부 부처의 대응은 냉담한 것이었다. 외무성과 방위성은 상경단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国家主權と国益を守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의 공동대표 하라구치 카즈히로(原口一博) 전총무성 장관의 주선으로 총무성 장관과의 면담만 성사되었다.

상경단 활동은 일부 전국언론에 보도되어 일본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가키시 의회의 의견서 및 결의안과 상경단의 활동은 일본 국회와 국민들 사이의 소위 애국세력이 공명할 만큼 애국적인 것이며, 센카쿠 영유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당국은 중국정부와의 대립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이러한 애국적 요구와 행동을 스스럼없이 수용하거나 공개적으로 환영할 수는 없다는 데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시가키시 의회의 요구와 행동에 담긴 애국심은 일본정부가 수용할 없을 만큼 과잉된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잉’애국심이란 용어는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영토분쟁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탈하여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익에 대한 반성적 판단이나 국가를 운명공동체로 느끼는 정서를 수반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야에야마 및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이시가키섬 주민들에게 일본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매우 생소한 감정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시가키시 의회가 보여주는 애국심은 일본정부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영토분쟁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일 수 있다.

VI. 과잉애국심과 지역활성화

이시가키시 의회 의사록에는 이시가키시 의원들의 애국심이 지역활성화의 논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소위 이시가키시에 의한 센카쿠제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논의이다. 2010년 10월 도쿄상경 활동을 마친 이후, 이시가키시 의원들은 일본정부를 대신한 실효적 지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NH의원은 시청 당국자에게 흥미로운 요구를 하였다. 그는 실효적 지배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센카쿠제도에서의 세계 마구로(참치) 낚시대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역활성화와 실효적 지배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으며, 근래 성황을 이루고 있는 요나구니섬의 국제 카지키(황새치) 낚시대회를 모방한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시청 당국자는 선박안전법 요건 충족과 정부 허가의 문제가 걸려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들은 어장 확보의 필요성, 관광을 비롯한 해양자원의 포괄적 이용, 정부보조금 확보 등의 측면에서 센카쿠제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시가키시 의회는 2010년 12월 정례회에서 ‘센카쿠제도 개척의 날(尖閣諸島開拓の日)’ 조례를 제정하여 큰 화제를 낳았다. 그 취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시는 1884년부터 1895년 1월 14일 각의결정이 있을 때까지, 센카쿠제도를 개척한 코가 타츠시로(古賀辰四郎) 및 그 친족의 위업을 기리고, 그 공적을 오랫동안 후세에 남기기 위해 일본정부가 국제법상의 법적 근거에 의해 1895년 1월 14일 센카쿠제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편입시키기로 각의결정한 1월 14일을 센카쿠제도 개척의 날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시가키시 의회는 센카쿠제도를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체로서, 이러한 조례 제정과 준수가 센카쿠제도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센카쿠제도 개척의 날(尖閣諸島開拓の日)’은 시마네현의 ‘타케시마(竹島; 한국어 명칭은 독도)의 날’을 모방한 것이며, 이시가키시는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내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VII. 과잉애국심과 군사화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애국심은 주민들의 안전의식과 관련시켜 이해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분쟁 피해의 위험을 느끼는 국경의 섬 주민들은 지역활성화 이전에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에 대한 의존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군사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무뎠을 가능성이 많다. 이시가키시 의회의 2010년 9월 정례회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논의가 있었다.

한 의원은 시장에게, 중국의 대규모 어선단이 센카쿠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수상한 선박(不審船)이 나타나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시장은 해상보안청의 통상적 경비 활동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방위성 장관의 명령에 의해 자위대의 치안유지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른 의원들은 시장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센카쿠제도에 대한 자위대의 통상적 경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상보안청이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방위성 장관의 지휘체계 아래에 있다면 센카쿠제도의 통상적 경

비 활동을 자위대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나구니정과 같이 이시가키시에도 자위대 기지를 배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센카쿠분쟁은 이시가키섬의 일본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급격히 확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시가키시 의회는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본정부에 군사적 방어를 요청하고, 군사활동을 이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센카쿠제도의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애국심은 국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라기보다 일본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얻어 지역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지역활성화의 논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군사화를 용인하게 만드는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결코 영토분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발생적 심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겠다.

VIII. 이시가키섬의 지역정치: 2010년 시정교체와 정치세력 간의 상이한 대응논리

2010년은 이시가키시의 지역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우선 시장의 교체가 있었다. 2010년 2월 28일 치러진 시장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추천의 무소속 나카야마 요시타카(中山義隆) 씨가 1994년 4월부터 16년간 시장으로 활동해온 사회민주당, 사회대중당, 공산당, 민주당 추천 무소속 오하마 나가테루(大浜長照) 씨를 누르고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오하마 씨는 야에야마 지역을 넘어 오키나와 전역에서 반전평화운동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시장 재직시절에는 평화행정(平和行政)의 시정방침을 줄곧 유지하였다.

2010년 9월 12일 치러진 시의회 의원선거에서는 34명이 입후보하여 정원 22명이 당선되었다. 현직 16명과 신인 6명이 당선되었으며, 시장의 시정노선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12명, 반대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10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시가키시 지역정치의 주도권은 일본식 표현으로 혁신세력의 손에서 보수세력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시가키시 의회 내에서 현재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과 소수파가 된 혁신세력 사이에는 다방면의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2010년 9월 세 가지의 의견서 및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소수 의견이 존재했었다. 소수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일관계의 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문보도를 인용하여 중일교류사업의 중지 및 연기가 이어지는 사태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고, 이시가키섬 관광업에 대한 타격을 걱정하는 의원도 있었다. 또한 분쟁으로 인해 조업에 지장을 받게 된 어업관계자의 동요, 불만, 반발을 전달하는 의원도 있었다. 비록 소규모의 지자체 의회지만,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에 의한 센카쿠제도 영토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IX. 상륙시찰안과 그 주도자의 입지변화

2010년 9월 정례회(10월 20일) 의사록에는 센카쿠제도 상륙시찰 결의안 토론이 기록되어

있다. 이 결의안이 등장한 배경에는 10월 4-5일 이시가키시 의회의 도쿄상경 활동에 대한 정부 부처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결의안은 센카쿠제도를 행정구역으로 포함하는 하고 있는 자치체로서 정부 대신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제안자인 NH의원은 결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영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이고, 후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센카쿠제도를 행정구역으로 맡고 있는 이시가키시 행정당국 및 의회가 센카쿠제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상황에 대한 파악, 악천후 시의 피난항구 정비를 위해 상륙시찰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이시가키시 시장 및 행정담당자와 의회가 일체가 되어 센카쿠제도에 상륙하여 시찰·조사할 것을 결의한다.”

NH의원은 1997년부터 이때까지 정부 당국의 허락 없이 총 14회 센카쿠제도에 상륙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994년부터 5기에 걸쳐 시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NH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행정구역 내의 상태를 시찰하고 관리 및 이용의 대책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상륙시찰을 허락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있으며, 센카쿠제도의 상륙 기록과 사진 자료를 책으로 출간하거나 자신의 상륙 행동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최근에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시가키시 의회에서 NH의원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센카쿠제도의 상륙시찰이 전원일치 결의안의 합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9년 이전의 과거 의사록을 검토해 보면, 2003년 9월까지만 해도 NH의원의 상륙시찰 주장은 의회 내에서 소수 의견으로 머물러 있었다. 오하마 나가테루 전시장의 평화주의 시정방침 하에서 이 주장은 시행정 당국과 의회 모두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04년 11월 9-10일, 중국 원자력잠수함이 사키시마(先島) 해역을 통과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 직후 이시가키시 의회에서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의회의 다수 의견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9년까지 오하마 전시장의 평화행정 방침 하에서는 중국의 영해침범과 대만 어선의 센카쿠제도 영해침범에 대해 이시가키시 의회는 평화주의적 해결이 주요한 정책 기조를 이루었다.

2005년 3월 정례회를 전후한 시기에 오하마 전시장이 센카쿠제도의 상륙시찰에 대한 협력을 정부 및 해상보안청에 요청한 사실이 전국적 화제가 되었다. 오하마 전시장이 이시가키시 의회에서도 상륙시찰 의사와 당위성을 피력하게 되자, 이전부터 센카쿠제도의 상륙시찰을 주장하던 NH의원의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까지 이시가키시 시장과 의회는 일본정부의 불허 방침을 확인하는 선에서 상륙시찰 의사를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시가키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어 정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센카쿠제도 상륙시찰 결의안은 2005년 6월에도 통과된 적이 있으며, 2010년 10월 결의가 두 번째이다. 2005년 결의는 10대 9의 다수결로 통과되었으며, 당시에 NH의원을 비롯한 보수세력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2004년 11월 중국 원자력잠수함의 영해침범 여파로, 2005년 이시가키시 의회에서는 보수세력 의원들이 센카쿠제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붐을 이루었다. 상륙시찰, 센카쿠의 날 제정, 개척기념비 건립, 동중국해 매장 자원 개발을 위한 거점지정 요청, 센카쿠유람 관광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처음 제안되었지만,

혁신세력 의원들의 신중론이 우세하여 실행에 옮겨지거나 결의안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2010년 9월 이후 ‘센카쿠제도 개척의 날’ 제정과 센카쿠제도 상륙시찰 결의안 통과는 중국 어선 충돌사건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이시가키시 내부 지역정치 구도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시가키시 내부의 지역정치에서는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의 견해차 및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센카쿠분쟁의 영향은 지역정치에서 보수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변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관계성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 센카쿠분쟁은 일본국가에 대한 이시가키섬의 의존성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오키나와, 대만, 중국에 대한 관계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X. 이시가키섬과 오키나와: 반기지·반전·평화주의

이시가키섬의 지역정치에서 오키나와의 영향은 반기지, 반전, 평화주의의 압력으로 나타난다. 오키나와 반전평화운동의 거물급 인사였던 오하마 전시장 시절에는 오키나와 중심부의 반기지, 반전, 평화주의를 옮겨온 듯한 이념적 노선과 정책이 이시가키시의 지역정치를 주도했다. 그러나 2010년 4월 나카야마 시장이 출범한 이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0년 12월 정례회에서는 후텐마기지 반환문제³⁴⁾에 대한 나카야마 시장의 입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정례회 일반질문 시간에 OT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시장께서는 한 언론사의 앙케트 조사에서 후텐마비행장의 현내이전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 시장은 미일정부 합의대로의 해노코이전, 현외·국외이전, 그리고 그 외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시가키섬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쩔 수 없는’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앙케트 조사에 대한 나의 입장을 말하겠다. 우선 오키나와현 내에서 기지가 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물론 환영할 일이고 더구나 미군기지가 없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환영할 일이다. 단지 미일안전보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논의를 거친 후에 미군기지 반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중략) 정부로부터 미군기지나 훈련의 수용을 요청받았을 경우, 나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텐마기지의 이전에 관해서도 어떠한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시가키시에는 이미 미군기지가 있다. 센카쿠제도의 타이쇼지마와 쿠바지마에 미군 사격장과 폭격장이 설정되어 있다³⁵⁾.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응해 가겠다.”

34) 진필수, 앞의 논문.

35) 2001년 3월과 6월 의사록에는 이시가키시가 오키나와현 내의 19개 기지소재 시정촌(市町村)에 포함되어 당시의 시마다 간담회(島田懇談會)로부터 5억 3,000만엔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오하마 시장은 ‘기지 없는 이시가키시’라는 말을 썼다가 센카쿠제도에 있는 미군기지를 생각지 못한 착오였다고 인정하고, ‘기지 없는 이시가키섬’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1972년 6월 쿠바지마의 코비쇼사격장(黃尾嶼射擊場)과 타이쇼지마의 아키비쇼사격장(赤尾嶼射擊場)이 신규제공 및 공동사용으로 고시되었으나, 1979년 이후 미군 연습이 행해지지 않는 관계로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 대한 어업보상금은 지불되지 않고 있다.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가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나카야마 시장은 오키나와 현 내에서 후텐마기지의 헤노코이설에 찬성한 유일한 자치단체장이었다. ‘기지 없는 이시가키섬’을 정책 방침으로 내세웠던 오키나와 전시장과는 크게 대비되는 입장이며, 기지 유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태도는 의회에서 여러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12월 당시 나카야마 시장이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은밀하게 만나 음성적으로 자위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오키나와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혁신세력 의원들로부터 그 진위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이시가키시에서 오키나와의 반기지, 반전, 평화주의 담론은 혁신세력 의원들에 의해 시장과 보수세력의 기지유치 논리를 견제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시가키시에서 평화주의는 시장의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시정방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2010년 12월 정례회에서 국민보호법³⁶⁾ 조례안 심의과정의 기록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 심의 중 연배가 높은 한 의원이 시청 당국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국민보호법은 전쟁이나 군사적 공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 오키나와전(沖繩戰)에서 피해를 당한 선배들의 경험이 생각나서 심의를 하고 싶지가 않다. 왜 우리들이 또 전쟁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시청 총무부장은 오키나와전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평화주의 시정노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후, 유사시 시민들의 안전 확보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시장은 선거 공약과 시정방침에서 유엔의 <관광은 평화를 향한 패스포트>라는 구호를 인용해서 <관광도시 이시가키>, <평화도시 이시가키>의 슬로건을 제시했다. 나는 우리 시의 관광 발전과 교류 증진을 통해 세계평화에 공헌하겠다는 시장의 포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감동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의 언행을 보면, 평화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정신이나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안 그래도 센카쿠 문제로 어수선한 마당에 ‘유사시의 상황(有事)에 대비해야 한다’, ‘무력공격의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국민보호법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말들을 하면서 왜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군대로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으로부터 어떻게 외부세계를 향해 아시아를 향해 인재를 보내어 교류를 증진시킬 것인가. 이것이 과거 오키나와, 류큐왕국의 무역시대부터 우리들이 걸어온 평화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장이 바뀐 후 시민들에게 너무나 불안감을 안겨다 주고 있다. 평화행정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관광은 평화를 향한 패스포트>라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다. 유사시의 상황과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중략) 방금 교류와 관련하여 오키나와 이야기를 하셨다. 아시다시피 당시 오키나와는 무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사츠마에 침공당해서 굴복했다. 그 부분의 역사를 알고 난 후에 나는 이시가키에 군사력을 갖자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군사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교훈을 새기면서 평화를 추진하고 국민보호법 조례안 계획을 만듭시다.”

36) 일본에서 국민보호법은 전쟁이나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위 유사(有事)시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과 법률을 말한다.

이시가키시의 평화주의는 이시가키와 오키나와의 관계성, 다시 말해 이시가키 지역에 대한 오키나와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이시가키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람들과 공유해온 역사, 문화, 정체성, 일본국가에 대한 비판의식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하는 자료로 필자는 2004년 6월 정례회에서 당시 60대의 한 의원이 일반질문의 모두(冒頭) 인사로 발언한 내용을 소개한다.

“6월은 오키나와에 있어 특별한 계절이다. 오키나와전 최대의 격전지였던 이토만시 마부니의 평화의 초석에 양친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중략). 우리 고향인 야에야마에서는 일본군의 명령으로 말라리아 발병지대로 강제 소개되어 3,000명의 소중한 생명이 이슬처럼 사라진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군의 조직적 저항이 종식된 후에도 군명에 의한 대만으로의 강제 소개(疏開) 중에 센카쿠제도 조난사건이라는 비극적 사건도 발생하였다. (중략) 오키나와전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군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 헌법 9조를 지키고 불전(不戰)의 뜻을 새롭게 하는 바이다.”

한편, 2011년 8월부터 야에야마 교과서채택 문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사용할 중학교 공민(公民)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야에야마제도의 세 지자체 중 이시가키시와 요나구니정의 교육위원회는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익성향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우익 교과서의 채택을 주도한 두 지자체의 교육장들은 센카쿠제도의 일본 영유권을 명확히 기술한 교과서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오키나와현 교육계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사실과 오키나와전 당시 일본군의 집단자살 강요를 은폐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우익 교과서 채택을 거부한 타케토미정 교육위원회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XI. 이시가키섬과 대만: 대만에 대한 인식과 문화교류

이시가키섬 주민들에게 대만은 국경을 넘은 교류의 파트너이자 교류를 통한 번영을 보증해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은 요나구니섬 주민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으며, 요나구니섬 지자체에 비해 이시가키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다. 이시가키시 의회는 대만과의 다양한 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일정부의 센카쿠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논리와 대만과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2010년 9월 정례회에서 TH의원은 시 당국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2007년부터 3년간 이시가키시에 들어온 외국인의 데이터를 보면, 대만인들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2007년 23,761명, 2008년 43,460명, 2009년 41,070명인데, 이 중 대만인이 약 90%, 대만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인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데이터는 외국에서 이시가키시로 직접 들어온 외국인의 수치이고, 도쿄나 나하를 통해 이시가키시로 들어온 외국인의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영토영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대만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내 여행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해외와 아시아 각국에서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경제대책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대만 관광객수의 현저한 증가가 가져오는 경제 효과를 감안할 때, 본 시와 대만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시가키시의 기획부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번 센카쿠 사건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은 의원님의 발언 그대로이다. 야에야마 지방은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고, 오래 전부터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다. 지금도 대만으로부터의 크루즈선, 전세선(기) 운항으로 올해는 이미 6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이시가키시를 방문했다. 앞으로 이러한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나 영어로 된 안내판 및 팜플렛을 늘려갈 것이다.

야에야마 권역에서 타이페이, 타이완 동북부와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야에야마 시정회(市町会)가 이미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타이페이 송산(松山)에서 이시가키로의 항공노선 개통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촉진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지역진흥과 교류촉진의 핵심은 인재육성이다. 본 시는 타이페이 교육대학으로의 유학생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졸업생들이 대만 및 중국과 야에야마를 이어주는 교량으로서 공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센카쿠 문제와는 별도로 교류 촉진과 관광객의 수용태세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과거의 의사록을 살펴보다라도 대만과의 교류확대 방안은 이시가키시 의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과제가 되어 왔다. 센카쿠분쟁을 기회로 보수세력 의원들이 군사적 위협과 안전확보 대책을 강조하는 데 대해 혁신세력 의원들은 대만과의 교류확대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군사화를 저지하는 명분을 찾아내고 있다. 지역활성화의 논리와 방향성에 있어서도 관광 진흥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국경을 넘은 교류의 논리와 일본국가의 영토방위와 군사활동을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키려는 논리가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도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시가키시 보수세력 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만 어선의 영해침범 사건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그 경위를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영유권 주장과 영해침범 사건에 대한 보수세력 의원들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그 배경에는 이시가키와 대만의 오랜 교류 속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대만과의 관계 악화나 갈등을 싫어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³⁷⁾.

대만과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한다. NH의원은 2002년 9월 정례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9월 23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센카쿠제도는 일본영토이고 명백히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행정구역이라고 이등휘(李登輝) 대만 전총통이 단언하였다. 오하마 시장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만과의 교류 노력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오하마 시장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37) 이시가키섬에서 살아가는 대만 출신 거주자들과 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기초적 이해로는 国永美智子(外), 『石垣島で台湾を歩く』(沖繩タイムス社, 2012); 松田良孝, 앞의 책 등 참조.

2004년 3월 정례회에서 OT의원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작년 대만어선의 영해침범 사건은 수산청 발표에 따르면 명백히 대만어선의 위법 행위에 의한 것이다. 과거 이등휘(李登輝) 전총통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센카쿠제도(尖閣諸島)는 일본영토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업권에 있어서는 전전(戰前) 일본 국회가 센카쿠, 요나구니, 키룬(基隆)의 어업권을 대만에 양도하였다. 전후 일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지도자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영해침범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오키나와현과 일본정부에 요청해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07년 9월 정례회에서 NH의원은 자신의 센카쿠 상륙 경험을 끄집어내어 센카쿠제도까지 항해하는 도중, 대만 어선의 어로 활동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해상보안청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국(이시가키시) 어선의 센카쿠 해역 진입을 금지시키면서 대만어선의 조업은 묵인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른 의원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08년 6월 10일에는 대만 유어선(遊漁船)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사건이 발생하여 대만정부와 일본정부의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NH의원들과 IT의원은 일본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NH의원을 비롯한 보수세력 의원들이 대만어선의 영해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결의안을 발의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일본정부에 대만어선의 단속을 요청하거나 대만정부에 항의한 예는 적어도 의사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대만어선의 영해침범 사건이 발생하면 대개 소견발표 시간을 할애해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XII.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시가키시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혁신세력과 보수세력의 견해차로 인해 유동성을 띠어 왔다. 과거에는 혁신세력의 견해가 우세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갈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데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최근 들어 보수세력의 견해가 우세해 지면서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주는 외부의 적이자 공포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자료검토에 따르면, 이시가키시 의회가 중국인의 영토침범과 관련해 최초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2004년 3월의 일이다. 의회는 당시 중국인 활동가의 센카쿠제도 불법상륙 소동에 대응해 일본정부 부처를 수신자로 하는 <센카쿠제도에의 불법입국 재발방지 및 경비강화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11월 9일, 중국 원자력잠수함의 야에야마 해역 통과를 이시가키시 의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그해 12월 정례회에서 UT의원이 이에 관한 질의를 시작했다. “중국의 원자력잠수함이 이시가키섬과 타라마섬을 통과한 것에 대해 이시가키시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중국의 원자력잠수함은 이시가키섬과 타라마섬 사이, 즉 우리나라 영해를 남북으로 잠행한 후 센카쿠제도 북방 공해상을 지나 중국으로 향해 갔다고 한다. 우리 사키시마 사람들에게 불안과 동요를 가져다주었다. 중국 잠수함이 이시가키섬 근해에 나타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고,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지 알려주시오.”

이에 대해 시청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번 중국 잠수함의 영해침범 사건은 시민과 현민에게 큰 불안을 안겨다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본 시가 국경지역에 위치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실감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영해경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의연한 대응과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적절히 대응해 줄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 아직은 사건의 경위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으로서는 우리나라 평화헌법, 특히 9조의 평화존중, 전쟁포기의 조항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헌법9조의 이념, 즉 국제협조, 협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 질의가 끝난 후에도 중국정부의 진의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이 쇄도하였으며,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시위나 태평양으로의 진출통로 확보가 중국의 의도로 추측되었다.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에서 보듯이 사건 직후 이시가키시 의회와 시청의 반응은 당시의 평화행정 방침 하에서 평화주의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시가키시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과 센카쿠제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시가키시 의회에서 실효적 지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폭주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006년 6월 정례회에서는 중국 민간단체의 다오위다오 영유권 주장과 ‘다오위다오(魚釣島)의 날’ 제정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2005년 통과시킨 센카쿠제도 상륙시찰 결의안과 동중국해 매장자원 개발을 위한 거점지정 요청안 등 실효적 지배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청 당국자들은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영토관리 권한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8년 12월 정례회에서는, 12월 8일 중국 해양조사선 2척이 센카쿠 영해를 침범한 사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당시 일본의 아소내각(麻生内閣)은 이 사건에 대해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중국정부도 센카쿠제도의 영토권을 주장하였다. 때마침 12월 13일에는 일본 다자이후시(太宰府市)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센카쿠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상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대책 논의에서 영해침범에 대한 시장의 항의성명 필요성과 주변상황 인식을 둘러싸고 IT의원과 오하마 전시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오하마 전시장은 영토문제가 양국정부와 정상과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지자체 장으로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외교관계의 악화나 분쟁 확대가 없기를 바라며 양국정부의 교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IT의원은 당시 중국과 일본의 인터넷 및 우익 언론보도에서 떠돌고 있던 중국의 무력공격설을 인용하며, 시장의 해이한 상황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센카쿠제도를 침공하면 자위대에 비해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센카쿠제도를 회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게 되면 센카쿠의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 등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오하마 전시장은 센카쿠제도가 일본, 중국, 대만 중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인근 국가들 간에 평화적 교섭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펼쳤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 의원들의 강력한 철회 요구가 있었고, 시장의 발언 중 일정부분이 의사록에서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장과 의원들의 논쟁이 끝난 다음 날(12월 19일), NH의원이 발의한 <중국조사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경비강화를 요구하는 요청결의안>

과 <중국조사선에 의한 영해침범에 대한 항의결의안>이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 통과로 이시가키시 의회에서 중국이 센카쿠제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의 적이며, 무력공격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점은 더 이상 논쟁의 필요가 없는 공통인식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회의 중국 인식은 2010년 9월의 센카쿠분쟁을 통해 더욱 확고한 것이 되었다.

XIII. 결론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주민들에게 외부로부터 고립된 생활 조건을 부여하지만,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외부세계에 대한 교류, 협력, 공생의 논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한다³⁸⁾. 섬은 바다의 길을 통해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시키고 새로운 문물을 전달하는 교량이 될 때 번영할 수 있다. 그러나 섬들 사이에 국경이 설정되고 국가 간의 관계가 갈등과 분쟁의 상황으로 나아갈 때 국경의 섬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장벽이나 고립된 요새가 된다. 나아가 국가의 중앙집권성 확대와 중심부 사회의 발전 속에서 국경의 섬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벽지나 주변부가 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에서의 대응 논리를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센카쿠 분쟁에 대한 야에야마제도 주민들의 대응 전략은 교량론의 이상과 장벽론의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내지 고뇌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의 설정에 따른 대만과의 단절은 일본국가의 틀 속에서 볼 때,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야에야마제도의 주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야에야마제도 주민들은 급격한 인구유출 속에서 섬들 간의 자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도 생활의 자족성(self-sufficiency)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중심부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관광이나 영토 방위를 지역활성화의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센카쿠분쟁으로 고양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내셔널리즘은 야에야마제도 주민들에게 영토 방위를 위한 군비 배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답변은 아직 유동적이다.

2010년 9월 일어난 중국어선 충돌사건은 중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대결주의적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센카쿠제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애국심은 자국정부의 나약한 대응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궤를 같이 하면

38) B. Malinowski,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Dutton, 1961[1922]); 安溪遊地, 「隣り合う島々の交流の記憶 - 琉球弧の物々交換経済を中心に」, 『사츠마침략 400년·류큐처분 130년의 궤적 - 류큐왕국의 해체와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유구·오키나와학회, 2009), pp.82-120. 과거 류큐왕국의 슈리성(首里城) 정전(正殿)에 걸려 있던 만국진량의 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琉球國は南海の勝地にして、三韓の秀をあつめ、大明をもって輔車となし、日域をもって唇齒となす。この二中間にありて湧出せる蓬萊の島なり。舟楫をもって万国の津梁となし、異産至宝は十方刹に充滿せり 류큐국(琉球國)은 남쪽 바다의 경승지에 있으며, 조선(三韓)의 뛰어난 점을 본받아 중국 및 일본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솟아나 있는 이상(蓬萊)의 섬이다. 배로 만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귀한 보물들이 넘쳐난다.>>(후략).

서, 억눌린 국민 정서에 대리만족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시가키시의 권한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체의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 지는 의문이다.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애국심은 영토분쟁이나 국민들의 애국심 고양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센카쿠제도에 대한 이시가키시 의회의 실효적 지배의 시도는 애국심을 명분으로 한 지역활성화의 논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국경의 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시가키섬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논리가 오랫동안 위력을 떨쳐 왔었다. 그러나 2010년 9월 중일정부의 갈등 이후 이시가키섬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이용한 지역활성화의 논리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있다. 영토분쟁이나 대결주의적 내셔널리즘이라는 외부적 압력은 이시가키시의 지역정치에서 이러한 논리를 가진 정치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시가키시의 지역정치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이용하려는 정치세력과 지역활성화의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은 이에 따라 주변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이시가키시 의회와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보안청의 경비 활동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위대의 군사 활동을 요청하는 것은 이시가키시가 일본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식의 의존성 확대는 안보와 재정 분야에서의 실용적 의존을 넘어 대결주의적 내셔널리즘이 주민들에게 내면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시가키섬 주민들은 오랫동안 오키나와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일본인으로서의 국민의식도 낮고, 소위 야마토(일본)에 대한 반감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반기지, 반전,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오키나와 지역권력의 헤게모니에 의존적이거나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현상들은 이시가키섬 주민들에 대한 오키나와 쪽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시가키섬에서 대결주의적 내셔널리즘과 군사화의 논리를 견제하고 있던 것은 오키나와 쪽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교류 관계였다.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만과의 교류를 통한 경제 효과와 공생의 논리는 여전히 지역활성화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시가키섬 주민들에게 대만은 국경을 넘는 교류의 대상이며, 대만과의 교류 확대가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리라 믿어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생각이 영토분쟁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며, 센카쿠를 둘러싼 대만과의 갈등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공포심과 적대감은 중국의 영해침범 행위에 대한 이시가키시 의회와 주민들의 즉각적인 대응 관념이나 자연발생적 심리가 결코 아니다. 그러한 관념들은 지역정치와 주변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관계성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시가키섬 주민들의 사회적 인식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이시가키시 의회에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며, 군사 활동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의 승리가 있었고, 중국과의 대결로 나아가려는 일본국가에 대한 과잉애국심이 커질수록 그 공포심과 적대감도 커질 것이다.

대결주의적 내셔널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 사이에서 영토 문제는 당사자국 간에 적지 않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 영토권은 배타적 소유와 점유를 규정한 근대 민법의 재산권적 개념으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당사국들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해류를 통해 온 세계로 이어지는 바다에 해역을 설정하고 배타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바다가 갖는 공유자원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한 것이다. 야에야마 제도와 대만의 오랜 교류의 역사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었던 생활세계의 상호의존성과 국경의 장벽으로 인해 생긴 손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경의 섬들에서 나타나는 교량론의 이상은 영토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들 간의 협상 자리에서도 참작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사례연구는 분단과 독도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참조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대결주의적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면, 한국을 둘러싼 영토 문제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토분쟁은 역사적 연원에 따라 특수성을 띠기도 하지만, 근현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성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구조를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학계는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갈등 구조에 까지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하며, 한반도 남쪽의 바다로 연결된 센카쿠와 오키나와 해역에 대해 주변국 당사자로서의 위치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쪽의 해역과 국경의 섬들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과거와 같이 동중국해 해저자원 개발에 손가락을 하나 더 올리려는 것으로 협소화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도 남쪽의 섬들이 가진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남쪽을 향해 우호적 교류와 협력의 대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 石垣市企画部企画政策課(編)、「統計いしがき：平成22年版」,
石垣市企画部企画政策課,「統計図表：平成23年版」.
沖縄県統計課,「平成21年度沖縄市町村民所得」.
『世界』, 2010년 12월호, pp99-154.
- 金彩炯, 「영토취득과 실효적 지배기준에 대한 연구」, 『國際法學會論叢』 제54권 제2호, 2009.
- 朴基甲,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지배 내지 점유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國際法學會論叢』 제45권 제2호, 2000.
- 이한규,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영남법학』 제30호, 2010.
- 임성모, 「잠재주권과 재일의 딜레마 - 점령 초기 오키나와의 지위와 정체성」, 『한일 민족문제연구』 제10권,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 진필수, 「하토야마 내각에 있어 후텐마기지의 반환문제와 미일안보체제의 재인식 -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 『사회와 역사』 제92집, 한국사회사학회, 2011.
- 安溪遊地, 「隣り合う島々の交流の記憶 - 琉球弧の物々交換経済を中心に」, 『사츠마침략 400년·류큐처분 130년의 궤적 - 류큐왕국의 해체와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제4회 오키나와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유구·오키나와학회, 2009.
- 安溪遊地, 「八重山から見える世界：台湾との人的交流についての口頭伝承」, 『동아시아의 국경 문제와 주민들의 삶』(제6회 오키나와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유구·오키나와학회, 2011.
- 井上清, 『尖閣諸島：釣魚諸島の史的解明』, 第三書館, 1996.
- 岩下明裕, 「国境の民はナショナリズムを信じない」, 『동아시아의 국경 문제와 주민들의 삶』(제6회 오키나와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유구·오키나와학회, 2011.
- 浦野起央, 『尖閣諸島、琉球、中国』, 三和書籍, 2005.
- 小熊英二, 『<日本人>の境界』, 新躍社, 1998.
- 許介麟, 「台湾の立場から釣魚台-尖閣諸島の問題を見る」, 『동아시아의 국경 문제와 주민들의 삶』(제6회 오키나와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유구·오키나와학회, 2011.
- 国吉まこも, 「沖縄近代漁業史から見た尖閣諸島」(第480回沖縄大学土曜教養講座発表資料), 沖縄大学地域研究所, 2011.
- 国永美智子(外), 『石垣島で台湾を歩く』, 沖縄タイムス社, 2012.
- テッサモーリス鈴木(大川正彦訳), 『辺境から眺める：アイヌが経験する近代』, みずず書房, 2000.

松田良孝, 『八重山の台湾人』, 南山舎, 2004.

緑間栄, 『尖閣列島』, ひるぎ社, 1984.

宮里政玄, 『日米関係と沖縄: 1945-72』, 岩波書店, 2000.

村田忠禧, 『尖閣諸島、釣魚島問題をどう見るか』, 日本僑報社, 2004.

T. Beal, "Korean Brinkmanship, American Provocation, and the Road to War: the manufacturing of a crisis," *The Asia-Pacific Journal*, vol. 8, Issue 51 No 1, December 20, 2010.

E. Leacock and R.B. Lee(eds.), *Politics and History in Band Societies*, Cambridge Univ. Press, 1982.

B. Malinowski,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Dutton, 1961[1922].

G. McCormack, "Small Islands - Big Problem: Senkaku-Diaoyu and the Weight of History and Geography in China-Japan Relations," *The Asia-Pacific Journal*, vol. 9, Issue 1 No 1, January 3, 2011.

J. McGlynn, "Politics in Command: Th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Risk of a New Korean War," *The Asia-Pacific Journal*, 24-1-10, June 14, 2010.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과 한반도를 위한 시사점: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I. 문제제기

남북한 간 갈등은 갑작스럽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갈등이 '우연'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갈등에는 분단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필연'이 잉태되어 있다고 여긴다. 바로 이점이 남북한 간 갈등이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2015년 8월 25일 새벽 2시, 한반도는 또 다시 한 번 큰 고비를 넘겼다. 그렇지만 당시 우리의 안도와 환호는 오래 가지 않았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이후 남북한 관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한은 3년간의 전쟁을 경험한 바 있다.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전쟁은 남북한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주었다.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남북한은 전쟁 이후 중요한 몇 차례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한은 주변국들과 함께 6자회담을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9.19 합의와 2.13 합의라는 중요한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한의 합의는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국면으로 전환했던 해외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8년 4월 10일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 - 혹은 벨파스트 협정 - 의 타결 이후 갈등이 평화적으로 전환되고 실행되는 북아일랜드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아일랜드의 폭력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정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사회적 소수자(minority)'라는 인식이 개별 세력에게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가톨릭계는 북아일랜드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소수라는 것에서 언제나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개신교도들은 아일랜드 전체에서 자신들이 소수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감이 결국 폭력으로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결사체(political incorporation) 이론을 북아일랜드에 적용한 톰슨(Thompson)의 논의나 마네이(Maney)의 시소(see-saw) 모델은 모두 이와 같은 논의들이다.¹⁾ 두 공동체는 자신의 공

동체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을 용인하게 되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폭력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방식은 경제적 원인에 주목하는 경우이다. 경제적 원인을 폭력적 갈등의 원인으로 꼽는 경우이다. 가톨릭계에 대한 차별과 그로 인한 실업과 빈곤이 폭력발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지지를 받는 논의이다. 실업이 사회를 비난하고 정치체제의 폭력적 변화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주장이다. 궁핍화 이론(deprivation theory)은 시민들의 기대 후생과 실제 후생간의 괴리는 폭력적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높은 실업률은 모든 시민들에게 '빈곤의 평등(equality of misery)'을 가져왔으며 이는 사회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었고, 폭동의 시대(the Troubles)를 견인했다.²⁾³⁾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협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지금까지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에 대한 연구는 북아일랜드 국내정치의 동학과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의 의미를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은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평화협정은 순간의 우연으로 타결된 것이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결과물이다. 갈등의 원인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본 연구는 1998년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정치적 측면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갈등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일정정도 해소되게 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의 특성과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북아일랜드 갈등의 사회경제적 원인

북아일랜드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세력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불평등이 내재해있다. 1978년 영국군은 Glover Report에서 IRA의 본질에 비밀리에 연구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IRA 구성원은 단지 실업자 위에 있는

-
- 1) Jhon Thompson, "The Plural Society Approach to Class and Ethnic Political Mobiliz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6(1983). ; Gregory Maney, "Variations in the Cause of Ethnonationalist Violence: Northern Ireland, 1969~72,"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16. no. 1(2005).
 - 2) Jhon Thompson, "Deprivation and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1992-1985,"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3. no.4(1989).
 - 3) 북아일랜드의 폭력적 갈등에 대한 두 입장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Lauren Burke, "Vicious Cycle or Business Cycle?: Explaining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after the Troubles," *CrissCross*, vol. 2. no. 2(2014).

가난한 노동계급들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초기의 연구들이 실업과 폭력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폭력 행위가 단지 범죄에 불거나 기회주의적이지만, 최근 연구는 실업과 폭력 간의 확실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고 있다.⁴⁾ 북아일랜드의 실업은 1970~80년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표 1참조). 그 가운데에서도 가톨릭계 남성의 실업률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평등은 아일랜드 독립과 북아일랜드 6개주의 자치가 주장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다. 1921년 북아일랜드가 만들어질 때, 이 지역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산업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진보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20세기 초반 얼스터는 기계화된 린넨 생산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중심이었다.⁵⁾ 이 시기에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개신교도들은 귀족과 부르주아부터 숙련과 비숙련 노동계급까지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산업적이고, 번영했으며,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아일랜드에서 지역경제를 건설한 왕과 제국에 충성하는 영국인으로 생각했다. 반면 가톨릭교도들은 개신교도와 비교할 때 낮은 교육수준을 소농(小農), 비숙련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톨릭교도들 가운데 중간계급의 대부분은 성직자들이었다. 가톨릭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지배하는 도시주의 중심부와 작업장에서 취약한 소수였다.⁶⁾

<표 1> 북아일랜드 실업률

	1971	1981	1983~4
남성			
가톨릭	17.3	30.2	35
비가톨릭	6.6	12.4	15
평균	10.3	19.1	24
영국	5.5	11.3	14
여성			
가톨릭	7.0	17.1	17
비가톨릭	3.6	9.6	11
평균	4.7	12.6	13
영국	4.7	7.4	10

* 실업은 자영업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로 표현.

* 출처: Bob Rowthorn and Naomi Wayne, *Northern Ireland: the Political Economy of Conflict*(Oxford: Polity Press, 1988). p.111에서 재인용

합병주의자들은 굳건히 지역의 자원을 수중에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농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팔지 않는다는 일반 협정 때문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이는 자원

4) The Portland Trust, “Economics in Peacemaking: Lessons from Northern Ireland,” May, 2007, p. 8.

5) Jennifer Todd and Joseph Ruane, “The Dynamics of Conflict: Political Economy, Equality, and Conflict,” *IBIS Working Paper*. no. 110(2011), p. 3.

6) *ibid.* p.3.

분배의 결과이다. 가톨릭교도들은 더 빈곤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높은 실업률을 가진 사회계급이었으며 더 낮은 수준의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은 1947년 버틀러 교육법(Butler Education Act)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무너졌지만, 가톨릭교도들의 지역적 차별과 계급적 불이익은 1950~60년대에도 남아있었다.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이었다. 공공 분야에서 차별은 의도적인 것이었으며, 합병주의 세력이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가장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합병주의 정치인과 고용주들이 동등하게 차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패턴은 명확했다.⁷⁾

차별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식은 매우 '정치적'이었다. 가톨릭교도들은 '민족주의적 동정심' 때문에 국가에 위험한 존재이고, 그것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차별은 더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⁸⁾ 이는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강조함으로써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들 간에 서로 달랐다. 로즈(Rose)의 1968년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도들의 74%는 차별을 부인했다. 65%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완벽한 자신감을 보였다. 개신교도들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든 그것은 시장의 힘, 노동의 강도, 현대화의 에토스, 상이한 교육적 가치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반대로 가톨릭교도들의 74%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차별이 실재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가톨릭교도들이 받는 경제적 불이익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높은 출생률과 달리 이주(emigration)이다. 1971년 아운거(Aunger)의 연구는 가톨릭교도들이 핵심적 직업분야에서 - 특히 행정부와 경영분야, 엔지니어링과 무역, 그리고 성직자와 교수 - 과소 대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간단히 공동체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공동체가 살아가는 상이한 경제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공공 분야에서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차별이 관심을 받았다. 새로운 산업의 위치, 공공 주택의 접근, second-university의 위치,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의 접근 등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였다.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은 이러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했으며, 가톨릭인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2등 시민(second class citizen)'라는 점을 인식했다. 1968년 이후 민권운동은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였지만, 민권운동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합병주의 정치권력의 종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⁹⁾ 민권운동의 경제적 요구는 공공분야에서 차별의 철폐에 대해서 제한적이었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정당한 처우에 대한 요구, 기회의 균등에 대한 요구, 조건의 평등에 대한 요구 등 세 가지이다.¹⁰⁾

폭동의 시대(the Troubles)는 경제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아일랜드 경제는 '전시경제(war economy)'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전통적인 산업은 심각하게 몰락하고,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새로운 기업들의 도산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제조

7) *ibid.* p.5

8) *ibid.* p.6.

9) *ibid.* p. 8

10) John Baker et al. *Equality: From Theory to Ac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4). pp. 23~42.

업 분야에서 고용은 1950년대에 36%에서 1990년대에는 18%로 하락했다. 전시장경제의 하나의 측면은 공적으로 투자된 안보분야의 팽창이다.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산업분야에서 일자리 손실을 부분적으로 해결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1970~80년대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체 고용률이 1971년부터 1991년까지 연 0.5% 밖에 성장하지 못했으며, 남성 고용은 하락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은 낮은 숙련도, 높은 이직률, 여성의 소비자 서비스 분야 취업이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의 성장은 적었다. 장기간의 남성의 실업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1998년 이후 미국의 투자가 유입되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통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영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안보 관련 직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영국경제의 주변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북아일랜드는 영연방에서 가장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0년 카메론(Cameron) 보고서는 공공분야에서의 차별이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톨릭교도들은 합병된 아일랜드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가톨릭 공동체를 부당하게 처우하려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제적 불평등은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정치적 요구의 초점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차별은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가톨릭교도들은 오직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공화국과 통일될 때만이 공평한 대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육, 주택, 선거,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언급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73년 Constitution Act으로 시작해서 1976년 Fair Employment Act 그리고 1989년 Second Fair Employment Act가 제정되었다. 1971년에는 북아일랜드 주택관리공사(Housing Executive)가 설립되었다. 주택 배분에 관한 결정은 중앙집권화된 관리공사에 집중되었고, 약 1990년 북아일랜드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은 현저히 감소했다. 교육은 가장 먼저 변화가 발생했다. 1947년 북아일랜드 교육법(Education Act)은 영국과 웨일스 교육법(1944)에 따라 자유롭고 선택적인 중등교육을 설립했다. 3차(대학) 교육(tertiary education)이 확대되었다. 벨파스트의 퀸 대학(Queen's University)은 급속하게 성장했다. 1953년 가톨릭교도는 퀸 대학 학생의 1/5미만이었지만, 1970년대에 가톨릭과 개신교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동등하게 대표되었다. 가톨릭 학교들을 위한 국가 자금지원은 85% 수준이 되었으며, 1993년 100%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¹¹⁾ 영국정부는 1990년대 초반 두 가지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하나는 1994년 PAFT(Policy Assessment and Fair Treatment)로서 공동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격려하는 정책이고, TSN은 경제자원을 가장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효과적이지 않았다.¹²⁾

평화프로세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를 일정정도 제공했다. 1998년 The Northern Ireland Act는 공적 권위에 평등계획을 실행할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관리, 행정, 전문직에서 가톨릭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물론

11) The Portland Trust, "Economics in Peacemaking: Lessons from Northern Ireland," pp.8~10.

12) Jennifer Todd and Joseph Ruane, "The Dynamics of Conflict: Political Economy, Equality, and Conflict," p. 17.

여전히 2001년 센서스에서 개신교도들은 최상층 사회에서 다소 더 과대 대표되어 있는 반면 가톨릭 신도들은 관리적이거나 전문적인 공직분야의 상층부에서 과소 대표되어있다.¹³⁾ 하지만 2000년대 지속적으로 가톨릭교도들의 취업률은 증가하여 개신교들과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1참조).

<그림 1>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과 개신교들 간의 취업률 비교



*출처: Equality Commission for Northern Ireland, "A Summary of Northern Ireland Monitored Workforce Returns," Annual Fair Employment Monitoring Report. No. 23, p. 6.

Ⅲ. '성금요일 협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자유주의적 평화구축의 의미와 한계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은 평화정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평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협정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과 두 공동체 간의 동등하게 존중하도록 진작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모니터하고 공공기관의 대한 개인의 불평사항들을 조사하는 '평등위원회(an Equality Commission)'를 구성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¹⁴⁾ 2004년 평등 위원회에서 출간한 Fair Employment in Northern Ireland: A Generation On이란 보고서는 역사적 불균형은 남아있는 반면 차별적 실재는 대부분 제거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창출되었다고 주장했다. 평등위원회의 2009년 보고서에서 개신교도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것은 젊은 가톨릭교들이 위상이 높아지면서 변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 가톨릭의 대표는 상승하고 개신교도들의 대표는 하락했다. 2010년 The Fair Employment Monitoring Report는 세계 경기침체가 개신교와 가톨릭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개신교 고용률은 3.5% 하락하는 반면 가톨릭 고용률은 3.2% 하락한다. 젊은세대 가운데 가톨릭교도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아일랜드는 세계 경제불황

13) *ibid.* p.19

14) "The Northern Ireland Peace Agreement,"에서 여섯 번째 항목.

(global recession)의 충격을 흡수해야만 했으며, 그에 따라 급격하게 노동시장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차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불평등은 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현재에는 외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침체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톨릭계와 개신교도들에게 삶의 기회를 재조정하도록 만들고 있다.¹⁵⁾

북아일랜드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시장화 정책을 추진했다. 협정이후 북아일랜드는 평화구축을 위해서 ‘경제적 번영’을 강조했다. 사실 협정 이전에도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영국정부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영국정부는 1980년대에 영국은 대처노믹스의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쳐 나갔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북아일랜드에서 국가 재정지출 수준은 영국 평균수준 보다 높았다. 공공분야 일자리의 비율도 30%로서 영국 평균 21%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이후의 사정은 달라졌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북아일랜드 거버넌스에도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북아일랜드 정부의 전략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적’이다. 그런데 북아일랜드의 주요 정치세력인 합병주의 세력과 신페인(Sinn Fein) 모두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협정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립적 양상을 보이는 양대 정치세력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양대 정치세력 모두가 법인세(corporation tax) 인하를 찬성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이는 공공서비스 삭감과 민영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국가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톨릭 중간계급에서 이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정치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¹⁶⁾

북아일랜드에서 신자유주의 수용은 평화구축(peacebuilding) 과정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이후 ‘자유주의적 평화 프로젝트(liberal peace project)’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다. 자유주의적 평화 프로젝트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국가의 역할 감소, 집단적이고 공적 공간의 축소, 개인의 부의 축적,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등을 모색한다. 즉, ‘시장의 자유화(market liberalisat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평화구축 과정에서 개별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적 평화전략은 사회 내부에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결국 평화를 또다시 위태롭게 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에 반영된다.¹⁷⁾

북아일랜드에서 신자유주의는 양대 정치세력인 합병주의와 공화주의자들의 메타 내러티브(meta narrative)가 되었다.¹⁸⁾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신자유주의의 수용은 협정 이전까지 주

15) Paul Nolan, Northern Ireland Peace Monitoring Report, no.1(2012). p.9; pp. 92~93.

16) Colin Coulter, “Under Which Constitutional Arrangement would you prefer to be unemployed?: Neoliberalism, the Peace Process, and the Politics of Class in Northern Ireland,”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7(2014). pp.763~776.

17) Michael Pugh, “The Political Economy of Peacebuilding: A Critical Theory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0. no. 2(2005), pp. 24~26.

18) David Cannon, “Northern Ireland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eace: Neoliberalism and the end of the Troubles,” Dissertation for Ph.D in University of Adelaide(2003),

변화 되어 있던 가톨릭교도들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캐논(Cannon)은 신자유주의는 차별과 억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 더 잘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갈등과 종족-민족주의적 갈등이 없을 때 출현했다고 설명하면서, 북아일랜드에서 신자유주의는 가톨릭교도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몇몇 지역에서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인 근간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과거와 달리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⁹⁾ 그러나 캐논의 주장과 달리 협정이후에도 폭력적 갈등은 발생하고 있다. 버크(Burke)는 북아일랜드에서 협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치적 폭력의 원인을 실업률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계 소득 차이로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결론에서 평화건설을 위해서는 정책적 처방으로서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⁰⁾

모든 협정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 않다. 협상은 이행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북아일랜드의 성금요일 협정 역시 불완전한 것이다. 성금요일 협정이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이행되었다는 점이다. 협정이 이행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정책 덕택이다. 불평등의 감소는 협상이 이행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는 북아일랜드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아일랜드의 통일을 변함없이 주장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특히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북아일랜드는 성금요일 협정을 통해서 얻은 평화의 기회를 신자유주의의 수용으로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평등과 정의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지만, 시장과 가격은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IV.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경제협력

1.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은 북아일랜드에서의 폭력적 갈등과 달리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결코 적지 않다. 북한이 핵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체제의 존속이 어려워지면서 부터이다. 북한체제는 대외적으로 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대내적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 원인이기 보다는 간접적 혹은 구조적 원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북한체제는 스스로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임에 틀림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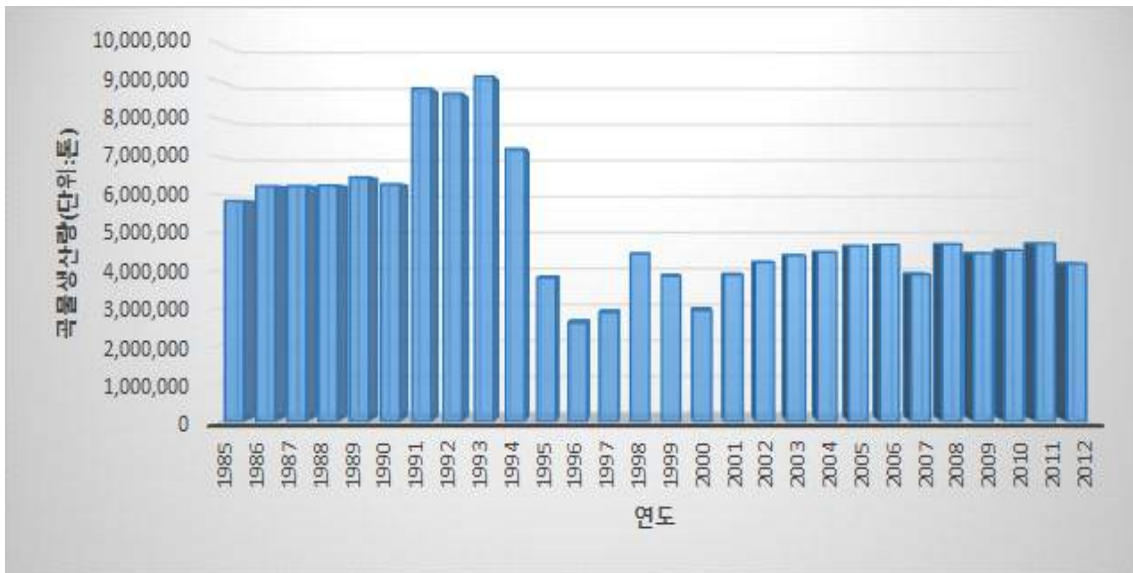
19) *ibid.* pp. 132~133.

20) Lauren Burke, "Vicious Cycle or Business Cycle?: Explaining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after the Troubles," *CrissCross*, vol. 2. no. 2.

없다.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국 격차는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북한사회의 저발전으로 인해서 남북한 간에 발전의 격차로 인한 ‘구조적 이질성’이 더욱 심화되게 된다. 1990년대 북한경제위기는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였다.²¹⁾ 북한은 그 원인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분명 이는 계획경제와 농업집단화의 문제가 누적된 결과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곡물생산량은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그림 2참조). 북한경제 위기는 비단 농업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전반의 문제였다. 북한 당국의 통계마저도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17% 이상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다. UN, 한국은행, 미국 CIA 통계 등은 북한경제가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에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3참조). 북한의 명목 GDP는 1995년 북한통계 128억 달러, UN 통계 48억 달러까지 하락하게 된다. UN통계에 따르면 2010년이 지나면서 겨우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였다(그림 4참조).

<그림 2> 북한 곡물생산량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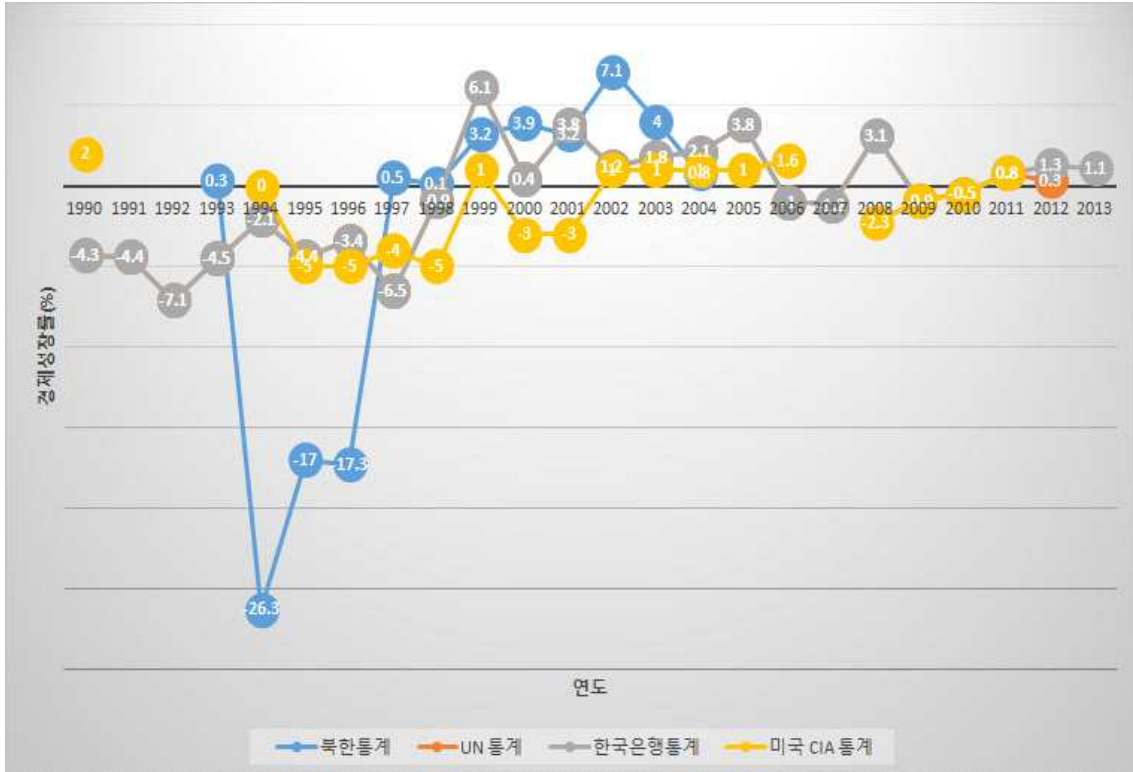


* 곡물의 구성: 벼, 보리, 밀, 옥수수, 호밀, 귀리, 조, 수수

* 출처: FAO(2013);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 (검색일: 2014. 12. 10)

21) 아사자의 수에 대한 기록은 정확한 통계를 알기 어렵다. 이시기 일부 시민단체들은 1995~97년 간 난민들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20%가 기아로 사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미 3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기아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World Vision, Survey finds 15 Percent May be Dead From Famine in North Korea (15 Sept. 1997);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25에서 재인용.

<그림 3> 북한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 * 미국 CIA 통계에서 1992년 북한경제성장률을 -7~-9%으로 불분명하게 추정하고 있어서 삭제하였다.
- * UN 통계는 한국은행 통계와 거의 동일했다. UN은 2005년 이후 한국은행의 명목 GDP 추정치의 추세를 적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 * 출처: 문성민,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pp. 14~1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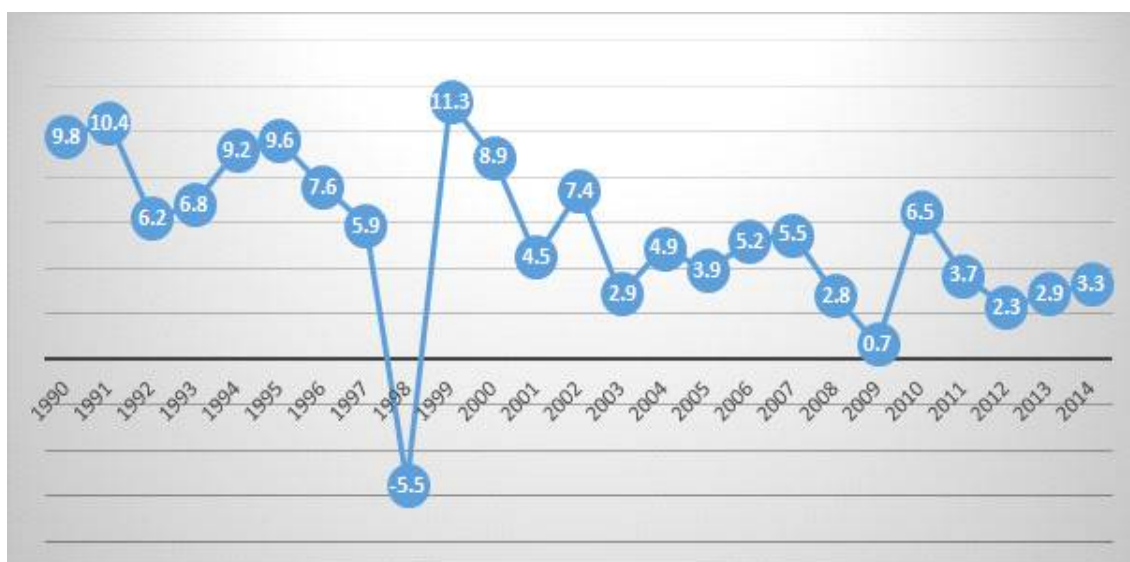
<그림 4> 북한 명목 GDP 변화 추이



- * 출처: 문성민,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pp. 15~16에서 재인용.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을 지속했다. 남한은 1998년 -5.5%로 하락했지만, 이후 1999년 11.3%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 3~4%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그림5 참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소득)이 2만2천 달러를 넘었으며, 2014년에는 2만 8천 달러를 넘어섰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GDP는 29위이다. 반면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수준은 2013년 현재 명목 GNI가 33,844십억원(한국 원화 기준), 1인당 GNI가 2012년 현재 138만원(한국 원화 기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경제수준은 남한과 비교할 때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그림 5> 남한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1990~2014)



* 출처: 통계청

남북한의 산업구조 역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했다. 남한의 산업화가 완벽히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반면 북한의 산업화는 현존 사회주의, 특히 스탈린주의적 공업화 노선을 따랐다. 남한의 산업화는 국가주도의 산업화였다. 자본주의적 산업화에서 국가가 주도한 것은 후발 혹은 후후발 산업화 국가들에 서 일반적인 것일지 모르나, 한국처럼 국가개입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흔하지 않다. 국가간섭은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세제혜택, 저금리 대출, 수출보조금 지불, 수입쿼터 제한 등은 물론 기술지원과 혁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²²⁾ 북한의 산업화는 계획경제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졌다. 스탈린주의적 공업화 노선은 중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위계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22) Aoki, Kim and Okuno-Fujiwara,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laredon Press, 1997) ; Hellman, Murdock and Stiglitz, "Financial Restraint: toward a New Paradigm." in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laredon Press, 1997), pp. 180~185 ; 강철규, "재벌의 시대추구와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1992), pp. 378~380.

일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²³⁾ 즉 ‘중공업 우위의 축적 노선’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라는 정책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당의 명령이 관철되는 일이다.

남북한은 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부문 간 생산성의 차이는 있었지만, 1차 산업과 2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²⁴⁾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남북한 모두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에도 농업부문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대까지 상승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17~18%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2000년대에 경제가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21~22% 내외 수준이다. 이렇게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게 된 것은 중화학 공업 분야가 1990년 25.6%였지만, 차츰 하락하여 2002년에는 11%까지 하락하고 다소 회복된 최근에도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한의 1970년대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김정일 집권 시기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는 농림어업 분야이다. 농업분야는 1990년 GDP의 8.4%였으나 1998년 이후 4%대로 하락하더니, 2007년 이후에는 2%대로 하락하였다. 대신 서비스업이 성장하여 1990년 51.9%에서 2007~2009년 사이에는 60%대에 진입했다가 2010년 다소 하락하여 약 59%대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이 1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선진국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면, 북한은 중공업 부문에서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면서 저발전 국가의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p. 19 <표 2>참조).

생산성 측면에서 남북한의 격차는 확연히 들어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하락한다. 당시 공장가동률은 20~30%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도 일부 주요 공장을 제외하고는 크게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가동률의 하락은 곧 자본계수(capital coefficient; capital-output ratio)의 상승을 의미한다. 자본계수($\frac{K}{Y}$)는 전체 국민소득(Y)에서 자본(K)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본계수는 설비가동률을 감안해서 계산된다. 설비가동률(capacity utilization)은 잠재적 생산능력의 산출량(Z)에 대한 실제 산출량(Y)의 비율($\frac{Y}{Z}$)이다. 자본계수를 설비가동률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잠재적 자본계수에 설비가동률을 나눈 값이 되기 때문이다($\frac{K}{Y} = \frac{K}{Z} \div \frac{Y}{Z}$). 곧 이는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의미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공장가동률이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은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총생산과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통해서 남북한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추정했다. 2008년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실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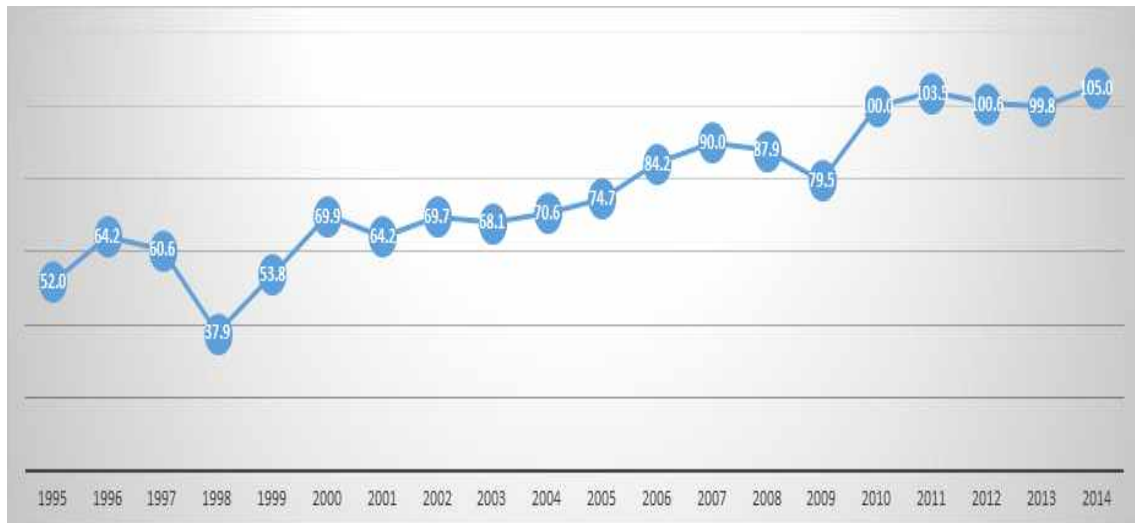
23) Radoslav Selucky,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 23.

24)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6>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 참조할 것.

인구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0년대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취업률 불변을 가정하여 추정했다. 그 결과 북한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전 산업 평균 1990년 160만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22년간 110만원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전 산업 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⁵⁾ 현대경제연구원의 이 가정은 북한에서 실제로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비출근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기에 분명 일정한 한계가 있다. 비출근집단을 감안하면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현재의 계산보다는 다소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공장가동률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림 6> 설비투자 지수 변화 추이

(2010년=100)



*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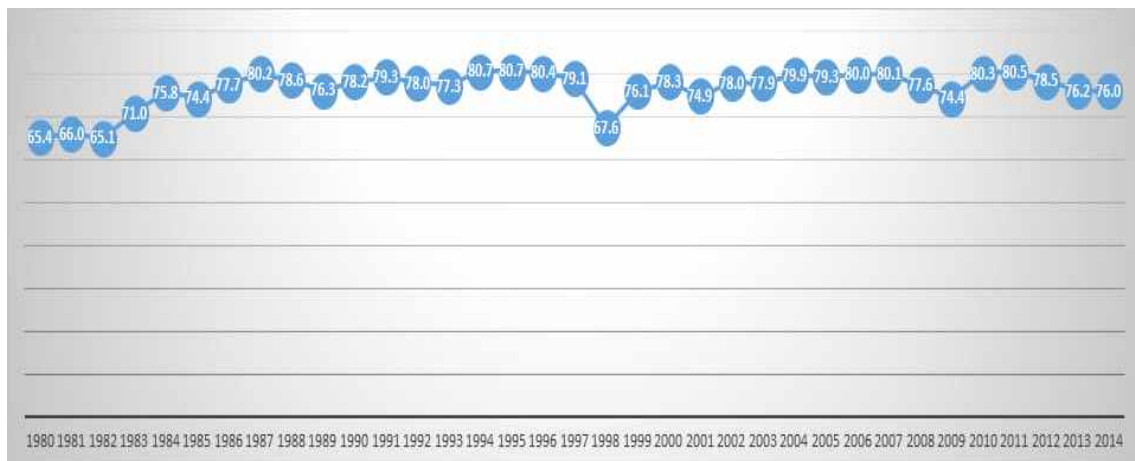
반면 남한의 생산성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남한은 설비투자지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시기인 1998년 37.9%로 하락했다가 2007~2009년 잠시 주춤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그림 6 참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1997~1998년 외환위기로 주춤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도 생산자본 스톡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생산자본 스톡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67.6%까지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2003년부터 그 이전수준을 회복했다(그림 7참조). 자본스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가동률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자본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남한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의 추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2010년 사이에 약 2%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G7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가장 높은

25)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경제주평』 14-42호(2014), p. 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약 3%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긴 하다.²⁶⁾ 아무튼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높게 유지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된 덕이다. 물론 한국의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증가율은 2012년과 2013년 하락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과 비교할 때 더디다고 할 수 있다.²⁷⁾

<그림 7> 남한의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1990~2014)

(단위: %)



* 출처: 통계청

남북한의 과학기술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의 강성대국론에서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중시 노선은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은 1998년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은 이 계획을 국가계획의 중심에 놓고 추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1)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진, (2) 인민생활 개선, (3) 첨단기술 개발, (4) 기초과학 발전 등이다. 지난시기 구체적인 실행계획 가운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과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²⁸⁾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대 선행부문의 1990년대비 2013년 실적은 석탄 80%, 발전 80%, 조강 36%, 철도 105%이다.²⁹⁾ 2010년대 초에 등장한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기반의 ‘첨단주체공업’에 대한 투자가 강조 되고

26) 차상미,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 본부(2014).

27) OECD,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4).

28) 김종선 외,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0), pp. 57~59.

29) 이영훈,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지속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2015), p. 15.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규모를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자동차 자동조립라인과 정밀기계 과정에 활용되는 이 첨단 생산기술을 과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³⁰⁾ 그런데 설령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과연 북한경제가 회복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발전 경제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산업부문 간의 연관성을 떨어뜨리고, 산업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경제 구조와 상황에 맞는 '적정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¹⁾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반도체와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여전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와 투자재의 많은 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 기업들에게 기술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벌들은 내수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초과이윤(렌트)을 챙기면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편이다.³²⁾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업 투자율이 평균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³³⁾ 대기업의 경우 평균 투자율보다는 높지만 역시 하락하였으며, 대신 내부 유보 이익이 증가하였다.³⁴⁾ 즉 대기업은 초과이윤(렌트)을 수취하지만, 투자하는 비율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다.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성과 문제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을 지속했다. 그리고 지난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는 다시 한 번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이 천명되었고,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였다.金正은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했다. 이에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제사회는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간에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이와 같은 견해 차이는 곧 대북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를 견인하기 위해서 남북경제 협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았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30) *ibid.* p. 15.

31) 기술선택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다. 저발전 사회가 저발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기술'과 이에 필요한 선진국들의 기술이전 문제는 남북국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운데 하나이다. 남북한이 통일과정에서 경제통합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북한의 저발전을 극복하고 남북한 간의 구조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정기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적정기술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다음 책을 참조할 것. Emmanuel Arghiri, *Appropriate or underdeveloped technology?* (New York: Wiley, 1982).

32) OECD,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4).

33) 박승록, 『한국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1).

34) 이시연, "국내 대기업의 내부 자금 유보와 자산 구성 변화에 대한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제23권 4호(2014).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해당기업들이 지금까지 생산한 상품들은 물론 공장과 설비 등에 대한 물 수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해당기업에게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해당기업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기업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공단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북한정부가 입게 될 손해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지만, 우리 기업들의 손해에 대한 뚜렷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은 여전히 ‘창구단일화’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사실 남북한 경제협력은 행위자의 측면에서 보면 관(정부)이외의 민간의 행위자들이 남북한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남북한 관계의 큰 변화이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요구하는 당시 학생운동과 통일운동 진영에 대해서 이른바 ‘창구단일화’를 내세우며, 민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차단했다. 이는 정치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분단구조 하에서는 남북한 관계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이러한 입장의 변화를 의미했다. 정부 이외의 민간의 참여와 교류 확대를 허용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고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창구단일화’의 논리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남북한 관계에서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정부는 경제협력의 중단을 상대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북한 긴장완화의 목적으로 시작된 남북한 경제협력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단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보수-진보 정치사회세력의 생각은 모두 자유주의적 평화 프로젝트에 가깝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화구축에서 자유주의 평화 프로젝트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수주의(conservative) 모델은 평화구축과 발전과정이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 모델은 강제성을 띠는 경향이 있으며, 헤게모니와 지배가 이질적으로 표현된다. 상황에 따라서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며 조건제한(conditionality)이나 보호령(dependency)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소말리아, 발칸, 이라크에서처럼 평화를 군사를 통해서 성취하는 hyper-conservative 모델 역시 존재한다. 둘째, 정통파(orthodox) 모델이다. 이 모델은 협상에 의한 합의가 지배한다. 이는 균형과 다자주의적이지만 여전히 보수주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국가중심적 모델이다. 국제기구와 제도만이 아니라 국제 NGO들에 의해서 기획된다. 국가주도의 하향식만이 아니라 주민(grassroots)와 시민사회 활동에 기반한 평화구축이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자유주의적 평화의 비판적 형태로서 해방형(emancipatory)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강제성, 조건제한, 보호령 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이는 상향식 접근으로 주로 요구 중심 활동, 사회복지와 정의에 큰 관심을 표명한다. 이 모델은 보편주의를 지향하며, 국가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국제 NGO 등 시민들을 주요한 행위자로 인식한다.³⁵⁾ 이러한 유형들을 가

35) Oliver Richmond, “The Problem: understanding the ‘Liberal Peace’,”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vol. 6. no. 3(2006), pp. 300~302.

운데 창군단일화의 논리를 강조하는 한국의 주요 정치사회세력의 생각 가운데 보수진영의 생각은 보수주의 모델에 가깝다면, 진보진영은 정통파 모델에 가깝다.

둘째, 남북한 경제협력은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기초해서 진행되었다. 남북교역에서 북한의 대남 반출 품목은 주로 원자재와 농산물이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이질성과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경제협력의 주요방식인 위탁가공과 개성공단은 모두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현재의 남북한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신)기능주의적 남북한 경제협력은 국제정치학의 복합적 상호의존론(complex interdependence)에 따라 평가하면,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북한이 결코 상호의존도가 높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는 외적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북한경제는 취약성(vulnerability)은 높지만 민감성(sensitivity)은 적다. 북한의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단될 경우 북한경제는 더욱 위험해지기에 취약성은 높다. 하지만 경제협력에서 북한의 경제적 이득은 상당부분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지한다. 따라서 민감성은 남한의 기업들이 더 큰 경향을 보인다. 북한과 같은 값싸고 물류비용이 적게 되는 국가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어려워지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북한은 남한을 대체할 국가가 존재하기에 민감성이 낮다. 그리고 대북투자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성공단은 북한경제와의 연계성이 출발단계부터 적었다. 실제로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을 때, 북한은 이를 남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북한경제는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하지만 이는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와 같이 생산성 전투와 같은 방식으로 버티게 된다. 즉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과의 상호의존도를 높이지 못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회복과 개발에 기여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도 활용도를 가지기도 어렵다.

셋째, 남북한 경제협력은 현재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남북한 모두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국내적 조건이 존재한다. 통일편익을 계산할 때 경제적 효과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통일편익을 계산할 때 통일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강한 믿음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 국면이 끝이 나면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아직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남도발로 인한 한국사회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수입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정치사회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인식됨으로써, 어떠한 정치세력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쉽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소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

북한 역시 경제협력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경제협력이 현재의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북한은 탈냉전시대 남한

의 대북정책이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보이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에야 비로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체제와 정권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이 국면을 타계하면서 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체제유지와 변화를 감수해야하는 ‘위험’이기도 하다.

V. 제재 이후를 생각한다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제재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은 한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긴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통일의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통일이 북한의 저발전을 극복하고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일편익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현재처럼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통일의 이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통일 편익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가 감소되고 한반도 경제가 통일이전부터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둘째, 경제협력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레버리지이다.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된다고 해서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버리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외교적 수단을 포기하는 일이다. 결국 이는 평화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북한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통한 남북한 경제적 격차의 감소는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분단국 내부의 차이가 현재의 남북한 관계처럼 심각했던 적은 없다. 남북한 간의 구조적 이질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구조적 폭력’이 발생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북아일랜드 갈등은 종교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에 오는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비단 북아일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의 발전의 격차는 통합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탈냉전 시대에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북한의 핵개발의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구조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제제재 이후를 한반도의 평화 이후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협력의 특성을 살펴볼 때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

제를 가진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과제는 모두 한국사회에서 '안보'에 대한 기존의 인식변화를 전제로 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첫째, '창구단일화'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경제협력의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남북한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한 관계는 상대방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곧 남북한의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적대성을 보이는 이유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명명하고 적대성을 감소하고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군사안보적인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모든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남북한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다변화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노동력 활용만이 아니라 자본투자와 기술이전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협력의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추진되기 어렵다. 따라서 안보문제와 남북한 간 구조적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인 과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통일은 과정이다. 남북한 간에는 현재 냉전적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또 통합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됨으로써 남북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런데 냉전적 대립관계가 해소될 기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대화과 협력' 뿐이다. 먼저 남북한은 난마처럼 얽혀 있는 남북한 간의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전제로 한국사회는 제재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그 끝을 알 수 없는 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다가오는 8월 15일, 한반도의 분단은 71년이 된다.

<표 2> 남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1990~2013년)

남북 한별	산업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한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8.4	7.5	7.3	6.5	6.2	5.9	5.5	5.0	4.7	4.8	4.4	4.1	3.8	3.5	3.5	3.1	3.0	2.7	2.5	2.6	2.5	2.5	2.5	2.3	
	광공업	28.0	27.9	26.9	27.0	27.8	28.3	27.2	27.2	27.8	28.3	29.3	27.8	27.4	26.9	28.7	28.5	28.0	28.4	28.8	28.9	30.9	31.6	31.2	31.2	
	광업	0.2	0.2
	제조업	27.3	27.2	26.4	26.5	27.3	27.8	26.8	26.8	27.4	28.0	29.0	27.6	27.2	26.7	28.5	28.3	27.8	28.2	28.6	28.7	30.7	31.4	31.0	31.0	
	경공업	5.3	5.3
	중화학공업	25.7	25.8
	전기·가스·수도업	2.2	2.1	2.3	2.3	2.3	2.3	2.3	2.3	2.6	2.8	2.8	2.9	2.8	2.8	2.6	2.6	2.5	2.4	1.7	2.0	2.2	2.0	2.1	2.3	
	건설업	9.5	10.2	9.7	9.7	9.1	9.0	9.1	9.1	7.7	6.7	6.0	6.1	6.1	6.8	6.6	6.4	6.3	6.2	5.8	5.7	5.1	4.8	4.8	4.9	
	서비스업	51.9	52.3	53.9	54.4	54.5	54.6	55.9	56.4	57.3	57.4	57.5	59.0	59.9	59.9	58.5	59.4	60.2	60.3	61.2	60.7	59.3	59.1	59.5	59.3	
	정부	10.5	10.6
기타	49.0	48.5	
북한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27.4	28.0	28.5	27.9	29.5	27.6	29.0	28.9	29.6	31.4	30.4	30.4	30.2	27.2	26.7	25.0	23.3	21.2	21.6	20.9	20.8	23.1	23.4	22.4	
	광공업	40.8	38.0	33.8	32.9	31.4	30.5	28.0	25.5	25.6	25.6	25.4	26.0	25.7	26.8	27.2	28.9	29.6	31.3	34.6	34.8	36.3	36.5	35.9	35.7	
	광업	9.0	9.0	9.2	8.2	7.8	8.0	7.1	6.7	6.6	7.3	7.7	8.0	7.8	8.3	8.7	9.9	10.2	11.4	12.1	12.7	14.4	14.6	14.0	13.6	
	제조업	31.8	29.0	24.6	24.7	23.6	22.5	20.9	18.8	19.0	18.3	17.7	18.1	18.0	18.5	18.5	19.0	19.5	20.0	22.5	22.1	21.9	21.9	21.9	22.1	
	경공업	6.2	6.2	6.3	6.8	7.0	6.8	6.9	6.5	6.4	6.1	6.5	6.7	6.9	7.0	6.7	6.7	6.7	6.5	6.7	7.0	6.6	6.5	6.7	6.8	
	중화학공업	25.6	22.7	18.3	17.9	16.6	15.7	14.0	12.3	12.6	12.2	11.2	11.3	11.0	11.5	11.8	12.4	12.8	13.5	15.8	15.2	15.3	15.4	15.2	15.4	
	전기·가스·수도업	5.1	5.0	5.1	4.8	4.8	4.8	4.3	4.3	4.2	4.5	4.8	4.8	4.4	4.5	4.4	4.3	4.5	4.6	3.4	4.1	3.9	3.1	3.5	4.1	
	건설업	8.6	8.2	9.1	8.5	6.3	6.7	6.4	6.3	5.1	6.1	6.9	7.0	8.0	8.7	9.3	9.6	9.0	8.8	8.3	8.0	8.0	7.9	7.8	7.8	
	서비스업	18.0	20.9	23.5	25.9	27.9	30.3	32.3	35.0	35.6	32.4	32.5	31.8	31.6	32.8	32.3	32.2	33.6	34.1	32.2	32.1	31.0	29.4	29.4	30.0	
	정부	11.0	13.0	15.0	16.8	18.6	20.7	22.5	25.1	25.3	22.8	22.6	22.2	22.0	22.9	22.6	22.6	23.7	24.0	22.8	22.8	22.4	21.2	21.3	21.7	
기타	7.0	7.9	8.6	9.0	9.3	9.6	9.7	9.9	10.3	9.6	9.8	9.7	9.7	9.8	9.7	9.6	9.8	10.1	9.4	9.3	8.6	8.1	8.2	8.4		

* 출처: (남북)한국은행(<http://ecos.bok.or.kr>>국민계정)³⁶⁾

36)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별 생산액의 비중으로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에 의해 추정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철규. “재벌의 지대추구와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1992).
- 김종선 외.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2010).
- 문성민.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서울: 한국은행, 2014.
- 박승록. 『한국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1.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시연. “국내 대기업의 내부 자금 유보와 자산 구성 변화에 대한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제23권 4호(2014).
- 이영훈.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지속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2015).
- 차상미.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 본부(2014).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경제주평』 14-42호(2014).

해외문헌(번역본 포함)

- Aoki, Kim and Okuno-Fujiwara.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laredon Press, 1997.
- Baker. John et al. *Equality: From Theory to Action* (London: Palgrave Macmilan, 2004).
- Arghiri, Emmanuel. *Appropriate or underdeveloped technology?* New York: Wiley, 1982.
- Burke, Lauren. “Vicious Cycle or Business Cycle?: Explaining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after the Troubles.” *CrissCross*, vol. 2. no. 2(2014).
- Cannon, David . “Northern Ireland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eace: Neoliberalism and the end of the Troubles,” Dissertation for Ph.D in University of Adelaide(2003).
- Coulter, Colin. “Under Which Constitutional Arrangement would you prefer to be unemployed?: Neoliberalism, the Peace Process, and the Politics of Class in Northern Ireland,”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7(2014).

- Maney, Gregory. "Variations in the Cause of Ethnonationalist Violence: Northern Ireland, 1969~72."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16. no. 1(2005).
- Nolan, Paul. *Northern Ireland Peace Monitoring Report*. no.1(2012).
- Pugh, Michael. "The Political Economy of Peacebuilding: A Critical Theory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0. no. 2(2005)
- Richmond, Oliver. "The Problem: understanding the 'Liberal Peace'."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vol. 6. no. 3(2006).
- "The Northern Ireland Peace Agreement"
- OECD.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4).
- Selucky, Radoslav.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 The Portland Trust. "Economics in Peacemaking: Lessons from Northern Ireland." May, 2007.
- Thompson, Jhon. "The Plural Society Approach to Class and Ethnic Political Mobiliz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6(1983).
- _____. "Deprivation and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1992-1985."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3. no.4(1989).
- Todd, Jennifer and Ruane, Joseph. "The Dynamics of Conflict: Political Economy, Equality, and Conflict." *IBIS Working Paper*. no. 110(2011).

온라인 자료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산업구조 및 생산성"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6>

키프로스 분쟁

-변수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상현
군사연구소

I. 서론

키프로스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¹⁾으로 터키 남쪽으로 75km, 그리스와는 400km(본토와는 800k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양교통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기원전 3000년경에 도시국가가 번성했고 기원전 13세기에는 페니키아인의 지배를 받으며 해상무역의 거점이 되었다. 키프로스는 기원후부터 그리스, 로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9세기 말에는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기도 했다. 그리스와 터키는 오랜 숙적관계로 뿌리 깊은 갈등을 겪어 왔으나 19세기 전반까지 키프로스 섬 주민들에게는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1> 키프로스 지도

1) I.N. Vogiatzakis . G.Pungetti . A.M. Mannion(ed.), *Mediterranean Island Landscapes: Natural and Cultural Approaches*(Berlin: Springer, 2008), p. 6.

키프로스는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 이후 (그림1)과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의 분단 상황은 4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키프로스 내에 상존하는 두 개의 공동체 즉 터키계 주민과 그리스계 주민, 이들의 배후에 있는 그리스, 터키의 갈등관계로 촉발된 키프로스 문제는 지중해의 대표적인 ‘장기화된 사회갈등 사례’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²⁾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식별된 키프로스 분쟁의 주요 변수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이 갈등을 생성하고 폭발, 확장, 동결시키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갈등이 만들어진 요인에 대해 역사적 배경을 통해 짚어보고, 제3장에서는 키프로스 양개 공동체의 내적 갈등으로 촉발되어 터키와 그리스의 개입으로 확장된 갈등 폭발 및 확장, 40년 간 동결된 과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키프로스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키프로스 문제가 가지는 시사점을 한반도 통일문제와 연관지어 일고하려 한다.

II. 갈등 요인의 생성

갈등의 촉발은 두 개의 국가.집단.단체 또는 그 이상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괴리감, 집단적 이기심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간의 갈등은 국가 목표와 이익에 배치될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다. 국제정치는 잠재적으로 관리되는 폭력에 의해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 마치 넘치기 직전의 그릇 속의 물과 같다.



<그림 2> 키프로스 분쟁의 주요 변수

2) Edward E. Azar,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Theory and Cases*(Dartmouth: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0), p. 5.

키프로스 분쟁은 키프로스 섬에서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과 터키계 주민 사이에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다. 1974년 터키군대가 키프로스의 북부지역을 점령한 이후 남과 북이 분단되었는데, 이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분쟁은 2개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³⁾ 키프로스 분쟁도(그림2)와 같이 민족구성, 언어, 종교, 역사적 배경, 국내정치, 강대국의 개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리스와 터키라는 변수에 의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는 9,251km²면적(경기도와 유사)과 11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작은 나라이다. 키프로스 주민의 약 20%인 터키계가 거주하고 있는 북키프로스와 주민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남키프로스 분단되었다. 그런데 이들을 둘러싼 민족, 언어, 역사적, 종교적 상황과 분단 대상자 자체의 국내정치 상황은 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프로스에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키프로스 국내정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도 키프로스 분쟁 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키프로스가 분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데에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 동쪽으로 진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과거 이집트,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 제국 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다.⁴⁾ 현재 남키프로스에 거주하는 그리스계 주민들은 초기 그리스 이주민들이며, 북키프로스의 터키계 주민들은 1571년 오스만 제국 지배 당시 이주 정착한 주민들이다.⁵⁾ 그리스는 1830년 자국의 독립 이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키프로스와 병합을 주장해 왔으며, 그로 인해 터키와 갈등을 빚었다.⁶⁾

3) HIIK. *Conflict Barometer 2014*(Heidelberg:HIIK, 2015), p. 18.

4) 키프로스는 고대부터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중해 패권세력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내에 그리스계 주민들의 다수로서 지위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Andrews, Peter Alford (ed.), *Ethnic Groups in the Republic of Turkey*(Wiesbaden: Dr. Ludwig Reichert Verlag, 1989), pp. 17-18 ; Andrews, Peter Alford (ed.), *Ethnic Groups in the Republic of Turkey: supplement and index*(Wiesbaden: Dr. Ludwig Reichert Verlag, 2002), p. 9.

5) 오스만 제국은 키프로스 정복이후 이 지역에 약 20,000명의 이슬람교도를 이주시켰다. 이들에게는 토지가 주어졌고, 각종 혜택이 부여되었다. 이들은 키프로스의 오스만 공동체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우대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그리스계 주민들은 오스만 정부에 대항하는 폭동과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그 때마다 오스만 제국은 가혹한 탄압으로 이를 진압했다. B. Rogerson, "Ottoman Conquest of the island of Cyprus", *CYPRUS*(UK: Cadogan Books, 1994), pp. 24-29.

6) 19세기 초 그리스에서 비밀혁명단체인 헤타리아 필리케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오스만 제국은 키프로스의 그리스인들이 이 단체에 가입할 것을 우려해, 당시 키프로스의 대주교 키프리아노스와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반정부 혐의를 씌워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를 계기로 키프로스 그리스계 주민들은 터키를 그들의 적으로 간주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터키에 대항하려는 민족의식을 배양했다. Eric Soisten, "Cyprus: a country study"FRDLC(1991)<http://ecweb2.loc.gov/frd/cs/cshome.html>(검색일:2016.4.29)

그러나 당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면서 흑해와 지중해로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키프로스 임차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으로 키프로스는 영국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⁷⁾ 이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이 독일과 동맹을 맺으면서 패전국이 되었고, 승전국 영국은 1923년 로잔조약을 통해 키프로스를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만들었다.⁸⁾ 이후 키프로스는 그리스계, 터키계, 영국의 3자 대립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30년 후반에 이르면서 그리스계의 자치 정부 수립 요구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지만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영국은 수에즈 운하 등 인근 해상 교통로 확보의 전진기지로서 키프로스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키프로스 지배 상황을 포기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 시기 그리스, 터키, 영국은 키프로스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그리스와 합병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자치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그리스계 주민, 그리스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키프로스 섬의 분할을 주장하는 터키계 주민, 키프로스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영국의 입장 등이었다.⁹⁾ 특히 그리스는 유엔에서도 키프로스 자치 문제를 수시로 제기하고 영국과 터키 양국에 대해 각종 테러 및 공격을 일삼는 등 키프로스 독립 및 그리스 합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1950년대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갈등은 무력 충돌 수준으로 격화되었다.¹⁰⁾ 이에 영국과 미국 등이 중재에 나섰다 1959년 취리히-런던협정¹¹⁾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1960년 키프로

7) 영국은 이스탄불을 통해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수에즈 운하를 비롯한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키프로스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이때부터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간에 부분적인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Rebecca Bryant, *Educating Ethnicity: On the Birth and Reproduction of the Cypriot Ethnic Conflict*(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8); Paschalis M. Kitromilides, *Enlightenment, Nationalism, Orthodoxy*(Varorium, 1994); Niyazi Kizilyurek, "From Traditionalism to Nationalism and Beyond" *Cyprus Review* 5, No.2(1993).

8) 1914년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과 동맹을 맺자, 영국은 키프로스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어서 영국은 그리스의 참전을 대가로 키프로스의 할양을 제의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국내정치를 이유로 참전을 거절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전 유럽을 휩쓸면서 종료 무렵에는 그리스도 참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지만 영국이 전에 제안했던 키프로스 할양안은 이미 철회되었다. 전후 그리스는 세브르 조약(1920년)을 통해 기존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이스탄불 일부와 이스미르 항 등을 합병했다. 이후 그리스는 세브르 조약으로 넘겨받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터키와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는 터키에게 패배해 할양받은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했다. 로잔조약(1923년)을 통해 터키는 키프로스에 대한 주권을 포기했고, 결국 이 섬은 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Nikolas Kyriakou & Nurcan Kaya, "Minority rights: Solutions to the Cyprus conflict",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Report*(2011), p. 8.

9) Alexis Rappas, *CYPRUS IN THE 1930s: British Colonial Rule and the Roots of the Cyprus Conflict*(London: I.B. Tauris, 2014), pp. 35-39.

10) 1955년에는 급진파인 키프로스 민족해방 조직(EOKA)이 영국군과 터키계 주민에 대해 격렬한 테러 공격을 실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Papadakis Yiannis.Nicos Peristianis&Gisela Welz, *Divided Cyprus: Modernity, History and an Island in Conflict*(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p. 2.

11) The London and Zurich Agreements for the constitution of Cyprus started with an

스는 마카리오스 대주교를 대통령으로 한 독립국가를 건설했다. 이후 그리스계와 터키계 간의 권력배분이 이루어졌다. 이 권력배분은 다수계인 그리스계가 대통령직을 맡고, 터키계가 부통령을 맡는 식이었다.¹²⁾

표면상으로는 하나의 독립국인 키프로스 공화국이 탄생했고 영국의 지배는 종료되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리스, 터키, 영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¹³⁾ 독립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다수를 점하던 그리스계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합병을 추진하고, 터키계와 권력배분 약속을 담은 헌법 13개 조항의 개정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키프로스의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키프로스는 분단으로 치달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Ⅲ. 갈등의 폭발 . 확장 . 동결과정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프로스는 1960년에 그리스정교회 대주교였던 마카리오스 3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독립한 뒤, 유엔에 가입하며 정식으로 독립국가 되었다. 그러나 1963년 마카리오스 대통령이 터키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렇게 되자 터키계 주민들은 키프로스 공화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면서 12월 내전이 발발했다. 이 내전으로 터키계 주민 1,000명과 그리스계 주민 200여명이 사망했다. 유엔안보리는 1964년 키프로스 정부의 요청으로 이 지역에 약 7,0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 양측 주민을 분리해 강제적으로 평화를 조성했다.¹⁴⁾ 그러나 공식적인 휴전협정이 부재한 상태

agreement on the 19 February 1959 in Lancaster House in London, between Turkey, Greece, the United Kingdom and Cypriot community leaders (Archbishop Makarios III for Greek Cypriots and Dr. Fazıl Küçük for Turkish Cypriots). On that basis, a constitution was drafted and agreed together with two further Treaties of Alliance and Guarantee in Zurich on 11 February 1959. Cyprus was accordingly proclaimed an independent state on 16 August 1960. Following the failure of the Agreement in 1963 and subsequent de facto military partition of Cyprus into Greek-Cypriot and Turkish-Cypriot regions, the larger Greek-Cypriot Region, controlled by the Cypriot Government, claims that the 1960 Constitution basically remains in force, whereas the Turkish-Cypriot region claims to have seceded by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the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in 1983.

12) Ulrich Schnekenner, "Making Power-Sharing Work: Lessons from Successes and Failures in Ethnic Conflict Regul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39, No.2(2002), p. 211; Sumantra Bose, *Contested Lands: Israel-Palestine, Kashmir, Bosnia, Cyprus and Sri Lanka*(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 75.

13) Klearchos Kyriakides, *The SBAs and British Defence Policy Since 1960, in 'Britain in Cyprus'*, Faustmann & Peristianis, Peleus, Band 19, 2006.

14) Muzaffer Yilmaz, "The Cyprus Conflict and the Question of Identity", *Turkishweekly*(2006. 3.14), pp.12.

(<http://www.turkishweekly.net/2006/03/14/article/the-cyprus-conflict-and-the-question> 검색일:2016.4.27.)

에서 이들이 양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완전하게 봉쇄하는 것은 어려웠다.¹⁵⁾

1974년 7월 키프로스 국내의 그리스계 키프로스 군 장교들이 그리스 군사 정권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터키계와 그리스계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려던 마카리오스 3세 대통령을 몰아내는 사건을 일으켰다.¹⁶⁾ 그리고 이들 반란군은 친그리스 성향의 니코스 삼프손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결국 이러한 키프로스 내 그리스계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는 인접한 터키를 자극했다. 결국 파흐리 코루튀르크(Fahri Korutürk) 당시 터키 대통령은 키프로스 내 터키계 주민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키프로스 제압을 명령하면서 터키군 병력이 곧바로 키프로스를 침공했다.

한편 터키가 키프로스를 침공하자 그리스계 키프로스 반란군 세력들도 터키군의 침공에 맞서 저항했다. 그리스 역시 그리스계 키프로스 반란군 세력들을 지원하고자 공군과 해군을 파견하면서 키프로스는 터키와 그리스, 키프로스 간 전쟁터로 돌변했다. 한편 터키계 주민들은 자체적인 민병대를 조직해 침공한 터키군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리스계를 공격했고 이에 그리스계 주민들도 민병대를 만들어 터키계 주민들에게 보복했다. 전쟁은 군과 민간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쟁 시작 2일도 안되어 터키군은 키프로스 북부 전역과 니코시아 일부 지역을 장악했고 그리스계 키프로스 반란군은 남부로 후퇴했다. 더욱이 막강한 터키군의 공세에 키프로스 그리스계 반란군 세력 지원에 나섰던 그리스군도 그리스 본국 기지키스 군사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고 키프로스에서 병력을 철수시켰다. 전쟁은 터키군의 완전한 승리로 종료되었다. 이 전쟁으로 터키계 주민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리스계는 4,500-6,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¹⁷⁾

이 전쟁으로 그리스와 터키 모두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그리스는 이 전쟁에서의 군사적 패배로 키프로스 분쟁에 개입했던 기지키스 군사 정권이 붕괴되었다. 반대로 터키는 키프로스 전쟁 개입의 성공으로 군부의 힘이 점차 강해졌다. 이로 인해 6년 뒤인 1980년 케난 에브렌(Kenan Evren) 장군이 이끄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기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1983년에는 터키계 주민이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

15) David W. Ziegler, *War, Peace and International Politics*(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1), pp. 318-319.

16) W. Mallinson, *A Modern History of Cyprus*(London: I.B. Tauris, 2009), p. 2; Andreas Constandinos, "Britain and the Cyprus Crisis of 1974: Responsibility without Power", *LSE*(2007. 6. 14), p. 8.

17) Oberling, Pierre. *The road to Bellapais* (1982), *Social Science Monographs*, ([https://books.google.com/books?ei=EMbjTcnNDs_z-gbg-NXSBg&ct=result&id=XIK6AAAAlAAJ&dq=pierre+oberling+364&q=According+to+official+records%](https://books.google.com/books?ei=EMbjTcnNDs_z-gbg-NXSBg&ct=result&id=XIK6AAAAlAAJ&dq=pierre+oberling+364&q=According+to+official+records%20) 검색일:2016.5.6.)

했다. 그러나 유엔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의 독립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밝혔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리스와 터키 양국은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1988년에는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키프로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까지도 양측 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그 후 그리스와 터키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으며, 키프로스 내에서는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 간의 국가체제에 대한 이견으로 분단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도 그리스와 터키의 갈등관계는 키프로스의 긴장 고조로 이어졌다. 특히 키프로스의 경우 그리스 또는 터키 본토에 들어서는 정권의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에게 해 분쟁 등 주변의 분쟁 상황의 영향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양국의 적대감은 NATO와 EU 가입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1997년 12월 유럽연합이 터키의 가입을 불허하자 터키는 유럽연합과 정치적 대화 단절은 물론 유럽연합 구매 동결, 북키프로스 병합 등을 감행해 키프로스 분위기가 악화된 바 있다.¹⁸⁾ 한편 그리스가 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남키프로스에 군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터키와 그리스의 대립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과 북부의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사이에는 정전감시를 위해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있다. 이 두 나라를 나누는 폭 100m의 벽이 완충지대로서 동서로 가로놓여 있으며, 수도 니코시아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북키프로스에 주둔하고 있는 터키군에 대응해 그리스군이 키프로스 공화국을 전면적으로 지원, 1996년에는 완충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¹⁹⁾ 1998년에는 그리스군과 터키군이 키프로스에 전투기를 발진시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²⁰⁾

그리스와 터키 양국은 키프로스 사태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는 터키군의 철수와 연방 국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터키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과 국가 연합을 내세우고 있다. 2002년 유럽연합은 키프로스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 동시 가입 허용을 조건으로 스위스 식의 연방제를 제안했다. 2004년 4월 그리스계의 남부와 터키계의 북부 키프로스에서 이 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각각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터키계는 2/3이상이 찬성했지만 그리스계는 2/3가 반대하면서 유럽연합이 제안한 통합안은 무산되었

18) The Cardiff European Council, *REGULAR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URKEY'S PROGRESS TOWARDS ACCESSION*(1998) p. 6; European Union Center of North Carolina, "Turkey's Quest for EU Membership", *EU Briefings*(2008. 3), pp. 2-4.

19) Unarmed National Guard soldier shot and killed inside the United Nations buffer zone. (June 4, 1996)http://kypros.org/Cyprus_Problem/soldier.html(검색일:2016.5.6.)

20) S/1998/1149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in Cyprus<http://www.cyprusun.org/?p=2862>(검색일:2016.5.6.)

다.²¹⁾ 그러나 1997년 이미 EU가입 대상국으로 지정²²⁾되었던 남부 키프로스 공화국의 EU가입은 2004년 5월 승인되면서 남키프로스 공화국은 EU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2006년 6월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를 논의하자 남키프로스는 터키가 사전에 남키프로스를 인정하고 터키의 공항과 항구를 남키프로스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는 유럽연합이 북키프로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남키프로스의 주장을 일축했다.²³⁾ 2008년 9월에는 남키프로스 크리스토포아 대통령과 북키프로스 탈라트 대통령이 통일협상을 위한 만남을 가졌으나 권력 분배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2009년에는 양측이 연례 반복해 오던 훈련을 중단하는 등 평화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졌다.²⁴⁾ 그러다가 2010년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주선으로 3자 회담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²⁵⁾ 2011년 터키는 남키프로스의 지중해 천연 가스 탐사계획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북키프로스와 지중해 가스 및 석유 자원 탐사 조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터키와 키프로스의 관계는 악화되었다.²⁶⁾

IV. 쟁점과 해결전망

키프로스 분단 이후 통일협상은 1977년 유엔사무총장 발트하임 중재로 시작된 이래, 1986년 협상, 그리고 1988년, 1989년, 1990년 모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어졌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남북 간의 주요 쟁점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통일국가 형태이다. 이 문제는 통일협상 과정에서 남북 간에 입장차이가 가장 컸던 핵심쟁점이었다. 그리스계는 연방제 통일국가에 대해 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민권이 인정되고, 하나의 주권을 갖는 통일국가를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 단일한 국가로 대표되는 단일한 국가공동체 구성을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²⁷⁾ 반면 터키계는 국제적으로는 통일국가가 단일한 법인격을 가지되, 키프로스에서

21) Muzaffer Yilmaz, "The Cyprus Conflict and the Question of Identity", Turkishweekly(2006. 3.14), p.13.
(<http://www.turkishweekly.net/2006/03/14/article/the-cyprus-conflict-and-the-question> 검색일:2016.5.6.)

22) T. Diez, "The European Union and the Cyprus Conflict"(2002), p. 256.

23) HIIK. *Conflict Barometer 2006*(Heidelberg:HIIK, 2007), pp. 12-13.

24) HIIK. *Conflict Barometer 2009*(Heidelberg:HIIK, 2010), p. 13.

25) HIIK. *Conflict Barometer 2010*(Heidelberg:HIIK, 2011), p. 14.

26) HIIK. *Conflict Barometer 2011*(Heidelberg:HIIK, 2012), p. 18.

27) 통일국가를 구성하는 각 구성주는 단일한 국가 공동체 내의 두 지역에 존재하는 두 개의 공동체 사회로서 통일국가 내부적으로만 정치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질 뿐이며, 단일한 국가공동체가 국가주권을 가지고 국제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합중국이나 영국 등과 같은 연방제 국가 형태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권은 각 구성국가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국가형태를 선호했다. 일반적인 의미의 연방국가라기 보다는 연합 형식의 통일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특히 각 구성주는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상호 독자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²⁸⁾

터키의 군사개입으로 발생한 거주민들의 강제 이주로 인한 재산권문제와 터키의 군사개입 당시 희생된 실종자 문제는 양측의 통일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사항이기도 하다. 그리스계는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재산권을 상실하고 강제로 이주당한 주민들에게 원래의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터키계는 현재의 재산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1964년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들의 유혈충돌과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현재까지 사망자나 실종자의 정확한 숫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스계는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으로 키프로스 주민 1,500여명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터키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1964년 당시 그리스계에 의해 희생된 터키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소수자 보호 문제는 항상 양측의 대화에서 이슈가 되었다.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계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남키프로스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계 주민들의 인권보호는 양계 공동체의 뜨거운 감자이다. 게다가 키프로스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론파 기독교도 등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문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그 이외에도 그리스계는 북키프로스에 주둔하고 있는 터키군의 철수 문제를 협상 때마다 주요 안건으로 제기하고 있다.

키프로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통일을 위해서는 그리스계의 양보가 일정부분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07년 유엔평화유지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리스계 주민 57%가 키프로스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했고, 터키계도 70%가 비관적인 응답을 하는 등²⁹⁾ 내부 해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또한 키프로스 문제에 주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터키의 강경한 입장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터키가 남키프로스를 인정하고 남북 키프로스 협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터키는 여전히 북키프로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군대철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키

28) 터키계는 국가주권에 관해서도 각 구성주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며 이와 분리된 새로운 통일국가가 주권을 가지는 것을 반대했다. 만약 새로운 통일국가에 주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어느 일방 구성주가 다른 구성주를 지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구성주의 독립국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은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29) UNFICYP, *The Blue Beret. The UN in Cyprus. An Inter-Communal Survey*. Special Edition(Nikosia, 2007).

프로스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최근 키프로스 분쟁은 키프로스의 IMF 구제금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키프로스의 금융위기는 러시아의 경제 이권과 독일의 원칙적 구제금융 지원방식의 충돌을 만들어냈다.³⁰⁾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키프로스 분쟁을 외부지역으로 확대 심화시킬수도 있으며, 주변국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현재는 저강도 분쟁으로 동결된 상태로 남아있다. 키프로스 분쟁 해결에는 그리스와 터키 간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그리스와 터키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 현안은 상당히 많다. 그리스와 터키 모두 NATO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럽연합에 가입한 그리스와 유럽 연합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터키의 이해관계가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수도 니코시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통로가 24시간 개방되어있다.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계냐 터키계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 키프로스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다. 키프로스 분쟁 해결의 희망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V. 결 론

키프로스 분쟁은 오랜 외세 지배과정 속에서 들어난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 그로 인해 형성된 내부 공동체의 갈등이 내재된 제반 요소들에 의해 폭발되었고, 터키의 군사적 개입, 그리스의 배후 조종 등으로 인해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갈등은 이제는 저강도의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쟁 동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리스와 터키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키프로스 국내 정치 및 여타 안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다.

키프로스 문제의 안정적 관리 및 해결은 그리스와 터키의 입장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터키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키프로스에 대한 객관적 입장 표명은 양국의 입장 정리에서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또한 그리스의 키프로스 병합.키프로스의 본토와의 합병 추진은 키프로스 통일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 또한 터키나 북키프로스 입장에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2014년 들어 키프로스의 경제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키프로스를 안

30) Hadjipapas, Andreas; Hope, Kerin (14 September 2011). "Cyprus nears €2.5bn Russian loan deal". Financial Times. Retrieved 13 March 2012.

정권으로 분류하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키프로스가 IMF와 EU,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대외채권단 등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기관들이 제시한 공기업 민영화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원도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프로스 분단은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남북 키프로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연방제 국가 창설에 합의하며 양측이 결정적인 화해무드를 조성했으나 신뢰구축 단계에서 세부사항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엇갈리면서 깨지게 되었다. 남북 키프로스는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재판소가 1974년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에 대한 책임으로 터키 정부가 키프로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것에 대해 터키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양측 관계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중해 가스관 연결사업도 남북 키프로스 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편, 키프로스의 양측 공동체는 국경위원회를 설치해 각 구성주의 경계를 확정하고 현재 거주지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영토조정을 규정하려 했다. 경계의 확정을 통한 영토조정문제도 통일협상 과정 중 주요 쟁점이었다.³¹⁾ 국경위원회의 설치에 양측이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의 매우 중요한 행보일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한반도 DMZ 관리 방안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국경위원회 설치 문제의 한반도 분단 상황에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1)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제안한 아난 안에 의하면, 각 구성주의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구성주 대표 3명과 외국인 1명 이상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국경위원회가 키프로스 전체 영토에 있어서 구성주 경계를 확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자연적인 지형과 재산권 관계를 고려해 최종적 경계를 정하며 국경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annanplan.agrino.org/Annan_Plan_MARCH_30_2004(검색일:2016.5.6.)

참고문헌

- Andreas Constandinos, "Britain and the Cyprus Crisis of 1974: Responsibility without Power¹", *LSE*(2007. 6. 14).
- Andreas Hadjipapas & Kerin Hope, "Cyprus nears €2.5bn Russian loan deal", *Financial Times*(14 September 2011).
- Andrews, Peter Alford (ed.), *Ethnic Groups in the Republic of Turkey*. Wiesbaden: Dr. Ludwig Reichert Verlag, 1989.
- Andrews, Peter Alford (ed.), *Ethnic Groups in the Republic of Turkey: supplement and index*. Wiesbaden: Dr. Ludwig Reichert Verlag, 2002.
- Alexis Rappas, *CYPRUS IN THE 1930s: British Colonial Rule and the Roots of the Cyprus Conflict*(London: I.B. Tauris, 2014).
- B. Rogerson, "Ottoman Conquest of the island of Cyprus", *CYPRUS*(UK: Cadogan Books, 1994).
- David W. Ziegler, *War, Peace and International Politics*(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1).
- Edward E. Azar,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Theory and Cases*(Dartmouth: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0)
- European Union Center of North Carolina , "Turkey's Quest for EU Membership", *EU Briefings*(March 2008).
- IIK. *Conflict Barometer 2006*(Heidelberg:IIK, 2007).
- IIK. *Conflict Barometer 2009*(Heidelberg:IIK, 2010).
- IIK. *Conflict Barometer 2010*(Heidelberg:IIK, 2011).
- IIK. *Conflict Barometer 2011*(Heidelberg:IIK, 2012).
- IIK. *Conflict Barometer 2014*(Heidelberg:IIK, 2015)
- I.N. Vogiatzakis . G.Pungetti . A.M. Mannion(ed.), *Mediterranean Island Landscapes: Natural and Cultural Approaches*(Berlin: Springer, 2008)
- Nikolas Kyriakou & Nurcan Kaya, "Minority rights: Solutions to the Cyprus conflict",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Report*(2011).
- Rebecca Bryant, "Educating Ethnicity: On the Birth and Reproduction of the Cypriot Ethnic Conflict", University of Chicago, 1998.
- Paschalis M. Kitromilides. *Enlightenment, Nationalism, Orthodoxy*, Varorium, 1994.

- Niyazi Kizilyurek, "From Traditionalism to Nationalism and Beyond" *Cyprus Review* 5, No.2(1993).
- Papadakis Yiannis.Nicos Peristianis&Gisela Welz, *Divided Cyprus: Modernity, History and an Island in Conflict*(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 Ulrich Schnekener, "Making Power-Sharing Work: Lessons from Successes and Failures in Ethnic Conflict Regul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39, No.2(2002).
- Sumantra Bose, *Contested Lands: Israel-Palestine, Kashmir, Bosnia, Cyprus and Sri Lanka*(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Klearchos Kyriakides, *The SBAs and British Defence Policy Since 1960, in 'Britain in Cyprus'*, Faustmann & Peristianis, Peleus, Band 19, 2006.
- T. Diez, "The European Union and the Cyprus Conflict"(2002).
- The Cardiff European Council, *REGULAR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URKEY'S PROGRESS TOWARDS ACCESSION*(1998).
- UNFICYP, *The Blue Beret. The UN in Cyprus. An Inter-Communal Survey. Special Edition*(Nikosia, 2007).
- W. Mallinson, *A Modern Histoy of Cyprus*(London: I.B. Tauris, 2009).
- Eric Soisten, "Cyprus: a country study"FRDLC(1991)
<http://lecweb2.loc.gov/frd/cs/cshome.html>(검색일:2016.4.29.).
- Muzaffer Yilmaz, "The Cyprus Conflict and the Question of Identity", *Turkishweekly*(2006. 3.14),
<http://www.turkishweekly.net/2006/03/14/article/the-cyprus-conflict-and-the-question> 검색일:2016.4.27.)
- Oberling, Pierre. *The road to Bellapais* (1982), Social Science Monographs,
[\https://books.google.com/books?ei=EMbjTcnNDs_z-gbg-NXSBg&ct=result&id=XIK6AAAIAAJ&dq=pierre+oberling+364&q=According+to+official+records
 %(검색일:2016.5.6.)
- Unarmed National Guard soldier shot and killed inside the United Nations buffer zone. (June 4, 1996)http://kypros.org/Cyprus_Problem/soldier.html
 (검색일:2016.5.6.)
- S/1998/1149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in Cyprus<http://www.cyprusun.org/?p=2862>(검색일:2016.5.6.)
- unannanplan.agrino.org/Annan_Plan_MARCH_30_2004(검색일:2016.5.6.)

Session II.

DMZ의 위험한 평화

김일한 동국대

중무장지대의 비무장 민간인들: 경기도 민통선마을
같은 평화 · 강요된 저발전의 기억과 경험

박형준 동국대

중무장지대가 된 완충지대1(동아일보)
동아일보에 보도된 남북한 군사총돌

이창희 동국대

김용현 동국대

중무장지대가 된 완충지대2(동아일보&로동신문)
노동신문과 동아일보로 바라보는 남북한 DMZ군사총돌

최용환 경기연구원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남북공동수계를 중심으로

중무장지대의 비무장 민간인들: 경기도 민통선마을

간힌 평화·강요된 저발전의 기억과 경험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I. 서론

한반도 분단의 기록은 질적, 양적으로 많이 누적되어왔지만, 유독 민통선마을에 대한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을에 대한 냉전사적 기록이 희소한 만큼 마을주민들의 생애사나 일상사는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전쟁을 겪은 이후 민통선이라는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았고, 현재도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분단과 냉전의 기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¹⁾

민통선마을(민북마을)은 1954년 2월 3일 귀농선(歸農線, 민간인출입통제선의 효시)이 획정되면서 마을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마을이 생성과 해제된 시점은 지역마다 다르다. 경기도 민통선마을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에 분포하고 있는데, 김포시 월곶면과 하성면의 14개 마을은 1954년 구획 당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파주시(15개)와 연천군(29개)의 마을은 각각 3개와 1개 마을이 남아 있을 뿐이다.²⁾

기록된 역사는 당시 사건이나 인물의 경중과 상관없이 한반도 현대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주체로 거듭난다. 실존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역사가 된다. 여기 민통선마을에, 살아있으며 온전한 기억과 경험이 역사로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과거가 있다. 존재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역사로서 민통선과 그 마을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논문은 주목하고자 한다.

II. 민통선마을

1. 중무장지대의 비무장 민간인마을³⁾

민통선마을은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희귀의 시공간이다. 군사적 완충지이자 선전

-
- 1)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냉전과 분단의 일상을 다룬 유일한 논문으로는, 김일한,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16). 참조.
 - 2) 민통선마을은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까지 휴전선을 따라 구획되어 있다. 논문은 그중에서 미해제된 경기도의 18개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냉전과 분단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억을 기록할 것이다.
 - 3) 민통선마을에 정보는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12를 참조했다.

촌이며 부족한 식량을 생산하는 농토, 조성목적 만큼이나 다양한 마을과 주민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다.

비무장지대는 공식적으로는 ‘무장하지 않은 지역(DMZ, Korean Demilitarized Zone)’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중무장지대이다.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으로부터 약 25km 남쪽에 위치한 공간에 민간이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민통선마을이라고 부른다.⁴⁾ 중무장지대의 ‘위험한 평화’가 오늘까지 지속되는 곳이 바로 민통선마을이다.

민통선마을은 역사적으로 123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1954년 2월 인천광역시 강화군(당시 경기도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당시 김포군), 파주시(당시 파주군)일원에 62개(자립안정촌 61개, 비무장지대촌 1개) 마을이 형성되면서 남북한 접경지 전역에 민통선마을 구획되었다.⁵⁾ 이후 경제적, 군사적 이유로 민간인통제선이 조정되면서 2012년 현재는 인천시, 기도, 강원도 3개 광역시·도, 6개 시·군, 13개 읍·면에 걸쳐 총 54개의 민통선마을이 남아 있다.

민통선마을은 설립목적과 유형에 따라 자립안정촌, 전략촌(재건촌, 통일촌)으로 구분한다. 자립안정촌은 107개로 전체 민통선마을의 87%를 차지한다. 군(軍)의 통제가 비교적 약한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원주민과 출입 경작자를 포함한 이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마을출입을 제외하면 일반 농촌마을과 다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성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민통선(귀농선)설정과 동시에 김포시 월곶면, 하성면 14개 마을을 포함해 자연촌락 61개 마을이 민통선마을에 포함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군 작전상 민간인 출입 허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1954년 11월 구획된 연천군 백학면 백령1리 등 46개의 마을이 이에 해당된다.

전략촌은 재건촌과 통일촌으로 구분되는데,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고, 지역별 집단방위체제를 강화하며, 유희농지를 개간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1968년부터 1973년까지 건설된 10개의 재건촌과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해 1973년에 2개의 통일촌이 추가로 건설되었다.

통일촌은 1973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유곡리 2곳에 건설되었다. 두 지역 모두 북한군 초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군사분계선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남한의 발전상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큰 곳이었다. 자립안정촌이 기존의 주민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 주로 구획되면서 입주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았다면, 전략촌(재건촌, 통일촌)의 입주조건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해 입주민을 선발했다. 특히 통일촌은 군복무를 필한 사람, 신체 건강하고 영농능력이 있는 사람, 사상이 건전하고 전과사실이 없는 사람, 주벽 및 도박이 없고 채무가 없는 사람, 그리고 입주민중의 절반은 제대군인가족이 선발되었다. 백연리에 80세대, 유곡리에 60세대가 각각 입주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주민을 선정했기 때문에 마을과 입주민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남아있는 마을에 해당한다.⁶⁾

4) 우승하 외, 『두루미가 자는 민북마을 이길리』, 국립민속박물관, 2014, pp.2~98.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형성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에서 남방한계선(South Limit Line)까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까지를 ‘민간인출입통제구역(CCZ: Civilian Control Zone)’, 그리고 민간인 출입통제선 남방지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5) 가장 최근에 민통선마을로 구획된 곳은 2003년 입주한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실향민촌)이다.

키부츠를 모델로 건설된 최초의 재건촌은 1968년 8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와 근남면 마현2리이다. 대마리는 11.7평짜리 현대식주택 150동과 초등학교, 공동창고, 공회당이 각 1동 지원되었고, 150세대 905명의 제대군인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입주했으며, 경운기 14대 등 주민공동소유의 현대식 농기구가 지원된 기계화집단농장이었다.⁷⁾

<표 1> 경기 민통선마을 유형별 분포

	자립 안정촌	전략촌		비무장 지대촌	실향민촌	전체
		재건촌	통일촌			
2012년 이전	52	3	1	1	1	58
2012년 이후	15	0	1	1	1	18

*자료: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2012, p. 27.

민통선마을의 형성은 첫째, 민간방위체제 구축(전쟁대비 최전방 민간방위 역할), 둘째, 대북 선전 수행(자유주의 체제 우월성 과시를 위한 대북 심리전 수행), 셋째, 유희농지 개간(민간노동력을 활용한 토지개간), 넷째, 원주민 및 출입영농자의 편의도모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표 2> 유형별 민통선마을의 성격

	자립안정촌	전략촌	비무장지대촌	실향민촌
민간방위체제	△	○	×	×
유희농지 개척	○	○	○	○
대북선전	×	○	○	
주민편의	○	○	×	○

*자료: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2012, p. 20.

민통선마을은 1980년대 중반이후 민간출입통제선이 북상하면서 통일촌, 재건촌, 자립안정촌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등 민간인출입통제선이 북상하면서 상당수 마을이 해제되었다. 더불어 까다롭던 마을 출입절차도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출입, 반입물자, 통행지역 및 시간제한 등 군사적, 행정적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⁸⁾

2. 경기도 민통선마을

경기도 민통선마을은 1954년 2월 3일 귀농선 설정과 동시에 비수복지구인 파주시, 김포시 일원의 27개 마을이 원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연촌락 남방에 민간인출입통제선이 설정되면서 민통선마을이 된 경우이다.⁹⁾ 민통선 북방지역에 허가를 득하여 최초로 입주가 이루어진

6) 백연리(경기도)와 유곡리(강원도) 두 곳의 통일촌에 입주한 군인들 중에는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가 다수 포함될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지대한 곳이었다.

7) 경향신문, 1968.08.30, 3면.

8) 민통선마을에 대한 규제는 우승하 외, 『두루미가 사는 민북마을 이길리』, 국립민속박물관, 2014. pp. 96~98 참조.

9) 1953년 정전협정의 부칙에 의하여 거주 의연장이 허가되었던 자유의마을(일명 대성동마을, 파주시 군

것은 1954년 11월의 행정권 수복에 따른 연천군 백학면 백령1리외 10개리가 최초의 경우이다. 2012년 현재까지 경기도에는 총 3개 시·군(파주, 김포, 연천) 11개 읍·면 58개(누적) 민통선마을이 형성되었다.

형성시기별로는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총 37개(자립안정촌 36개, 자유의 마을1개), 1960년대에는 15개(자립안정촌 14개, 재건촌 1개), 1970년대 3개(통일촌 1개, 재건촌 2개), 1980년대 2개(자립안정촌), 2000년대에는 1개(해마루촌)의 민북마을이 형성되었다.

비수복지역인 김포, 파주 민통선마을과 수복지구에 조성된 강원도와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마을은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다. 강원도와 경기도 연천군의 대부분의 민통선마을은 전쟁이후 수복지역내 새롭게 조성된 마을에 해당한다. 물론 해당마을 연고자들이 상당수가 입주했지만, 외지인들 역시 일정한 입주기준을 거쳐 민통선마을 주민이 되었다.¹⁰⁾

경기도 민통선마을은 1989, 2000, 2001년 3차례에 걸쳐 40개의 민통선마을이 해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3> 경기도 민통선마을(2012년 현재, 미해제마을)

지역	마을명	유형	조성시기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자립안정촌	1954.2
		용강리	자립안정촌	1954.2
		조강1리	자립안정촌	1954.2
		조강2리	자립안정촌	1954.2
		개곡1리	자립안정촌	1954.2
		개곡2리	자립안정촌	1954.2
	하성면	시암1리	자립안정촌	1954.2
		시암2리	자립안정촌	1954.2
		마조1리	자립안정촌	1954.2
		마조2리	자립안정촌	1954.2
		마근포리	자립안정촌	1954.2
		가금1리	자립안정촌	1954.2
		가금2리	자립안정촌	1954.2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실향민촌	2003.4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	1973.7.20
		조산리 (자유마을)	비무장지대촌	1953.8.3
연천군	중면	횡산리	자립안정촌	1986.

*자료: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2012, 재구성.

내면 조산리)도 포함된다.

10)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1960년 조성) 민통선마을은 1959년 태풍 사라호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근남면 주민 800여 명이 ‘먹고 살기위해’ 조성된 마을이었다.

3. 선행연구검토

민통선마을과 주민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DMZ관련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접지역인 민통선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결과는 여전히 아쉬운 형편이다. 제한적 성과이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민통선, DMZ 등 남북접경지를 공간적 연구범위로 설정하는 범주와 둘째, 분단체제의 개별 행위자들의 일상사를 다루는 구술연구방법론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민통선마을을 배경으로 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연구경향은 첫째, 민통선과 DMZ인근지역을 묶어 생태·환경,¹¹⁾ 토지이용,¹²⁾ 문화,¹³⁾ 평화적 활용 및 보전¹⁴⁾을 주제로 다루는 연구경향이다. 해당 연구결과는 DMZ관광, 평화적 이용, 식생, 생물분포, 생태보전, 토지이용, 정치적 활용, 접경지 인근의 문화 등 매우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선 마을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통선마을과 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집적하고 분석한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초기 민통선마을의 원형에 대한 기록과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민통선마을의 역사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사와 함께 역사적 유산들이 전쟁이후 오늘까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드물게 민통선마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¹⁵⁾가 진행되었는데, 본 논문의 민통선에 대한 기

- 11) 대표적인 연구결과로는 김도영, “스토리텔링을 통한 DMZ관광 상품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Vol.10 No.1 (2015) ; 김난영,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생태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1권 3호 (2010) ; 유승화 외, “철원지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서식밀도모델,” 『생태와 환경』, Vol.47 No.4 (2014) ; 서성 외, “2010 파주, 안산지역 갈대, 억새 등 야초류의 이용실태와 사료가치 평가,”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31 No.2 (2011) ; 김창환, “민통선, 비무장지대(DMZ)일대의 식생에 관한 연구-동해 북부선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13 No.6 (2010) ; 오충현 외, “민통선 지역 폐 군생활관 주변 식물의 입지별 귀화를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12 No.5 (2009) ; 이세라 외, “경기도 민통선이북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3 No.3 (2009) ; 이상돈, “비무장지대의 습지생태계 보전방안: 철원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습지학회지』, Vol.6 No.3 (2004) ; 김상욱 외, “식생지수를 이용한 DMZ의 생태적 영향권 조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5 No.4 (2002) 등이 있다.
- 12) 최병구 외, “Landsat TM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변화탐지 및 파편화 분석-강원도 고성군의 DMZ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Vol.23 No.1 (2013) ; 박은진 외, “민통선 이북 지역의 토지피복 및 인삼 재배면적 변화 분석 -파주시와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7 No.4 (2013) ; 김재한, “비무장지대 가치 인식의 계량적 분석,” 『統一問題研究』, Vol.22 No.2 (2010) ; 김정수,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평화학연구』 제11권 1호 (2010) ; 홍금수, “역사지리의 파국적 단절과 미완의 회복: 민통선북방 양구군 해안면의 인구·취락·토지이용,” 『문화역사지리』, Vol.21 No.3 (2009) 등
- 13) 박덕규, “분단 접경지역 문학공간의 의미,” 『우리文學研究』, Vol.43 (2014) ; 이동재, “한국 근대문학 학과 장소의 사회학: 강화 민통선, 그 경계의 모순과 역설-구효서의 『라디오 라디오』를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Vol.37 (2009) 등
- 14) 조금목, “강원 양구지역 여가공간을 활용한 전지훈련지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0) ; 김재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전략,” 『통일전략』, Vol.14 No.3 (2014) ; 김정훈 외,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세계평화공원화,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Vol.70 (2014) ; 한정엽,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25 (2013) ; 박은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방안,” 『북한학연구』, Vol.3 No.2 (2007) 등
- 15)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2) ; 우승하 외, 『두루미가 자는 민북마을 이길리』,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4). 이태희의 논문은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의 남북접경지 민통선마을의 유형, 분포, 역사 등을 지리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거의 유일한 연구결과이다.

본정보는 이들의 연구결과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구술연구방법에 대한 연구동향이다. 분단체제의 결과를 구술연구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즉 월남·월북·실향민,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들의 생애구술사, 일상사로 구성된다.

분단체제연구의 다양한 연구방법중에서 구술사방법론은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분단이후 70년이라는 기간은 분단체제를 기억하고 경험한 구체적 행위자들의 물리적 생존을 위협하는 장벽이다. 분단, 냉전, 이산, 실향 등 개인의 일상적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역사로서의 기억을 기록하고 집적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한 이유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월남 실향민들의 일상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기록¹⁶⁾되어왔고, 분단국 재외동포들의 통일문제 접근,¹⁷⁾ 그리고 최근 북한이탈주민 구술사가 북한연구방법론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¹⁸⁾

그러나 냉전의 살아있는 화석 민통선마을과 그 주민들의 일상사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민통선마을은 분단국 접경지의 군사적 위험시대와 생활터전이라는 이중적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다. 남한의 민통선마을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사, 마을조성과 해체의 문화사, 정치군사적 냉전사의 중층적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과거의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해당지역 언론이나 각종 정기간행물의 기행문형식의 기사들이 주민들의 일상을 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민통선마을의 기억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일상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분단사와 냉전사의 또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16) 분단체제의 결과로서 나타난 실향민들의 구술사는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을 생산하고 있다. 박혜경, “전후 경제개발의 영웅서사를 넘어서 : 1935년 개성 출생 여성의 구술생애사 연구,” 『경제와 사회』, No.100 (2013) ; 윤택림, “분단의 경험과 통일에 대한 인식 : 미수복 경기도 실향민의 구술 생애사를 통하여,” 『통일인문학』, Vol.53 (2012) ; 윤택림, “서울사람들의 한국전쟁,” 『구술사연구』, Vol.2 No.1, (2011) ; 김종군,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 Vol.51 (2011) ; 조은, “한국전쟁의 긴 그림자 : '월북 가족' 여성들의 생애이야기,” 『구술사연구』, Vol.2 No.1 (2011) ; 김수자, “한국전쟁과 월남여성들의 전쟁경험과 인식: 지역 차별인식과 결혼관을 중심으로,” 『여성과역사』, Vol.10 (2009) ; 김귀옥,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 해방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Vol.31 No.3 (2008) ; 조은,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와 가족: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No.71 (2006) 등

17) 김면, “평화통일을 위한 재독 동포단체의 역할과 활동 양상,” 『평화학연구』 제8권 3호 (2007)

18) 북한이탈주민 구술사관련 주목할만한 연구결과로는 윤보영, “북한이탈주민의 탈경계적 실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6) ; 안태윤,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 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역사』, Vol.22 (2015) ; 조영주, “북한이탈여성의 구술 전략과 담론적 수행: 어머니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北韓研究學會報』, Vol.19 No.1 (2015) ; 최효정, “구술생애사로 본 '남북부부'의 결혼생활”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3) ; 정은미,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관계자본의 변화,” 『북한학연구』, Vol.8 No.2 (2012)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韓國社會學』, Vol.44 No.1 (2010) 등이 있다.

Ⅲ. 경기도 민통선 주민의 기억과 경험

1. 민통선마을 구술사 연구방법

1) 실재론적 문화기술지(Realist Ethnography)연구¹⁹⁾

실재론적 문화기술지는 문화인류학에서 사용해온 전통적 질적연구방법론이다. 오늘날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 삶의 방식, 신념, 가치 등을 현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세히 기술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문화공유집단)²⁰⁾의 행동, 신념, 언어 면에서 공유된 패턴을 기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하는데 유용한 연구기법이다. 소집단의 역동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응전략을 파악하고자 할 때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이 활용된다.

실재론적 문화기술지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이며, 대체로 제3자의 관점에서 작성되고 현장에 있는 참여자들로부터 배운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참여자들로부터 보거나 들은 것에 대해 보고하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보고자로 남는다. 또한 실재론 연구자는 개인적 편견, 정치적 목적과 판단으로 오염되지 않은 측정 방식으로 객관적 자료들을 보고한다.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생애사 연구방법론으로 실재론적 문화기술지연구방법을 토대로 현장조사, 문헌분석, 구술면접조사를 진행했다.

2) 구술면접조사

구술면접조사는 모두 15명의 경기도 민통선마을 1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3차에 걸친 사전조사는, 먼저, 1차로 경기도 민통선마을을 다룬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2차는 해당 군(郡), 면(面)의 현지답사와 민통선마을 담당공무원 섭외, 및 면담을 통해 마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수집과 면접 대상자 섭외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3차는 구술면접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15개 민통선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조건은 민통선마을 구획 당시 마을거 주민을 중심으로 15명이 선정되었다. 구술면접대상자 대부분은 6.25전쟁과 민통선마을 구획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1명을 제외하면 현재도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²¹⁾

구술면접 대상은 각 마을별로 입주 1세대를 중심으로 남녀 구분을 시도했지만, 여성들의 면담 회피로 남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구술장소는 마을회관 및 구술자의 자택에서, 2015년 12월 11일~11일, 2일간 진행되었다.

19) John W. Creswell 저, 조흥식 외 공역, 『질적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5, pp.120~124.

20) 일정 기간 동안 공유된 가치, 신념, 언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21) 경기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출생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복지역에 조성된 강원도 민통선마을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지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김일한,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16). 참조.

<표 4> 구술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명	현 주소지	출생지	입주 시기	성별	거주	연령	교육	가족
조휘철	김포시 개곡리	김포시 개곡리	1942	남	3대	74	고졸	부인, 2남2녀
임중한	김포시 보구곶리	김포시 보구곶리	1938	남	3대	78	초졸	부인, 2남2녀
정해균	김포시 용강리	김포시 용강리	1938	남	8대	78	미상	부인, 3남
신효철	김포시 조강리	김포시 조강리	1936	남	2대	80	중졸	부인, 2남1녀
장태섭	김포시 가곡리	김포시 가곡리	1939	남	2대	77	미상	부인, 2남2녀
이동섭	김포시 마근포리	김포시 마근포리	1934	남	3대	82	미상	부인, 3남1녀
민춘기	김포시 마조리	김포시 마조리	1935	남	19대	81	미상	부인, 3남4녀
이정근	김포시 시암리	김포시 시암리	1933	남	2대	83	초졸	부인, 2남4녀
황용진	김포시 시암리	김포시 시암리	1943	남	3대	73	미상	부인, 1남1녀
이도영	김포시 시암리	김포시 시암리	1940	남	2대	76	초졸	부인, 2남1녀
신우균	부천시 원미구	김포시 양택리	1947	남	3대	69	고졸	부인, 2남
이완배	파주시 백연리	파주군 연다산리	1973	남	2대	63	고졸	부인, 1남1녀
김상래	파주시 조산리	파주시 조산리	1943	남	2대	73	초졸	부인, 2남
호태준	파주시 동파리	파주시 동파리	2002	남	3대	87	사범고	부인, 3남
이용섭	연천군 황산리	연천군 황산리	1988	남	16대	75	초졸	부인, 3남1녀

2. 냉전에 갇힌 영화, 기약 없는 미래

경기도 민통선마을은 전술했듯이 지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삶의 터전이 전쟁이후 갑자기 군사지역으로 갇혀버린 김포시 월곶면과 하성면의 14개 마을과 수북이후 파주시 군내면에 새롭게 조성된 백연리 통일촌마을이다.²²⁾

김포시 북단 14개 민통선마을을 특징짓는 단어는 “조강(祖江)”이다. 할아버지 강이라는 의미다. 지명으로는 김포시와 개풍군 사이의 물길(염하鹽河, 바닷물과 밀물이 기수하는 곳)을 통칭한다. 동쪽으로 임진강과 한강이 합수해 내려오고, 북쪽의 예성강이 다시 모여 서해바다로 나아가고, 바다는 다시 물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강江의 조상祖上이라는 상징이 부여된 곳이다. 한강과 임진강을 거슬러 오르기 위한 유일한 물길이라는 점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조강은 절대적 존재이기도 하다.

지금은 철책선 때문에 접근할 수 없지만 김포시 북단의 조강포(祖江浦)²³⁾, 마근포(麻近浦)²⁴⁾, 강령포(康寧浦)²⁵⁾ 등 나루마을들이 고려시대 이전부터 해상물류 통로 역할을 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세곡 및 일반 물류가 서울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였고,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22) 백연리통일촌마을 이외에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의 자유의 마을(일명, 대성동마을)과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2003년 입주), 그리고 1986년 민통선마을로 지정된 연천군 중면 황산리마을이 있다. 이상 3개 마을은 민통선마을의 일반적인 특징보다는 정치, 문화적 상징성이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3) 조강포는 조선 중기에 ‘조강원(祖江院)’이라는 관영 숙박시설까지 있을 정도로 인근에서 가장 번성한 포구였다.

24) 마근포는 조강 건너 북한의 개풍군 임한면 정곶리 사이를 왕래 하던 나루터. 강녕포구가 주로 화물을 취급하고, 조강포구가 사람과 물자를 북한과 서울의 마포로 오고가는 길목의 역할을 하던 것처럼 이곳도 같은 기능을 했던 곳이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9)에 “마근개 주막”이 등재되어 있어 강녕포나 조강포처럼 주막과 선박 수리 시설 등을 갖춘 나루마을로 알려지고 있다.

25) 강령포는 물류와 어업의 번창으로 1850년경에는 300여 가구에 이르는 큰 마을이었고, 농업도 발달해 강령포가 소재한 용강리는 ‘장작불에 이팝 먹는 곳은 용강리 뿐’이라는 속언이 전해진다.

물때를 맞추기 위해 하루를 정박해야만 하는 자연적 환경까지 겹쳐 마을의 경제적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경제활동은 농업, 상업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조기작업과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기잡이 역시 조황이 좋았던 곳이다. 그러나 전쟁이후 3개 포구는 모두 폐쇄되었고, 인근마을은 후방지역으로 소개되어 민통선마을을 이루고, 자기 농지를 가지고 정착한 주민을 제외하면 많은 수의 주민들이 김포를 떠났다.²⁶⁾

물고기가 넘쳐나고, 뱃길따라 상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던 조강의 역사가 휴전과 함께 하루아침에 단절과 배제의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강에 대한 주민들의 향수가 더 애잔한지도 모른다.

파주 백연리 통일촌마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통선마을의 전형을 갖춘 곳이다. 1973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80가구가 입주해 조성된 마을이지만, 4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토지 소유권 분쟁 등 또 다른 갈등과 위협이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²⁷⁾

3.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냉전과 평화사이의 배회

경기도 민통선마을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은 김포시 14개 마을이다. “조강(祖江)”시절의 화려한 기억을 체험했거나 전수받은 이들의 경험이 민통선마을이라는 규제와 통제에 갇혀 냉전의 무기력한 70년 세월을 감수하고 있다. 원주민이면서 소개(疏開)인이고, 국민이지만 잊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냉전의 화석과 같은 곳이다.

김포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은 대개 4가지 패턴으로 읽힌다. 먼저, 화려했던 “조강(祖江)”의 기억, 둘째, 얼떨결에 찾아온 재앙과 같은 전쟁, 셋째, 전쟁이후 군대의 규제와 통제, 그리고 군인들과의 갈등, 넷째, 다시 “조강(祖江)”시절을 기다리는 희망의 열개이다.

1) 화려했던 “조강(祖江)”의 기억

경기 민통선마을, 특히 김포지역 주민들의 조강에 대한 회한은 남다르다. 쌀과 소금, 수산물 그리고 사람을 실은 객선이 수십 척씩 드나들며 흥성이던 화려했던 마을의 기억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조강에 인접한 조강포(祖江浦), 마근포(麻近浦), 강령포(康寧浦)의 3개 포구와 지금은 북한지역인 영정포(領井浦, 개풍군 흥교면)는 농민이든 어민이든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공통분모였다.

큰 배가 (수십척이) 강령포에 배들이 있었는데, 뭐 아마 뭐 싣고 다니는 거 보면은 쌀 같은 거도 한 100, 1000가마 싣고 그런다고 그랬어... 소금도 한 1000가마 싣고 다닌다고 그랬어.(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균)

26) 강원도 민통선마을은 외지인들이 찾아들었다면, 김포 민통선마을은 오히려 주민들 상당수가 마을을 떠난 차이점이 있다. 특히 어업과 상업물류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배를 몰고 마을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27) 파주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마을은 김포 민통선마을과는 생성조건과 역사 전혀 다른 마을이다. 백연리마을은 전쟁 당시 주민들이 소개된 상태에서 전쟁터로 남아 있었고, 1973년 정부 주도로 강원도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마을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마을이 생성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20년동안 방치된 황무지에 새로운 마을이 들어선 것이다. 김일한,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16). 참조.

(강령포 건너편 북한지역에) 영정포(領井浦, 개풍군 흥교면)라고, 포구가 굉장히 컸어. 서울서 인천까지 내려가는데 포구 중에 거기가 제일 컸어. 거기가 한 500호 있었는데.(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군)

전쟁이전 38선 이남지역이었던 개풍군, 개성지역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동네'였다. 개풍군 출신 처녀가 김포로 시집을 왔고, 김포주민들의 조상 선산이 강 건너에 있었다. 친정을 왕래했고, 해마다 때 만 되면 주민들은 선산에 벌초하러 가고 제사도 지냈다.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왕래가 자유로웠다. 심지어는 개성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뱃길을 따라 물때를 맞춰 파주시 문산장을 보기도 했다.

인제 우리 집안들이 다 거기 있어. 큰 산소들은 다 거기 강 건너에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작은 아버지 그런 양반들은 그리 벌초하러들 그냥 가셨지. 벌초도 거기서 하고. 제사도. 그 저 왜 시제도 지내고 그러잖아? 우리 큰 산소가 거기 있.(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신호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놀이문화도 매우 흥겨웠다. 정월보름놀이가 열흘 가까이 이어졌고, 마을과 마을이 하나로 연결되어 흥성였다.

지분(지불)을 놀면은 정월 구정에 정월 초닷새에서부터 인제 다 인제 준비를 하는 거야. 인제 그 왜 그 꽃가마 상모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옷, 채, 가사 이런 거. 죄 해가지고 언제까지 노냐면은 정월 보름까지.달, 동네 다 와서 놀아주고. 개곡리 그런 데서 와서 좀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고. 그렇게 조강이 그렇게 좋았어요.(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신호철)

6.25전에는 저기 물건너도 한국 땅이었어. 그 뱃노래도 부르고 하는 옛 추억이 떠오르거든. 그 평화로웠던 그 거기가 아주 머릿속에 되살아나고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임종한)

주민들의 아스라한 추억은 날벼락 같은 전쟁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매일 같이 강을 오르내리던 그 많던 배들도 사라지고, 김포시 시집온 아낙은 더 이상 강 건너 개풍군의 친정집을 다녀올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은 조상무덤 벌초도 제사도 볼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들었다. 매일 같던 일상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흥성이던 마을엔 적막만 흐르고, 줄지어 검문소를 통과하는 농민들의 깊은 주름만 남아 버렸다.

2)전쟁. 얼떨결에 찾아온 재앙

경기도 민통선마을은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과 다른 점은 주민들이 6.25전쟁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강원도는 수복지구로 민통선마을이 전쟁이후 구획된 반면, 경기도지역은 마을이 전쟁터였고, 전쟁이 끝나고 민통선이 마을 남쪽으로 그어졌기 때문이다. 날벼락 같은 전쟁이 시작되었고, 두 번의 피난과 귀향이 이어졌다. 그 사이사이에 전쟁의 상흔이 낡은 사진처럼 그러나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었다.

26일 날 여기 인민군이 여기 들어왔어요. 이 강 도강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전쟁을... 한... 24시간 했어. 전쟁을. 아이 치열했지. 여기 전쟁이... 내가 그때 나이가 13살인데. 그때 인민군들 죽은 시체를 이 아래로 그냥 끌고 내려가는거야. 아마 여기서 한 100명 죽었다고 그래.(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군)

김포지역의 전쟁사는 대략 이러하다.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젊은 사람들은 일부 피난길에 올랐고, 제법 멀리 이동한 경우가 수원, 평택인근이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도 인민군이 이미 자신들을 앞질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히 고향을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일부 주민들은 강에 떨어진 김포 후방 친인척 집으로 피신한 이들도 있었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마을의 한 집에 모여 살았고, 경우에 따라서 배고픈 인민군의 식수발을 듣기도 했다. 마을의 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투항?해 하산하기도 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것이다.

부모들 좇아서 동네가 다 산골로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구만, 당신네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죽으니까, 무조건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나가라고 말이야 그래 다니면 산다고. 그래 시키는 데로 한거지 뭘. 그래 인제 그 산 골자구니 일단 능선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내려온거야. 그냥 동네사람들 다. 아 내려왔는데 참 이 우리 집 근처에 제 인민군들이 그때 그 전쟁 중에 그냥 들어와서 있더라고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군)

주민들은 직접 전쟁에 동원되기도 했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강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교전을 갈수록 심해졌다. 강을 사이에 두고 포격전은 일상이었고, 심지어 도강해 상대진지를 공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당시 주민들은 마을에 거주하던 해병대에 비공식적으로 징집되어 탄약을 나르기도 하고, 예비군 신분으로 강 건너 상대진지 공격작전에 동원되기도 했다.

군인이 부족하니까 민간인들 나이 좀 적고 그런 사람들 태워가지고 실탄 보급을 해다가 실고 갔어. 실고 가서 건너 가서 그 때 휴전 직전이지 인민군 아이들하고 산에서 싸움하고... 전쟁터에 가서 실탄 날라주고 그랬어요. 배타고 그냥 건너가서 싸움하고 일반인들 끌고 가고 여기로 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고.(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임종한)

그 당시 주민들이 실탄을... 우리 아버지도 3번이나 거기 갔었는데, 같이 전쟁 같이 한 거지 주민들이... 여기 주민들은 그렇게 살게 하고 참 고통이 많았어요. 전장 때엔.(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군)

전쟁은 민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전쟁터에 널려있는 지뢰는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고, 마을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차별 포격에 사람이 죽고, 집이 불에 탔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양측이 민간인을 서로 죽이는 비극도 마을에서 벌어졌다.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이 전쟁을 통해 주민들에게 던져졌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대항해서도 안 되며 대항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부장(당시 통장정도 역할) 보던 사람들이 재네들 들어오게 되니깐 그 사람들 또 불러내서 뭐 인민위원장이니 무슨 뭐 청년위원장이니 뭐- 그런 걸 또 말고 그런 거 시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로 몰리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 애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상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김포시 하성면 마조1리 민춘기)

월곶면사무소에는 인제 그 또 인민위원장이 일하고 위원장이지. 또 지소, 파출소에는 또 내무소장. 내무소거든 개들은 또. 내무소장이 있고 지소장이 있고 그랬어. 그래서 개들이...제일 없는 사람들. 남의 집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땅이 띠어주고(떼어주고) 그랬어. 땅 그때 다 몰수 했더랬어요. (그런데) 여기(국방군) 또 들어오니까 치안대라는 게 있어.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치안대. 동네에 치안대가 조직해가지고 빨갱이로 활동한 사람들 그냥 무-참하게 죽였지.(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신호철)

온 세상을 전쟁의 먹구름이 삼킨다 해도 주민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먹고 살아야 했다. 포탄이 쏟아져도 농사는 지어야 했다. 밤이고 낮이고 중요하지 않았다. 일을 해야 했다. 그래야 가족들 입에 보리쌀 한 술이라도 넣을 수 있었다. 한편 아이들에게 전쟁터는 무서우면서도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신세계였다. 폭죽놀이가 이보다 전 신기할까. 철없는 동심이라고 무작정 나무랄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거듭되었다. 지뢰를 가지고 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기억도 당시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전장 통에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농사짓는데, 그냥 포(탄) 떨어지만은 일하다가 저겨들어오고, 또 포가 그치고 나면 나가서 일 허고, 심지어 인제 밤에도 나가서 일하고.(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군)

총을 막 쏘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볼 땐 네 발 사이에 한 발이 야광탄이 날라가. 그 밤에 다른 총알 나가는 건 안보이는데, 이걸 하얀 불이 날라가. 어렸을 때 신기해가지고 그걸 구경을 내가 무척 많이 했어...(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임종한)

3)규제와 통제, 그리고 갈등

민통선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은 군인들과의 관계였다. 말이 좋아서 관계이지 비공식적으로 인정된 폭력과 통제였다. 민통선마을은 민간인출입통제선(Civilian Control Zone, CCZ) 이북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이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군인들이었다. 전쟁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 군인들(그것이 해병대든 일반 군인든)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생활수준에 비추어 민간인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상상만으로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항하면 그만큼의 폭력으로 되돌아 왔다.

당시 군대도 물자지원이나 복리후생이 엉망이었다. 50~60년대 군대 식사는 말할 것 도 없었다. 마을주민들의 몫이었다. 김장, 부식은 물론 밥도 해다 날라야 했다. 힘든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죽으라는 법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농번기 군인들의 대민지원 역시 한국사회의 특유의 문화로 자리잡는 시기였다. 1950~60년대가 그랬다.

지금 90대 이상 되신 노인네들 매 안 맞은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매 맞는건 그런건 진짜 눈으로 보았어요.(김포시 하성면 시암1리 황용진)

(농사구역 퇴근) 시간이 딱 되면. 그 안에 못 오는 사람은 내 거짓말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엎드려뺀쳐” 시키는 거야. 난 그 때 열 몇 살 적인데 엎드려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새끼가”(군인이 한말) 여길 한 대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프지 때굴때굴 굴렀어! 통행금지도 해 지면은 등화관제야! 불도 못 켜어! 60년대까진.(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임종한)

이장 반장을 안 불려고 했어요. 까딱(하면) 빠따를 쳐 그냥, 참. 이장 반장 매 많이 맞았어요. 여기 사람들 군인들한테 해병대한테 고통 받은 거 생각하면 여기서 산거 용해, 애휴, 참.(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균)

구술자(심우중): 하두 군인들, 해병대들하고 상대를 했으니깐 술 먹고도 군인들하고도 막 붙고 여기 사람들은. 그 민간인들은 경찰서로 가고 애들은 헌병대로 가고. 보안대로 가고.. 끌어가는거고.(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임종한)

우리 조강포에는 이 동네가 큰 동네니까 반장이 여섯인가 일곱이 있었어요. 그니까 이 행정으로 행정으로 이장 밑에서 일보는 반장이 있고, 군인 반장이 있어 군인. 군인들 부식 갖다 주는.그데 이 해병대 반찬 만날(맨날) 부식 걸어주고... 군인들. 거기까정 군인들 있는데 국, 국이고 뭐고 장독에 물지게로 지고 올라가서 갖다 그냥 주고 했지. (웃음) 잘못하면 저 빠따야. 빠따로 때리는데 무슨 밥값을 받아, 아유.(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신호철)

군인들이 대민지원 많이 해줬어요. 전장 때도 해줬어요. 군인들이.(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균)

전쟁중 주민들은 마을 남쪽으로 소개(疏開)되었다. 군대에서도 최전방 전선에 주민들을 거주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강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소개 대상이었고, 그 때 밀려난 마을로 그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강에서 먹고살던 어부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많던 물고기는 이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마을이 사라진 것이다. 용강포, 조강포, 마근포마을 등 강가 마을을 예외 없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농사짓고 살던 주민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살던 집은 허물어졌고, 마을 뒤편으로 밀려난 주민들에게는 움막과 허름한 텐트가 새로운 터전이였다.

(전쟁끝나고) 12월 달 1월 달이 다 겨울 아니야? 그 집을 이 동네를 몽땅 다 헐어버렸어 그냥 아주 그냥. 집을.... 응 움막 말이에요... 거지 생활을 한 거지. 집이 없으니까는... (나중에) 천막 있잖아, 텐트. 식구 적은 집에는 천막 하나에다 두 가구가 살고... 그래서 한 3년을 생활했는데...(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신호철).(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신호철)

강령포. 그 한 50호가 살았는데 다 철수가 되고 안 사는데, 강령포가 선착장이야.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저 여객선이 댕겼지. 인천에서 마포까지 댕기구... 강령포라는 포구는 완전히 아주 없어진 거야. 아주(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균)

6.25때 휴전되면서 여기를 강제로 이주시켰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군인들이 강제 이주 시키고, 안 나가면 그냥 집에다 불 지르고 차에 태워서 금천수용소에 갖다 버렸어요.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이완배)

그리고 1970년대 들어 민통선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터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개인부담을 안고 국가가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다. 당시 새마을운동의 영향과 함께 가옥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물론 이 사업 역시 당국의 정치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주입되었다. 기존 마을에서 소개되어 새로 조성된 민통선마을이 대부분 집단가옥마을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고려된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독립가옥에 간첩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 상당히 그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었어요. 여기 전방이기 땀에 정부 시책으로 그 간첩 때문에 그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구..(김포시 하성면 가금1리 장태섭)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파주 백연리 통일촌마을 주민들의 경우, 입주 계층에 따라 그룹을 만들어 생활하게 했다. 군인과 민간인이 적당히 섞였고,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군이나 행정기관이 직접 주민들의 반공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은 매우 훌륭한 교육 대상이었던 것이다.

10명씩 한 조로 해서 8개 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장교가 둘, 하사관이 넷, 다섯, 민간인이 넷, 다섯. 일조를 꾸미도 이조도 꾸미고... 말하자면 안배를 시키는 거예요. 민간인이 이 고향 저 고향하면서 뭉치지 못하게...안배를 시켜놓은 거예요.(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이완배)

반상회 이런 거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고 그랬지만 이 집단홍보를 많이 했어요. 여기는 금성초등학교가 위에 있어서 군 홍보실에서 반공 홍보영화 이런 것들을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상회 매월 한 번씩 또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뭐 하여튼 거동수상자, 그 전만 하더라도 간첩, 그 불온 전단 이런 것 신고, 또 그런 것을 강제로 많이 했죠.(김포시 하성면 양택2리 신우균)

민통선마을이다 보니 남북한 사이의 군사충돌 특히 간첩사건, 월남, 월북 사건 등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접경지인 만큼 무장간첩사건도 목격되었고, 월남간첩검거, 고정간첩검거, 월북에 실패한 해병대원 등 다양한 충돌사례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국토방위의 임무까지 떠안아야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을 경험했던 기억과 함께 주민들이 사건을 대하는 감정은 무덤덤했다.

(70년대 말까지) 저녁이면 주민들이 가서 교대로 무기고를 지켰어요. 그리고 마을에 싸이렌 소리만 나면은 일하다가도 뛰어와서 총 갖고 나와서 벙커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다 예비군이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일 년에 두 번씩 사격훈련도 하고 재식훈련도 하고, 각 개전투도...집사람도 하고(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이완배)

(70년대 판문점 도끼사건 등이 났을 때)그런 거는 국가적인 사건인데, 여기는 평온했어요. (2015년 8월 대북 확산기 재개와 군사충돌 위기 상황에서)그때 분위기도 여기는 뭐 우린 그냥 만성이 돼서, 허허, 전쟁 나면 나나보다 그러고 주민들은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균)

사건발생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그 고통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통제 뿐만아니라 통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그때 당시 여기도 통제됐더랬잖아요. 주민만 왔다갔다하고 외부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왔죠. 방문객이라든지, 땅굴이나 전망대 가는 안보관광객들도 못 오고... 그 바람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 당시에 내 막 항의를 했는데... 연평도 같은데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포는 안맞았지만 피해는 이쪽이 더 입었거든요. 그 당시 한 달정도 안보관계로 통제시켰어요. 올해도... 지뢰사건 땀에 한 이십일 정도 통제됐더랬지... 메르스 땀에 한달정도 통제됐지.... 그때마다 우리 주민들은 손해가 많은 거예요(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이완배)

남북한이 주고받은 뼈라에 얽힌 사연도 등장한다. 뼈라는 북한에서만 뿌린다는 속설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뼈라만 넣어 날리는 것이 아니라, 뼈라와 함께 간단한 생필품까지 넣어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물론 북쪽에서 날아온 뼈라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민통선마을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두더지부대라고 뼈라만 뿌리는 부대가 따로 있었어... 그때가 박정희대통령 적이야. 재네들 김일성이에 대해서 인제 그 뭐야, 공산주의 그 정치활동 그런 거 비판하고. 그 그냥 풍선 안에 그냥 이 별거 다 들어. 이, 사탕, 무슨 칫솔, 과자 무슨 주로 인제 책이지, 전단지. 책이 제일 많고. 재네들 그 뭐야 그 쓰라고 일상생활에 쓰라고 그런 것도 그 풍선에다가 많이 집어넣었지.(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신호철)

우리나라에서 그 뼈라 보내는 거는 잘 보내지. 에... 거기 뭐 돈도 해서(넣어서) 보내고, 뭐. 그런거 필수품, 뭐 난닝구, 팬티 같은 것도 보내고, 그런 것도 보내는 게 잘못 떨어져 갖고(떨어져가지고) 여기 떨어지는 수가 있지.(김포시 하성면 시암2리 이두영)

군인들과의 불편한 관계나 군사충돌에 대한 주민들의 체념이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순응과 자기검열로 나타나기도 한다. 무더진 공포심과 함께 저항한다고 해서 해결될 없다는 체념은 생존의 문제를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6.25직후에는 전시니까. 그때는 뭐 아무래도 군이... 지금은 군에서도 민과 합동체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군인 불신하고 군에 민폐라든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또 있으면... 또 있어서도 안 되고.... 군과 민과 유대는 잘 돼가고 있어요.(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조휘철)

여기 6.25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그런데서 공포심을 잘 안 느껴요. 웬만한거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해.(웃음 소리).(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임중환)

(남북한 군사충돌사건)방송을 통해서 보는 거 같지 나오면. 아는 거야 뭐 알 수가 있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음...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그 반공의식이 틀림없고. 이제 이룬데 여기 살면서 국가관도 더 확고하고.(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조희철)

4)다시 “조강(祖江)”을 호명하는 이유

대부분 고령에 농사를 지으면 살고 있는 민통선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란 무엇일까? 그들은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믿고 있을까? 구술대상 15인중 2세와 한 마을에 동거하는 사례는 2명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마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과거에는 전쟁 때문에 태어난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 탓에 스스로 마을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여긴 대부분 다 농업이죠 뭐. (그런데) 공장이 많이 들어오니까... 농촌이 지금 큰일났어요. 다음 세대가 이어갈 사람이 없어. 농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고. 또 농사는 해봐야 수익성이 없으니까.(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조희철)

근데 여기 반 3개 반이 다니던 학교거든(학교이거든). 그랬는데 이것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다 빠져 나가고 보니까 애 낳는 사람이 없잖아. 현재는 늙은이만 살고 있어. 그러다보니까 이 핵교(문수분교)가 폐교가 됐어. 이거 폐교된지 한, 한 20년 됐을 거야.(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임중환)

더불어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민통선마을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강하구 지역을 램사르협약²⁸⁾에 가입시키려는 시도, 은퇴이후 생활을 위해 마을을 찾아드는 실버세대, 개발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2010년부터 소규모 공장들의 입주가 민통선마을의 새로운 도전이다. 한강하구 램사르협약 가입문제는 한강하구 생태계 보전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삶이 보장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조강지역의 램사르 지정은 지역주민들에게 과거의 화려했던, 그러나 지금은 간혀있는 그곳을 다시는 개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실버세대의 입주가 마을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저런 공장의 입주는 환경친화적이고 가족적유대감이 지배하던 마을의 환경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 역시 해결이 쉽지 않다.

램사르라는걸 뭐 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 그 지역 내에서의 모든 저걸 못한다며, 그러면 뭐 농사만 지어먹고 평화가 오게 되면 건축을 짓는다든지, 강령포라

28) 환경부, 램사르습지(내륙습지) 등록 및 관리계획(안) (2010.08) 환경부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국내 습지보호지역을 램사르습지로 지속적 확대하기 위해 2012년까지 23개소 추가등록(현재 14개소 → 37개소)하며, 권역별·보호가치별 단계적 등록 대상지는 한강(임진강-DMZ), 낙동강, 금강(전북), 영산강(전남)권역 등을 지정했다. 한강하구 램사르습지 등록은 지난 2006년 4월 17일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부가 지정한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은 김포대교에서 강화군 송해면에 이르기까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등 4개 시·군을 아우르는 6만668km² 면적이다. 김포시와 파주시는 반대, 고양시는 찬성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2016년 2월 현재 김포시의회의 반대결의안 의결 등 지역별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는 포구는 옛날서부터 유명한 포군데 지금 앞으로 통일이 되고 강이 자유롭게 된다면 거기 다 앞으로 옛날 그대로 포구가 생기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것도 다 저지 되는거 아니요.(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정해균)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 사람들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깨끗하고 공기 맑다고 휴양지마냥 와서 집짓고 사는거야. 그러면 우리 동네 왔으면 우리 동네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야 원칙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기는 썩 그래. 근데 그걸 안해요.(김포시 하성면 시암1리 황용진)

청정지역으로부터 인제 작년부터 공장이 가동되고 공장 종업원들이라든지 또 뭐 공사하느라고 시끄럽고 뭐 소음, 공해, 먼지 등등 그래서 아주 그 양택2리에 이미지가 좀 실추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2010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자연부락형태의 좀 다 같은 한 식구였고 뭐 이웃사촌이라고...2010년도 이후에 아주 저거(저것)으로 인해서 아주 안 좋게 됐어요. 브로커들이 공장부지로 투기도 하고(김포시 하성면 양택2리 신우균)

경기도 민통선마을중 토지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백연리 통일촌마을의 미래 역시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입주했던 입주민들의 실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토지소유권 분쟁은 강원도 민통선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을 조성 당시 수복지구 ‘미복구토지’를 국가가 임의로 활용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토지소유와 부농의 부푼 꿈을 품고 생명이 위태로운 최전방에서 맨손으로 가족과 함께 황무지를 개간했던 입주민들에게 소위 특별법은 청천벽력이었다. 전두환 집권시기인 1983년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년 한도)이 제정된 것이다.²⁹⁾

본 소유주들, 땅을 찾은 사람들에게 땅을 산거지. 팔아라... 이게 안팔리니깐 파주시 공무원들 대동을 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마을 이장하고 땅 지주를 찾아가서 땅파시라고 설득을 해서 산 게 한 30만평 샀어요. 7억6천만원 갖고. 그 당시에 우리 통일촌 전 주민들이 농사진 게 60만평이 정부에서 불하를 해준건데 반을 산거예요.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이완배)

29)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983.7.1.] [법률 제3627호, 1982.12.3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수복지역"이라 함은 복위38도 이배의 수복지구(동지구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배위38도 이남지역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1988년 12월 31일까지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 미복구토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후(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로부터)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은 매각처분을 하지 못한다.

실날같은 희망이 있다면 조강(祖江)이다. 조강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도 있는 흐릿한 희망을 그들은 안고 산다.

아우, 거긴 많지. 거긴 뭐 물 반, 고기 반이여. 아, 못 가지. 여기 DMZ 철책으로 해서 막 아져서. 큰 포구가 활용을 못해서. 근데 언젠가는 남과 북의 다리가 놓아져야 할 상황이 지. 가깝고. 개성이 가까우니까. 공항이 가깝지 않습니까.(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조휘철)

그러니까 인제 직금 젊은 사람들 뭐 많지도 않지마는 외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한강이 터지고 더 이상 또 한 번 평화가 된다 하면은 과연 동네를 위해서 뭐를 개발을 해가지고, 뭐를 동네가 득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야.(김포시 하성면 시암2리 이두영)

2016년 2월 23일 김포시 월곶면 조강2리 마을회관에서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마을은 '남북간 자유지역'(Free Zone)입니다."라는 선언을 담은 마을 안내 현판식을 가졌다.

<그림 1> 조강(祖江)은 자유지역(Free Zone)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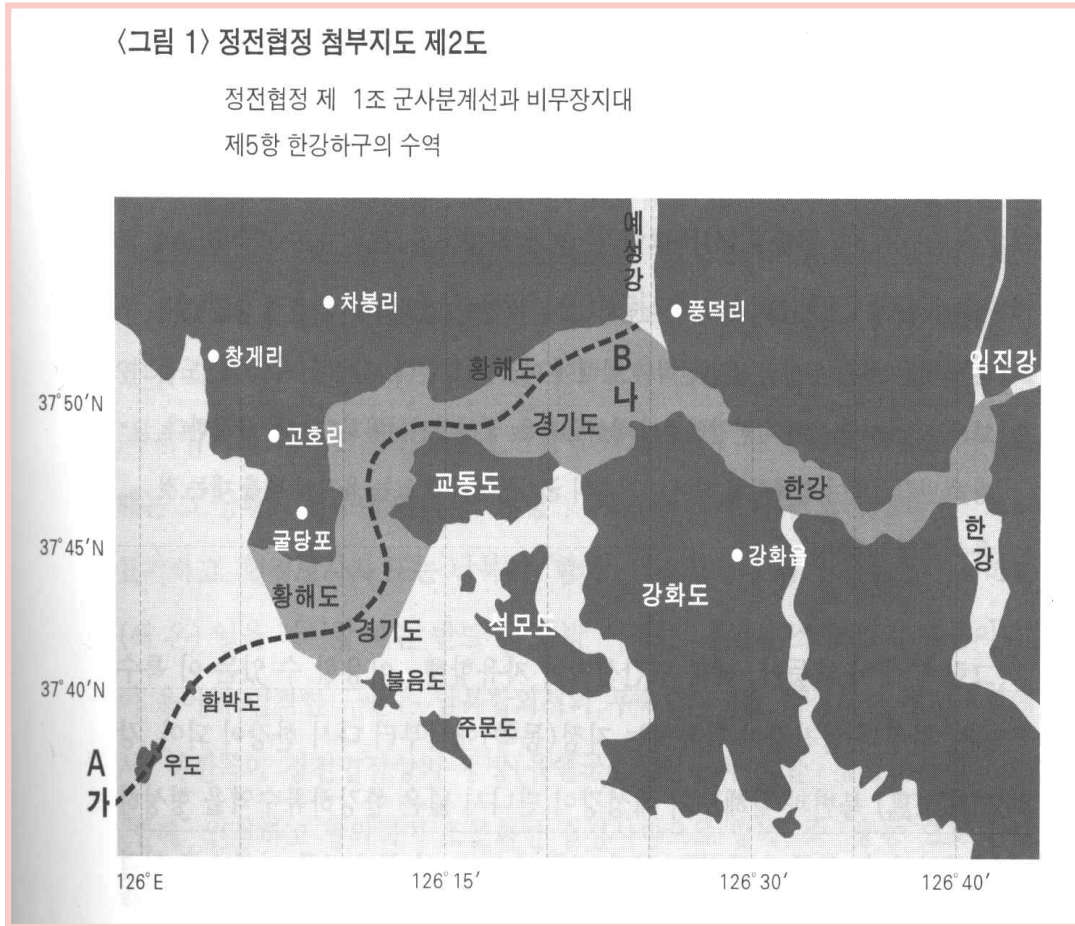
*자료: 김포시 누리집. www.gimpo.go.kr

전쟁의 후유증으로 화려했던 조강(祖江)시절 즉, 할아버지 강의 역사를 잃어버린 후손들이 찾아낸 것은 전쟁의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전협정 조문이었다. 그 조문은 어디에도 조강출입을 막거나 철책선 설치를 규정한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조강은 민간선박에게 개방'한다는 조항만 담겨있을 뿐이다.

<정전협정 제1조의 제5항: 한강하구에 관한 규정>

제5항.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그림 2> 정전협정 1조 5항의 한강하구 수역 규정



*주: 한강하구 수역이 민간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자유항로인 것을 표시한 정전협정 첨부지도 지도에 표시된 'A가-B나' 점선 라인에 대해 첨부지도는 **"(주1) 'A가-B나' 선(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은 서부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선은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또한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어느 쪽의 선박도 운항하지 못하는 사실상 엄혹한 '비무장지대 강(江)'을 남북한 쌍방이 '자유롭게 조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전협정 규정을 되살리는 것은 크게는 한반도 평화와 한강하구라는 유무형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활용하는 경제적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또는 정전협정의 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매력적인 처방은 단지 김포 민통선마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IV. 글을 마치며: ‘위험한 평화’를 넘어 ‘새로운 평화’찾기

마을 형성의 목적이나 환경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군사적으로 위험한 곳이지만 생존을 위해, 먹고살기 위해 찾아들었던 초기의 생존투쟁과정, 입주 후 잦은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는 반공투쟁과정의 공통된 기억,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또 다른 위협들은 민통선마을의 이미지를 일반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민통선마을은 1954년 이후 123개의 민통선마을이 구획되었고,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규제에서 해제되고, 2012년 현재 54개 마을이 미해제 상태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8개의 민통선마을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14개 마을이 분포한 김포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은 시기별로 서로 패턴으로 나타난다. 전쟁이전 시기의 화려했던 “조강(祖江)”의 기억, 얼떨결에 찾아온 재앙과 같은 전쟁시기의 경험, 전쟁이 끝나고 군대의 규제와 통제 속에서 강요된 민통선마을 주민으로써의 삶, 그리고 다시 “조강(祖江)”시절로 회귀하고픈 소박한 희망이 주민들의 역사를 이룬다.

경기도 민통선마을은 전쟁터로 황무지가 된 땅을 농지를 만들어야 했던 고된 노동의 기억,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과의 갈등,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가족과 스스로를 목숨을 지켜야했던 고난의 경험, 그리고 토지소유권 분쟁, 경제적문제 등 다시 찾아온 다시 생존의 문제 앞에서 민통선마을은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수복지구 강원도 민통선마을과는 같은 듯 서로 다른 경험을 교환하고 있다.

해체와 존립의 기로에선 민통선마을은 한반도 냉전의 살아있는 유산이자 미래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이중적인 시공간이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델로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논의의 중심이 민통선마을이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귀옥,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 해방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Vol.31 No.3 (2008)
- 김난영,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생태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1권 3호 (2010)
- 김도영, “스토리텔링을 통한 DMZ관광 상품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Vol.10 No.1 (2015)
- 김 면, “평화통일을 위한 재독 동포단체의 역할과 활동 양상,” 『평화학연구』 제8권 3호 (2007)
- 김상욱 외, “식생지수를 이용한 DMZ의 생태적 영향권 조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5 No.4 (2002)
- 김수자, “한국전쟁과 월남여성들의 전쟁경험과 인식: 지역 차별인식과 결혼관을 중심으로,” 『여성과역사』 Vol.10 (2009)
- 김일한, “‘위험한 평화’와 공존하기: 강원도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16).
- 김재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전략,” 『통일전략』 Vol.14 No.3 (2014)
- 김재한, “비무장지대 가치 인식의 계량적 분석,” 『統一問題研究』 Vol.22 No.2 (2010)
- 김정수,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 11권 1호 (2010)
- 김정훈 외,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세계평화공원화,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Vol.70 (2014)
- 김종균,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 Vol.51 (2011)
- 김창환 외, “민통선, 비무장지대(DMZ)일대의 식생에 관한 연구-동해 북부선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13 No.6 (2010)
- 박덕규, “분단 접경지역 문학공간의 의미,” 『우리文學研究』 Vol.43 (2014)
- 박은진 외, “민통선 이북지역의 토지피복 및 인삼 재배면적 변화 분석 -파주시와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7 No.4 (2013)
- 박은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방안,” 『북한학연구』 Vol.3 No.2 (2007)
- 박혜경, “전후 경제개발의 영웅서사를 넘어서 : 1935년 개성 출생 여성의 구술생애사 연구,” 『경제와 사회』 No.100 (2013)
- 서성 외, “2010 파주, 안산지역 갈대, 억새 등 야초류의 이용실태와 사료가치 평가,”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31 No.2 (2011)
- 안태윤,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 전략,” 『여성과역사』 Vol.22 (2015)
- 오충현 외, “민통선 지역 폐 군생활관 주변 식물의 입지별 귀화율 연구,” 『한국환경복

- 원기술학회지』 Vol.12 No.5 (2009)
- 우승하 외, 『두루미가 자는 민북마을 이길리』, 국립민속박물관, 2014.
- 유승화 외, “철원지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서식밀도모델,” 『생태와환경』 Vol.47 No.4 (2014)
- 윤보영, “북한이탈주민의 탈경계적 실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6)
- 윤택림, “분단의 경험과 통일에 대한 인식 : 미수복 경기도 실향민의 구술 생애사를 통하여,” 『통일인문학』 Vol.53 (2012)
- , “서울사람들의 한국전쟁,” 『구술사연구』 Vol.2 No.1, (2011)
- 이동재, “한국 근대문학과 장소의 사회학: 강화 민통선, 그 경계의 모순과 역설-구술서의 『라디오 라디오』를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Vol.37 (2009)
- 이상돈, “비무장지대의 습지생태계 보전방안: 철원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습지학회지』 Vol.6 No.3 (2004)
- 이세라 외, “경기도 민통선이북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3 No.3 (2009)
-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12.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韓國社會學』 Vol.44 No.1 (2010)
- 정은미,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관계자본의 변화,” 『북한학연구』 Vol.8 No.2 (2012)
- 조금묵, “강원 양구지역 여가공간을 활용한 전지훈련지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10)
- 조 은,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와 가족: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No.71 (2006)
- , “한국전쟁의 긴 그림자 : '월북 가족' 여성들의 생애이야기,” 『구술사연구』 Vol.2 No.1 (2011)
- 최병구 외, “Landsat TM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변화탐지 및 파편화 분석-강원도 고성군의 DMZ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3 No.1 (2013)
- 최효정, “구술생애사로 본 '남북부부'의 결혼생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3)
- 한정엽,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25 (2013)
- 홍금수, “역사지리의 파국적 단절과 미완의 회복: 민통선북방 양구군 해안면의 인구·취락·토지이용,” 『문화역사지리』 Vol.21 No.3 (2009)
- John W. Creswell 저, 조흥식 외 공역, 『질적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5.
- 경향신문

중무장지대가 된 완충지대1(동아일보): DMZ군사충돌사례

동아일보에 보도된 남북한 군사충돌

박형준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진행되는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군사)사례 DB구축(1945~2015)’의 2차년도 연구결과 보고이다.

본 연구진은 지난 2015년 1차년도 연구 성과로, 학계 최초 북한 『로동신문』 전수조사(1945-2014)를 통해 남북한 ‘군사충돌’ 사례를 수집하였고, 총 39,586건의 DB구축(군사충돌/민통선마을구술/빠라 수집), 연구계획 대비 219% 초과 달성(군사충돌 DB 기준) 등 양적·질적·학술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와 같이 로동신문을 통한 군사충돌 자료 구축은 북한 당국의 군사충돌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북한군의 군사도발 예측 연구에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 ‘민통선 마을 구술사’와 빠라 수집은 ‘냉전의 분단사’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번 2차년도 연구는 남한의 동아일보에 보도된 남북 충돌(군사)사례를 DB화하였다. 본 연구진이 남한의 군사충돌사례를 DB화하기 위해 동아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발행연도에 있어서 중간에 중단된 시기가 없어 향후 북한의 로동신문과 직접 비교가 가능했고, 특히 동아일보의 아카이브 활용을 통해 신문기사의 접근성 및 신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학술회의에서는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을 집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수집된 통계 수치를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남한의 정부문서인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8집,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상, 중), 북한 대남침투 및 도발 사례집(국회 비공개 문서) 등에 기록된 사건들을 동아일보와 비교함으로써 군사충돌 사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II. 동아일보 DB구축 개요

1. 정전협정과 DMZ군사충돌의 개념¹⁾

1) 본 내용은 지난 2015년 1차 학술회의의 발표 자료, 이창희, 김용현, “중무장지대가 된 완충지대: DMZ 군사충돌 사례”에 제시된 개념을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의 ‘군사충돌’이란 국제정치학에서의 ‘군사 분쟁’에 가깝다.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개발하여 1816년부터 최근까지 군사 분쟁 관련 데이터로 폭넓게 사용되는 ‘COW(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군사 분쟁이란 “전쟁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국가 간 군사력 사용의 위협, 군사력의 전시 혹은 실제 사용 행위를 포괄”하는 활동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최소 1,000명이라는 임계 값의 군인이 사망할 경우를 전쟁으로 개념화한다.²⁾

“군사분쟁은… 구체적으로 군사분쟁의 가장 낮은 수준인 군사력의 사용위협 단계에서는 적대적 의지의 외교수사적 표시가 사용되며, 다음 단계인 군사력의 전시 단계에서는 전투적 상호작용이 제외된 군사적 시위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군사력의 실제사용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취해진다. 더 구체적으로 군사력의 사용위협 단계는 군사력 사용위협, 봉쇄위협, 부분적·전면적 영토점령 위협, 전쟁선포 위협과 핵무기 사용위협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군사력의 전시단계는 군사준비의 경고, 군사력의 동원, 육해·공군력의 전시, 국경의 요새화, 핵 경고와 국경 침범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군사력의 실제사용 단계는 봉쇄, 영토점령, 인적·물적 자원의 탈취, 군사충돌, 군사공습, 전쟁의 선포와 더불어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다.”³⁾

군사 분쟁의 개념은 이미 정전협정의 주요 위반행위 조항으로 많이 반영되었고, 즉각적인 주의사항으로 관리되었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잦은 군사충돌 속에서 무력화되었다. 유엔사는 북한군에 의한 정전협정 주요위반사건을 1953년 7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219건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 유형 중 육상위반은 비무장지대 내 총격사건, 군사분계선 월선 및 침투사건, 비무장지대 중화기 반입, 진지구축/장애물 설치, 지뢰매설 등이고, 해상사건은 아측 해역 침범, 아측 선박에 포격, 아측 어선 및 어부 납치 등이며 공중사건은 아측 영공 침범, 항공기 납치 및 폭파 사건 등 정전협정에 의거 유엔사 규정 551-4(한국 정전협정 준수)에서 규정한 주요 위반사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⁴⁾

이에 비해서 남한의 합동참모본부는 학계에서 사용하는 ‘군사분쟁’ 개념보다 ‘군사도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군사도발을 ‘적이 침투 또는 일정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로 정의하였다.⁵⁾ 2003년 미국 의회조사국의 『북한도발연표』에서는 군사도발에 대해서 “무력침공, 휴전선 위반사항, 간첩 및 무장간첩의 침투, hi-jack, 유괴납치, 테러(암살 및 폭파), 정치인과 언론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박 및 한국정부 전복을 위한 일체의 자극행위 등을 포함”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2) 김형민, “군사분쟁의 원인과 고찰: 동북아 지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신아세아』 21권 2호 (서울: 신아시아연구소, 2014), p. 35 참조.

3) 김형민, “경제적·군사적 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p. 92.

4)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8집』 (서울: 합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연락단, 2010), p. 229.

5) 합동참모본부, 『합동 국지도발 대비작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1), p. 3.

<표 1> 유엔사 규정 551-4 (한국정전협정 준수 요약)의 일부분

<p>바. 정전협정 주요 위반 행위: 군사분계선이나 상대방통제지역에 대한 침투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방의 무장인원이 MDL(군사분계선) 또는 HRE(한강 하구)를 넘어 상대방 통제 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2. MDL/HRE 너머로 또는 상대방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의 상대방 인원, 경비정 또는 항공기에 사격하는 행위 3. 일방의 항공기가 상대방 상공 또는 MDL/HRE 지역 상공의 어느 부분을 침투하는 행위 4. 일방의 무장선박이 상대방의 (한국)육지에 인접한 수역에 침투하는 행위 5. 상대방 특정 항 또는 해안지역으로의 진입 또는 진출을 방해하려는 일방에 의한 해군 봉쇄행위 6. 공산군 측과 유엔사측 인원, 선박 및 항공기 사이에 교전이나 기타 전투행위 7. DMZ내에 있는 방대한 요새진지 또는 지뢰지대 건설 또는 주요 개축 8. 탱크, 장갑차 및 야포와 같은 주요 군 장비들을 비무장지대로 반입하는 행위 9.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발사하거나 권총을 뽑아들거나 공격을 하는 행위 <p>사. 정전협정 사소한 위반 행위: 정협에 대한 부주의나 불성실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방 육지에 탄착하지 않은 DMZ내에서 사격행위 2. 기관총, 박격포 또는 무반동총과 같은 공용화기를 DMZ로 반입하는 행위 3. DMZ내 개인 자동화기 및 로켓 발사기를 반입하는 행위 4. DMZ내에서 사계청소 및 위장 등을 포함한 소규모 요새진지, 철도망 또는 참호의 구축 및 개축 5. 조명탄 또는 탐조등으로 아군을 괴롭히는 행위 6. 복장 및 차량에 적절한 표지물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7. 허가되지 않은 DMZ 출입행위 8.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키는 행위 9. 일방의 경비인원 또는 허가된 방문객에 대한 욕설, 모독 또는 괴롭히는 행위 <p>아. 정전협정 위반행위 보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위의 즉각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위반행위는 군정위 비서처에 즉각 보고 가) 보고 시 포함사항은 관측자 계급/성명 등 14개 항목을 포함해서 보고 2. 기타 사소한 위반행위는 유엔사 및 연합사 예규에 의거 월 단위 종합보고

* 출처: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8집』 (서울: 합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연락단, 2010), pp. 85~91.

나아가 남측 내에서도 주요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군사분쟁과 군사도발개념을 확장하여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는 미사일 발사나 사후 검거된 간첩사건도 도발로 간주하고, 북한 어선의 NLL침범 등도 군사분쟁 사례로 포괄하였다.⁶⁾

6)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도발로 구분한다. 고강도 도발은 확전 가능성과 함께 심대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도발, 중강도 도발은 잠재적 확전 가능성은 있으나 지엽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종결된 도발(주로, 육상 전선지역 침투), 저강도 도발은 확전 가능성과 무관하거나 사후에 인지된 단순 침투도발(주로, 후방지역 침투)이다. 이 중 고강도 도발은 청와대 기습미수('68.1.21),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68.10.30), KAL 여객기 납북('69.12.11), 대통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계의 ‘군사분쟁’ 개념이 반영된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도발과 개념의 기준에 따라서 군사충돌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⁷⁾ 장소를 DMZ와 인근 수역으로 제한하고, 그 공간에서 발생한 정전협정에서의 주요 위반 행위를 ‘DMZ 군사충돌’로 간주한다. 이에 입각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통계보다는 군사정전위의 통계에 더 접근하여 ‘DMZ 군사충돌’ 사례를 정리하였다.

2. DB구축의 시간적 범위 선정 및 방법

본 연구팀이 1945년 광복이후 1950년 6·25전쟁 전 시기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당시 38선이 세력균형에 의한 냉전 초기의 구조화된 경계로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처럼 작용하였고, 그에 따른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⁸⁾ 이와 함께 분단의 경계가 사라진 한국전쟁 시기는 1차년도 로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사례의 DB구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아일보 아카이브에 검색 키워드 입력 → 군사충돌 사례 확인 및 검증 → 분류표에 의거하여 엑셀 입력(DB구축) → 파일명 입력 및 PDF 작업 → 한글 해제 작업 등의 과정을 거쳐 군사충돌 사건들을 DB화 했다.

령저격 미수 사건('74.8.15),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76.8.18),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83.10.9), KAL 858기 폭파 사건('87.11.29), 노동1호 미사일 발사('93.5.29),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96.9.18), 대포동 1호 시험 발사('98.8.31), 제1차/2차 연평해전('99.6.15/'02.6.29), 대포동 2호 시험 발사('06.7.5), 1차 핵 실험('06.10.9), 장거리 로켓 발사('09.4.5), 2차 핵 실험('09.5.25), 대청해전('09.11.10), 천안함 피격 사건('10.3.26), 연평도 포격 도발('10.11.23) 등 총 19건으로 선정한다.” 합동참모본부, 『북한 대남침투 및 도발 사례집』, p. 6 참조.;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형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20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32~133.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는 분명히 군사도발의 개념과 기준을 명시한 ‘정전협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전협정은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 적용되므로 남북한은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한은 이미 정전협정으로 쌍방 간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군사도발은 ‘군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사적인 수단을 간접적으로 사용한 공작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용한 도발이 더 근접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해외를 통한 침투, 탈북자·월북군인·납북어부 간첩 남파 등에 의한 침투보다는 육상·해상을 통한 침투도발과 지상·해상·공중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국지도발이 군사도발 개념에 적합한 사례들이다.”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형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20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31.
- 8) “진주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청은 38선 이북여행은 자유지만, 이 지역으로의 여행은 “절대 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미소 양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38선 통행에 제약을 가했고 소련군은 월경자들에게 약탈과 총격을 서슴지 않았다. 소련은 이미 9월 초부터 38선에 대한 엄중한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남쪽으로 향하는, 집을 실은 모든 교통수단을 차단했다. 미군의 경비 초소가 설치되기 이전에 소련군에 의해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는 운행이 중단되었다. 법령으로 38선 통행을 금한다고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미소 양군에 의해 38선 월경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 38선 문제가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되었을 때 미국과 소련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지리적 좌표의 착오 문제로 보지 않았다. 미소는 38선 문제를 정치 문제로 고려했다. 적어도 1945~1948년 미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38선이 정확한 위치를 판정하려고 노력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형적으로는 38선 자체의 정확한 측정, 위치 판정 등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으나, 내면적으로는 38선 분할에 내재한 미소의 대한정책 구상과 목표 및 상대방에 대한 대결의식이 보다 강조되었다.”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06), pp. 158~165.

3. 키워드

동아일보의 군사충돌 관련 키워드는 다음 <표 2-2>과 같다. 동아일보 기사에 실제 쓰여지고 있으면서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정리하여 군사충돌 관련 기사를 검색하는데 활용했다. 주요 검색 키워드로는 간첩, 괴뢰, 귀순, 납북, 북괴, 북한, 삼팔선, 월남, 월북, 침범, 침입, 침투, 교전, 남파, 납치 등이 있다.

<표 2> 동아일보 군사충돌 관련 키워드

분류	키워드
ㄱ	간모, 간첩 , 간첩선, 검거, 격추, 경비, 경비정, 공동감시구역, 공동감시소조, 공동안전구역, 공동안전지대, 공산, 괴뢰 (괴뢰), 괴뢰군, 교전, 국가보안법, 군사분계선, 군사정전위, 군사정전위원회, 권총, 귀순 , 공작원, 군사경계선, 구금, 격침, 격파, 강탈, 공군기, 구속, 기소, 공비, 고정간첩, 경고, 국정원, 귀환, 국보법, 고발, 교전
ㄴ	나포, 남침, 남파 , 남하, 납북 , 납치 , 노획, 남하
ㄷ	동부전선, DMZ, 도주, 대남, 대치,
ㄹ	
ㄹ	무장간첩, 무장공작대원, 무장괴한, 민북, 민북 마을, 민정 경찰, 민통선, 민통선 마을, 밀파, 만행, 무전간첩, 매설, 무장화, 미수, 밀입북, 망명, 미사일, 무죄
ㅂ	반공, 북괴 , 북괴공작원, 북괴군, 북괴기, 북괴정, 북송, 북한 , 비라, 비무장지대, 불법, 부상, 북상, 보안법, 발포, 발사, 발사체, 북한병사, 방사포
ㅅ	사살, 삼팔, 삼팔선 , 38도선, 생포, 서부전선, 송북, 송환, 살해, 사격, 사망, 시체, 수사, 심문, 실종, 소탕
ㅇ	억류, 영공침범, 완충, 월남 , 월북 , 위반, 유엔, 이북, 일지, 입북, 여공비, 어선, 억류, 암호, 월경, 익사, 암약, 위기, 안보, 여객기, 위장, NLL, 위조, SLBM
ㅈ	잠입, 잠함정, 전방, 전선, 정전위, 정찰기, JSA, 조련계, 조연계, 조총련계, 중부전선, 적화, 지뢰, 잠복, 적병, 제트기, 즉사, 중상, 지령, 자수, 적화, 자살, 조작, 지하조직
ㅊ	총격, 총격전, 침범 , 침입 , 침투 , 체포, 첩보, 초소, 총포사격, 침략, 침몰, 충돌, 추방, 추락, 총기
ㅋ	
ㅌ	탈북, 테로(테러), 통일촌, 탈출, 탐문, 타격
ㅍ	판문점, 판문각, 폭파, 피랍 , 피납, 피살, 피격, 폭사, 피습, 포격, 포로, 포탄, 폭발물, 파괴, 포병, 표류
ㅎ	함정, 휴전선, 휴전협정, 항공기, 혐의, 훈련수
ㅍ	땅굴
ㅂ	삐라

4. 분류표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표에 입각하여 DB를 구축하였다. 분류표는 정전협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분류표에서 내용별 분류의 중분류 20이상에 속하는 사건들을 정전협정의 주요 위반사건으로 정리했다.

<표 3> 군사충돌 관련 DB구축 분류표

1. 특성별·지역별 분류						
1-1. 남한(S) / 북한(N) / 미국·UN(U) / 중국(C)						
1-2. 신문자료(P) / 정부간행물(G) / 문헌자료(B) / 정기간행물(J) / 인터넷자료(E) / 시각자료(V) / 영상자료(A) / 구술자료(O) / 사건자료(Z)						
1-3. 서부(전선서부: 서해 연안 ~ 파주) A / 중부(전선중부: 연천 ~ 양구) B / 동부(전선동부: 인제 ~동해 연안) C / 복합지역 D / 미상 E / 기타(비접경지) F / 해외지역 G						
2. 내용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00	육상	10	침투교전	1	군인사망	
				2	민간인사망	
				3	납치/생포/부상	
				4	쌍방교전	
		20	국지도발	1	군사분계선 월선	
				2	습격	
				3	총포격	
				4	시설파괴	
		30	경미한 정전협정위반	1	군사위반	
				2	민간위반	
				3	월남/월북(민간/군인)	
				4	빼라살포	
40	기타	9				
200	해상	10	침투교전	1	군인사망	
				2	민간인사망	
				3	어선 및 군함납치 / 침몰, 폭파 / 생포	
				4	군경비함 충돌(쌍방교전) / 격침	
		20	국지도발	1	군경비함 월선	
				2	습격	
				3	총포격	
				4	기타	
		30	경미한 정전협정위반	1	군사위반	
				2	민간위반(어선월선)	
				3	월남/월북(민간/군인)	
				4	기타	
300	공중	10	침투교전	1	군인사망	
				2	민간인사망	
				3	공중납치 및 폭파 / 생포	
				4	쌍방교전(미사일/대공포사격 및 격추)	
		20	국지도발	1	영공침범(군용기 월경)	
				2	공중공격	
		30	경미한 정전협정위반	1	군사위반	
				2	민간위반	
				3	월남/월북(민간/군인)	
		40	기타	9		
		400	복합지역	00		0
		500	구술자료	00		0
3. 시기별 분류 yy(년)/mm(월)/dd(일)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사례는 다음 [그림 2-1]과 같이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작업을 통해 DB로 구축했다. 예를 들어,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서해도발로 아군이 4명 사망”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의 ‘1차 서해교전’ 기사는 ‘SPA-211020630’으로 표기되어 관련 기사의 PDF 파일 명에도 동일하게 기재된다. 한편 사건의 넘버링 표기에 있어 소분류의 두 가지 사건이 교차되는 경우, 즉 군사분계선 월선과 군인사망 사건이 함께 제시될 때는 분류표 상의 위계에 입각하여,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군인 사망으로 처리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45년 8월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군사충돌사례를 DB화 하였다.

<그림 1> 군사충돌 사건 넘버링 예시

A	B	C	D	E	F	G	H	I	J	K	L	M	
No.	S: 남한 N: 북한 U: 미국유엔 C: 중국	P: 신문자료 G: 정부간담화 B: 운환자료 J: 장기간합동 E: 전파문 V: 시각자료 A: 영상자료 O: 구술자료 Z: 사진자료	A: 서부(인천-파주) B: 중부(인천-양구) C: 동부(인천-고성) D: 북방지역 E: 미상 F: 기타(비합경지) G: 해외지역	대분류 1: 육상 2: 해상 3: 공중 4: 기타	중분류 1: 장투교전 2: 국지충돌 3: 경이위반 4: 기타	소분류	날짜	제목	페이지 연	키워드	통계/후속 통계/후속 구분	정부파일명	
종합	S	P	D		4	0	0	700624	7.25,20를 特集(특집) (3) 赤化(적화)노린 北傀(북괴) 만행	6	북괴, 만행, 휴전, 남파, 교란, 폭력, 위장, 침투	통계/후속	SPD-400700624
예시-1	S	P	A		1	1	3	470827	以北韓邊隊(이북경비대)가越境(월경) 轟北壽年(서북 청년)을 拉致(납치)	2	이북, 경비대, 불법, 월경, 습격, 납치		SPA-113470827
예시-2	S	P	C		2	1	3	581207	漁船六隻(어선육척) 船員(선원)36名(명) 行方不明(행방불명)	2	괴뢰, 피랍, 납치, 납북, 어선, 휴전선, 동해		SPC-213581207
예시-3	S	P	E		1	1	3	720411	固定艦隊(고정간첩) 9명 등 32명 檢獲(검거)	7	북괴, 간첩		SPE-113720411
예시-4	S	P	F		1	1	1	960919	무장간첩 강릉서 총격전	1	강릉, 무장공비, 침투		SPF-111960919
예시-5	S	P	A		2	1	1	020630	北 서해도발... 아군 4명 戰死	1	NLL, 침범, 공격, 경비정, 북한, 폭죽, 함포		SPA-211020630
예시-6	S	P	A		1	1	1	621203	北俄間諜三名 斃命(북괴간첩삼명사망)	7	북괴, 간첩, 휴전선, 납치		SPA-111621203
예시-7	S	P	A		1	1	1	621214	間諜射擊(간첩사살)케한 北漁夫(어부)를 表彰(표창)	7	북괴, 간첩, 휴전선, 납치	후속	SPA-111621214
예시-8	S	P	D		4	0	0	661104	休戰(휴전)에 挑戰(도발)한「북괴 發射(발사)」	1	북괴, 도발, 휴전, 비무장지대		SPD-400661104
예시-9	S	Z	C		1	1	3	661104	休戰(휴전)에 挑戰(도발)한「북괴 發射(발사)」	1	북괴, 도발, 휴전, 비무장지대	후속	SZC-113661104
예시-10	S	Z	C		1	2	3	661104	休戰(휴전)에 挑戰(도발)한「북괴 發射(발사)」	1	북괴, 도발, 휴전, 비무장지대		SZC-123661104

5. 군사충돌 기사의 통계 처리 시 중복 기사 제외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례들을 DB화함에 있어, 하나의 신문기사(P)에 다양한 사건이 보도될 경우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사건자료(Z)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신문기사(P)에서 미 기재된 새로운 사건이 발견될 경우 사건자료(Z)로 간주하여 군사충돌 사건의 누적 통계에 포함시켰다.

특히 신문기사(P) 중 앞서 보도된 동일한 주제의 기사 및 심층적인 후속보도를 다루는 기사들은 ‘후속’기사로 처리하여 누적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 중복 카운팅(counting) 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 관련 기사에서 보도되는 군사충돌 사례의 종합적인 보도, 북한의 군사 도발을 종합한 기사(시리즈, 연재물, 특집기사 등) 및 구체적인 장소, 일시,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기사는 ‘포괄’로 처리했으며, 군사충돌 사례의 통계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기사는 ‘통계’로 처리했다. 이들 ‘포괄’ 및 ‘통계’ 기사 또한 중복 방지를 위해 본 연구의 DB구축에서 제외했다.

<표 4> 군사충돌 사례 기사의 DB처리 범위

구분	기사 처리 범위	누적 통계
후속	기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충, 추가하는 경우, 기사의 핵심 내용이 앞서 보도된 기사일 경우	제외
통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수치 제시	제외
포괄	장소, 일시,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기사	제외

이를 토대로 정리한 PDF 작업은 다음의 군사충돌 사례 예시에서 살펴 볼 수 있다.

6.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의 예시(그림 2-1 참조)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동아일보에 가장 많이 보도된 주요 군사충돌 사례로는 북한의 대남도발 사건을 정리한 ‘종합 기사’, ‘군사분계선 월선’, ‘어선 납북 및 선원 납치’, ‘간첩단 검거 사건’, ‘무장간첩 대남침투 사건’,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사건’ 등이 있다.

특히 신문기사(P)에 다양한 사건이 보도된 경우(예시-8, 9, 10 참조)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사건자료(Z)로 구분했다. 이중 처음으로 제시된 기사는 누적 통계에 포함시켰으며, 후속 기사는 군사충돌 통계에서 제외했다.

北傀의 主要 武力挑發事件

北傀의 主要 武力挑發事件 (北傀의 主要 武力挑發事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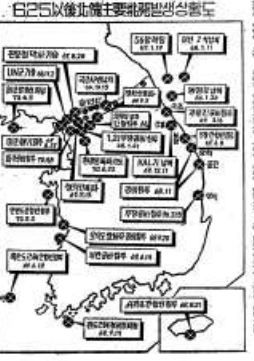
6월 22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21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20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9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8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7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6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5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4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3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2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1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0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9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8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7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6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5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4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3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2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6월 1일	북괴가 남괴를 향해 수차례 포격을 가함

赤化노린 北傀만행

休戰後 地下黨組織에서 게릴라南派까지

북괴의 남침 노선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휴전 후 북괴는 남한에 대한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휴전 후 북괴는 남한에 대한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휴전 후 북괴는 남한에 대한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625 20년



68년부터 共匪 침투

平和攻勢 偽裝 포기

북괴는 68년부터 남한에 대한 공작 활동을 본격화했다. 평화 공작을 포기하고, 오히려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휴전 후 북괴는 남한에 대한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暴舉 實效 없어

社會교란 劃策

북괴의 남침 노선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휴전 후 북괴는 남한에 대한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휴전 후 북괴는 남한에 대한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北傀의 停戰協定 위반 統計

연도	건수	인원	장비
1968	100	100	100
1969	150	150	150
1970	200	200	200
1971	250	250	250
1972	300	300	300
1973	350	350	350
1974	400	400	400
1975	450	450	450
1976	500	500	500
1977	550	550	550
1978	600	600	600
1979	650	650	650
1980	700	700	700

북괴의 남침 노선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휴전 후 북괴는 남한에 대한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휴전 후 북괴는 남한에 대한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일

3個月合格 1學年新設 英·美·日

한일학원

문명 시 학원

한일학원

경기학원

한일학원

은익학원

한일학원

문명 시 학원

한일학원

경기학원

한일학원

은익학원

한일학원

문명 시 학원

□ 예시-1

○ 동아일보 1947년 8월 27일 2면(사례: 군사분계선 월선)

號八十六百三千七第 (日理水) 日七十二月八年七十四百九千一紀國

時情(日)秋

朝鮮의 卍言綴字法

世界시가장優秀

百長官「普及」勸告

不純劣働團體 急速解散 시가

去來由光十餘上場 시가

美軍再結婚 시가

朝鮮女子激增

注意!

間項浦島陵鬱

行運路航期定

太平洋會議 朝鮮代表

金浩民·金南正 楊長出席

混血兒의 汎濫

不潔外日已見數百一

市廳 行方不明

配給品 補給

配給品補給

集會

新(朝鮮)總會

安徒生演說

朝鮮共黨 四名에 言渡

西北青年會 拉致

以比雷爾歐外 級境

大朝鮮總會 成立

大同心 救國團體

書報協會

林神

性病科

國產品出現

貨工場

濟世堂醫院

23日부터 4日開

집시身壽 首劇

女子의 都會

1日부터 日

濟世萬病丸

世界の大發明・萬病根治

濟世堂濟濟醫院

養家的福音

脫穀機界의 霸王

富國號(前大竹式)出現

NEW ENGLISH GRAMMAR

(新英文法)

各書店一齊發賣開始

集會

新(朝鮮)總會

安徒生演說

工科專門 學生募集

夜間添設

東洋工科專門學館

優良種子分讓

集養生訣

學生日報社新聞案內

NEW ENGLISH GRAMMAR

(新英文法)

集會

新(朝鮮)總會

安徒生演說

東洋工科專門學館

集養生訣

優良種子分讓

集養生訣

學生日報社新聞案內

NEW ENGLISH GRAMMAR

(新英文法)

集會

新(朝鮮)總會

安徒生演說

東洋工科專門學館

集養生訣

優良種子分讓

集養生訣

學生日報社新聞案內

NEW ENGLISH GRAMMAR

(新英文法)

集會

新(朝鮮)總會

安徒生演說

□ 예시-3

○ 로동신문 1972년 4월 11일 7면(사례: 간첩단 검거)

1972년 4월 11일 7면

固定間諜 9명등 32명檢舉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統革黨 재건등 劃策

女頭目이 教授社長등 劃策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高速버스 爆破犯自首

빛발으며 잣다 손자적으로 犯行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停留場整理 늦어질듯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이란南部에 强震

震度 9-5, 30개마을 폐허

2千~4千여명 死亡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實業高 整備추진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示掩어파트에 糞尿公害

신기 淨化안 汚水 하취에 四〇〇가수 苦痛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政府米로 밥지어 먹은

한신구 六명 腹痛사슬

복합병? 녹두알크기 糞物糞하여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朴相吉피고에 懲役五年 宣告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태광산업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11일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관악동 1가동 1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명 규모의 간첩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중 9명은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 本格的인 夏服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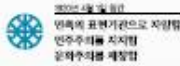
태광산업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하여 본격적인 하복지를 취조하여 내놓았습니다. 본격적인 하복지란 땀이 뜨겁고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에도 도지불의 하복지를 지닐 수 있는 장인한 복지를 말합니다. 먼저 팔리와 디자인을 완성 하십시오. 다양한 편성이 580여 가지나 됩니다.

키존텍스

夏服地

□ 예시-5

○ 동아일보 2002년 6월 30일 1면(사례: 해상 무력 충돌)



東亞日報

대한생명 www.koreaff.com
보통이 제과, 방송사업자
대한생명 고객센터
전화: 1588-0803

제과/제빵/음식 400호 | 발행인/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1 | 대표이사/편집장: 김기현 | 창간일: 1945년 10월 10일 | 2002년 6월 30일 일요일

北 서해도발... 아군 4명 戰死

어제 NLL 침범 선제공격-25분간 交戰 南고속정 1척 침몰 1명 실종 19명 부상 3년만의 海戰-北 경비정 1척 화염 휩싸여

경남 옹진 19도봉곶 서해 인공도 또는 인공섬(인도) 19개 25일 오후 1시에 남해군은 침범 2대에 침범 사격을 무효로 22일 40여기 발사해 사격으로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 중 1명도 사망했다. 우리 고속정 1척도 침몰했다.

이 서해 인공도 서쪽 187해리과 25일 오후 1시에 남해군 고속정 1척이 침범 2대에 침범 사격을 무효로 22일 40여기 발사해 사격으로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 중 1명도 사망했다.



고진상용 상영 (사)남해군청에서 25일 고속정에서 서해 인공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상 충돌 사건 관련 대대 지도를 보고 있다.

남해 해군에 고군이 발사한 것은 지난 2월 인공섬에 19개 인공도 침범이다. 이들 고군에 대한 속 연방 2척이 침범한 후의 19개 인공도 침범은 3년 6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 서해 인공도 서쪽 187해리과 25일 오후 1시에 남해군 고속정 1척이 침범 2대에 침범 사격을 무효로 22일 40여기 발사해 사격으로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 중 1명도 사망했다.

全軍 경계태세 강화

장군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은 전방에서 '제1군사선'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전방에서 '제1군사선'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전방에서 '제1군사선'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터키 '아름다운 마침표'

한국, 2대 3으로 패배 세계 4위
월드컵
오늘 브라질-독일 결승전

솔대통령 오늘 참모 대령대로 추진키로

대통령은 오늘 참모 대령대로 추진키로... (text continues)

북조선이 침범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남해군) 침범 2대에 침범 사격을 무효로 22일 40여기 발사해 사격으로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 중 1명도 사망했다.

北 '남조선이 먼저 공격했다'

북조선은 남조선의 침범 2대에 침범 사격을 무효로 22일 40여기 발사해 사격으로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 중 1명도 사망했다.

대한민국	2:3	터키
브라질	2:0	독일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찾아 떠난다

혹여 당신에게 자유권이 필요하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노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단 한 순간이라도 커다란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단 한 순간이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단 한 순간이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단 한 순간이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 예시-6

○ 동아일보 1962년 12월 3일 7면(사례: 무장간첩 사살 사건)

[7] 1962년 12월 3일 日曜日

黃巾事件의 修正報告

아내 蘇에 械鬥 두세 번
* 蘇親인임을 감히 부지 않다 *

옛 積産銀에 復職昇進



明 水魔뒤흔다거라 暗

市外民은 難境에

外面한 救護, 他道로 行商건

市內선 復舊作業 활발

三萬三千餘弗 갖고 逃走
美軍 P X의 韓國人 收金員



北傀間諜三名射殺

滬天附近 射殺 三名 間諜

親母와 동성 亂刺

인종 一名 兇死



釜山에 도둑

本府 內 被害 四百餘萬圓
또 加對 五萬 株

表彰 받은 篤志에 罰金刑

國民 校 道徳 教科書에 錯誤



專攻科目試驗 실시

豫想보다 쉬운 基礎적인 것

商品包裝展示會 會期延長案內

大韓貿易振興公社

李鎮明齒科

會期延長案內

大韓化學工業會 理事會

理事會

工事再入札公告

工事再入札公告

國都經理學院

國都經理學院

라디오 TV

라디오 TV

大韓電力株式會社

大韓電力株式會社

大韓化學工業會

大韓化學工業會

□ 예시-7(예시-6의 후속 기사)

○ 동아일보 1962년 12월 14일 7면(사레 무장간첩 사살에 공을 세운 사람 표창)

【7】 1962年12月14日 金曜日

물拷問에 바늘로 찔러 事後인 緘口를 哀願

— 牢獄에 閉居한 婦女의 男學生이 願書 —

檢事와 刑事結託 人權擁護서 現地調査

— 高麗高檢廳 檢察官의 行방 —

出題錯誤세개나 他系進學을 許用

— 大韓大學 資格考에 出題된 各系 正答이 混亂도 —

學生定員은 八百名

— 三價實業專門校 校務會議 決定 —

방망이로 媳母 打殺

— 京畿道 안성군 某 家에서 發生한 事件에 —

日漁夫 3名 向日

— 日領事館에 提出한 申請書에 —

暴風注意報

— 上해 市에서 注意 —

爭議權은 自動復活

— 李芳輔 委員 氏, 返上 院會 反駁 —

板子집 120棟 全燒

— 昌信洞 淸溪川 邊에 發生한 火災 —

朴大領에 懲役15年

— 釜山 地方法院 判決 —

가랑의 萬인 高麗

— 高麗 政府의 對外 政策에 —

淑賢위애 麗水에 세 房

— 麗水 市에서 發生한 事件 —

애미니는 선에서 日參

— 日軍의 對 朝鮮 半島 南部 進軍에 —

富士通

日本에서 유일의 電話機 製造 企業... 電子·通信機器...



主要製品
電話機, 傳呼機, 傳真機, 自動電話機, 無線電機, 電子計算機, 電子制御機, 電子測定機, 電子計測機, 電子測定器, 電子計測器, 電子測定機, 電子計測器

富士通機器製造株式會社
東京千代田區千代田 1-2-2

뉴스타일洋裁

미상자수

본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3-1
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3-2

라디오 TV

김선리 방우병

仁川 養正醫院
赤十字 療養院
第九回卒業展
서울 藝術大學
濟南 中央公報社

【1】 1966年11月4日 金曜日

The Dong-A Ilbo

【日刊】 35961號

韓肥密輸 조사 遲遲不振

特調委 檢察稅關 미온態度

東亞日報

休戰이挑發한 高은 獲標



看過 못 할 重大信號
軍事·政治 效果 노려

北傀蠻行을 糾彈

朴大統領 決斷 予子 野
유엔側, 모든 責任 지라

檢査 搜查 完 전 踏歩

稅關 結 論 不 定 案

越南支援에 團結

增派 論議 없었다

朴 承 宗 聲明 實踐 추진

美 手 續 統 韓 戰 略 協 議

존슨 2週日 후 入院

醫 療 手 續 한 자 리 美 除 去 手 術

全 國 選 民 選 出 的 代 表 者 團 體 會 議 開 幕 式 禮 拜 五 晚 間 在 大 會 堂 舉 行 禮 拜 五 晚 間 在 大 會 堂 舉 行



東 亞 戲 評

女 像

12月特大号 2150원

今年度 2回文學賞受賞作

本誌了大連戰 心理의 變遷

李東柱 柳敬環

李芝燕 崔世勳

李麗英 崔榮英

女 像

12月特大号 2150원

今年度 2回文學賞受賞作

今年度 2回文學賞受賞作

두 이야기

어느 女子의 片紙

特輯 男便의 沈黙

李麗英 崔榮英

女 像

12月特大号 2150원

今年度 2回文學賞受賞作

特輯 結婚生活과 職場生活

李麗英 崔榮英

1966年11月4日 星期四 The Dong-A Ilbo 1966年11月4日 星期四 第1361號

東亞日報

東亞日報社
社址: 大邱路111號
電話: 2111111

韓肥密輸 조사 遲遲不振

特調委 檢察 稅關 미은態度

特委 權力結託 못캐

檢察 搜查 完전 踏步

稅關 結 論 遲 延 只 見

休戰이 挑發社 喜은 獲恐



看過 勿 할 重大 信號

軍事·政治 效果 노려

北傀 蠻行을 糾彈

유엔側, 모든 責任 지라

軍事 停戰 要

朴大統 領 決斷 趨 子 野

美手 摘한 자 已 除 去 手術

趙南 文 援에 團結

朴 承 宗 聲 明 實 踐 推 進

美 手 摘 統 韓 戰 略 協 議

增 派 論 議 沒 有 了

金 日 成 對 美 宣 佈

삼표간장

삼표간장
삼표간장
삼표간장

東 亞 版 評



圖 工 筆

定評받은 肉慾의 日刊! 全國 女性의 生活와 人生을 밝히 주는 雜誌!

女 像

12月特大号

全年 12期 定價 1500원

全國 一貫 發售 中!

新 大 陸 社 發 行

天使의 口 吻

金 美 種

우리 近 來 人 物 理

羅 物 百 科

本 誌 大 連 載

心 理 的 愛 意

結婚 生活와 職 場 生活

趙 東 華

아라비아의 夜

金 潤 成

어느 女子의 片 紙

李 美 蘭

男 便의 沈 默

林 英

夢 華 二 色 墨 汁

李 美 蘭

女 性 的 反 叛

李 美 蘭

□ 예시-10

○ 동아일보 1966년 11월 4일 1면(사례: 예시-8의 사건 기사(Z)-2)

1966年11月4日 金曜日 The Dong-A Ilbo

東亞日報

韓肥密輸 조사 遲遲不振

特調委 檢察 稅關 미온態度

特委 權力結託 못캐

檢察 搜查 完전 踏步

稅關 結算 完전 踏步

休戰이 挑發社 高수 殘暴



看過 莫 할 重大信號
軍事·政治 效果 노려

北傀 變行을 糾彈

유엔側, 모든 責任 지라

蘇聯 手摘 한자 口 鼻 除去 手術

존슨 2週 日 幸 入院

越南 支援에 團結

增派 論議 있었다

金國 防務 會議

朴 大統 領 決斷 추 子 野

朴 大統 領 聲明 實踐 추진

美 手 續 統 韓 戰 略 協 議

東亞 嚴評



職 工 專

定評 있는 內容의 日刊! 全國 女性의 生活와 人生을 밝히 주는 雜誌!

女像

12月特大号

全額 一價 發售 中!

新大韓社 發行

今年度 노벨文學 賞 受賞 作

두 이야기

수명연 Y. 야그네비츠 작 / 노벨 賞 獲 者

今年度 노벨文學 賞 受 賞 者 朴 基 顯 氏 의 著 作 이 是 次 特 大 號 特 載 되 는 事 이 矣. 단 一 冊 售 價 亦 廉 宜 故 特 大 號 特 載 되 는 事 이 矣.

天使의 口 吻 兇 種

李 東 柱

柳 效 瑛

李 敬 南

特輯 男便의 沈默

李 敬 南

李 敬 南

李 敬 南

結婚 生活와 職 場 生活

郭 福 山

郭 福 山

郭 福 山

에는 女子의 片 紙

李 敬 南

李 敬 南

李 敬 南

Ⅲ.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총돌 사건 현황

1. 전체 군사총돌 사건 현황

1) 연도별·지역별 분석

1945년 8월 15일 남북 분단 이후 2015년까지 남한의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총돌사건은 총 8,82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군사총돌 사건의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68년의 507건이었으며, 특히 1960년대 중·후반 보도량이 급증했다.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1990년대 중·후반 보도량이 다시 급증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49년의 군사총돌 사건 보도가 266건이나 발생했고, 이중 거의 대부분이 육상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표 5> 동아일보 전체 군사총돌 사건 보도 현황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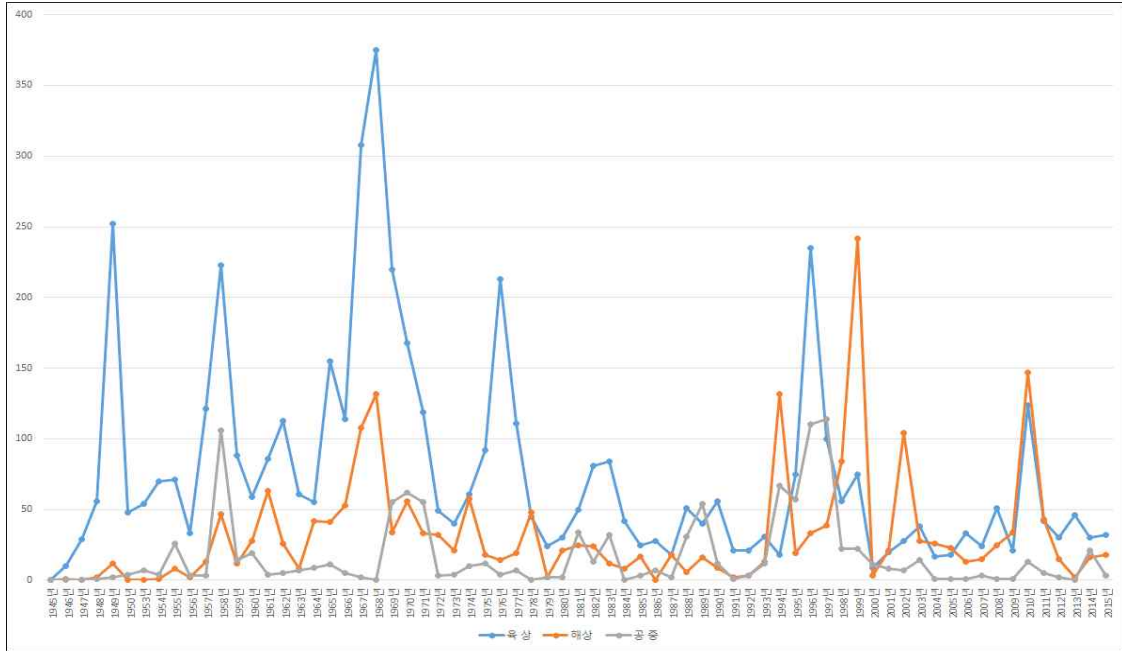
연도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1945년	0	0	0	0
1946년	10	1	0	11
1947년	29	0	0	29
1948년	56	2	1	59
1949년	252	12	2	266
1950년 (6월25일 이전)	48	0	4	52
1953년 (7월27일 이후)	54	0	7	61
1954년	70	1	4	75
1955년	71	8	26	105
1956년	33	2	3	38
1957년	121	13	3	137
1958년	223	47	106	376
1959년	88	12	14	114
1960년	59	28	19	106
1961년	86	63	4	153
1962년	113	26	5	144
1963년	61	8	7	76
1964년	55	42	9	106
1965년	155	41	11	207
1966년	114	53	5	172
1967년	308	108	2	418
1968년	375	132	0	507
1969년	220	34	55	309

9) 대분류 400을 제외한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총돌 사건 전체 현황.

1970년	168	56	62	286
1971년	119	33	55	207
1972년	49	32	3	84
1973년	40	21	4	65
1974년	61	58	10	129
1975년	92	18	12	122
1976년	213	14	4	231
1977년	111	19	7	137
1978년	45	48	0	93
1979년	24	2	2	28
1980년	30	21	2	53
1981년	50	25	34	109
1982년	81	24	13	118
1983년	84	12	32	128
1984년	42	8	0	50
1985년	25	17	3	45
1986년	28	0	7	35
1987년	18	18	2	38
1988년	51	6	31	88
1989년	40	16	54	110
1990년	56	9	12	77
1991년	21	2	1	24
1992년	21	3	3	27
1993년	31	13	12	56
1994년	18	132	67	217
1995년	75	19	57	151
1996년	235	33	110	378
1997년	100	39	114	253
1998년	56	84	22	162
1999년	75	242	22	339
2000년	9	3	11	23
2001년	20	21	8	49
2002년	28	104	7	139
2003년	38	28	14	80
2004년	17	26	1	44
2005년	18	23	1	42
2006년	33	13	1	47
2007년	24	15	3	42
2008년	51	25	1	77
2009년	21	34	1	56
2010년	124	147	13	284
2011년	42	43	5	90
2012년	30	15	2	47
2013년	46	2	0	48
2014년	30	16	21	67
2015년	32	18	3	53
총계	5,223	2,190	1,136	8,549

<그림 2> 동아일보 전체 군사충돌 사건 보도 현황

(단위: 건)



앞서 살펴본 동아일보 전체 보도건수 중 동일 사건을 후속으로 보도한 후속(중복) 기사, 통계 기사, 포괄적인 내용을 보도한 기사 건수를 제외하면 실제 군사충돌 횟수는 총 2,94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조사에서 군사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1968년으로 258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1967년 178건, 1965년 103건, 1969년 95건 등 주로 1960년대 중·후반 군사충돌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70년대 초와 1996년 58건을 제외하고 매년 50건 미만의 군사충돌사례가 보도되는 등 군사충돌 사례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1960년대 후반 군사충돌이 많이 발생한 것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 남한을 무력적화통일 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1·21 청와대 습격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등 중대한 대남도발 사건을 저질렀다. 연도별 군사충돌 사건 조사에서 보여 지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에 182건이 발생하여 두 번째로 군사충돌이 많았던 시기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전 분단의 경계가 그어지긴 했지만 명확하고 분명한 경계 설정의 부재했기 때문이며, 이미 한국전쟁의 전초전 형태로 크고 작은 남북 간 군사충돌이 많이 발생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표 6> 전체 사건의 연도별·지역별 군사충돌 현황¹⁰⁾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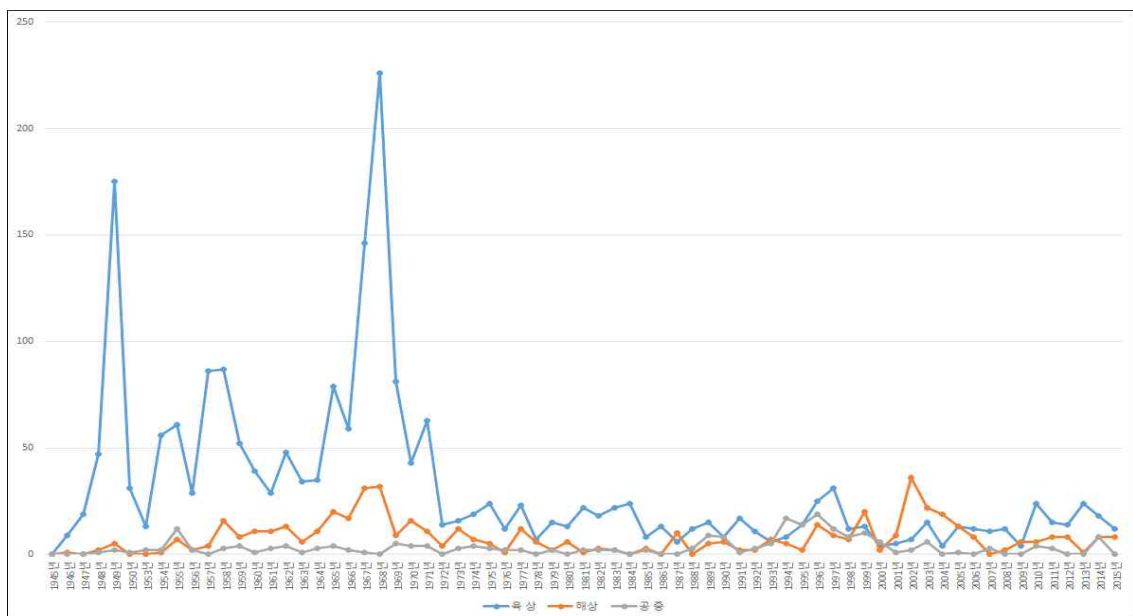
연도별 / 지역별	육 상	해상	공 중	계
1945년	0	0	0	0
1946년	9	1	0	10
1947년	19	0	0	19
1948년	47	2	1	50
1949년	175	5	2	182
1950년 (6월25일 이전)	31	0	1	32
1953년 (7월27일 이후)	13	0	2	15
1954년	56	1	2	59
1955년	61	7	12	80
1956년	29	2	2	33
1957년	86	4	0	90
1958년	87	16	3	106
1959년	52	8	4	64
1960년	39	11	1	51
1961년	29	11	3	43
1962년	48	13	4	65
1963년	34	6	1	41
1964년	35	11	3	49
1965년	79	20	4	103
1966년	59	17	2	78
1967년	146	31	1	178
1968년	226	32	0	258
1969년	81	9	5	95
1970년	43	16	4	63
1971년	63	11	4	78
1972년	14	4	0	18
1973년	16	12	3	31
1974년	19	7	4	30
1975년	24	5	3	32
1976년	12	1	2	15
1977년	23	12	2	37
1978년	7	6	0	13
1979년	15	2	2	19
1980년	13	6	0	19
1981년	22	1	2	25
1982년	18	3	2	23
1983년	22	2	2	26
1984년	24	0	0	24
1985년	8	3	2	13
1986년	13	0	0	13
1987년	6	10	0	16

10) 대부분류 400, 중복/통계/포괄 등을 제외한 실 건수임.

1988년	12	0	3	15
1989년	15	5	9	29
1990년	8	6	8	22
1991년	17	2	1	20
1992년	11	2	3	16
1993년	6	7	5	18
1994년	8	5	17	30
1995년	14	2	14	30
1996년	25	14	19	58
1997년	31	9	12	52
1998년	12	7	8	27
1999년	13	20	10	43
2000년	4	2	6	12
2001년	5	9	1	15
2002년	7	36	2	45
2003년	15	22	6	43
2004년	4	19	0	23
2005년	13	13	1	27
2006년	12	8	0	20
2007년	11	0	3	14
2008년	12	2	0	14
2009년	4	6	0	10
2010년	24	6	4	34
2011년	15	8	3	26
2012년	14	8	0	22
2013년	24	1	0	25
2014년	18	8	8	34
2015년	12	8	0	20
총계	2,169	545	230	2,940

<그림 3> 전체 사건의 연도별·지역별 정전협정 위반 현황

(단위: 건)



한편 동아일보 기사의 지역별 군사충돌을 집계한 결과, 육상 2,169건(73.4%), 해상 545건(18.4%), 공중에서 230건(7.8%)이 발생했다. 이처럼 육상에서의 군사충돌이 70%를 넘을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해상과 공중에서의 군사충돌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 수치는 북한이 침투가 용이한 육상으로 무장간첩을 남파시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였고, 특히 남한 정부 및 사회의 교란과 외해를 목적으로 남파시킨 고정간첩, 우회간첩 등 간첩단 검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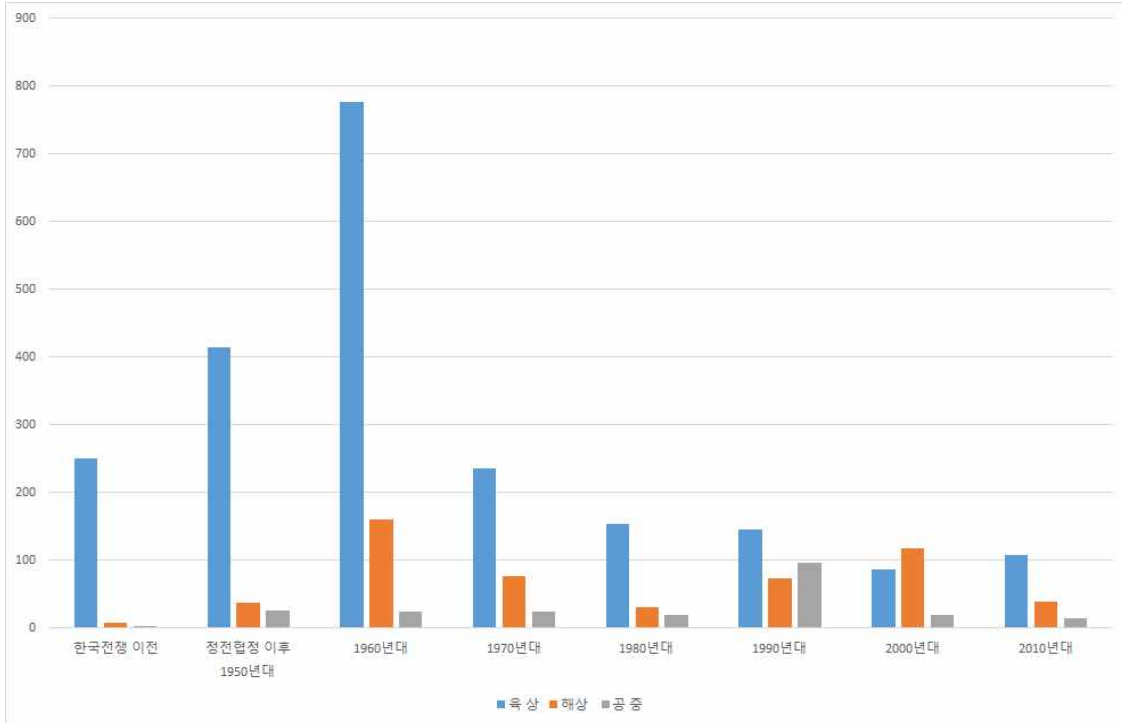
<표 7> 전체 사건의 시대별 군사충돌 현황

(단위: 건)

연대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한국전쟁 이전	250	8	3	261
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415	38	26	479
1960년대	776	161	24	961
1970년대	236	76	24	336
1980년대	153	30	20	203
1990년대	145	74	97	316
2000년대	87	117	19	223
2010년대	107	39	15	161
총계	2,169	543	228	2,940

육상에서 군사충돌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68년으로 총 226건이 집계되었으며, 반대로 군사충돌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1945년 0건을 비롯하여 2000년, 2004년, 2009년 각 4건 등 2000년대 들어 육상에서의 군사충돌이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이 많이 발생한 시기로, 특히 2002년에는 36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이 가장 빈번했던 시기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NLL 침범과 관련한 정전협정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고 서해교전으로 인한 군사충돌 사건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중의 경우 대부분의 시기에서 10건 미만의 군사충돌 사례가 집계되었다. 공중에서 군사충돌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도는 1996년의 19건이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공중에서의 정전협정위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인해 해외를 경유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사례가 많았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림 4> 전체 사건의 시대별 군사충돌 변화



2) 유형별 분석

남북 군사충돌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첩단 검거를 통해 많은 고정 간첩 및 우회 침투 간첩을 생포한 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¹¹⁾ 특히 ‘113’유형 전체 686건의 사건 기사 중 565건(82%)이 간첩단 검거와 관련된 사건일 정도로 ‘군인 생포 또는 부상’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정전협정 위반 유형은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이다. 여기서 보여 지는 기사의 내용은 무장간첩이 대남침투 하다가 교전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정전협정 위반 사건 중 ‘113’과 ‘111’이 총 1,231건으로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처럼 동아일보에서는 간첩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많이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번째로 많이 보도된 사건은 육상에서의 ‘월남/월북(군인/민간인 포함)’으로 나타났다. 공중에서의 월남/월북 사건, 즉 해외 경유를 통한 월남 사건(133건)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형 ‘149’로 이는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훗날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반공이데올로기 강화 시기, 남한 정부가 무작위로 간첩 혐의를 적용하여 정권 유지 및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11) 본 연구에서는 간첩을 고도의 침투 훈련 및 군사 교육을 받은 군인으로 규정했다.

<표 8> 전체 사건의 정전협정 위반 유형별 10순위

(단위: 건)

순위	유형	내용	유형별 개수
1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간첩단 검거 포함)	686/565(간첩)
2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	545/316(간첩)
3	133	월남/월북 사건(군인/민간인 포함)	220
4	213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	168
5	131	육상에서의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	163
6	333	해외 경유를 통한 월남/월북(군인/민간인 포함)	133
7	149	간첩 무혐의 사건	118
8	114	육상에서의 쌍방 교전	113
9	221	군 경비함 월선 사건	100
10	123	육상에서의 국지도발 시 총포격	87

2. 주요 군사충돌 사건 현황

1) 연도별·지역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류표에서 내용별 분류의 중분류 20이상에 속하는 사건들을 정전협정의 주요 위반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군사충돌로 인해 쌍방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중대한 사건들이 중분류 20이상에 포함되었고 남북 간 군사충돌 사건의 고도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대한 연도별 수치를 분석한 결과, 1945년 8월부터 2015년의 기간 동안 총 2,017건의 군사충돌 사례가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체 사건의 약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의 2/3가량이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9> 주요 사건의 연도별·지역별 정전협정 위반 현황¹²⁾

(단위: 건)

연도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1945년	0	0	0	0
1946년	3	0	0	3
1947년	16	0	0	16
1948년	44	1	0	45
1949년	159	2	2	163
1950년 (6월25일 이전)	26	0	0	26
1953년	11	0	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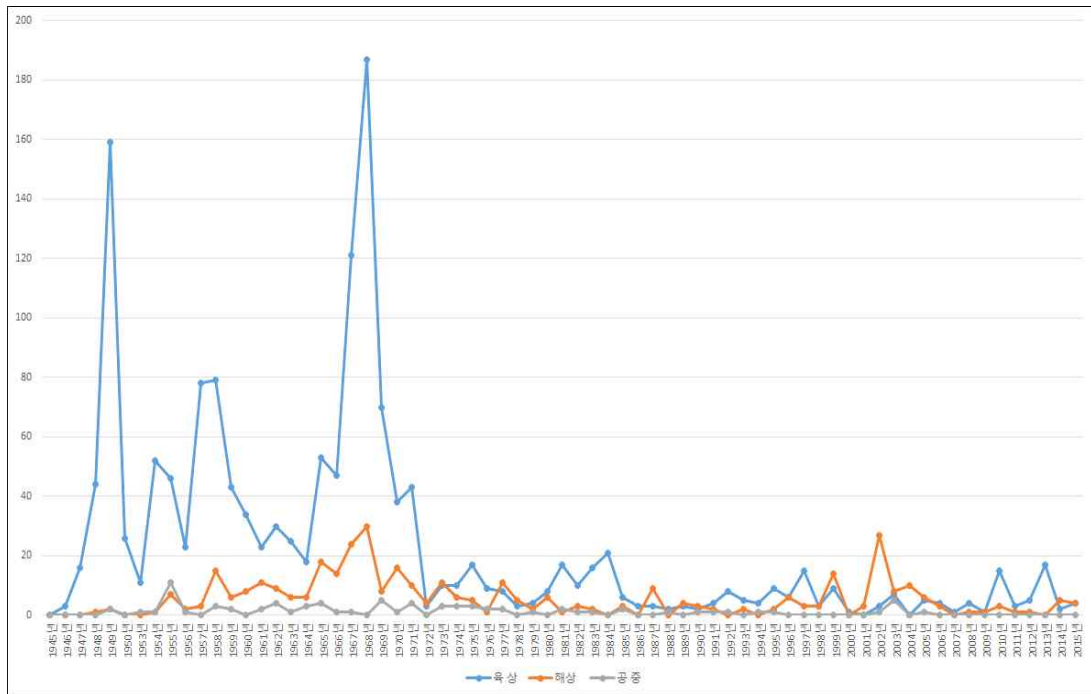
12) 중분류 30, 40을 제외한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현황임.

(7월27일 이후)				
1954년	52	1	1	54
1955년	46	7	11	64
1956년	23	2	1	26
1957년	78	3	0	81
1958년	79	15	3	97
1959년	43	6	2	51
1960년	34	8	0	42
1961년	23	11	2	36
1962년	30	9	4	43
1963년	25	6	1	32
1964년	18	6	3	27
1965년	53	18	4	75
1966년	47	14	1	62
1967년	121	24	1	146
1968년	187	30	0	217
1969년	70	8	5	83
1970년	38	16	1	55
1971년	43	10	4	57
1972년	3	4	0	7
1973년	10	11	3	24
1974년	10	6	3	19
1975년	17	5	3	25
1976년	9	1	2	12
1977년	8	11	2	21
1978년	3	5	0	8
1979년	4	2	1	7
1980년	8	6	0	14
1981년	17	1	2	20
1982년	10	3	1	14
1983년	16	2	1	19
1984년	21	0	0	21
1985년	6	3	2	11
1986년	3	0	0	3
1987년	3	9	0	12
1988년	2	0	1	3
1989년	3	4	0	7
1990년	2	3	1	6
1991년	4	2	1	7
1992년	8	0	1	9
1993년	5	2	0	7
1994년	4	0	1	5
1995년	9	2	1	12
1996년	6	6	0	12
1997년	15	3	0	18
1998년	3	3	0	6
1999년	9	14	0	23
2000년	1	0	0	1
2001년	0	3	0	3
2002년	3	27	1	31
2003년	7	8	5	20

2004년	0	10	0	10
2005년	5	6	1	12
2006년	4	3	0	7
2007년	1	0	0	1
2008년	4	1	0	5
2009년	1	1	0	2
2010년	15	3	0	18
2011년	3	1	0	4
2012년	5	1	0	6
2013년	17	0	0	17
2014년	2	5	0	7
2015년	4	4	0	8
총계	1,559	378	80	2,017

<그림 5> 주요 사건의 연도별·지역별 정전협정 위반 현황

(단위: 건)



한편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역시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총 763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약 1/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군사충돌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사충돌 사건이 벌어졌던 1949년은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163건으로 전체 182건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군사충돌이 중대한 군사충돌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에도 이미 227건의 군사충돌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사건·사고도 포함되었음을 의미하며, 시기적으로 한국전쟁 직전에 이와 같이 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한국전쟁의 기원과 관련지어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사건 역시 전체 사건 현황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에는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아일보에 보도된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정전협정 위반 현황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육상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은 1,559건(약 77.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해상 378건(약 18.7%), 공중 80건(약 4%)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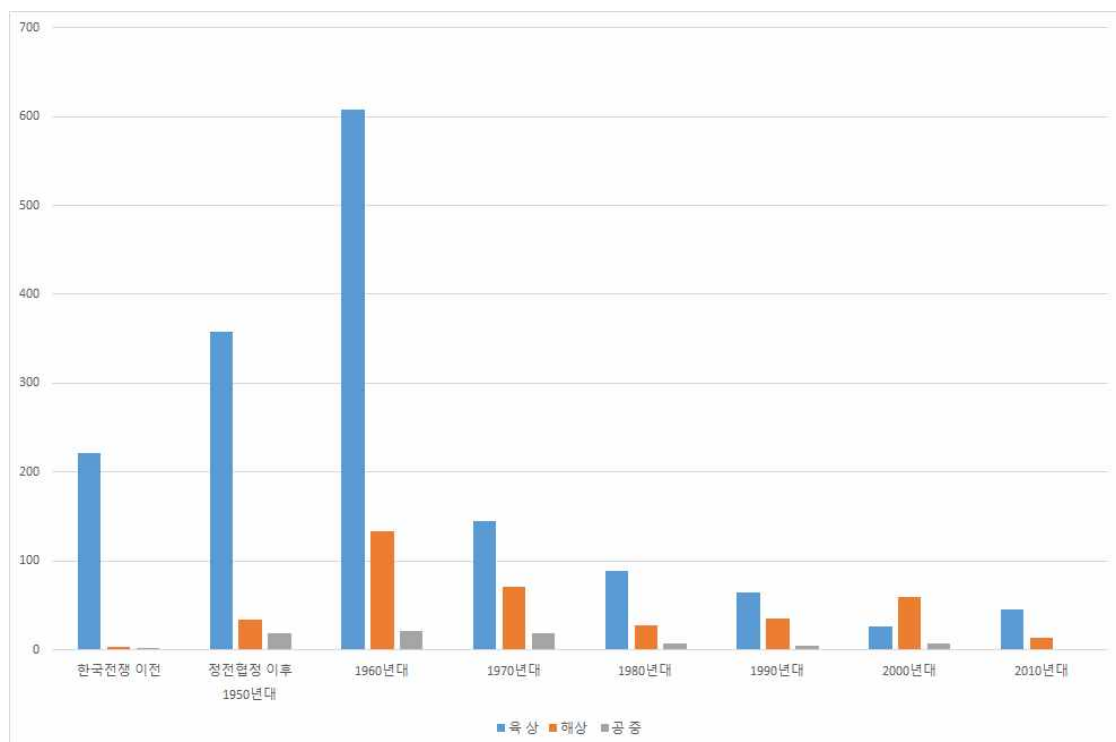
특히 각 지역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육상(주요 77.3%/전체 73.4%), 해상(주요 18.7%/전체 18.4%), 공중(주요 4%/전체 7.8%)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육상과 해상에서는 전체 정전협정 위반 건수 중 주요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중에서의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적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 10> 시기별 주요 군사충돌 사건 현황

(단위: 건)

연대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한국전쟁 이전	222	3	2	227
정전협정 이후	358	34	19	411
1950년대	608	134	21	763
1960년대	145	71	19	235
1970년대	89	28	7	124
1980년대	65	35	5	105
2000년대	26	59	7	92
2010년대	46	14	0	60
총계	1,559	378	80	2,017

<그림 6> 주요 사건의 시기별 정전협정 위반 현황



2) 유형별 분석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유형은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686건)'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사건 역시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이다. 여기서 보여 지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무장간첩이 침투하였다가 발각되어 교전 중 사망한 사건이다.

특이점은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서는 '213: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가 세 번째로 많은 군사충돌 사례로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사건들은 어선 납치와 관련한 사건들이었다. 또한 '221: 군 경비함 월선 사건'이 100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중 해상에서 벌어진 위반 사건도 상당히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상에서 1960년대와 2000년대 들어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1960년대 중반에는 어선 납북 및 선원 납치 등이 많았기 때문이며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NLL 침범과 관련이 있다.

<표 11> 주요 사건의 정전협정 위반 유형별 10순위

(단위: 건)

순위	유형	내용	유형별 개수
1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 (무장간첩 및 간첩단 검거 포함)	686
2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육상)	545
3	213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	168
4	114	육상에서의 쌍방 교전	113
5	221	군 경비함 월선 사건	100
6	123	육상에서의 국지도발 시 총포격	87
7	2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해상)	58
8	112	침투교전 시 민간인 사망(육상)	53
9	321	영공침범(군용기 월경)	49
10	121	군사분계선 월선	48

3. DMZ지역의 주요 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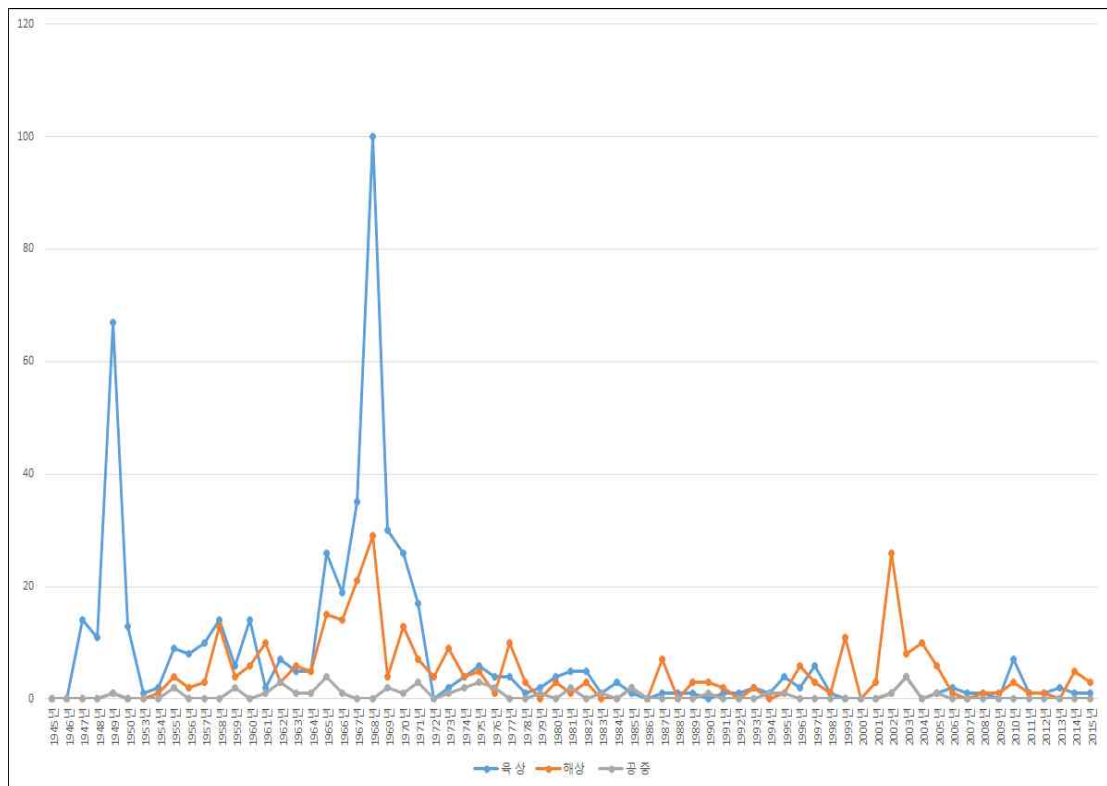
동아일보에 보도된 DMZ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충돌 사건은 총 1,257건이 집계되었다. 이 중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886건이 발생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연도는 1968년으로 129건의 군사충돌 사건이 있었다. 특이점으로는 1949년 69건의 군사충돌이 38도선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동아일보의 보도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의 시기까지 DMZ지역에서 주요 군사충돌 사건은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한국전쟁 직전에 주요 군사충돌 사건이 적게 보도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표 12>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연대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1945년	0	0	0	0
1946년	0	0	0	0
1947년	14	0	0	14
1948년	11	0	0	11
1949년	67	1	1	69
1950년 (6월25일 이전)	13	0	0	13
1953년 (7월27일 이후)	1	0	0	1
1954년	2	1	0	3
1955년	9	4	2	15
1956년	8	2	0	10
1957년	10	3	0	13
1958년	14	13	0	27
1959년	6	4	2	12
1960년	14	6	0	20
1961년	2	10	1	13
1962년	7	3	3	13
1963년	5	6	1	12
1964년	5	5	1	11
1965년	26	15	4	45
1966년	19	14	1	34
1967년	35	21	0	56
1968년	100	29	0	129
1969년	30	4	2	36
1970년	26	13	1	40
1971년	17	7	3	27
1972년	0	4	0	4
1973년	2	9	1	12
1974년	4	4	2	10
1975년	6	5	3	14
1976년	4	1	2	7
1977년	4	10	0	14
1978년	1	3	0	4
1979년	2	0	1	3
1980년	4	3	0	7
1981년	5	1	2	8
1982년	5	3	0	8
1983년	1	0	1	2
1984년	3	0	0	3
1985년	1	2	2	5
1986년	0	0	0	0
1987년	1	7	0	8
1988년	1	0	0	1
1989년	1	3	0	4
1990년	0	3	1	4
1991년	1	2	0	3

1992년	1	0	0	1
1993년	2	2	0	4
1994년	1	0	1	2
1995년	4	1	1	6
1996년	2	6	0	8
1997년	6	3	0	9
1998년	1	1	0	2
1999년	0	11	0	11
2000년	0	0	0	0
2001년	0	3	0	3
2002년	1	26	1	28
2003년	4	8	4	16
2004년	0	10	0	10
2005년	1	6	1	8
2006년	2	1	0	3
2007년	1	0	0	1
2008년	1	1	0	2
2009년	0	1	0	1
2010년	7	3	0	10
2011년	1	1	0	2
2012년	1	1	0	2
2013년	2	0	0	2
2014년	1	5	0	6
2015년	1	3	0	4
총계	527	314	45	886

<그림 7>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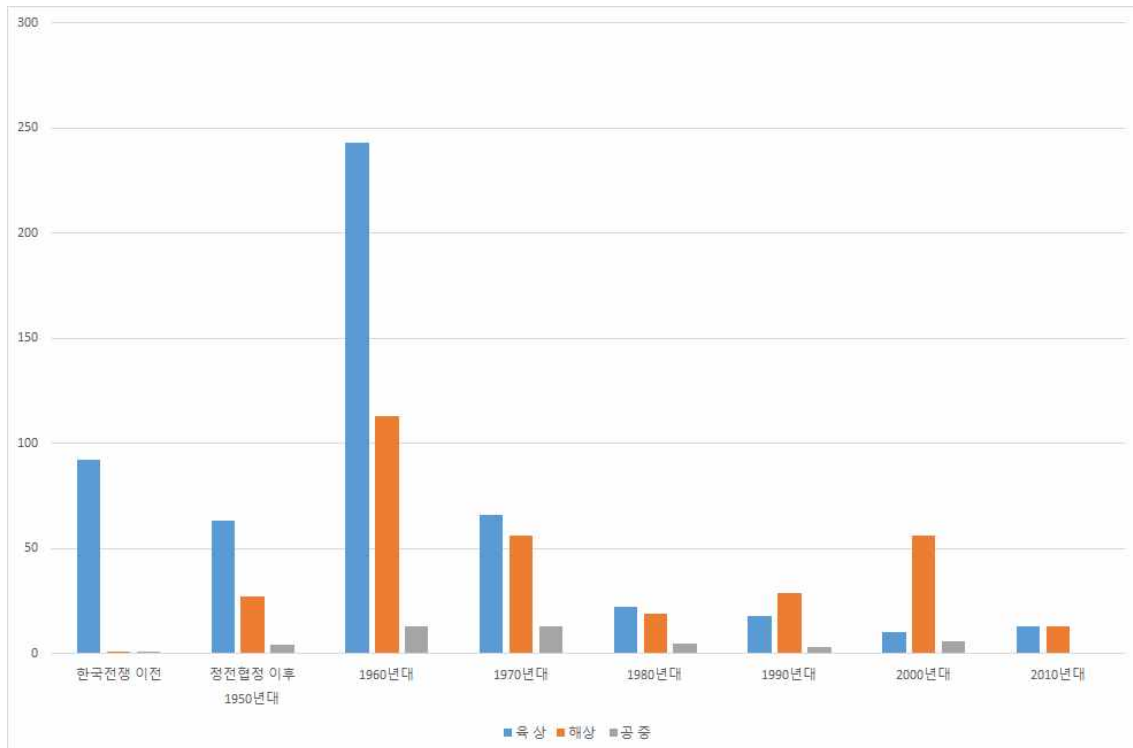
DMZ지역에서도 다른 집계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가장 많은 군사충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2000년대에는 해상에서 군사충돌 사건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3> DMZ지역 시대별 주요 군사충돌 사건 현황

(단위: 건)

연대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한국전쟁 이전	92	1	1	94
정전협정 이후	63	27	4	94
1950년대	243	113	13	369
1960년대	66	56	13	135
1970년대	22	19	5	46
1980년대	18	29	3	50
2000년대	10	56	6	72
2010년대	13	13	0	26
총계	527	314	45	886

<그림 8>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한편 DMZ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다음과 같다. 육상에서 벌어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527건이었으며, 해상 314건, 공중 45건 등 총 886건이 DMZ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MZ내에서 벌어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이 서부 전선(329건)과 서해상(218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이 남북 간 주요 군사충돌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지역별 건수(동아일보 보도 기준)

	A' (해상)	A 서부(전선서부: 서해연안 ~ 파주)	B 중부(전선중부: 연천 ~ 양구)	C 동부(전선동부: 인제 ~ 동해 연안)	C' (해상)	합계
육상	.	302	153	72	.	527
해상	218	.	.	.	96	314
공중	-	27	4	14	.	45
합계	218	329	157	86	96	886*

* 2,017개 주요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 가운데 지역이 불명확한 미상 및 복합지역 기사 제외

IV.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사례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군사충돌 사건 보도 현황

1945년 8월 남북 분단 이후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아일보에 보도된 전체 군사충돌 사건 현황 및 주요 군사충돌 사건을 연도별·지역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현황 모두 유사한 형태의 양상이 나타났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 빈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남북 간 군사충돌 사건이 1960년대 중·후반 시기에 집중되었고, 1970년대를 기점으로서는 매년 50건 미만의 군사충돌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소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인 1960년대 중·후반에 군사충돌 사건이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1970년대 초 대외적으로 데탕트(detente)라고 하는 국제환경의 변화, 대내적으로 박정희와 김일성의 리더십 공고화를 통한 권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전개된 남북 간 긴장완화가 군사충돌을 점차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탈냉전 시대의 도래 또한 남북 간 군사충돌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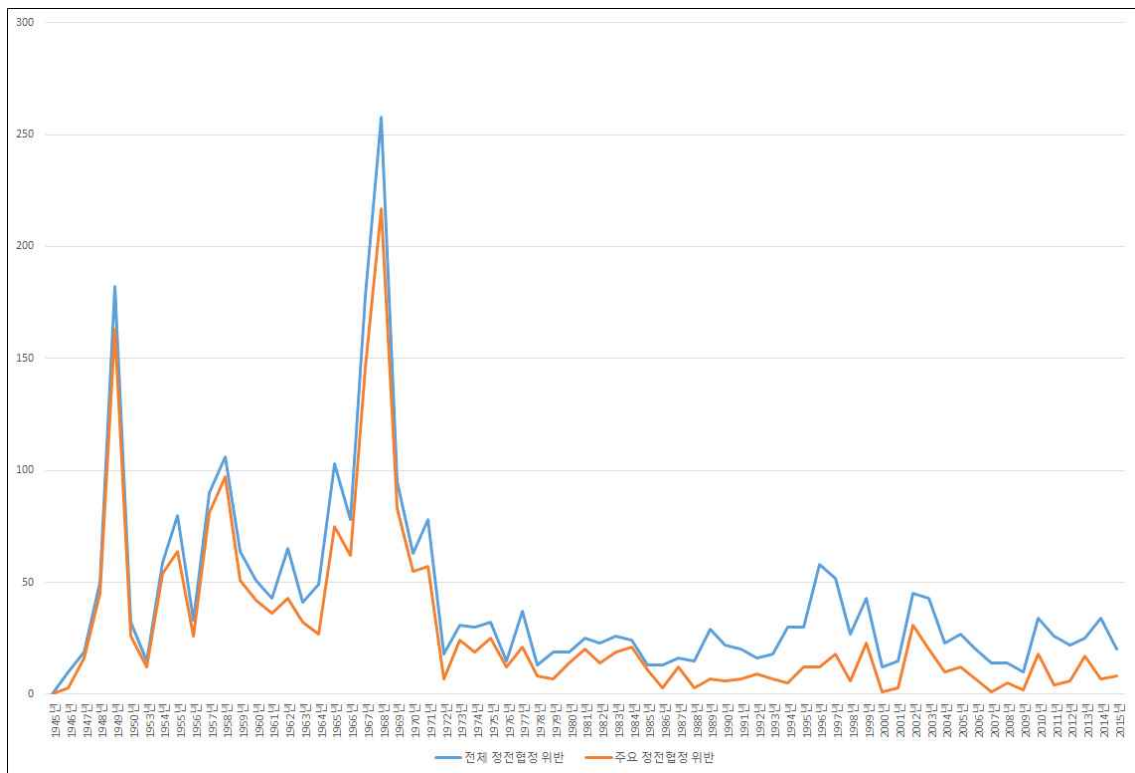
둘째, 지역별 군사충돌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군사충돌이 육상에서 발생했다. 즉 전체 사건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육상에서의 군사충돌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공중에서의 분쟁 사례는 적게 집계되었다. 이는 육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침투 및 퇴로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상에서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서해에서의 NLL 침범과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셋째, 동아일보에 가장 많이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의 유형은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이고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정전협정 위반 유형은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이었다. 특히 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사건의 거의 1/2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첩단 검거를 통해 많은 간첩을 생포한 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무장간첩이 대남침투

시 교전하여 사망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해외 경유를 통한 월남/월북 사건(군인/민간인 포함) 및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 등도 동아일보에서 군사충돌 사건으로 많이 보도된 사건들이다.

이처럼 전체 사건과 주요 사건의 현황 분석에서 주요 특징들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남북 간 군사충돌 사건들의 대부분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었으며, 남북 간 군사충돌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그림 9> 전체 및 주요 군사충돌 사건 비교



2. 주요 사건: 간첩 사건 및 어선 납북 사건

동아일보에 보도된 주요 사건은 ‘간첩’ 관련 사건이었다. 특히 간첩 사건의 주요 형태로는 무장간첩 침투 사건, 고정간첩 및 우회간첩 등 간첩단 검거 사건 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북한정권은 1948년 초에 간첩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을 설립하고, 6·25전쟁 직전에는 2천 4백 명의 간첩을 남파하여 요인포섭 및 파업·폭동·테러를 꾀하였다.¹³⁾ 북한의 통일전략은 폭력에 의한 공산화에 있기 때문에 혁명여건조성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남간첩활동이 주는 영향력도 증대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대사건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앞서 유형별 군사충돌 사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인 생포 및 부상’으로 집계된 전체 686건의 사건 기사 중 565건(82%),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 545건 중 316건(58%), 그리

13) 월간 북한(2011), “자료: 대한민국 간첩사,”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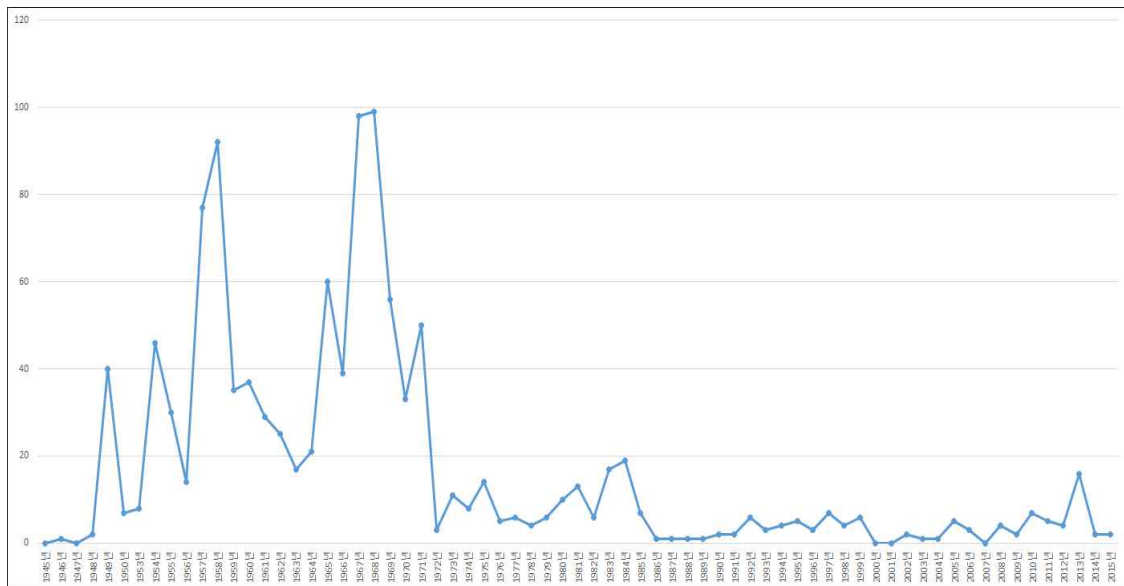
고 ‘간첩 무협의 사건’ 118건까지 합하면 총 999건이 ‘간첩’과 관련된 사건일 정도로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키워드 ‘간첩’, ‘공비’, ‘공작’ 등 간첩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1,145건의 집계되었다. 이렇듯 동아일보에서 보도되는 간첩 사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듯이 보도량에서 다른 사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간첩 관련 정전협정 위반 사건

(단위: 건)

순위	유형	내용	유형별 개수
1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간첩 생포 포함)	686/565(간첩)
2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	545/316(간첩)
3	213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	168
7	149	간첩 무협외의 사건	118
8	114	육상에서의 쌍방 교전	113
10	123	육상에서의 국지도발 시 총포격	87

<그림 10> 연도별 간첩 사건 현황



이와 같은 특징은 이데올로기의 극명한 대립 속에 보여 지는 주요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특히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에 힘썼다. 위의 간첩사건 [그림 4-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기적으로도 1950년대와 1960년대 간첩 관련 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체제 경쟁과 대립 속에서 무장공비의 침투가 많았으며,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고정 간첩 및 우회 간첩이 많이 남파되었던 시기였다. 즉 군사독재 하

의 언론 통제 및 장악을 통해 무장간첩 및 간첩단 사건을 반공이데올로기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간첩의 존재를 환기시켰고, 검거된 간첩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 존재를 보다 현실적·실재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¹⁴⁾

한편 동아일보에 보도된 또 다른 주요 사건 중 하나는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와 관련된 사건으로 168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세부 내용은 민간 어선 납북 및 선원 납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듯 많이 보도된 이유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정전협정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남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보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북한의 민간 어선 납치에 대한 각 지역의 규탄대회, 각 기관의 성명서 발표 등 관련 후속기사들이 많이 보도되었다.

3. 보도형태

본 연구팀이 동아일보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군사총돌 사건 관련 보도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남북 간 대화시기에는 유화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 즉 1970년대 초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시기에는 ‘북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북한’이라는 용어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 간 긴장완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기사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전체 사건 2,940건 중 단독 기사(P) 2,173건, 사건 기사(Z) 767건으로 거의 3배가량의 차이가 났다. 즉 대부분의 보도가 단독 기사(P)의 형태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사총돌 사건 발생 시 즉시 보도함으로써 보도의 신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시각적 효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주요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후속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특징이 있다. 즉 가장 처음 보도한 단독 기사(P)를 시간적·공간적 변화에 따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양상이 보여 졌다. 예를 들어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무장습격 사건인 ‘1·21 사태’ 발생 이후, 추가 검거 작전, 관련 뉴스 등을 후속기사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넷째, 주요 군사총돌 사건 발생 시 이전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도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환기시키는 한편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아일보의 보도형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은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상당 부분 담고 있으며, 남한 대중들에게 ‘반공’이라는 하나의 일관되고 총체적인 인식과 행위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다.¹⁵⁾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일보에 보도된 간첩 사건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생산과 확산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갖으면서 남한정권에 의해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다.

14)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권(역사학연구소, 2012), p. 113.

15) 김봉국, 위의 논문, pp. 116-117.

V. 남한 정부문서 정전협정 위반 현황 및 동아일보와의 비교 분석

1. 남한 정부문서: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1) 연도별·지역별 현황

남한 정부문서가 기록한 정전협정 위반 개별사건은 총 3,139건이 집계되었다.¹⁶⁾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도는 1968년의 338건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1967년 314건, 1969년 204건, 1966년 166건, 1965년 120건 등 1965~1970년까지 6년 동안 연평균 218건, 총 1,310건의 충돌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건의 약 42%에 해당하는 수치로 군사충돌이 1960년대 중·후반에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73년 이후로는 평균 50건 미만의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나타날 정도로 완연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주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2,154(68.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상 938(29.8%)건, 공중 47(1.5%)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현황의 주요 특징은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육상에서의 충돌사건이 빈번했던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해상 충돌사건이 주된 군사충돌사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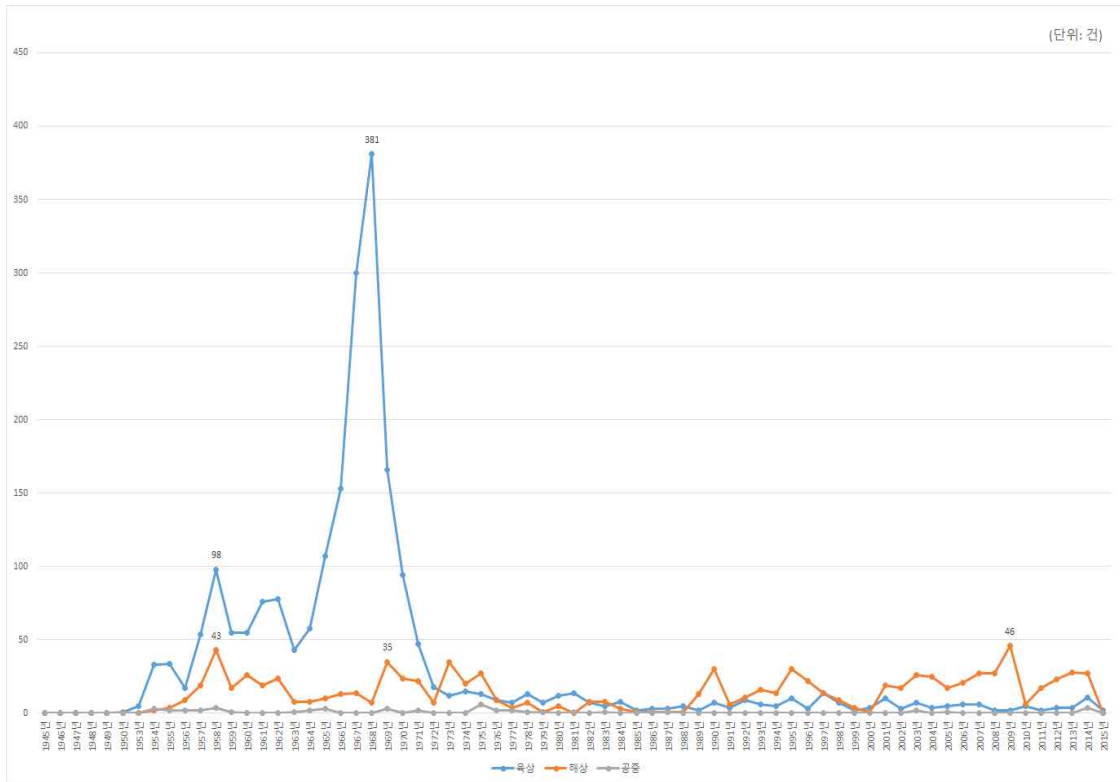
<표 16> 남한 정부문서: 연도별·지역별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1950년 (6월25일 이전)	1	0	0	1
1953년 (7월27일 이후)	5	0	0	5
1954년	33	2	3	38
1955년	34	4	2	40
1956년	17	9	2	28
1957년	54	19	2	75
1958년	98	43	4	145
1959년	55	17	1	73
1960년	55	26	0	81
1961년	76	19	0	95
1962년	78	24	0	102
1963년	43	8	1	52
1964년	58	8	2	68
1965년	107	10	3	120
1966년	153	13	0	166
1967년	300	14	0	314
1968년	381	7	0	388

16) 남한의 정부문서는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8집,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상, 중), 북한 대남 침투 및 도발 사례집(국회 비공개 문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총 4,836건이 조사되었고, 이중 중복 사건을 제외한 군사충돌 사례가 3,139건임.

1969년	166	35	3	204
1970년	94	24	0	118
1971년	47	22	2	71
1972년	18	7	0	25
1973년	12	35	0	47
1974년	15	20	0	35
1975년	13	27	6	46
1976년	9	9	2	20
1977년	7	4	2	13
1978년	13	7	1	21
1979년	7	1	1	9
1980년	12	5	0	17
1981년	14	0	1	15
1982년	7	8	0	15
1983년	5	8	1	14
1984년	8	3	0	11
1985년	2	1	0	3
1986년	3	1	0	4
1987년	3	1	1	5
1988년	5	1	0	6
1989년	2	13	0	15
1990년	7	30	0	37
1991년	4	6	0	10
1992년	9	11	0	20
1993년	6	16	0	22
1994년	5	14	0	19
1995년	10	30	0	40
1996년	3	22	0	25
1997년	14	14	0	28
1998년	7	9	0	16
1999년	2	4	0	6
2000년	4	1	0	5
2001년	10	19	0	29
2002년	3	17	0	20
2003년	7	26	2	35
2004년	4	25	0	29
2005년	5	17	1	23
2006년	6	21	0	27
2007년	6	27	0	33
2008년	2	27	0	29
2009년	2	46	0	48
2010년	5	6	0	11
2011년	2	17	0	19
2012년	4	23	0	27
2013년	4	28	0	32
2014년	11	27	4	42
2015년	2	0	0	2
총계	2,154	938	47	3,139

<그림 11> 남한 정부문서: 연도별·지역별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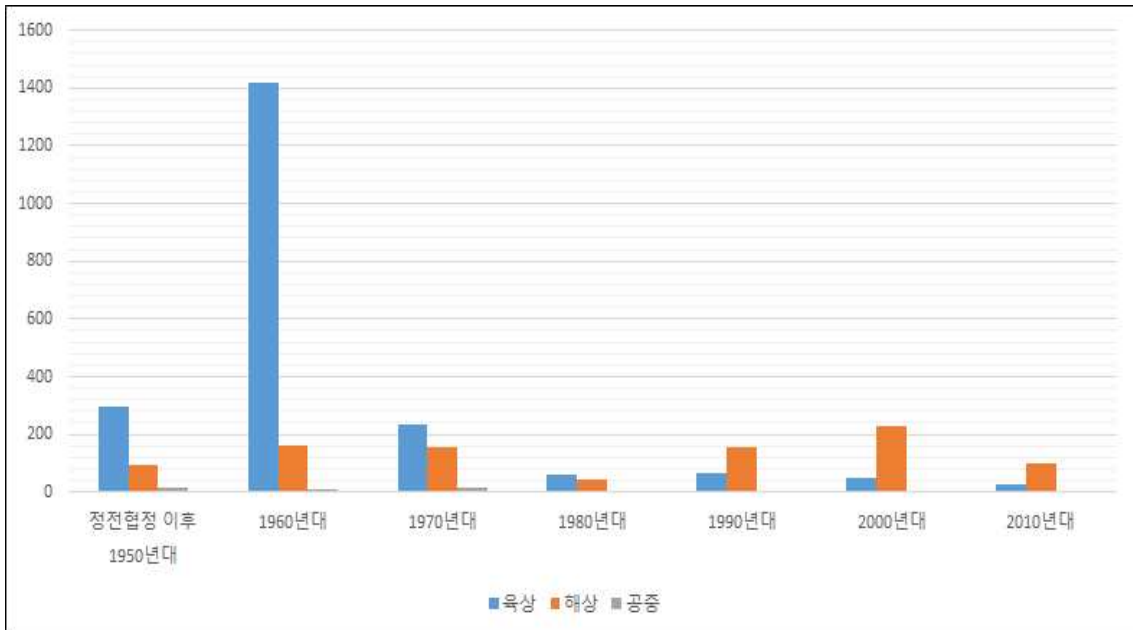
다음으로 시기별 군사충돌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주요 특징으로 1960년대 군사충돌 사건이 1,59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3,139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1960년대 가장 많은 군사충돌이 발생했음을 보여 준다. 이후 1970년대 군사충돌 사건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급격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1960년대는 육상에서의 군사충돌 사건이 절대적 비중(1960년대 전체 사건의 약 89%)을 차지했지만,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육상보다 해상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17> 남한 정부문서: 시기별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단위: 건)

	육상	해상	공중	총 계
한국전쟁 이전	-	-	-	0
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297	94	14	405
1960년대	1,417	164	9	1,590
1970년대	235	156	14	405
1980년대	61	41	3	105
1990년대	67	156	0	223
2000년대	49	226	3	278
2010년대	28	101	4	133
총 계	2,154	938	47	3,139

<그림 12> 남한 정부문서: 시기별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 변화 추이
(단위: 건)



2) 유형별 현황

남한 정부문서에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121: 군사분계선 침투’ 사례가 1,331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해상에 서의 군 경비함 월선 사건(615건),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268건),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사 건(212건), 해상의 민간위반/어선 월선(187건) 등이 주요 사례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 타나는 이유는 남한 정부문서의 대부분이 북한의 대남침투 사건을 위주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표 18> 남한 정부문서: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유형별 순위
(단위: 건)

순위	유형	위반 사건 내용	유형별 개수
1	121	군사분계선 침투	1,331
2	221	군경비함 월선 사건	615
3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	268
4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사건	212
5	232	해상의 민간위반 / 어선 월선	187
6	123	육상의 총포격 사건	144
7	122	무장 습격 사건	86
8	114	쌍방 교전*	50
9	213	어선 및 군함 나포/ 침몰 사건	48
10	214	해상 군경비함 충돌 / 격침	35

* 쌍방교전의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1950년 군사충돌 사례에서 남한 내의 빨치산 전투가 비 접 경지역에서 전개되어 DMZ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 남한 정부문서: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1) 연도별·지역별 현황

시기적으로 1950년부터 정리된 남한 정부문서들을 종합하면, 전체 사건 3,139건 중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총 2,893건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도는 1968년으로, 386건이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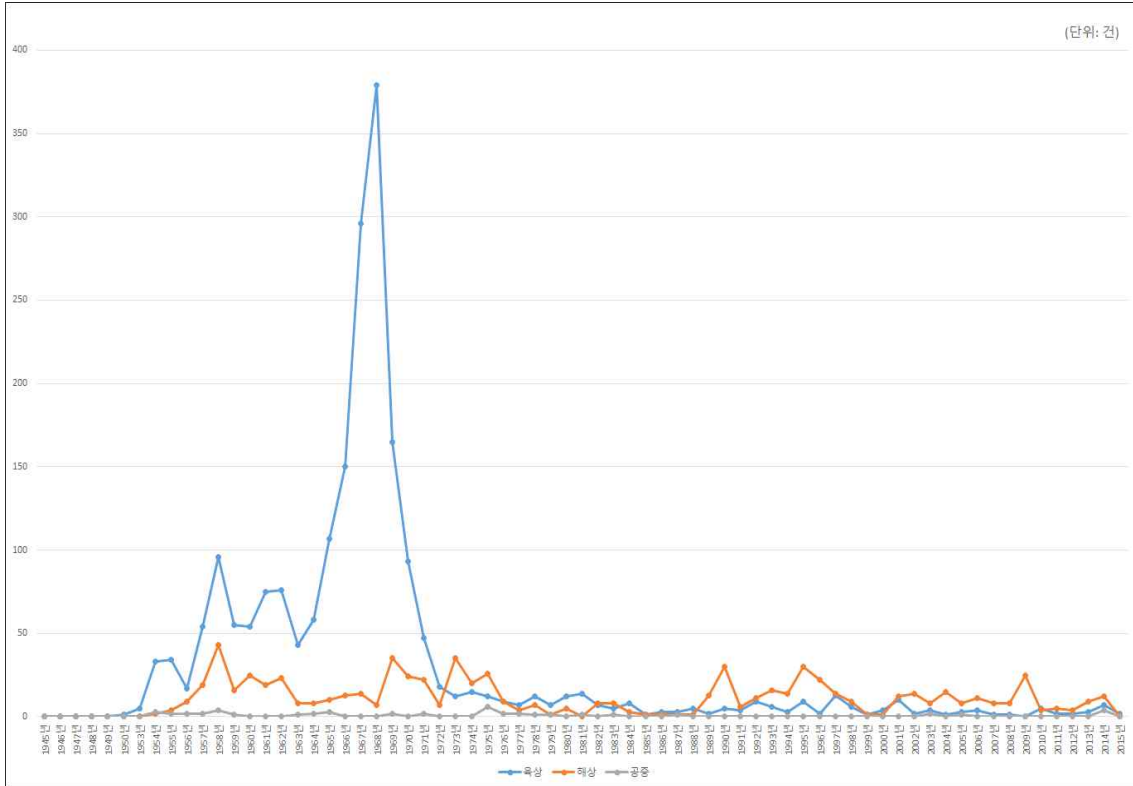
한편 남한 정부문서에 보고된 지역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육상 2,099건, 해상 748건, 공중 46건 등이 집계됐다. 이처럼 주요 사건도 전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육상에서의 위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9> 남한 정부문서: 연도별·지역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1950년 (6월25일 이전)	1	0	0	1
1953년 (7월27일 이후)	5	0	0	5
1954년	33	2	3	38
1955년	34	4	2	40
1956년	17	9	2	28
1957년	54	19	2	75
1958년	96	43	4	143
1959년	55	16	1	72
1960년	54	25	0	79
1961년	75	19	0	94
1962년	76	23	0	99
1963년	43	8	1	52
1964년	58	8	2	68
1965년	107	10	3	120
1966년	150	13	0	163
1967년	296	14	0	310
1968년	379	7	0	386
1969년	165	35	2	202
1970년	93	24	0	117
1971년	47	22	2	71
1972년	18	7	0	25
1973년	12	35	0	47
1974년	15	20	0	35
1975년	12	26	6	44
1976년	9	9	2	20

1977년	7	4	2	13
1978년	12	7	1	20
1979년	7	1	1	9
1980년	12	5	0	17
1981년	14	0	1	15
1982년	7	8	0	15
1983년	5	8	1	14
1984년	8	3	0	11
1985년	1	1	0	2
1986년	3	1	0	4
1987년	3	1	1	5
1988년	5	1	0	6
1989년	2	13	0	15
1990년	5	30	0	35
1991년	4	6	0	10
1992년	9	11	0	20
1993년	6	16	0	22
1994년	3	14	0	17
1995년	9	30	0	39
1996년	2	22	0	24
1997년	13	14	0	27
1998년	6	9	0	15
1999년	1	1	0	2
2000년	4	1	0	5
2001년	10	12	0	22
2002년	2	14	0	16
2003년	4	8	2	14
2004년	1	15	0	16
2005년	3	8	1	12
2006년	4	11	0	15
2007년	1	8	0	9
2008년	1	8	0	9
2009년	0	25	0	25
2010년	5	4	0	9
2011년	2	5	0	7
2012년	2	4	0	6
2013년	3	9	0	12
2014년	7	12	4	23
2015년	2	0	0	2
총계	2,099	748	46	2,893

<그림 13> 남한 정부문서: 연도별·지역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변화 추이(195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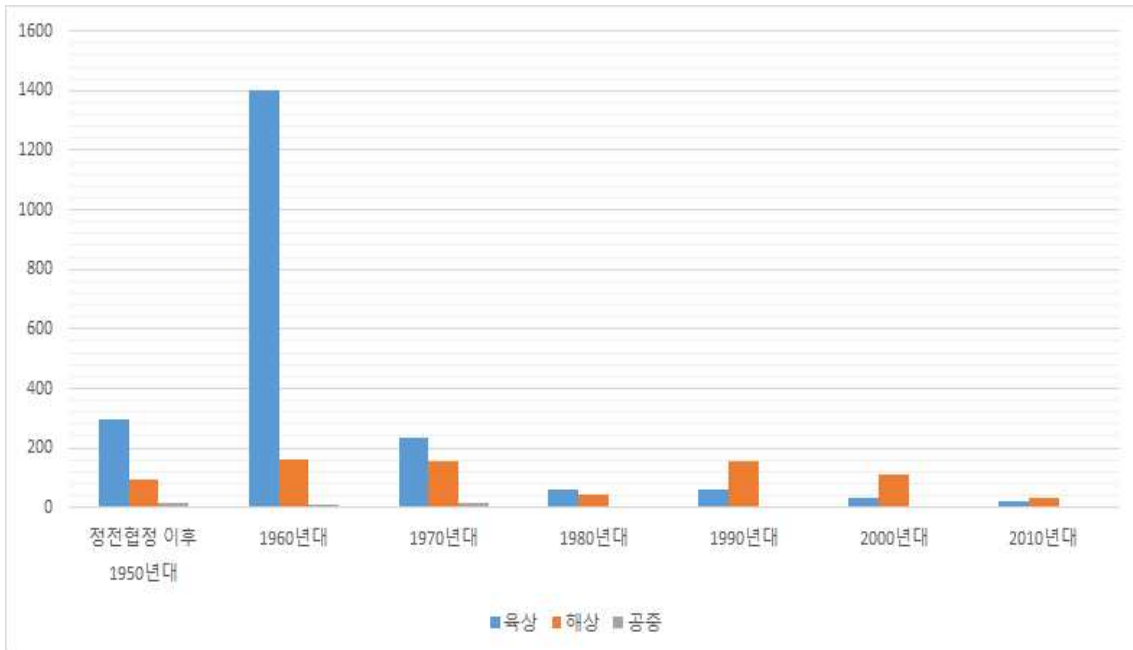
한편 시기별 주요 군사충돌 사건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시기별 흐름 또한 앞서 살펴본 전체 군사충돌 사건의 흐름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1960년대 1,573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였고, 1980년대는 104건의 군사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는 1960년대의 1/10 수준으로 군사충돌 사건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1990년대는 해상에서의 NLL 침범으로 인해 육상보다 군사충돌 사건이 많이 보도되었다.

<표 20> 남한 정부문서: 시기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현황

(단위: 건)

연대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294	93	14	401
1960년대	1,403	162	8	1,573
1970년대	232	155	14	401
1980년대	60	41	3	104
1990년대	58	153	0	211
2000년대	30	110	3	143
2010년대	21	34	4	59
총계	2,098	748	46	2,892

<그림 14> 남한 정부문서: 시기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변화 추이
(단위: 건)



2) 유형별 현황

남한 정부문서에 수록된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은 '121: 군사분계선 침투(1,335건)'였고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은 '221: 군 경비함의 월선 사건'이었다. 이 밖에도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사건, 육상의 총 포격 사건 등이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사례로 조사됐다.

<표 21> 남한 정부문서: 주요 정전협정 위반 유형별 순위
(단위: 건)

순위	유형	사건	유형별 개수
1	121	군사분계선 침투	1,335
2	221	군 경비함 월선 사건	615
3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	268
4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사건	212
5	123	육상의 총포격 사건	144
6	122	무장 습격 사건	86
7	114	쌍방 교전*	50
8	213	어선 및 군함 나포/ 침몰 사건	48
9	214	해상 군경비함 충돌 / 격침	35
10	211	해상의 군인 사망 사건	29

* 쌍방교전의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1950년 군사충돌 사례에서 남한내의 빨치산 전투가 비접경 지역에서 전개되어 DMZ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3. DMZ 지역의 주요 사건 현황

남한 정부문서에 수록된 DMZ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 1,73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육상 1,270건, 해상 438건, 공중 27건으로 집계됐고, 앞서 살펴본 DMZ내 전체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DMZ 중서부 지역과 서해상에서 많은 주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는 군사분계선을 침투한 사건이었으며,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사건이 군 경비함의 월선이었다. 이처럼 육상과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건이 전체의 90%를 넘을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남한 정부문서: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건 현황

	A' (해상)	A 서부(전선서부: 서해연안 ~ 파주)	B 중부(전선중부: 연천 ~ 양구)	C 동부(전선동부: 인제 ~ 동해 연안)	C' (해상)	합계
육상	·	630	528	112	·	1,270
해상	398	·	·	·	40	438
공중	·	16	6	5	·	27
합계	398	646	534	117	40	1,735*

* 2,893개 주요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 가운데 지역이 불명확한 미상 및 복합지역 기사 제외

DMZ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군사충돌 사건을 시기별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1960년대로 총 916건의 주요 군사충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75건의 사건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군사충돌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대 공중에서 발생한 군사충돌 사건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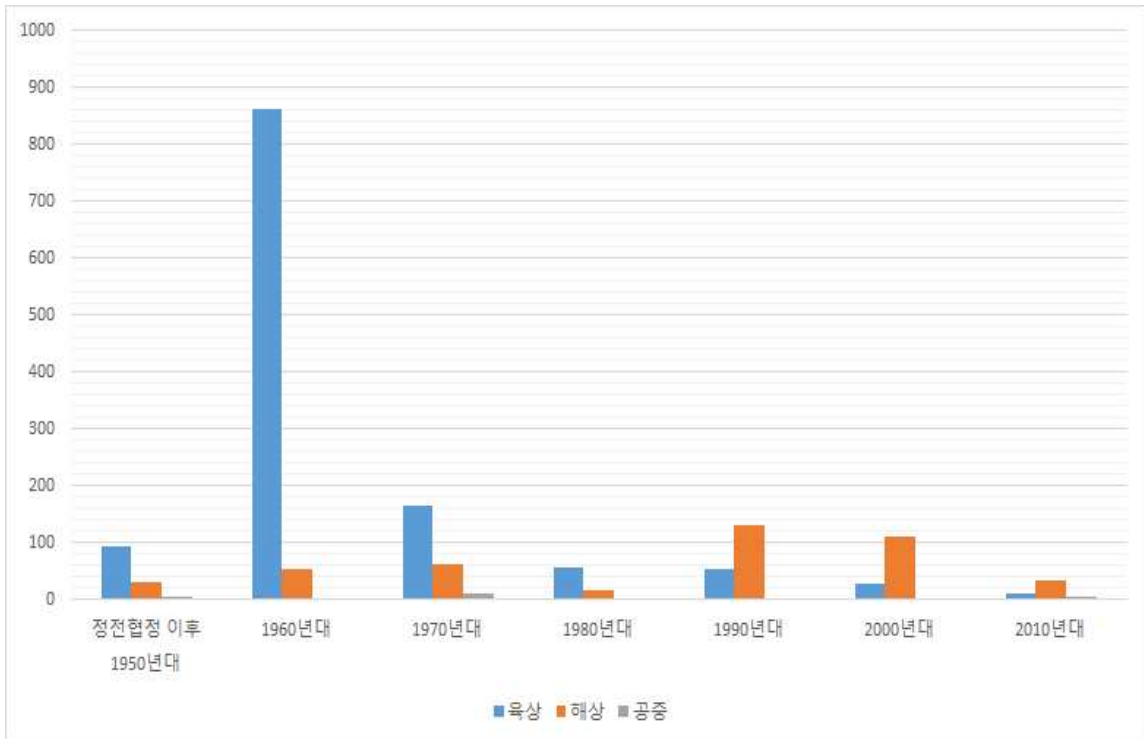
<표 23> DMZ지역 시기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현황

(단위: 건)

연대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94	30	5	129
1960년대	861	53	2	916
1970년대	166	62	11	239
1980년대	56	17	2	75
1990년대	53	132	0	185
2000년대	28	110	3	141
2010년대	12	34	4	50
총계	1,270	438	27	1,735

<그림 15> DMZ지역 시기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변화 추이

(단위: 건)



4. 동아일보와 남한 정부문서의 비교 분석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과 남한 정부문서에 기록된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전체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일보는 총 8,821건의 보도 건수 중 유효 군사충돌 사건은 2,940건이었다. 이에 반해 남한 정부문서는 총 4,836건의 사건 자료 중 중복 사건을 제외한 실제 사건은 3,13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남한 정부문서에 기록된 군사충돌 사건이 약 200여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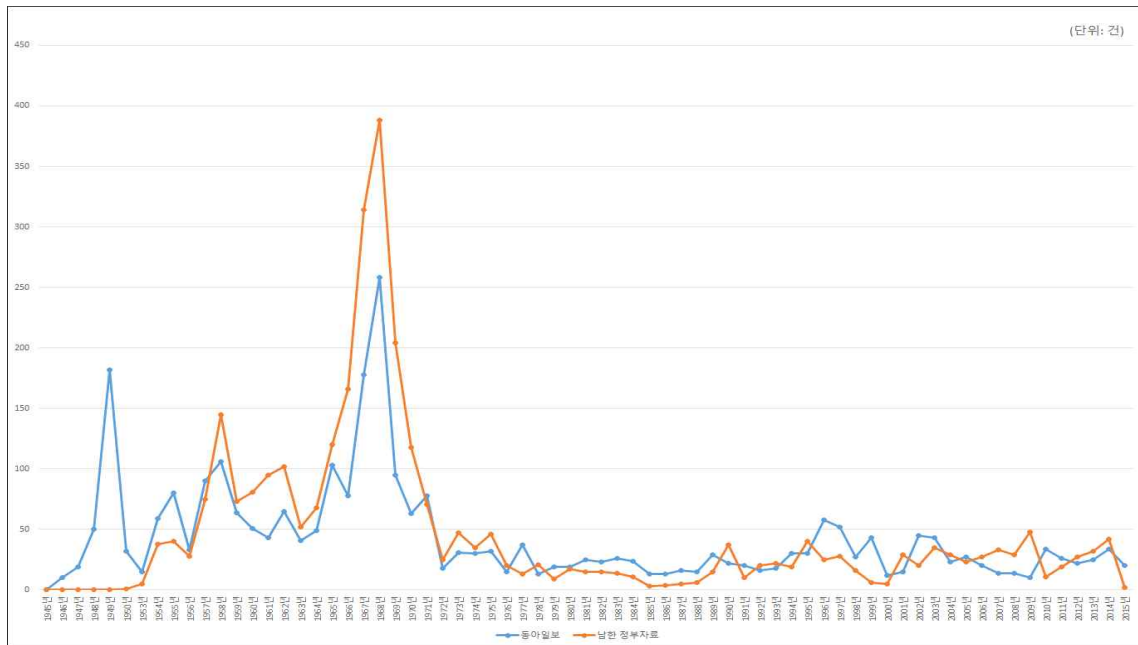
여기서 보여 지는 주요 특징은, 남한 정부문서는 동아일보사건 보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첩단 검거 사건’, ‘어선 납치 사건’, ‘육상에서의 월남 사건’, ‘해외 경유를 통한 월남 사건’ 등을 집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보다 많은 군사충돌 사건들이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즉 수치상으로는 200여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한 정부문서에 더 많은 사건들이 집계된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남한 정부문서에 기록된 것처럼 실제 남북 간 군사충돌 사건은 더 많았지만, 언론 및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건 및 사고들이 상당했음을 뜻한다. 물론 남한 정부문서가 대남침투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에서 나오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 자료의 특성 상 비공개 사건이 많았을 수도 있고, 또는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아일보와 남한 정부문서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지역별·시대별로 모두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연도별·지역별 현황에서는 양쪽 모두 1968년 가장 많은 군사충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동아일보 258건, 남한 정부문서 388건이 집계됐다. 육상에

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대적 비중(동아일보: 2,169건(73.4%), 남한 정부문서: 2,154건(6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군사충돌 사건의 흐름에서도 1960년대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1980년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는 해상에서의 군사충돌 증가세가 나타났다.

<그림 16> 동아일보와 남한 정부문서의 연도별 군사충돌 사건 비교



하지만 유형별 현황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동아일보에서는 남북 군사충돌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인 반면, 남한 정부문서에서는 '121: 군사분계선 침투'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동아일보에서는 무장침투 간첩, 고정 간첩 및 우회 침투 간첩 등의 간첩단 검거 사건 등 '간첩'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며, 남한 정부문서는 북한의 대남침투 사건을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편 동아일보에서는 육상에서의 '월남/월북(군인/민간인 포함)'으로 나타났고, 공중에서의 월남/월북 사건, 즉 해외 경유를 통한 월남 사건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한 정부문서에서는 해상에서의 군 경비함 월선 사건(615건),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268건),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사건(212건), 해상의 민간위반/어선 월선(187건) 등이 주요 사례로 집계됐다. 이 역시 남한 정부문서의 대부분이 북한의 대남침투 사건을 위주로 수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4> 동아일보 및 남한 정부문서 전체 사건의 정전협정 위반 유형 비교
(단위: 건)

구분	동아일보		남한 정부문서	
순위	유형	위반 사건 내용(유형별 개수)	유형	위반 사건 내용(유형별 개수)
1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간첩단 검거 포함)(686)	121	군사분계선 침투(1,331)
2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545)	221	군 경비함 월선 사건(615)
3	133	월남/월북 사건(군인/민간인 포함)(220)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268)
4	213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168)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사건(212)
5	131	육상에서의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163)	232	해상의 민간위반 / 어선 월선(187)
6	333	해외 경유를 통한 월남/월북(군인/민간인 포함)(133)	123	육상의 총포격 사건(144)
7	149	간첩 무혐의 사건(118)	122	무장 습격 사건(86)
8	114	육상에서의 쌍방 교전(113)	114	쌍방 교전*(50)
9	221	군 경비함 월선 사건(100)	213	어선 및 군함 나포/ 침몰 사건(48)
10	123	육상에서의 국지도발 시 총포격(87)	214	해상 군 경비함 충돌 / 격침(35)

다음으로 DMZ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 정부문서가 1,735건(전체 사건의 약 55%)으로 집계된 반면 동아일보는 886건(전체 사건의 약 30%)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남한 정부문서에 기록된 군사충돌 사건들은 DMZ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지역별 건수: 동아일보/남한 정부문서

	A' (해상)	A 서부(전선서부: 서해연안 ~ 파주)	B 중부(전선중부: 연천 ~ 양구)	C 동부(전선동부: 인제 ~ 동해 연안)	C' (해상)	합계
육상	.	302/630	153/528	72/112	.	527/1,270
해상	218/398	.	.	.	96/40	314/438
공중	-	27/16	4/6	14/5	.	45
합계	218/398	329/646	157/534	86/117	96/40	886*/1,735*

- * 2,017개 주요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 가운데 지역이 불명확한 미상 및 복합지역 기사 제외(동아일보)
- * 2,893개 주요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 가운데 지역이 불명확한 미상 및 복합지역 기사 제외(남한 정부문서)

VI. 마치며

본 연구팀은 2차년도 사업으로 1945년 8월부터 2015년까지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남한의 정부문서에 기록된 정전협정 위반 사건도 함께 분석했다. 특히 동아일보에 보도된 군사충돌 사건의 집계, 연도별·지역별·시기별·유형별 현황 및 주요 특징들을 전체 사건과 주요 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많은 군사충돌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그 사건들이 중대한 사건이었는지, 경미한 사건이었는지, 군사충돌 사건들은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DMZ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DMZ지역의 군사충돌에 대해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군사충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무기체계의 발달로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군사 충돌의 고도화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서해 NLL침범'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항시 상존해 있다. 즉 언제, 어떻게 또 다른 형태의 서해교전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군사충돌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태세가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양측 모두 작은 불씨조차 만들지 않는 것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미비점들은 추후 연구로 진행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권(역사학연구소, 2012)
- 김형민, “경제적·군사적 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 김형민, “군사분쟁의 원인과 고찰: 동북아 지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신아세아』 21권 2호 (서울: 신아시아연구소, 2014)
- 월간북한사, “자료: 대한민국 간첩사,” 월간북한,(2011)
-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형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20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이창희, 김용현, “중무장지대가 된 완충지대: DMZ 군사충돌 사례”, 2015년 1차 학술회의의 발표 자료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06)
-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8집』 (서울: 합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원락단, 2010)
- 합동참모본부, 『합동 국지도발 대비작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1)
- 합동참모본부, 『북한 대남침투 및 도발 사례집』

중무장지대가 된 완충지대2(동아일보&로동신문): DMZ군사충돌사례

노동신문과 동아일보로 바라보는 남북한 DMZ군사충돌

이창희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김용현

동북대학교 DMZ평화센터

I. 들어가며

지구화시대 탈냉전이 회자되는 마당에 여전히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이 바로 한반도이다. 지구화로 인해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압착되면서 국가의 경계조차 소멸된다는 주장이 만연해지는 마당에, 최근 한반도의 DMZ는 평화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은 약화되고, 서슬 퍼런 경계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 경계를 중심으로 뿌려지는 전단지에서도 보듯이 남과 북의 장기적 갈등에서 각 체제 및 정체성 강화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남과 북의 장기적 갈등 상황에서 군사분쟁 등의 현시적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고양시키면서 각각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특히, 언론을 매개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강화는 고질적인 갈등을 고조시킨다. 본 연구는 남과 북의 군사충돌 자료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 진영의 대표적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타난 군사충돌 사례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북한 군사충돌이 어떻게 서로의 체제 및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면서 장기적 갈등을 지속시켰는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남과 북의 언론으로 바라본 남북한 장기갈등과 군사충돌

기존의 연구는 남한 중심의 관점에서 북한 측에 의한 군사도발 위주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시기의 남북한 군사충돌을 분석해왔다. 이속에서 “북한은 공격적·침략적이며 남한은 방어적·공격적”이라는 가치개입적 판단이 연구 결과에 많이 영향력을 끼쳤다.¹⁾ 하지만 이는 갈등이 지니는 상호적 성격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 관점의 연구이다. 갈등은 전적으로 어느 한 일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과 북 모두 군사충돌 관련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1) 문정인, “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 연구방향 모색,”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p. 295.

북의 대표적 신문에 공개된 군사충돌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신문이라는 지면의 한계상 남과 북에서 실제 진행된 군사충돌을 모두 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당기관지인 노동신문의 특성상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군사충돌 기사를 보도했을 가능성이 높다.²⁾ 나아가 남한의 언론인 동아일보는 민주화 과정에 따라서 체제내적 보도와 체제비판적 보도를 오가며 군사충돌 기사를 보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신문과 동아일보, 각 신문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모든 남북한 군사충돌을 파악, 비교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인정한다. 이를 전제하면서 남과 북의 군사충돌 보도가 남과 북의 체제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남과 북의 갈등을 지속시키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장기갈등 개념의 적용

본 연구는 1945년부터 2015년까지 남한의 동아일보와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한국전쟁기를 제외한 군사충돌사례 관련 기사를 분석한다. 이는 67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의 시간성을 반영하는 이유는 남북한 갈등이 장기갈등과 유사한 양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장경룡은 Azar의 고질갈등이론³⁾과 Gochman, Maoz의 숙적이론 연구⁴⁾를 활용하여 장기갈등에 대해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국가정체성을 보호, 그리고/혹은 확대하려는 동일한 상대들 사이의 축적된 갈등으로 국제위기(전쟁 포함)와 화해실패 등의 빈번한 발생이 특징인 갈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장기갈등의 4가지 특성으로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의 충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도화된 의지, 정책결정의 오판 가능성 증대 등을 꼽는다.⁵⁾ 문정인은 Azar 등에 의해 제시된 ‘고질화된 사회갈등(protracted social conflict)’과 유사한 장기갈등의 특징으로 “시발은 있으나 종말이 없고, 잠재적 갈등과 현시적 폭력 사이를 수시로 순환하며 장기화경향을 띤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장기갈등이 한국전쟁이후 군사분쟁이 불규칙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갈등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⁶⁾

2) “북한 언론학자들은 남한정세자료를 잘 취급하는 것이 북한신문이 기본임무로부터 언제나 중요한 임무로 나선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여론을 그들 쪽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인식한다. ... 노동신문은 조선로동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미제를 비롯한 남한의 분열주의적 책동을 폭로하며 남한인민들을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자료들을 심는다.” 김영주, 『노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0권 4호(서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 pp. 84-87.

3) Azar, Edward E., Paul Jureidini and Ronald McLaurin. “Protracted Social Conflict: Theory and Practice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8, 1 (1978), 41-60.

4) Gochman, Charles S. and Zeev Maoz,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76: Procedures, Patterns, Insigh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8, 4 (1984), 585-615.

5) 장경룡, “동북아 평화체제와 구성주의,” 『정치정보연구』 10권 2호(서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pp. 137-140.

6) “왜냐하면 남북한 갈등의 맥아는 해방 3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싹텄고 이의 폭력적 분출은 6.25사변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6.25 이후의 남북한 갈등행태를 살펴보자. 첫째, 그 종식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향존하는 군사긴장 속에서 현시적 무력마찰과 잠재적 갈등이 번갈아가며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현시적 갈등의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마지막으로 군사긴장으로 표방되는 잠재적 갈등의 강도가 심하다.” 문정인, “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 연구방향 모색, pp. 247-248.

이렇듯 남과 북의 갈등을 장기갈등이라고 파악하는 근거는 장기간에 걸친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한 국가이익 및 국가정체성의 대립이 존재하며, 과거 한국전쟁과 불규칙하지만 지속되는 군사충돌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이속에서 각자의 이익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력조직의 보강 등 제도적으로 가시화하였고, 정책결정자들은 서로에 대한 호전적 정책을 합리화하였다. 고질갈등은 종족적 대립에서, 그리고 숙적관계는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영토분쟁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종족적 대립이나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가 아닌 같은 민족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장기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장기갈등에서 빚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남과 북의 언론이 보도하는 군사충돌 기사가 지니는 의미와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군사분쟁과 남북한 군사충돌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갈등을 장기갈등의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대표적인 갈등 현상인 남북 무력충돌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무력충돌에 대한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특정한 사건이 군사분쟁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쟁에 대한 개념과 분류방식 등이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군사분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스웨덴의 옅살라 대학 연구팀과 평화단체가 주도하는 UCDP(Uppsala Conflict Data Program)/PRIO(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Armed Conflict Dataset과 미국의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COW(Correlates of War) Project MID(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Dataset이다.

‘옅살라 분쟁 자료 프로그램(UCDP)’이 제시하는 군사분쟁의 정의는 “정부와 영토 등의 이슈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부를 포함하며 무력사용의 결과 최소 25명의 전투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쟁이 치열한 양립할 수 없는 상태”이다.⁷⁾ 이러한 군사분쟁의 정의에 의해 1946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군사분쟁에서 남북한 군사분쟁으로 한국전쟁만 기록되고 있다. 이는 많은 전사자, 치열한 지속성 등에 입각한 조작적 정의이기 때문에 DMZ 내 교전 등 전사자가 적은 일회적인 군사충돌은 사건의 중요성에도, 군사분쟁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개발하여 1816년부터 2010년까지 수집된 군사분쟁 관련 데이터로서 국제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COW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군사분쟁(MID)이란 “전쟁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국가 간 군사력 사용의 위협, 군사력의 전시 혹은 실제 사용 행위를 포괄”하는 활동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전쟁의 수준은 최소 1,000명이라는 임계값의 군인이 사망할 경우 등을 말한다.⁸⁾ COW 프로젝트는 군사분쟁의 수준을 보다 다층적으로 분류하여,⁹⁾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서해교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커다란 사건들을 군사분쟁으로 기록한다.

7) 송영훈, “무력분쟁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UCDP/PRIO 분쟁데이터셋과 MID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광복 70년·분단 70년: DMZ에서 새로운 평화를 모색하다-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5. 5. 29), pp. 6-11 참조.

8) 김형민, “군사분쟁의 원인과 고찰: 동북아 지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신아세아』 21권 2호 (서울: 신아시아연구소, 2014), p. 35 참조.

9) 김형민, “경제적·군사적 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서울: 한국 국제정치학회, 2012), p. 92.

“군사분쟁은 … 구체적으로 군사분쟁의 가장 낮은 수준인 군사력의 사용위협 단계에서는 적대적 의지의 외교수사적 표시가 사용되며, 다음 단계인 군사력의 전시 단계에서는 전투적 상호작용이 제외된 군사적 시위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군사력의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취해진다. 더 구체적으로 군사력의 사용위협 단계는 군사력 사용위협, 봉쇄위협, 부분적·전면적 영토점령 위협, 전쟁선포 위협과 핵무기 사용위협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군사력의 전시단계는 군사준비의 경고, 군사력의 동원, 육·해·공군력의 전시, 국경의 요새화, 핵 경고와 국경 침범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군사력의 실제 사용 단계는 봉쇄, 영토점령, 인적·물적 자원의 탈취, 군사총돌, 군사공습, 전쟁의 선포와 더불어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다.”¹⁰⁾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 유형 중 육상위반은 비무장지대 내 총격사건, 군사분계선 월선 및 침투사건, 비무장지대 증화기 반입, 진지구축/장애물 설치, 지뢰매설 등이고, 해상사건은 아축 해역 침범, 아축 선박에 포격, 아축 어선 및 어부 납치 등이며 공중사건은 아축 영공 침범, 항공기 납치 및 폭파 사건 등 정전협정에 의거, 유엔사 규정 551-4(한국 정전협정 준수)에서 규정한 주요 위반사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¹¹⁾

유엔사에 의한 정전협정 주요 위반사건 분류 방식은 UCDP/PRIO Armed Conflict Database 보다는 COW Project MID Dataset에 가깝다. 하지만 COW Project MID Dataset 조차 유엔사에 의해 분류된 정전협정 주요 위반사건 219건과 같이 한반도 장기갈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군사총돌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¹²⁾

따라서 남북한 군사총돌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군사분쟁의 보편적 개념과 분류 기준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서 군사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남북 간의 실제 발생한 군사총돌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유엔사 규정 551-4에서 규정한 주요 위반사건”을 ‘남북한 군사총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의 동아일보와 북의 노동신문에 나타난 군사총돌 기사들을 분류한다. 또한 유엔사의 주요 사건 분류에서 육상사건을 비무장지대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한정하는 것처럼¹³⁾ 노동신문에서도 DMZ지역과 그 부근 해상으로 공간을 국한하여 정전협정 주요 위반사건, 즉 DMZ지역 군사총돌 사례를 주로 살펴보았다.

10) 김형민, “군사분쟁의 원인과 고찰: 동북아 지역에 주는 정책적 함의,” pp. 35~36 참조.
 11)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8집』 (서울: 합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연락단, 2010), p. 229.
 12) 송영훈, “무력분쟁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UCDP/PRIO 분쟁데이터셋과 MID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p. 11 참조.
 13) “육상사건은 비무장지대 및 JSA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한정하였음.”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서울: 합참 정보본부 군정위단, 2001), p. 182.

<표 1> 유엔사 규정 551-4 (한국정전협정 준수 요약)의 정전협정 주요 위반 행위

바. 정전협정 주요 위반 행위: 군사분계선이나 상대방통제지역에 대한 침투행위

1. 일방의 무장인원이 MDL(군사분계선) 또는 HRE(한강 하구)를 넘어 상대방 통제 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2. MDL/HRE 너머로 또는 상대방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대방 인원, 경비정 또는 항공기에 사격하는 행위
3. 일방의 항공기가 상대방 상공 또는 MDL/HRE 지역 상공의 어느 부분을 침투하는 행위
4. 일방의 무장선박이 상대방의 (한국)육지에 인접한 수역에 침투하는 행위
5. 상대방 특정 항 또는 해안지역으로의 진입 또는 진출을 방해하려는 일방에 의한 해군 봉쇄행위
6. 공산군측과 유엔사측 인원, 선박 및 항공기 사이에 교전이나 기타 전투행위
7. DMZ 내에 있는 방대한 요새진지 또는 지뢰지대 건설 또는 주요 개축
8. 탱크, 장갑차 및 야포와 같은 주요 군 장비들을 비무장지대로 반입하는 행위
9.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발사하거나 권총을 뽑아들거나 공격을 하는 행위

* 출처: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8집』 (서울: 합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원락단, 2010), p. 90.

3. 동아일보와 노동신문에 나타난 남북한 군사충돌의 통계

동아일보와 노동신문의 검색 시기는 1945년 11월, 12월부터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까지이다. 동아일보는 일제 강점기 1940년 8월 10일 폐간되었지만, 1945년 8.15 해방이후 12월 1일부터 다시 재발행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 ‘정로’의 발행부터 창간으로 고려하였다.

사실상 1945년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군사충돌 사례를 수집하는 이유는 당시 38선이 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 간 냉전의 개시에 따라 구조화된 경계로서 이미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처럼 작용하였고, 한국전쟁 이전부터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발생하여 남북한 장기갈등의 전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49년 미군 측 통계로 600건 등 잦은 38선 군사충돌이 발생하였으며,¹⁴⁾ 북한은 2,617건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¹⁵⁾ 결국 빈번한 남과 북의 군사충돌로 38선이 무력화되면서 전쟁 발발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38선지역도 정전협정 이후 군사충돌이 지속되는 경계인 DMZ지역과 같은 공간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유엔사 규정 551-4”에 의거하여 중분류를 4가지로 세부화하여 정전협정의 주요 위반 사건과 사소한 사건을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중분류 20’ 이상의 사건을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 즉 남북한 군사충돌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군사충돌 관련 키워드들을 뽑아서 각 신문을 검색하였다. 나아가 한 사건에 대한 중복 기사와 후속 기사들을 고려하여 통계의 중복을 피하였으며, 한 기사에 여러 사건이 함께 실렸을 경우 사건들을 하나씩 나누어 사건자료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군사충돌 사례를 실은 기사는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14)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파주: 돌베개, 2006), p. 453.

15) 허종호, 『미제의 극동침략전쟁과 조선전쟁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 84.

<표 2> 남북한 군사충돌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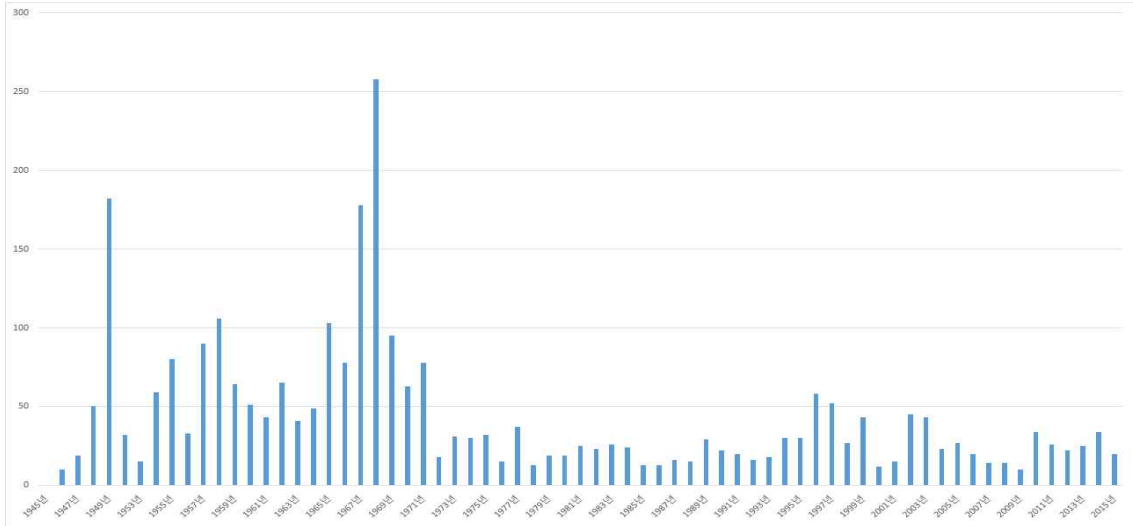
1. 특성별·지역별 분류					
1-1. 남한(S)/ 북한(N)					
1-2. 신문자료(P)/ 사건자료(Z)					
1-3. 서부(전선서부: 서해 연안 ~ 파주) A / 중부(전선중부: 연천 ~ 양구) B/ 동부(전선동부: 인제 ~동해 연안) C/ 복합지역 D/ 미상 E/ 기타(비접경지)F/ 해외지역 G					
2. 내용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00	육상	10	침투교전	1	군인사망
				2	민간인사망
				3	납치/생포/부상
				4	쌍방교전
		20	국지도발	1	군사분계선 월선
				2	습격
				3	총포격
				4	시설 파괴
		30	경미한 정전협정위반	1	군사위반
				2	민간위반
				3	월남/월북(민간/군인)
				4	빼라살포
40	기타	9			
200	해상	10	침투교전	1	군인사망
				2	민간인사망
				3	어선 및 군함납치 / 침몰, 폭파 / 생포
				4	군경비함 충돌(쌍방교전) / 격침
		20	국지도발	1	군경비함 월선
				2	습격
				3	총포격
				4	군사위반
		30	경미한 정전협정위반	1	군사위반
				2	민간위반
				3	월남/월북(민간/군인)
				4	기타
40	기타	9			
300	공중	10	침투교전	1	군인사망
				2	민간인사망
				3	공중납치 및 폭파 / 생포
				4	쌍방교전(미사일/대공포사격 및 격추)
		20	국지도발	1	영공침범(군용기 월경)
				2	공중공격
				3	군사위반
				4	민간위반
		30	경미한 정전협정위반	1	군사위반
				2	민간위반
				3	월남/월북(민간/군인)
				4	기타
40	기타	9			
400	복합지역	00		0	
500	구술자료	00		0	
3. 시기별 분류 yy(년)/mm(월)/dd(일)					

1) 동아일보의 군사충돌 보도 통계

① 동아일보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보도 통계

1945년부터 2015년까지 남한의 동아일보에 보도된 정전협정 위반 기사는 총 8,821건이었다. 이 중에서 후속 및 중복 기사 등을 제외하면 동아일보에 실린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2,940건으로 집계되었다. 1960년대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961건으로 다른 시기보다 가장 많았다. 연도로는 1968년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1949년이 18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림 1> 동아일보의 연도별 전체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표 3> 동아일보의 연대별, 공간별 전체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연대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한국전쟁 이전	250	8	3	261
정전협정 이후	415	38	26	479
1950년대	776	161	24	961
1960년대	236	76	24	336
1970년대	153	30	20	203
1980년대	145	74	97	316
2000년대	87	117	19	223
2010년대	107	39	15	161
총계	2,169	543	228	2,940

<표 4> 동아일보의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 유형별 10순위 (단위: 건)

순위	유형	내용	유형별 개수
1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간첩 생포 포함)	686/565(간첩)
2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	545/316(간첩)
3	133	월남/월북 사건(군인/민간인 포함)	220/180(월남)
4	213	어선 및 군함납치/침몰, 폭파/생포	168
5	131	육상에서의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	163
6	333	해외 경유를 통한 월남/월북(군인/민간인 포함)	133/120(월남)
7	149	간첩 무혐의 사건	118
8	114	육상에서의 쌍방 교전	113
9	221	군 경비함 월선 사건	100
10	123	육상에서의 국지도발 시 총포격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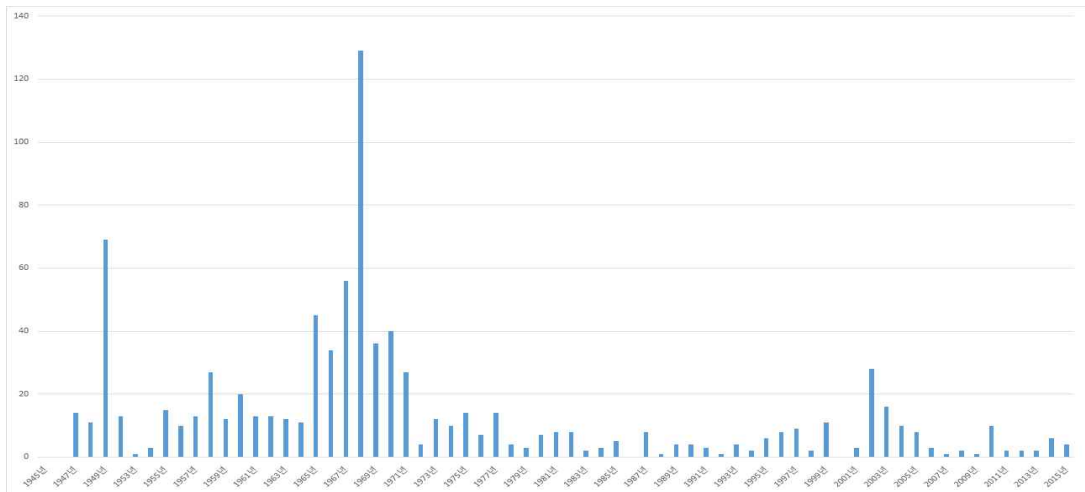
동아일보에 보도된 정전협정 위반사건 기사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사건이 68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유형의 대부분은 간첩 사건으로, 565건이 보도되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침투교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건으로 545건을 차지하였다. 이 또한 545건 중에서 간첩사건이 316건으로 많은 비중을 점하였다.

세 번째를 차지한 유형은 월남 및 월북 사건 220건이었다. 월남 사건에 대한 보도가 180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와 유사한 여섯 번째 유형인 해외 경유 월남 및 월북 사건 133건에서도 월남사건에 대한 보도가 120건을 차지하였다.

② 동아일보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보도 통계

1945년부터 2015년까지 동아일보에 나타난 총 2,940건의 정전협정 위반사건 가운데 정전협정 주요 위반사건, 즉 군사총돌은 2,01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68.6%를 차지한다. 동아일보에 보도된 정전협정 위반 사건 보도의 약 2/3는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인 군사총돌 사건 보도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2> 동아일보의 연도별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표 5> 동아일보의 DMZ지역 연대별, 공간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연대별 \ 지역별	육 상	해 상	공 중	계
한국전쟁 이전	92	1	1	94
정전협정 이후	63	27	4	94
1950년대	243	113	13	369
1960년대	66	56	13	135
1970년대	22	19	5	46
1980년대	18	29	3	50
1990년대	10	56	6	72
2000년대	13	13	0	26
2010년대	527	314	45	886
총계				

<표 6> 동아일보의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유형별 순위 (단위: 건)

순위	유형	내용	유형별 개수
1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313
2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	284
3	213	어선 및 군함나포/침몰	164
4	221	군 경비함 월선	103
5	114	쌍방 교전	93
6	123	육상의 총포격	84
7	321	공중의 비행기 월경	49
8	121	군사분계선 침투	47
9	211	해상에서의 군인 사망	35
10	112	해상에서의 민간인 사망	28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 가운데 DMZ지역에서 벌어진 것은 886건이며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43.9%, 전체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30.1%를 차지하였다. DMZ지역 군사충돌은 1960년대가 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1968년 141건에 이어서, 1949년이 78건으로 군사충돌이 두 번째로 많았던 해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에서 전체 정전협정 위반사건 보도와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건 보도에서 사건 유형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간인의 월남 및 월북이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 사건으로 분류되어, 월남 및 월북 사건 전체가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10대 유형에서 빠졌다.¹⁶⁾ 또한 아군 군용기가 월경하여 정찰한 사건과 해상에서의 교전 등이 추가로 주요 유형에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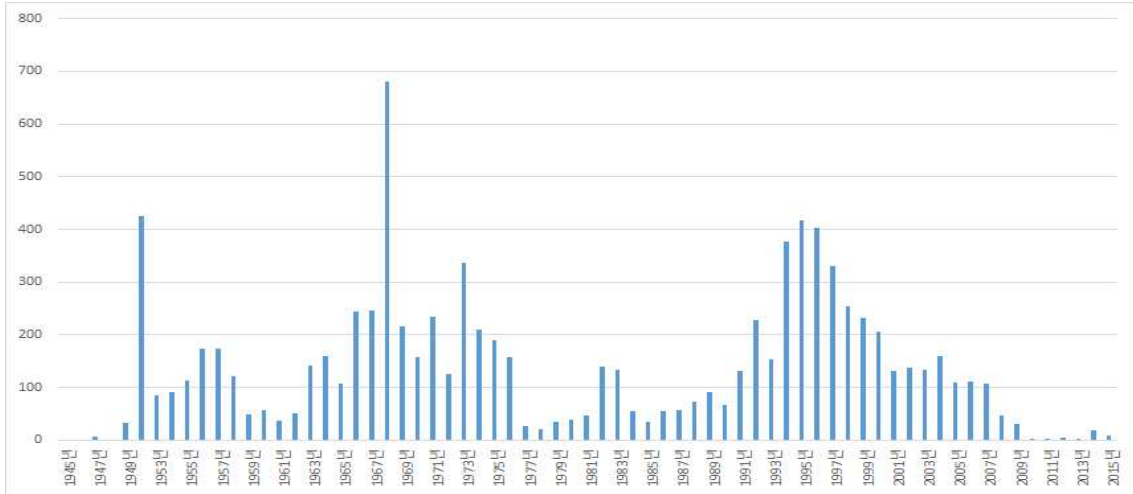
2) 노동신문의 군사충돌 보도 통계

① 노동신문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보도 통계

1945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체 정전협정 위반 보도는 총 17,067건이다. 중복 및 후속 기사를 제외한 전체 정전협정 위반사례는 9,239건이다. 노동신문에 실린 전체 정전협정 위반 사례의 연대별 수록 추이를 보면 1990년대가 2,595건으로 가장 많았다. 1960년대는 1,941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연도로는 1968년이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1950년(1월1일~6월 24일 집계)이 42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16) '유엔사 규정 551-4'에 의해 민간인의 월남 및 월북은 "허가되지 않은 DMZ 출입행위"로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 사건으로 간주된다. 반면 군인의 월남 및 월북은 "무장인원이 군사분계선 또는 한강 하구를 넘어 상대방 통제 하 영역에 침범하는 행위"로 주요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으로 분류된다.

<그림 3> 노동신문의 연도별 전체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표 7> 노동신문의 연대별, 공간별 전체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육상	해상	공중	총 계
한국전쟁 이전	457	2	5	464
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598	39	170	807
1960년대	1509	282	150	1941
1970년대	1295	48	148	1491
1980년대	355	42	332	729
1990년대	1343	63	1189	2595
2000년대	75	60	1039	1174
2010년대	29	8	1	38
총 계	5661	544	3034	9239

<표 8> 노동신문의 전체 정전협정 위반 유형 10순위 (단위: 건)

순위	유형	내용	유형별 개수
1	131	육상의 사소한 군사위반	3,037
2	331	공중의 경미한 군사위반	2,245
3	123	육상의 총포격 사건	787
4	321	공중의 비행기 월경 사건	619
5	133	월남/ 월북 사건	539
6	221	군경비함 월선 사건	332
7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사건	235
8	114	쌍방 교전	233
9	149	땅굴, 간첩 등에 대한 부인	231
10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 사건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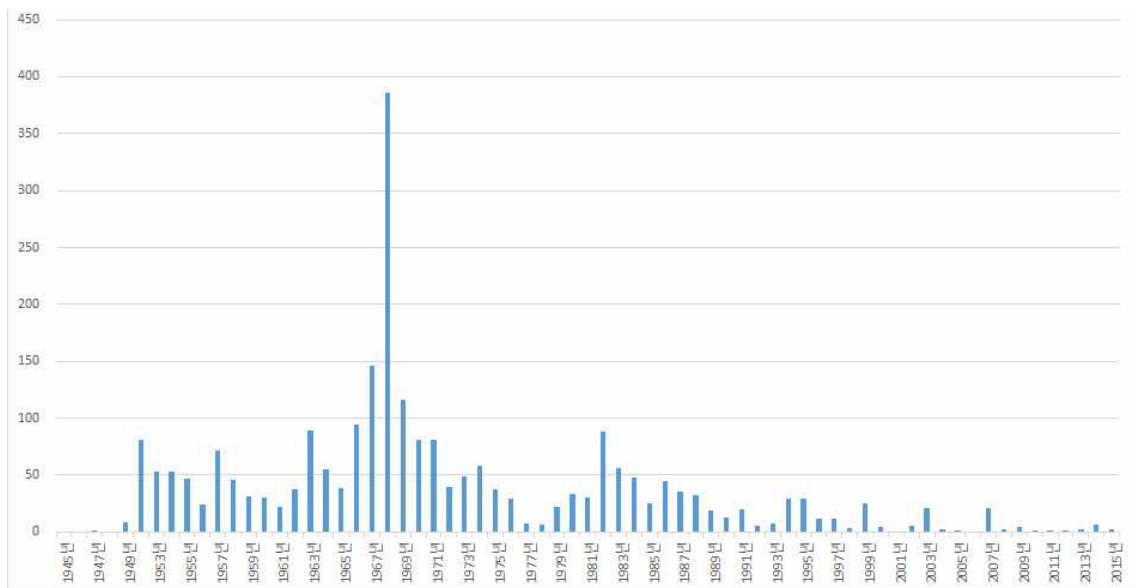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체 정전협정의 위반사례의 두드러진 유형은 첫 번째, 육상에서 진행된 사소한 군사위반 사건이다. 여기에는 완장 위반, 차량식별 위반, 자동화기 및 기관총, 공용화기 반입, 소규모 요새 및 진지구축 등이 속한다. 총 3,037건 보도되었다. 두 번째, 공중에서 일어난 경미한 군사위반 사건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을 정찰 비행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총 2,245건이 보도되었는데 1990년대부터 급증하였다. 첫째와 두 번째 유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유형은 대체로 정전협정 주요 위반사건의 유형과 유사하다.

② 노동신문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보도 통계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체 정전협정 위반 9,239건에서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이 2,897건으로 전체의 31.3%이며, DMZ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주요위반 사건은 2,490건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한다.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 중 DMZ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은 85.9%를 차지하고 있다. DMZ지역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이 발생한 연대로는 1960년대가 1,015건으로 가장 높았고, 연도로는 1968년이 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4> 노동신문의 연도별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표 9> 노동신문의 DMZ지역 연대별, 공간별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육상	해상	공중	총 계
한국전쟁 이전	87	0	4	91
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160	17	149	326
1960년대	641	254	120	1,015
1970년대	257	36	120	413
1980년대	134	24	254	412
1990년대	100	46	11	157
2000년대	4	54	4	62
2010년~2015년	7	7	0	14
총 계	1,390	438	662	2,490

<표 10> 노동신문의 DMZ지역 주요 정전협정 위반 유형별 순위 (단위: 건)

순위	유형	내용	유형별 개수
1	123	육상의 총포격	782
2	321	공중의 비행기 월경	610
3	221	군 경비함 월선	328
4	111	침투교전 시 군인 사망	179
5	113	군인 생포 또는 부상	165
6	122	육상에서의 무장 습격	102
7	121	군사분계선 침투	82
8	114	쌍방 교전	70
9	213	어선 및 군함나포/침몰	46
10	223	해상의 총포격	30

노동신문에 나타난 DMZ 지역의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건은 1960년대 1,015건을 정점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1970년대 413건, 1980년대 412건, 1990년대 157건, 2000년대 62건, 2010년대 14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전반적으로 DMZ와 인근 수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주요위반 사건의 주요 유형은 전체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주요 유형과 중복되는 것이 많았으며, 군함 침몰, 해상 총포격 등 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이 추가되었다.

군사충돌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DMZ지역 인근 해상의 주요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1990년대 46건으로 DMZ지역 군사충돌의 약 1/3, 2000년대 54건으로 DMZ지역 군사충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최근 2015년까지 DMZ지역 주요한 정전협정 위반사례 14건의 절반인 7건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Ⅲ. 장기갈등의 관점에서 보는 동아일보와 노동신문의 남북한 군사충돌 비교

1. 동아일보와 노동신문의 남북한 군사충돌 보도의 공통점

1) 언론을 통한 1949년과 1950년 상반기 남북한 군사충돌의 부각: 한국전쟁의 예고

한국전쟁 이전 남과 북의 장기갈등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945년 강대국들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지만, 한반도의 정치세력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첨예하게 이념적으로 갈등하였다. 1948년 남과 북에 서로 단독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념적 갈등은 심화되었고, 38선 군사충돌의 증가로 나타났다.

“북한 인민군은 국군이 삼팔선을 절대로 월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때때로 천전을 비롯하여 포천, 전곡, 청단, 웅진 등지에서 저격 또는 납치 등의 만행을 강행한 사실도 허다하여 실로 유감사로 생각하여 오던바 지난 1월 27일 하오 3시경 청단을 중심으로 약 2백여 명의 인민군대가 침입하여 경찰지서를 본격적으로 습격중이라는 정보를 붓고 수 십명의 국군을 파견시켜 이에 대처하여 적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나머지 자동차 6대중 2대를 대파하고 37명의 사상과 2명의 포로를 얻었는데 아방의 피해는 개무하나 다만 경찰편 1명의 피살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내었을 뿐이라고 한다.”¹⁷⁾

“소위 『국방군』과 『경찰대』들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에 이르는 동안에만 하여도 강원도 철원, 화천, 련천○, 황해도 인민구들의 38선 이북지대에 향하여 다수의 인화탄을 발사하여 공화국 산림을 소각하였다. 계속하여 5월 5일에는 황해도 벽성군 대거면 화양면 등지에, 6일에는 벽성군 교정면에, 7일에는 장풍군 장도면에, 8일에는 연백군 화○면 등지에 엠원보총, 기관포, 경기, 또는 81미리박격포 등을 무수히 발사하였다. 한편 강원도 방면의 괴뢰군경들은 5월 5일 양구군 서면과 양양군 현북면, 손양면 등지를 향하여 다수의 증기와 박격포를 발사하였으며 양양군 속초면 속초리 상공에는 비행기까지 침입하여 부근일대를 정찰한후 이남으로 도망하였다. 이 지대에서는 5월 6일과 7일에도 이와같은 도발행위가 계속되었다. 적들이 발사한 포탄과 총탄은 38이북지역에 떨어졌으나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였다. 적들은 이상과 같이 다수의 포탄을 발사하면서 38이북지역에 침입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공화국 38선경비대의 철벽같은 방비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격퇴되었다. … 리승만 도당들은 작년 1월부터 9월 9일까지 사이에만도 무려 431회에 걸쳐 38선 이북지역을 침습하였었다.”¹⁸⁾

이는 남의 동아일보 1949년 군사총돌 기사와 북의 노동신문 1950년 상반기의 군사총돌 기사의 보도 증가로 나타났다. 두 시기를 비교하는 이유는 남북 군사총돌 관련보도의 역사상 남과 북 각각 두 번째로 많았던 해가 한국전쟁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동아일보는 1949년과 1950년 상반기 전체 신문이 존재하는 반면, 1950년 상반기 노동신문은 거의 확보되었지만 1949년 노동신문은 195일치만 확보하여 비교했기 때문에 당시 노동신문을 완전히 구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49년 동아일보의 군사총돌 사례가 163건으로 급증하는 것에 비하여 노동신문의 군사총돌 사례가 13건으로 매우 적은 것과 1950년 상반기 노동신문의 군사총돌 사례가 373건으로 급증하는 것에 비하여 동아일보의 군사총돌 보도가 26건으로 매우 적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1949년은 남측과 북측 당국의 통계상으로도 총돌이 잦았던 시기이다.¹⁹⁾ 이 시기 노동신문의 군사총돌 관련 보도가 적은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다. 또한 1950년 상반기에는 북한 당국이 한국전쟁의 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38선 총돌이나 남한 내 빨치산 활동을 과거보다 많이 보도했을 경우를 고려하면 1950년 노동신문의 보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²⁰⁾ 그럼에도 동아일보의 군사총돌 관련보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17) “괴뢰군 불법침입. 청단 부근서 37명 사살,” 『동아일보』, 1949년 2월 2일.

18) “리승만 역도들의 38도발은 걸음마다 폭로 분쇄되고 있다,” 『노동신문』, 1950년 5월 14일.

19) ■ 남측 통계: 38선 총돌(1947. 8~1948. 11, 1949. 1~1950. 6) 월별 현황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947년	6	12	17	16	6	57
1948년	6	10	6	19	26	31	20	14	17	15	6	.	170
1949년	9	30	34	41	29	18	119	83	94	42	41	60	600
1950년	31	18	70	41	52	46	258

*출처: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947~1948; Joint Weeka, 1949, 1949. 1~1950.

6.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총돌과 전쟁의 형성』, pp. 203, 453에서 재인용.]

■ 북측 통계: 남한의 무장 공격 일람표(1947~1950. 6)

<표 11> 1949년과 1950년 동아일보와 노동신문의 군사총돌 보도 비교

신문	시기	군사총돌 관련기사 보도 회수 (후속 기사 등 포함)/ 군사총돌 건수	38선 군사총돌	기타 군사총돌 (빨치산 활동 등)
동아일보	1949년	269회/163건 (노동신문 13건)	69건	94건
노동신문	1950년	532회/373건 (동아일보 26건)	81건	292건

1949년부터 급증하는 남북한 군사총돌의 보도를 통해 당시 신문을 읽던 남과 북의 식자층, 즉 지식인들에게 한국전쟁이 미리 예고된 사건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¹⁾ 당시 군사총돌의 유형은 38선 군사총돌과 남한의 빨치산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잦은 군사총돌이 전쟁의 문을 열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사고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49년 6월 김구의 암살로 1948년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로 상징되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노력이 좌절되면서 강대국의 지정학이 결합된 한반도에서 이념적 장기갈등이 한국전쟁을 통해 본격화된 것이다.

2) 정전협정의 주요 위반 사건 ‘군사총돌’의 지속적 감소: 한반도의 탈냉전 가능성

남북한 장기갈등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국가적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언론의 군사총돌 보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대립적인 제도의 수립이나 군사적 물리력의 확충을 정당화한다. 결국 장기갈등은 지속된다.

하지만, 장기갈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도, 남북한 군사총돌은 동아일보와 노동신문의 신문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남한의 반공독재, 북한의 체제수호에 충분히 활용되어 온 군사총돌임에도 베트남 전쟁 등 냉전이 격화되었던 1960년대 최고조에 달한 이후, 그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아직도 한반도가 냉전의 마지막 공간²²⁾이지만, 탈냉전의

구분 연도	적무장 도발 건수					
	무장 침입			총포사격	계	1947년에 대비한 %
	지상	해상	공중			
1947	274	14	4	162	454	100
1948	391	20	9	512	932	205.28
1949	912	67	79	1,557	2,617	576.43
1950. 6	157	8	32	950	1,147	252.64

*출처: 허종호, 『미제의 극동침략전쟁과 조선전쟁 (1)』, p.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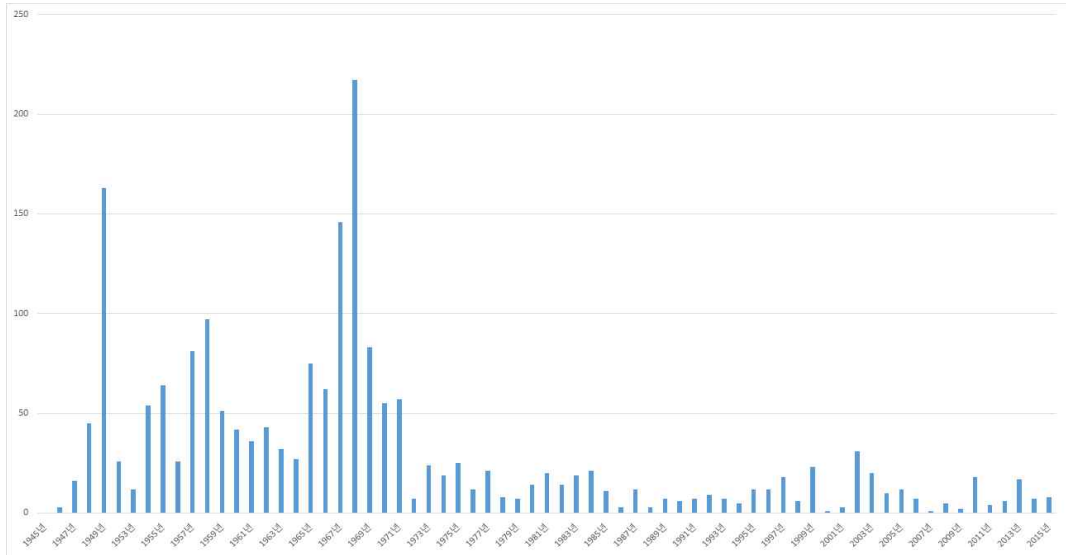
20) “ … 10월 은파산전투 이후 11950년 5월 초까지 38선은 고요했다. 적어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중대급 이상에서 전개된 38선상의 총돌은 거의 없었다. 당시 북한의 자료들도 모두 1950년 5월 초까지 38선상의 총돌은 거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에 38선 총돌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 되었지만, 대부분 정찰 과정에서의 소규모 총돌이었다.”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총돌과 전쟁의 현성』 (파주: 돌베개, 2006), p. 452.

21) “ … 오늘 아침 38전선에 걸쳐서 이북군이 침공해와서 지금 격전중이고 그 때문에 시내엔 군인의 비상소집이 있고 거리가 매우 긴장해 있다고 뉴스를 전해주었다. 마의 38선에서 항상 되풀이하는 총돌의 한 토막인지, 또는 강군이 전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침공인지 알 수 없으나, 시내의 효상(效象, 나쁜 상황)을 보고 온 강군의 허둥지둥하는 양으로 보아 사태는 비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 ‘전쟁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구나’하는 생각에 뒤이어 ‘5년 동안 민족의 넋을 가위누르던 동족상잔이 마침내 오고야 마는구나’하는 순간 갑자기 길이 팽팽 돌고 눈앞이 캄캄하여졌다.” 김성철, 『역사 앞에서: 한 사학자의 6.25일기』 (파주: 창비, 2009), pp. 6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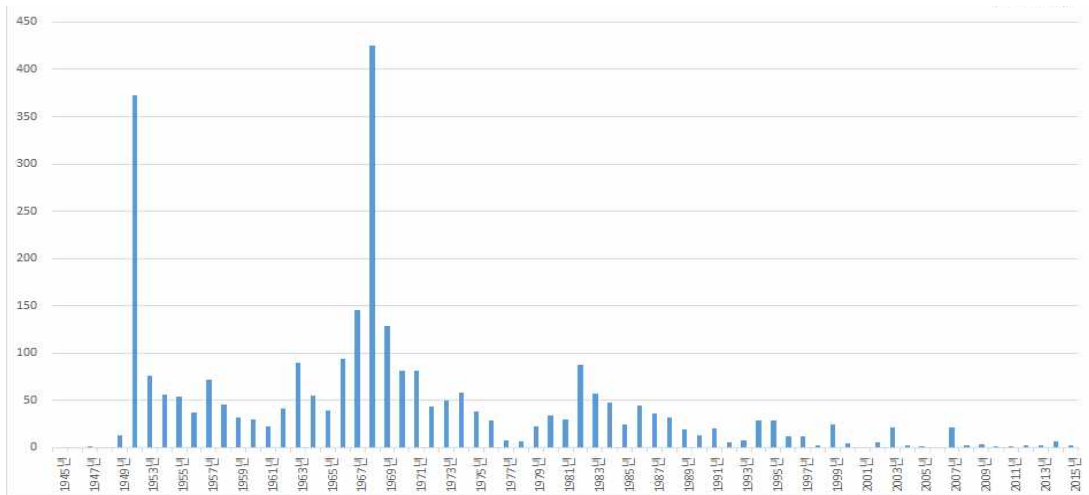
시대적 조류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되는 1990년대부터 정전협정의 주요 위반 사건인 군사충돌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 감소한다. DMZ지역 군사충돌도 현저히 감소한다. 물론 군사충돌이 아직도 존재하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 한반도 냉전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각인시키지만 과거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림 5> 동아일보의 연도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그림 6> 노동신문의 연도별 주요 정전협정 위반 건수 (단위: 건)



22)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휴전선 일대는 거대한 화력으로 증무장된 채 냉전시대를 거쳐 지금 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세계를 통틀어 다른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을 가로막았던 장벽들이 거의 무너졌지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7년 연두교서에서 밝힌 대로 한반도만은 ‘냉전시대의 마지막 전선’으로 남아 있다. 사실상 비무장지대(DMZ)라는 이름은 허울 좋은 것이다.”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 저, 이종길·양은미 역, 『두 개의 한국』 (서울: 길산, 2014),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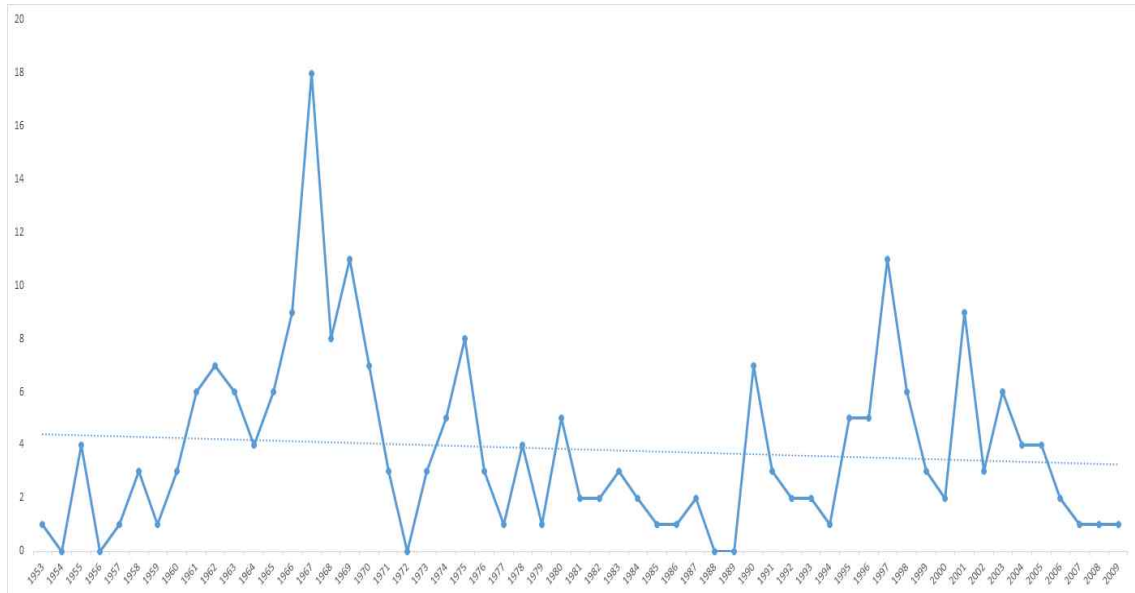
공식적으로 유엔사가 분류한 정전협정 주요 위반사건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1960년대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표 12> 북한군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 현황

구 분	총 계	'53~60	'61~70	'71~80	'81~90	'91~00	'01~03	'04~06	'07~09
소 계	219	13	82	32	21	40	18	10	3
육 상	115	1	37	11	10	32	12	10	2
해 상	82	7	40	14	7	8	5	0	1
공 중	22	5	5	7	4	0	1	0	0

* 출처: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8집』(서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연락단, 2010), p. 231.

<그림 7> 정전 이후 북한의 주요 국지도발 추이 (단위: 건)



* 출처: 유상범,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국방연구』 제57권 제1호 (고양: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통일연구원, 2014), p. 6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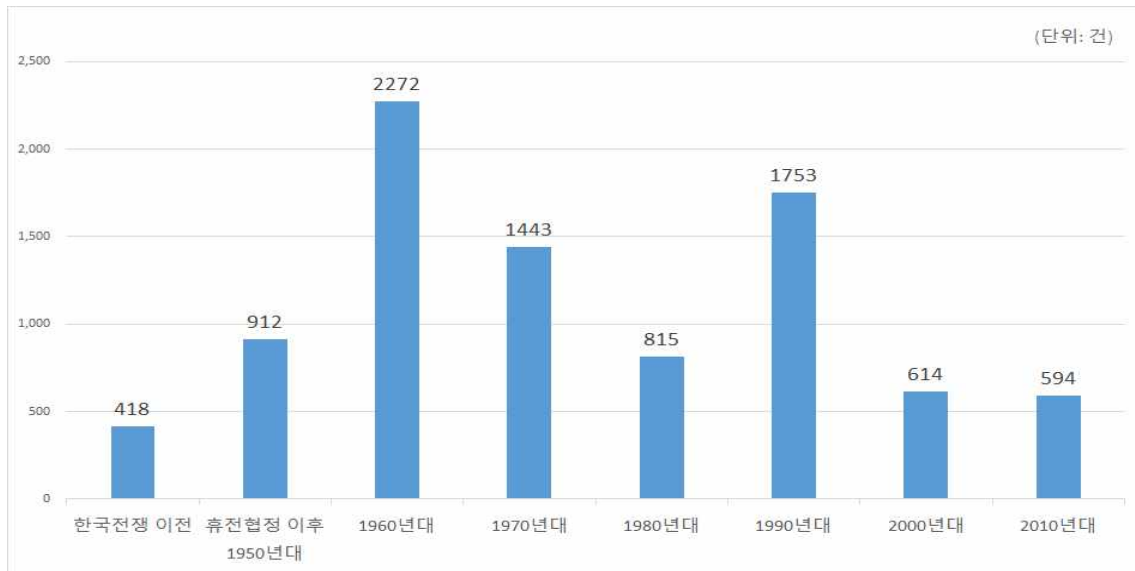
2. 동아일보와 노동신문 군사충돌 보도의 차이점

1) 동아일보와 노동신문의 정전협정 위반 보도 회수 차이: 8,821 vs 17,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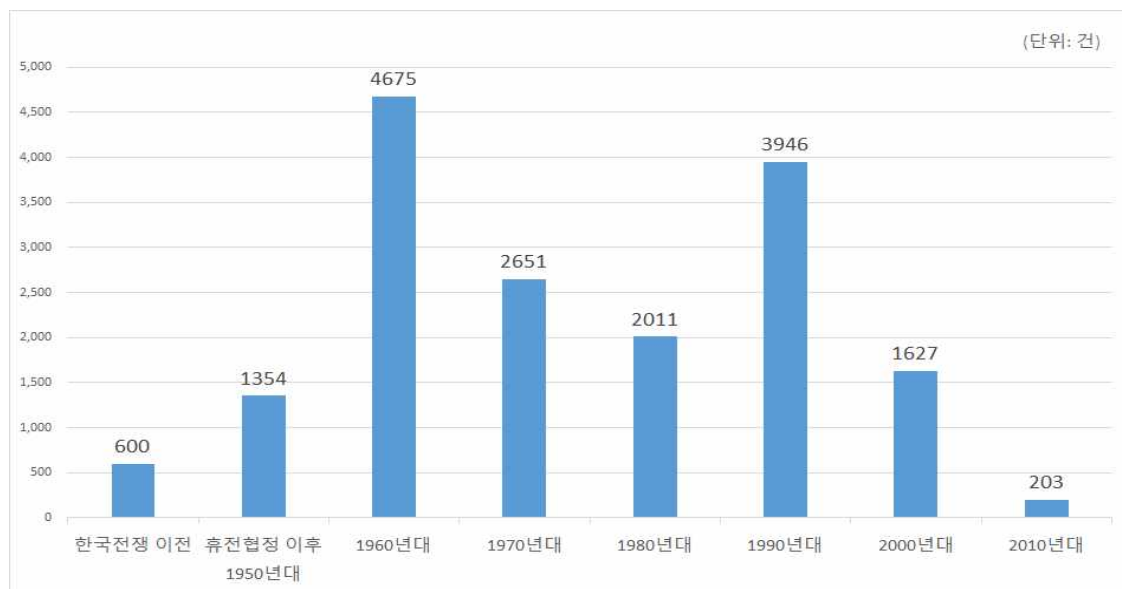
남과 북의 장기갈등에서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군사충돌 관련보도를 많이 하면, 남한도 군사충돌 관련보도를 많이 보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1990년대 정전협정 위반 사건 보도가 남과 북 모두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이 적다는 것은 남과 북이 서로 해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사건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서로 맞대응하며 다양한 군사충돌 관련 사건의 보도를 통해 장기갈등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일례로 남한의 동아일보는 서해교전 등의 커다란 군사충돌에 대한 후속기사 등을 연일 다루며 군사충돌 관련보도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에 비해 북한의 노동신문은 미군 비행기의 비월경 정찰행위 등 사소한 정전협정 위반도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과장하며 군사충돌 관련 보도를 늘려간다.

<그림 8> 1945~2015년 동아일보에 나타난 연대별 정전협정 관련 보도 추이



<그림 9> 1945~2015년 노동신문에 나타난 연대별 정전협정 관련 보도 추이



하지만 남과 북의 군사충돌 관련보도를 양적으로 살펴볼 때 남한이 총 8,821건인데 비해, 북한은 총 17,067건으로 거의 두 배에 이른다. 그 이유는 북한의 노동신문이 당 기관지이며 정

치선전의 도구로서 정전협정 관련 기사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중후반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경제위기를 공식적으로 겪었을 때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한 군사충돌 관련 보도를 증가시키면서 체제를 수호하려 했던 것이다. 반면, 남한의 동아일보는 비록 반공독재의 시기에 정권의 시녀처럼 존재했지만, 남한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전협정 관련 기사를 점차 줄여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2) 동아일보와 노동신문의 보도 유형의 차이: 간첩 사건 vs DMZ 지역 군사충돌

남북한 군사충돌에 대한 남과 북의 보도 유형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동아일보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서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을 크게 다루지만, 상대적으로 DMZ 지역의 군사충돌에 관한 보도가 적다. 노동신문은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서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DMZ지역의 군사충돌을 다루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표 13> 1945~2015년 동아일보에 나타난 연대별 정전협정 관련 보도 추이

	총 보도 건수	정전협정 위반 사건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	DMZ지역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
동아일보	8,821	2,940	2,017 (68.6%)*	886 (43.9%)**
노동신문	17,067	9,239	2,897 (31.3%)*	2,490 (85.9%)**

*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서 주요 위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에서 DMZ지역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이는 남북한 장기갈등에서 남과 북의 언론이 관심을 갖는 군사충돌 관련 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남북한 군사충돌 관련 보도에서 간첩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룬다. 정전협정 위반사건 기사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군인 생포 또는 부상’ 686건에서 565건이 간첩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았던 ‘침투교전에 의한 군인 사망’ 565건에서 545건이 간첩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두 유형에서 간첩사건은 총 1110건에 달한다. 동아일보는 남북한 군사충돌 관련 사건 보도에서 1/3 이상을 간첩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비해 노동신문은 DMZ지역의 군사도발 기사를 많이 다루었다. 남북한 군사충돌에 대해 주로 북한의 체제 자체를 공격하는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북한의 군사충돌 관련사건 보도 유형에서 주요 10순위에도 없을 정도로 간첩사건 관련 기사는 비중이 작다.

“4일 밤 11시 15분경 인천시 동구 앞 해상에 북괴간첩선으로 보이는 괴선박이 나타나 해안에 접근 중인 것을 순찰 중이던 제000전투경찰대 소속 경비정 소주호가 발견, 라이트로 정지신호를 보내자 괴선박에 타고 있던 예비군복차림을 한 4명 가량의 괴한들이 기관총을 난사해와 전경대원 김석정 순경(29)이 현장에서 전사하고 김주호 순경(27)이 중상을 입었다. 아군 경비정과 약 20분간 교전한 뒤 괴선박은 시속 30노트로 도주했다. 아군은 즉시 항공기와 경비정 0척을 동원, 조명탄을 터뜨리며 퇴로를 차단, 군경합동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다.”²³⁾

23) “예비군가장 간첩선 인천앞바다에 침투, 교전 끝에 격퇴,” 『동아일보』, 1971년 5월 5일.

“남조선괴뢰들이 4일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122호부근지역에 수십명의 무장악당들을 내몰아 우리측이 관리하는 군사분계선표식물 《보수작업》을 일방적으로 벌리는 군사적도발을 일으켰다. 이 지역의 군사분계선표식물은 정전협정과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관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은 지난 8월 2일 전연방송을 통하여 《분계선 표말위치를 확정하자》고 떠벌인데 이어 4일 16시 55분경에는 우리측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무장악당들을 침투시켜 우리측이 관리하는 표식물 《보수작업》을 일방적으로 벌리게 하였다. 이것은 정전협정과 쌍방간의 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우리측을 반대하는 공공연한 침략행위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이러한 군사적도발행위가 쌍방무장인원들이 대치되어있는 비무장지대안에서 어떤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를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²⁴⁾

이렇게 남과 북이 군사충돌의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한반도 장기갈등에서 남과 북이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남과 북의 군사충돌 관련사건 유형에서 간첩사건의 비중이 큰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잦은 간첩 침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반공독재 시기부터 주로 ‘간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내부의 적을 적발하여 내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반면 북한은 주로 ‘침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남한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다양한 정견을 가진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남한의 정치체제와 수령제 사회주의로 비교적 단일화된 북한의 정치체제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IV. 마치며: 남북한 장기갈등과 군사충돌의 지속가능성

남북한 장기갈등에서 DMZ라는 경계는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장기갈등의 남북협력 등이 진행될 때는 약화되고,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군사충돌이 빚어질 때는 강화되는 것이다. 장기갈등은 긴 시간 속에서 항상 고조 국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협력의 국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갈등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대결적인 제도 및 정책, 증가하는 물리력 등의 요소들은 지도자들의 오판과 맞물려 어렵게 싹튼 갈등 해결의 노력에 대해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것이 장기갈등을 ‘고질갈등’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따라서 경계의 약화와 강화가 교차하면서 장기갈등 속에 놓인 경계는 지속되는 것이다. 지속되는 경계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끊임없이 서로 각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남한은 냉전의 해체와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추세 속에서 공세적인 경계의 확장을 시도한다. 북한 붕괴론과 통일대박론이 그것의 대표적 흐름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속에서 수세적인 처지에 놓여 사활적으로 경계를 방어하여 체제를 수호하고자 한다. 선군정치, 경제-

24) “남조선괴뢰들이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 감행,” 『로동신문』, 1990년 8월 5일.

핵무력 병진노선이 북한의 대표적 입장이 되는 이유이다. 지나친 갈등의 고조 속에서 각자의 이익마저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2015년 8.25합의처럼 비로소 협상을 통해 갈등의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속에서 장기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요원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점차로 감소하는 군사충돌도 탈냉전의 흐름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지나치게 중무장화된 DMZ에서 잦은 군사충돌은 전쟁으로 가는 파국이기 때문에 억제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줄 정도의 상징적인 군사충돌만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무장화된 육상의 DMZ가 아닌, 인근 서해 해상에서 주요 정전협정의 위반, 즉 군사충돌의 증가는 그러한 사례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 군사충돌은 장기갈등의 지속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군사충돌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면서 대결적인 제도와 물리적 확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남과 북의 언론은 대체로 그러한 과정을 촉진시켰다. 노동신문의 군사충돌 사건 관련보도는 그러한 흐름을 전형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동아일보가 남한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반공독재적 논조를 지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논조에 대항하여 군사충돌 관련기사 보도를 진행하는 대결적 언론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정체성의 확보 및 강화는 국민들의 정체성 형성과 직결된다. 언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대결적 인식이 국민들의 시각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갈등 구조에 대한 암묵적인 국민적 동의로 이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장기갈등의 지속이 과연 이익을 가져오는가를 고민해볼 때 항상적인 동의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장기갈등을 해체시키는 힘이다. 장기갈등의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정당화되는 대결의식과 발전을 가로막는 군사충돌의 긴장 상황에 대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이 장기갈등에 대한 변화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감소하는 남북한 군사충돌은 이를 지지하는 근거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성철, 『역사 앞에서: 한 사학자의 6.25일기』 (파주: 창비, 2009)
-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10권 4호(서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
- 김형민, “경제적·군사적 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서울: 한국 국제정치학회, 2012)
- 김형민, “군사분쟁의 원인과 고찰: 동북아 지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신아세아』 21권 2호(서울: 신아시아연구소, 2014)
-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 저, 이종길·양은미 역, 『두 개의 한국』 (서울: 길산, 2014)
- 문정인, “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 연구방향 모색,”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송영훈, “무력분쟁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UCDP/PRIO 분쟁데이터셋과 MID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광복 70년·분단 70년: DMZ에서 새로운 평화를 모색하다-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5. 5. 29)
- 장경룡, “동북아 평화체제와 구성주의,” 『정치정보연구』 10권 2호(서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파주: 돌베개, 2006)
-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8집』 (서울: 합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연락단, 2010)
-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서울: 합참 정보본부 군정위단, 2001)
- 허종호, 『미제의 극동침략전쟁과 조선전쟁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 Azar, Edward E., Paul Jureidini and Ronald McLaurin. “Protracted Social Conflict: Theory and Practice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8, 1 (1978).
- Gochman, Charles S. and Zeev Maoz,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76: Procedures, Patterns, Insigh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8, 4 (1984).

『동아일보』

『로동신문』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남북공동수계를 중심으로

최용환
경기연구원

I. 서론

남북한 접경지역은 분단으로 인해 탄생한 지역이다. 더구나 한국전쟁이 일방의 승리에 의한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한 접경지역에는 대규모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법적으로 한국전쟁은 아직도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며, 실제로 수십년간 지속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분쟁과 단절의 공간이 된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은 사람들의 발길을 끊어놓았고, 그 상태가 지속된 결과 생태계가 복원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이제 남북한 접경지역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강고한 경계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연의 힘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물새 틈 없는 방어를 뚫고 흐르는 강물, 철통같은 경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곤충과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국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의 발길이 잦아든 지역에서 더욱 풍성해진 생명과 생태,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이 새삼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제안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남북한 사이에도 비무장지대(이하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컨대 1991년의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합의한바 있었다. 하지만 DMZ 내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상이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면서 제한적으로 DMZ를 관통하는 교통로가 개설된 사례 정도가 있을 뿐이다. 접경지역 혹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때문이다. 사실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의 잠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 DMZ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는 한 이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제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반도 접경지역은 단절의 공간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사람들이 설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말라리아는 1980년대 남한에서는 사라진 질병이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8년부터 수년동안 남북한 공동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보다 이전인 2000년대 초반 강원도는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 방역사업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초국경질병 이외에도 남북공동수계를 이루고 있는 북한강과 임진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북한이 임진강 수계의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하여 하류지역에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실 북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공동수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에서 발생하는 홍수나 물부족 문제는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날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슈이다. 따라서 이 글은 남북공동수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접경지역 평화협력과 남북공유하천

1. 접경지역 평화협력의 의의

접경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접경지역을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한 공간적 범위¹⁾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로 남북한의 경계에 존재하는 공간은 접경지역지원법상의 '접경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아도 군사분계선 남북 쌍방 2km까지의 지역은 'DMZ'이며,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설정된 '민간인통제구역'이 있고,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존재한다.²⁾ 그러나보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과 관련된 접경지역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접경지역지원법 상의 범위보다는 더 넓은 지역(DMZ와 그 주변의 인접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접경지역지원법 상의 범위로 상정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동 법이 우선 적용될 수 없는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한 규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접경지역의 낙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남북접경지대와 관련된 법령은 접경지역지원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법규에 의한 중복·과다 규제 역시 커다란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남한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한 고민이자 변경으로서 접경지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DMZ 남측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심지어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을 고민하고, 강원도는 강원도 북부지역을 나누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한의 경계나 행정구역의 범위와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 평화협력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군사분계선 남측 뿐만 아니라 북측 지역까지를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1) 접경지역 지원법 제2조 1항: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하"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북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각 영역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은진 외,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 정치적 환경과 경제기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2004), p. 138 참조.

이 접경지역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지어 외부변수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대륙철도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서해안 NLL문제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크게 감소될 것이다. 접경지역 혹은 DMZ를 특정 법률에서 정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되기 보다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계라는 보다 포괄적인 지리적 공간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border)는 문화나 종교 집단과 같은 비영토적 집단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국가 시스템에서 경계는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한계선을 의미한다.³⁾ 도이치(Karl Deutsch)나 오마에(Kenichi Ohmae) 등이 인식하는 경계는 정보유통의 외곽선(contours of information flows)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여러 법률상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과 대동소이하다. 즉, 주권적 범위의 외곽이자 변경이라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이라는 것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지역이므로 이 경계를 넘어 어떠한 교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단절의 공간이기 보다는 소통의 공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은 양 지역 간의 관계에 의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마르티네즈(Martinez)는 접경지역간 상호작용에 착목하여 4가지 모델을 제시한다.⁵⁾ 마르티네즈의 분류에 따르면 첫째, 소원한 접경지역(alienated borderlands)은 긴장관계가 상존하는 곳으로 경계는 기능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월경적 상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존하는 접경지역(co-existent borderlands)은 시기에 따라 불확실한 안정성이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경계는 제한된 상호협력 개발을 위한 경우에만 조금 개방된다. 셋째, 협력하는(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interdependent borderlands)은 대부분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경제·사회적 보완성이 증대됨에 따라 월경적 상호작용이 제고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접경지역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개 친숙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넷째, 통합된 접경지역(integrated borderlands)은 영구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곳으로 양국 간의 정치적 경계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었으며 국경을 통과하는 인적·물적 교류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DMZ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는 소원한 접경지역으로부터 공존하는 접경지역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특구 그리고 남북 도로·철도 연결이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내용과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경계는 여과(filter)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점차적으로 통합된 접경지역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제 접경지역은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활력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James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rehensive Survey*, 5th Edition, (New York: Longman, 2001), p. 177.

4) Kenichi Ohmae, *The End of the Nation State: The Rise of Regional Economics* (New York: Free Press, 1995), pp. 78-100; Karl W. Deutsch, *The Nerves of Government: Model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ontrol* (New York: Free Press, 1963), pp. 205-209.

5) O. J. Martinez, "The Dynamics of Border Interaction," in D. H. Schofield, eds., *Global Boundaries*, Vol. 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5. ; 김상빈·이원호, "접경지역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2004), p. 121에서 재인용.

2. 남북공유하천과 접경지역 평화협력

‘국제하천’(international river) 혹은 ‘공유하천’(joint river)은 2개국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⁶⁾ 국제공유하천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크게 나누면 하천의 상류국가와 하류국가가 분명한 경우(transboundary river), 하천이 국경을 이룬 경우(boundary river), 하류와 상류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shared rive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에는 다수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크게 나누면 북한강과 임진강 수계가 이에 해당한다. 두 강 모두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흘러드는 강줄기이기 때문에 위의 분류에 따르면 국제공유하천 가운데 초국경하천(transboundary river)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공유하천은 접경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그 배후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줄기이다.

과거 20세기 초반까지 국제공유하천에 대한 관심은 항해의 자유 확보와 이를 위한 하천의 관리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과거 국제공유하천은 주로 항해에 초점을 맞춘 수로(水路)의 의미로 규정되었으며, 이 당시의 국제하천법 체제는 영토국가의 국가주권과 하천 연안국가 및 비연안국가의 항해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데 중점을 두었다.⁷⁾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은 하천이용의 폭을 대폭 확대시켰다. 전력생산, 관개용수, 산업용수 등과 같은 물에 대한 비항행적 수요가 급증하였다. 반면 도로, 철도, 항공 등의 발달로 교통·운송 통로로서 하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1차 세계대전 후의 여러 평화조약들은 하천 이용에 관한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하천 개념의 확대를 초래하였는데, 하천 주류뿐만이 아니고 점차 지류, 호수, 운하, 지하수 마침내 전체 유역이 포함되었고, 최근에는 대기권 중의 수분, 얼음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하였다.⁸⁾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international river(or lake) system’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이는 하천 주류뿐만 아니라 지류, 운하, 호수 및 호수로 흘러가는 모든 하천체계 전체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이에에는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내륙해, 내륙해로 향한 수로까지 포함된다.⁹⁾ 1966년 세계국제법협회 ‘헬싱키 규칙’은 ‘International Drainage Basin’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를 ‘동일한 하구를 향해 지표면을 흐르는 강물과 지하수를 포함하여 유역 경계에 속하는 지역으로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는 경우(a geographical area extending over two or more states determined by watershed limits of the system of waters, including surface and underground waters, flowing into a common terminus)’로 정의하였다.¹⁰⁾ 국제법협회가 국제공유하천의 개념을 이처럼 넓게 설정한 것은 국가 간의 물 분쟁을 조정하고,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보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system’이라 하여 대기권

6) 손기웅,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7.

7) 건설교통부, 『공유하천 관리방안 연구』(2001), p. 8.

8) 김덕주, 『국제공유하천의 분쟁 및 해결사례』(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p. 7.

9) 박기갑, “국제판례를 통하여 본 국제하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포럼』 제2호(1992), p. 49.

10) 이상면, “국제하천에 있어서 댐건설과 유로 변경에 관한 국제관습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4호(1986)

11) 김광목, “외국의 공유하천 분쟁 및 관리사례,” 『국토』 통권249호 (안양: 국토연구원, 2002), p. 83.

의 수분과 얼음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며, 하천 유역 일대의 공기, 야생동물, 물고기까지 포함하는 'shared natural resources'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¹²⁾ 이와 같은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개념을 남북한 공유하천에 적용한다면 임진강이나 북한강 수계의 평화적 활용 문제는 생태·환경 문제를 포함한 매우 포괄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Ⅲ. 남북 공유하천 관련 현황과 쟁점

1. 남북한 공유하천 현황

남북한 접경지역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들은 모두 한강 수계에 속하며, 가장 큰 물줄기는 임진강과 북한강이다.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는 한반도 중부지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넓은 면적을 아우르고 있다.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에서 남북 간에 발생하는 쟁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범위에서는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강은 수자원 부존 및 하천의 지형적 특성상 물 이용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강 수계는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협곡이 깊고, 경사가 급해 천혜의 댐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평, 의암, 춘천, 소양강 및 화천댐 등 대표적인 댐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댐들은 전력생산 이외에 홍수조절과 수도권 용수공급에 사용된다. 이외에도 북한강 수계는 휴양·레저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임진강은 하구에서 한강본류와 만나며, 수도권 북부지역의 용수 공급원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하천이다. 상류에 위치한 북한은 크고 작은 댐을 건설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접경지역에 위치한 이유로 수자원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연천, 파주 등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진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남북 공유하천의 쟁점

남북이 공히 경계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관할권이 분명하지 않은 지역은 한강하구 지역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상에서 쌍방은 육상의 경계를 정하고 DMZ를 설정하였지만 한강하구 지역은 DMZ가 아닌 중립지역으로 남겨 놓았다.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화도의 말도(末島, 끝섬)에 이르는 지역은 한강하구의 중립지역(Neutral Zone (HAN Estuary))으로 남북공용의 특수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이 서해로 유입하는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 제1조 5항¹³⁾에 의해

12) 외무부, 『국제하천관계자료집』(1987), p. 10.

13) “정전협정 제1조 5항: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전협정에 따른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남측의 경우 선박의 등록절차 등은 유엔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제8차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인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1953. 10. 3)> 제6항(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남북한 쌍방의 민간 선박 모두에게 법적으로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이는 육상의 DMZ가 남북한의 민간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의 지속으로 한강하구는 사실상 폐쇄되어 있다. 그 결과 한강은 하구를 통해 서해로 나가는 수로가 막힌 강이 되었고, 한강의 유명한 포구들은 이름만 남은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온 것은 북한강과 임진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 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협의가 진행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북한군은 UN군의 북한강 도하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상류에 위치한 화천댐을 이용해 인위적 홍수파를 방류하여 피해를 주었고 이에 미군은 댐의 여수로 파괴로 응수한 바 있다. 이후 1985년 북한이 제3차 7개년 인민경제개발계획에 북한강 상류의 금강산댐 건설을 포함시키고 1986년 다수의 댐을 연계한 임남댐 건설을 발표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임남댐을 활용한 수공(水攻)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평화의 댐 건설이 추진되었다. 당시 이 문제는 국내적으로 수많은 논란의 원인이 되었으며, 2002년 댐의 붕괴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표 1> 임남댐 건설 전·후 화천댐 지점 유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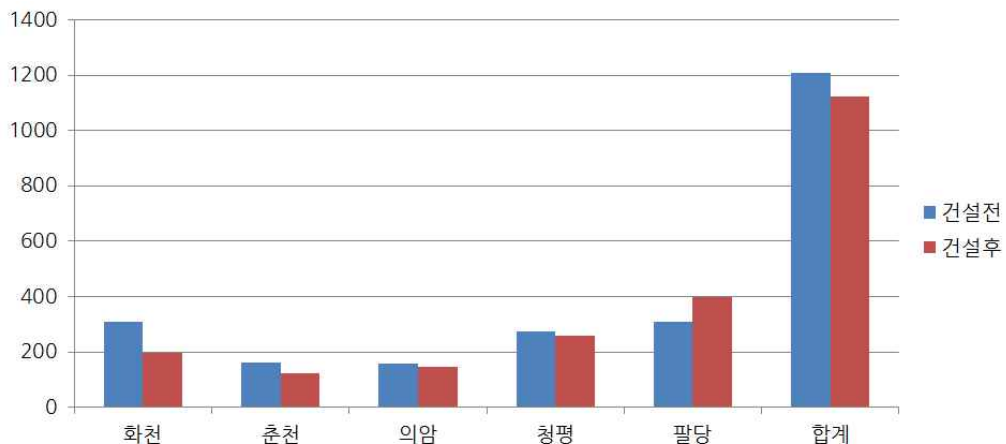
(단위: m³/s)

댐명	유량	건설전(A) (-1996)	건설중 (1997-2000)	건설후(B) (2001-2009)	증감(%) (B-A)
화천	풍수량(95일)	67.7	46.5	29.7	△38.0(56.1%)
	평수량(185일)	33.3	22.8	13.4	△19.9(59.8%)
	저수량(275일)	18.1	12.8	7.0	△11.0(61.0%)
	갈수량(355일)	8.1	4.3	2.0	△6.1(75.0%)

*출처 : 김익재 외, 『공유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p. 82.

<그림 1> 임남댐 건설 전·후 주요 댐 발전량 변화

(단위 : GWh/년)



출처 : 김익재 외, 『공유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p.88.

유역면적 2,394km²의 임남댐은 45km의 터널을 통하여 40만kW의 발전을 위한 동해안 안변청년발전소에 발전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임남댐의 경우 초기에는 수공위협이 주요한 관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유량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임남댐 건설 이후 하류지역인 화천댐 지점의 유량은 56.1 - 7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북한강 수계 주요 댐들의 실적발전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임진강의 경우에도 북한강과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을 건설하였다. 이 댐은 1999년 착공하여 2007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8년 하반기에 담수가 확인되었다. 임진강에는 황강댐 이외에도 4기의 4월 5일 댐이 건설되어있다. 이 댐들은 2000년대 초반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황강댐은 총 저수용량 4억m³, 유효저수용량 3억5천만m³로 가장 큰 댐이며, 담수된 물의 일부를 예성강으로 유로 변경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황강댐 건설 이전에도 북한은 4월 5일 댐을 예고없이 방류하여 연천·파주 지역 어민들의 선박 및 어구, 어망이 유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빈발하였다.¹⁶⁾ 황강댐 건설 이후인 2009년 9월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실종·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황강댐 방류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이후 남한 정부는 군남홍수조절댐을 건설하고, 홍수 등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임진강 수계에서는 홍수 뿐만 아니라 유량 감소로 인한 용수부족, 염해발생, 어패류 등 수생태계 변화 등 다른 차원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¹⁷⁾ 실제 수자원공사는 황강댐 담수 이후 군남댐의 갈수량이 담수 전에 비해 40%이상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2> 군남댐 수위표 유황분석

(단위: m³/s)

구분	갈수량 (Q355)	저수량 (Q275)	평수량 (Q185)	풍수량 (Q95)
황강댐 담수전(1996-2007)	27	36	55	102
황강댐 담수후(2008-2013)	15	33	45	73
차이	▽12	▽3	▽10	▽29
비교(%)	44.4	8.3	18.1	28.4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유역 갈수기 가뭄 극복 대책(안)』 (2014)

물론 임진강의 유량 감소는 황강댐 담수로 인한 것보다 강수량의 감소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¹⁸⁾도 있어서, 무엇이 핵심적인 원인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간에 갈수기 유량 부족으로 인해 임진강 하류지역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14) 김익재 외, 『공유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pp. 81-88.

15) 송미영 외,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15), p. 23.

16) 4월 5일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백경오 외, 『임진강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9), pp. 32-34 참조.

17) 송미영 외,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pp. 45-46.

18) 송미영 외,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pp. 40-41.

는 변함이 없다.

2016년 5월 16일에도 황강댐의 방류로 파주일대 어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¹⁹⁾하였다. 군남댐이 있었음에도 하류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군남댐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군남댐은 홍수조절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비워놓아야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때문에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물은 가둬놓고 있었다. 이번의 사고는 군남댐이 기준 담수량보다 6배가 넘는 물을 가둬놓고 있는 상태에서 황강댐의 방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수를 조절할 수 없어 발생한 것이다.

3. 남북 공동수계에 대한 기존합의 내용 및 한계

북한강 및 임진강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에는 수차례의 협의와 합의가 있었다. 먼저 북한강과 관련해서는 2002년 4월 임남댐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남측정부가 2002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임남댐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촉구하였다. 북측은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임남댐 공동조사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9월 18일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공동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북측이 공동조사 이전에 임남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과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합의도출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2005. 7. 12)을 통해서는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이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임진강 수계와 관련해서는 2000년 9월 1일 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0년 12월 16일 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임진강 유역과 한강 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기상수문자료 통보, 홍수예보시설 설치,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 제공 등을 협의하였다.

2004년 3월 5일에는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후 3월 22일에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남측은 2004년 5월 북측에 현지조사용 기자재를 제공하였으며, 북측의 기상자료 일부를 넘겨받았고, 12월에는 임진강 북측 단독조사의 자료를 제공 받았다.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8월 하순경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홍수 피해 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 방류 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단독 조사 결과만 주고받은 채 공동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하였다.

2006년 6월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이 다시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미진한 단독조사 결과의 보완, 공동조사 계획 확정, 홍수피해 방지 대책 수립·추진, 임진강 유역 댐 방류계획 사전통보 제도화, 황강댐 건설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이견

19) 조윤성, “가두자니 물폭탄, 비우자니 물가뭇, 군남댐의 딜레마,” 『중부일보』 (2016. 5. 19)

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009년 9월 6일 북한의 황강댐 일시 방류로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야영객 6명이 실종·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측은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하였다. 10월 14일 개최한 실무회담에서 남측은 △ 임진강 사고에 대한 당국의 공식 사과와 설명, △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 방류계획의 사전통보체계, 홍수 예보체계 구축 등 유사사태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유가족에 대한 조의와 함께,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 간의 공식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최근의 황강댐 무단 방류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사실 댐 방류 문제는 사전 통보만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다. 하지만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갈수기 물부족과 홍수기 무단 방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IV. 기존 접근의 한계

1. 수해방지에 집중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기존의 남북 협의 및 합의는 주로 수해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하는 현실적인 요구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상류의 무단 방류로 인한 하류 홍수 피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갈수기의 유량 부족 문제는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질 악화와 직결되고 있다.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합의가 주로 수해방지에 초점을 맞춘 결과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물이용에 대한 권리 등은 남북 당국 간 논의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되지도 못하였다. 수차례에 거친 남북합의에서 북측이 동의한 것은 결국 댐 방류시 남측에 이를 통보할 것이라는 약속이 전부였다. 물론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남북간 협의가 더 넓은 의제를 다루지 못한 것이 남측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하여 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포괄적 접근과 관련하여 DMZ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상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DMZ평화적 이용에 대한 제한은 1970년대부터 있어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부처별·지자체 별로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졌다. 1972년 유엔군 수석대표였던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4개항의 DMZ 비무장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1988년 DMZ 내 평화시와 평화구역 건설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구상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되었다. 2009년에만도 행정안전부는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환경부는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PLZ 광역관광개발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에 들어서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까지 나서서 관련 구상을 내놓거

나 유치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주목한 다양한 구상들이 제시되고, 실제 임진강 유역 일부는 생태·평화공원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남북공동수계의 문제들과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졌으며, 어떤 과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북측 임진강 유역의 홍수 발생과 문제는 북한 산림의 황폐화와 재난관리 체계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임진강 북측 지역의 경우 산림 황폐화로 다량의 토사가 강으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하지 못해 하상이 매우 높아져 있으며, 제방의 노후화로 범람 피해가 빈번한 실정이다. 북한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고, 식량부족으로 산꼭대기까지 다락밭을 일구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자라기 힘들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식량지원, 나무지원, 석탄공급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사태와 홍수의 원인 제거를 위한 산림 복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북방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제한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제안들은 사고의 지평이 군사분계선 남방에 갇혀 있었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연계시켜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기각된 ‘DMZ생물권보존지역’ 신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아래 그림과 같은 지역을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유네스코에 신청하였다.

<그림 2> DMZ생물권보존지역 신청지역 개관



출처 : 『한국경제』 (2011. 9. 21)

DMZ일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왜 생물권보존지역이 생물권의 경계가 아닌 군사분계선으로 나누어졌는지를 설명할 방법은 별로 없다. 더구나 철원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을 지정하지도 못한 상태로 보존지역이 설정되었다.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의 수(水)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2. 북측의 이해에 대한 관심 부족

상류댐의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이 거론되기도 한다.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원칙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절대적 영역 주권설(theory of absolute territorial sovereignty)²⁰⁾, 절대적 영역 통일성 보존설(theory of territorial integrity)²¹⁾, 제한적 영역 주권설(theory of limited territorial sovereignty)²²⁾, 공동체 이익설(theory of community interest in the waters)²³⁾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²⁴⁾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권리를 누린다’(enjoy your own rights so as not injure those of another)는 ‘sic utere’ 독트린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reasonable and equitable utilization)을 천명한 헬싱키 규칙 등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어느 하나를 적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유리한 원칙들을 주장하기 때문이다.²⁵⁾

북한은 ‘절대적 영역 주권주의’에 의거하여 공유하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절대적 영역 주권주의는 적용가능한 국제법적 원칙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는, 사실상 사문화된 주장이다. 그렇다고 이를 거부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천의 일반적인 특성상 수자원 조건만 고려한다면 상류는 항상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즉, 상류국가에 있는 북한이 하류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수자원을 개발·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일반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이라는 원칙 역시 각 국가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개는 연안 국가들의 정치·경제적인 능력의 차이, 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남북한은 아직까지도 법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전쟁을 중지하고 있는 휴전상태이며,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인 긴장 고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서울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임진강 지역의 군사력 밀집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댐 방류시 이를 통보하는 조치 하나에도 수십 번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

20) 이른바 ‘하문(Harmon)주의’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자국 영토 내의 물을 인접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상류지역에 의해 선호되는 원칙으로 물이용과 관련된 갈등이 심하지 않았던 1900년대 초반까지 주장되었다.

21) 상류국은 하류국의 동의 없이 자국 내 하천의 자연적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국제하천을 공유물 혹은 공동영유권 대상으로 본다.

22) 상류국은 자국 영토 내의 하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하류국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23) 이 주장에 따르면 하천유역국가들은 공유하천의 이용과 처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익공동체가 창설되며, 이 공동체 구성국가들은 수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며, 동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익공동체설이 주장하는 상류국과 하류국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24) 정민정,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2호 (2014), pp. 98-100. 이보다 더 자세한 하천 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이론에 대해서는 손기웅,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9 참조.

25) 손기웅,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p. 8.

실이다.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는 댐 방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 물부족과 생태계 변화 등 다른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남북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 상대방인 북한 측의 이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북한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이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이유가 전력생산 때문이라면 남측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북한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유역변경식 발전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원인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북한이 남한이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남북간에 유량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경험으로 보더라도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가 개발의 대가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에게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²⁶⁾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도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와 물이용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해법은 남한이 북한에게 적절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고 공유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MZ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공동수계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북측이 이에 협력할 유인을 제시한 경우는 많지 않다.

3. 제도화 미비

2016년 현재까지 남북 공유하천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는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협상의 의제가 대단히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만은 아니다. 수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렵고 기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유하천을 둘러싼 남북 간 교류의 제도화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하천을 둘러싼 우리의 대북 접근이 지나치게 좁은 이슈에 국한된 것은 아닌지, 상류에 위치한 북한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과 아울러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동서독의 경우에도 공유하천관련 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엘베강, 오더강, 나이세강 등 동독의 주요 하천들은 동부 및 서부 인접국가로 흐르는 공유하천이었으며, 서독은 동독에서 발원하여 자국으로 흐르는 오염된 하천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공유하천 문제를 둘러싼 협력이 쉽지 않았다. 서독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한 반면, 동독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독은 제도적으로 상설화된 ‘접경 위원회’를 통해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서독이 관련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등 동독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공하였고, 관련 지역의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가능한 한 구체적인 분야에까지 세부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

26) 최동진·이미홍, “게임이론을 통한 남북 공유하천 관리 전략 도출”,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제 41권 4호(2008), pp. 358-359.

진하였다.²⁷⁾ 하지만 남북 간에는 접경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 협의체는 아직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공유하천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적 제도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즉,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공유하천 관련 남북교류를 추진할 것인지, 혹은 임진강이나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북한강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임진강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젖줄이라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관심이 요구된다.

4.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지금까지 남북공유하천을 둘러싼 남북 간 대화는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당국 간에 일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들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을, 강원도는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즉, 공유하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미 북한과의 독자적인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공유하천 관련 협의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사뭇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지방정부 역시 당국 간 협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해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남북협의를 추진할 경우, 북한이 상류 지역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합의를 어겨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북한은 '임진강의 경우 황강댐을 제외한 다른 댐들은 수문을 개폐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넘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류를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새로 건설한 황강댐의 경우 상황이 다르지만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남북 통신선이 차단되는 경우도 많아서 홍수기 수해 방지조차도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남북 공동 수계의 종합적 관리에 관련된 남북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

27)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82-194.

경지역 수계에는 잘 발달된 수변 생태계는 물론이고 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희귀 철새의 도래지이기도하기 때문에 생태·환경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북한 지역의 산림녹화 사업, 수자원 공동이용 사업, 농업협력 사업, 문화유적 발굴 및 보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과 아울러서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지자체 및 민간, 군과 중앙정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미 경기도가 추진한 바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및 강원도가 추진한 산림 병충해 공동 방역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하며, 이는 한국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제도 확충과 더불어 남북한 협력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하여야 한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이해관계에도 기인한다. 하천의 특성상 상류지역에 위치한 북한이 협력사업에 적극성을 보일 이유는 많지 않다. 더구나 군사적으로 참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은 협의에도 미온적이었고, 기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국제공유하천 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이용을 통해 협력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경쟁된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더구나 북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남북교류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고민한다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특히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슈에서부터 협력방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남북공동수계 북측 댐의 운용과 관련하여 홍수기와 갈수기 수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²⁸⁾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남측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기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혹은 남북이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는 말라리아 방역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역이 임진강 수계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된 논의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수해방지와 관련이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유하천 관리의 문제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DMZ의 평화적 이용은 생태와 환경이라는 남측의 관심에서 시

28) 수량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수량보다는 시간에 할당해야 한다는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에 일정한 양을 할당하는 경우 이는 상류나 하류 지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물을 부피로 나누기보다는 시간 단위로 나누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3일은 상류가 취수하고 4일은 하류가 취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이 갈수기 수량 배분을 둘러싼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A. T. Wolf, "Indigenous approaches to water conflict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waters", *International Negotiation: 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December 2000); 최동진·김광목,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분쟁", 『상하수도학회지』 16권 1호(2002), pp. 14-15 참조.

작되기 보다는 남북 모두의 관심사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향후의 남북교류 특히 DMZ의 평화적 이용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이슈에서부터,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남북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공유하천 관리방안 연구』(2001).
- 김광목, “외국의 공유하천 분쟁 및 관리사례”, 『국토』 통권249호 (안양: 국토연구원, 2002).
- 김덕주, 『국제공유하천의 분쟁 및 해결사례』(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
- 김상빈·이원호, “접경지역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2004).
- 김익재 외, 『공유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박기갑, “국제판례를 통하여 본 국제하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포럼』 제2호(1992).
- 백경오 외, 『임진강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9).
-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손기웅,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손기웅,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송미영 외,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15).
- 외무부, 『국제하천관계자료집』(1987).
- 이상면, “국제하천에 있어서 댐건설과 유로 변경에 관한 국제관습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4호(1986)
- 정민정,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2호 (2014).
- 정은진 외, “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 정치적 환경과 경제기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2004).
- 조윤성, “가두자니 물폭탄, 비우자니 물가뭄, 군남댐의 딜레마.” 『중부일보』 (2016. 5. 19).
- 최동진.김광목,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분쟁”, 『상하수도학회지』 16권 1호(2002).
- 최동진·이미홍, “게임이론을 통한 남북 공유하천 관리 전략 도출”,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제41권 4호(2008).
- A. T. Wolf , "Indigenous approaches to water conflict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waters", *International Negotiation: 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December 2000).
- James E. Dougherty &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rehensive Survey*, 5th Edition,(New York: Longman, 2001).
- Karl W. Deutsch, *The Nerves of Government: Model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ontrol* (New York: Free Press, 1963).
- Kenichi Ohmae, *The End of the Nation State: The Rise of Regional Economics* (New York: Free Press, 1995).
- O. J. Martinez, "The Dynamics of Border Interaction," in D. H. Schofield, eds., *Global Boundaries, World Boundaries*, Vol. 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NOTE

NOTE

NOTE

NOTE
